

2003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4. 3. 4.

연구수행기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원 광 대 학 교
송 광 섭
윤 상 민
점 승 현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3
제3절 연구의 방법	4
Ⅰ. 선행연구 분석 및 문헌자료 검토	4
Ⅱ. 방문조사	6
1. 방문조사 영창선정기준	6
2. 방문조사 내용	7
3. 영창시설 현황	10
제4절 실태조사 미비점과 보완 사항	12
제2장 군 수사과정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14
제1절 군 수사과정과 수사상 인신구속제도 개관	14
Ⅰ. 군 수사과정	14
Ⅱ. 인신구속제도	15
1. 체포	15
2. 수사상 구속	17
3. 인신구속에 대한 구체제도	17
제2절 군 수사과정 인권상황 실태조사	19
Ⅰ. 구금일반	19
1. 계급	19
2. 죄명	19
3. 검거관서	19

4. 구금형태	20
II. 체포·구속영장 집행절차	21
1. 영장제시	21
2. 미란다 원칙 고지	21
III. 구속의 통지/ 기간	23
1. 구속의 통지	23
2. 구속기간	24
3. 구속기간 연장인지 여부	25
IV. 변호인 선임/ 의뢰/ 접견	26
1. 변호인 선임여부	26
2. 민간변호인 접견관련	27
3. 국선변호인 접견관련	28
V. 구속영장실질심사	28
1. 구속영장실질심사인지 여부	29
2. 구속영장실질심사 고지여부	29
3. 구속영장실질심사 고지시 군사법경찰관의 태도	31
4. 구속영장실질심사 신청여부	32
5.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	33
VI. 체포·구속적부심사	34
VII. 피의자신문	34
1. 헌병수사단계	34
2. 군검찰단계	43
VIII. 미결구금자의 처우	50
1. 입창절차	50
2. 난방시설	56
3. 영창의 밝기/ 환기	57
4. 화장실 이용	60

5. 신체위생	64
6. 침구/ 의복/ 위생용품	68
7. 감시	71
8. 일과	72
9. 식사	76
10. 면회/ 서신/ 전화	81
11. 도서·신문 열독/ TV 시청	87
12. 운동	91
13. 의료	94
14. 작업 및 교육	99
15. 종교	102
16. 부당한 대우/ 가혹행위 등	105
17. 구속장소 감찰/ 징벌	113
제3절 설문·면접조사 분석과 평가	115

제3장 징계영장제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117

제1절 사병징계제도 개관	117
Ⅰ. 사병징계제도의 의의	117
Ⅱ. 징계위원회 심의절차	118
Ⅲ. 사병 징계사유 및 양형기준	120
1. 성실의무위반	121
2. 복종의무위반	123
3. 부대이탈금지위반	125
4. 공정의무위반	126
5. 청렴의무위반	126
6. 비밀엄수의무위반	126

7. 품위유지의무위반	127
제2절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129
Ⅰ. 징계일반	129
1. 징계사유 등	129
2. 징계절차	131
Ⅱ. 입창절차	135
1. 입창시 헌병조사	136
2. 영창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137
Ⅲ. 부당한 대우/ 가혹행위 등	137
1. 영창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과	137
2. 정좌	138
3. 가혹행위	139
4. 미결수용자와의 차별대우	140
5. 수양록/ 반성문작성	141
6. 부당한 작업	142
7. 훈련병 참관	143
8. 선임입창자에 의한 가혹행위	143
Ⅳ. 영창시설과 생활환경	143
1. 영창온도/ 난방시설	143
2. 영창의 밝기/ 환기	144
3. 화장실 이용	146
Ⅴ. 입창자 위생관련	148
1. 신체 위생	148
2. 침구/ 의복/ 위생용품	152
Ⅵ. 감시	154
Ⅶ. 영창내 처우	154
1. 일과	154

2. 식사	160
3. 면회/ 서신/ 전화	165
4. 도서·신문 열독/ TV 시청	167
5. 운동	171
6. 의료	173
7. 작업 및 교육	176
8. 종교	178
VIII. 징계영창제도	181
1. 징계영창제도의 필요성 여부	181
2. 징계영창제도가 필요한 이유	182
3. 징계영창제도의 대안	184
4.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186
제3절 설문·면접조사 분석과 평가	188

제4장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에서의 인권보호방안 191

제1절 군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방안	191
Ⅰ. 군수사체계의 개선	191
1. 군사법경찰관직무집행관련 법규제정	191
2. 군검찰의 수사지휘권 확보	192
3. 군사법경찰관리의 제급문제	193
Ⅱ. 인신구속제도 관련 개선	194
1. 긴급체포와 구속관행의 개선	194
2. 체포와 구속요건의 개정	197
3. 신속한 구속의 통지	198
4. 구속기간 연장의 억제	199
5.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와 구속적부심제도의 개선	200

Ⅲ. 변호인 제도개선	204
1. 사병전담변호인제도 도입	204
2. 국선변호의 실질화	205
Ⅳ. 피의자신문조사 절차의 개선	206
1.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고지	207
2. 조사시 가혹행위 근절방안	207
3. 피의자신문시 보조자 참여 준수	208
4.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감·변경권 보장	208
5.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보장	209
6. 피의자조사과정 CCTV녹화	210
Ⅴ. 미결수용시설의 관리와 처우의 개선	211
1. 미결수용시설 관리	211
2. 미결수용시설 처우의 개선	216
3. '군미결구금집행법'의 제정	227
Ⅵ. 군사법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228
Ⅶ. 장병 인권담당관제도 및 전담법률지원시스템 구축	229
제2절 징계영창제도에서의 인권보호방안	231
I. 징계영창제도 존치를 전제로 한 개선	231
1. 영창사유의 축소 및 양정규정의 개선	231
2. 영창처분의 제한적 활용	231
3. 징계절차개선	232
4. 입창절차의 개선	237
5. 부당한 대우/ 가혹행위 방지 방안	239
6. 화장실 관련 개선	242
7. 침구류 청결개선	243
8. 영창내 처우 개선	243
II. 징계영창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한 대안	247

1. 징계영창제도 존폐여부에 대한 논거	247
2. 폐지에 따른 대안	251
제3절 군사법개혁을 통한 군 인권보호	255
Ⅰ. 군사법개혁에 대한 논의상황과 이념상의 쟁점	255
1. 논의 상황	255
2. 개혁에 따른 쟁점사항	255
Ⅱ.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사법제도 개선방안과 논점	257
1. 국방부의 군사법제도 개선방안	257
2. 사법개혁위원회 군사법제도 개혁 논점	258
Ⅲ. 군사법제도의 개혁방안에 관한 검토	259
1. 군검찰의 독립	259
2. 군사법원의 개혁 방안	264
 제5장 결 론	 278
 참고문헌	 282
부록(설문지)	285

표 목 차

〈표 2-1〉 계급별 현황	19
〈표 2-2〉 죄명별 현황	19
〈표 2-3〉 검거관서 현황	20
〈표 2-4〉 구금 형태	20
〈표 2-5〉 구속영장을 제시받았는지 여부	21
〈표 2-6〉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는지 여부	22
〈표 2-7〉 구속통지 방법	24
〈표 2-8〉 구속기간 연장인지여부	25
〈표 2-9〉 변호인 선임여부	26
〈표 2-10〉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대한 인지여부	29
〈표 2-11〉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고지받았는지 여부	30
〈표 2-12〉 구속영장실질심사 고지시 군사법경찰관의 태도	32
〈표 2-13〉 구속영장실질심사 신청여부	32
〈표 2-14〉 조사횟수(헌병)	35
〈표 2-15〉 조사시간(헌병)	35
〈표 2-16〉 진술거부권 고지여부(헌병)	36
〈표 2-17〉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부여 여부(헌병)	37
〈표 2-18〉 신문시 부당행위 여부(헌병)	38
〈표 2-19〉 야간·밤샘조사(헌병)	39
〈표 2-20〉 보조자 참여여부(헌병)	40
〈표 2-21〉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았는지 여부(헌병)	41
〈표 2-22〉 중감·변경요구 여부(헌병)	41
〈표 2-23〉 중감·변경요구시 수사관의 태도(헌병)	42
〈표 2-24〉 조사시 생리현상 해결(헌병)	42
〈표 2-25〉 조사횟수(군검찰)	43

〈표 2-26〉 조사시간(군검찰)	44
〈표 2-27〉 진술거부권 고지여부(군검찰)	44
〈표 2-28〉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부여 여부(군검찰)	45
〈표 2-29〉 신문시 부당행위 여부(군검찰)	45
〈표 2-30〉 군검찰관 조사시 보조자 참여여부(군검찰)	46
〈표 2-31〉 신문조서열람 여부(군검찰)	47
〈표 2-32〉 증감·변경청구여부(군검찰)	48
〈표 2-33〉 증감·변경요구시 검찰관의 태도(군검찰)	48
〈표 2-34〉 진술번복여부(군검찰)	49
〈표 2-35〉 조사시 생리현상 해결(군검찰)	49
〈표 2-36〉 수용시 미결수용자로서 권리 등을 고지받았는지 여부	51
〈표 2-37〉 수용시 청원권 등을 고지받았는지 여부	52
〈표 2-38〉 수용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고지받았는지 여부	52
〈표 2-39〉 영창의 온도	57
〈표 2-40〉 영창의 밝기	58
〈표 2-41〉 영창의 환기	58
〈표 2-42〉 취침시 영창 밝기	59
〈표 2-43〉 영창의 습도	60
〈표 2-44〉 화장실 청결상태	60
〈표 2-45〉 화장실 구조	61
〈표 2-46〉 화장실 이용방법	63
〈표 2-47〉 화장지 사용	64
〈표 2-48〉 세면시간 정도	65
〈표 2-49〉 목욕/샤워 횟수	66
〈표 2-50〉 목욕/샤워 시간	66
〈표 2-51〉 세탁시간	67
〈표 2-52〉 면도횟수	68

〈표 2-53〉 침구지급정도	69
〈표 2-54〉 침구청결상태	70
〈표 2-55〉 침구류 일광소독	70
〈표 2-56〉 일과표 준수여부	75
〈표 2-57〉 식사시간 준수여부	76
〈표 2-58〉 급식수준	77
〈표 2-59〉 식사량	78
〈표 2-60〉 물 제공	79
〈표 2-61〉 간식제공	79
〈표 2-62〉 식사시 감시에 따른 불편	80
〈표 2-63〉 면회시간	82
〈표 2-64〉 면회자유	84
〈표 2-65〉 편지작성	85
〈표 2-66〉 편지수신	86
〈표 2-67〉 독서관련 사항(복수응답)	88
〈표 2-68〉 신문열람여부	89
〈표 2-69〉 운동시간	92
〈표 2-70〉 운동장소	93
〈표 2-71〉 운동시간 준수	94
〈표 2-72〉 입창시 건강상태	95
〈표 2-73〉 입창시 검진	95
〈표 2-74〉 정기검진여부	96
〈표 2-75〉 아팠을 때 조치	97
〈표 2-76〉 경미하게 아픈 경우 휴식허용여부	98
〈표 2-77〉 진찰신청	98
〈표 2-78〉 작업여부	100
〈표 2-79〉 정신교육 내용	102

〈표 2-80〉 종교행사	103
〈표 2-81〉 종교행사 신청여부	104
〈표 2-82〉 가장 힘든 일과	105
〈표 2-83〉 정좌자세	106
〈표 2-84〉 정좌강요	107
〈표 2-85〉 정좌시간	107
〈표 2-86〉 가혹행위 여부	108
〈표 2-87〉 징계입창자에 대한 차별대우	109
〈표 2-88〉 수양록/ 반성문 점검	109
〈표 2-89〉 훈련병 영창참관	110
〈표 2-90〉 영창감찰	113
〈표 3-1〉 병 징계의 종류와 내용	118
〈표 3-2〉 징계입창자 계급	129
〈표 3-3〉 징계부대 단위	129
〈표 3-4〉 징계지휘관 계급	130
〈표 3-5〉 징계사유	130
〈표 3-6〉 입창기간의 부당성	131
〈표 3-7〉 징계위원회 개최 인지여부	131
〈표 3-8〉 징계위원회 참석여부	132
〈표 3-9〉 이익되는 사실 진술여부	133
〈표 3-10〉 입창기간이 지휘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 ..	133
〈표 3-11〉 징계의 부당성 여부	134
〈표 3-12〉 항고권 고지여부	134
〈표 3-13〉 항고여부	134
〈표 3-14〉 징계영창과 관련한 차별	135
〈표 3-15〉 입창시 현병조사 여부	136
〈표 3-16〉 조사시 부당한 대우	136

〈표 3-17〉 영창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137
〈표 3-18〉 영창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과	138
〈표 3-19〉 정좌자세	139
〈표 3-20〉 정좌자세 강요	139
〈표 3-21〉 가혹행위 여부	139
〈표 3-22〉 가혹행위를 당한 이유	140
〈표 3-23〉 가혹행위 내용	140
〈표 3-24〉 가혹행위시 부당하다고 느꼈는지 여부	140
〈표 3-25〉 미결수용자와의 차별대우	141
〈표 3-26〉 수양록/ 반성문 작성여부	141
〈표 3-27〉 수양록/ 반성문 열람에 따라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	142
〈표 3-28〉 반성문/수양록 작성에 따른 부당한 대우	142
〈표 3-29〉 부당한 작업 여부	143
〈표 3-30〉 훈련병참관 여부	143
〈표 3-31〉 영창의 온도	144
〈표 3-32〉 영창의 밝기	144
〈표 3-33〉 환기	145
〈표 3-34〉 취침시 밝기	145
〈표 3-35〉 습도	146
〈표 3-36〉 화장실 청결상태	146
〈표 3-37〉 화장실이 칸막이 높이	147
〈표 3-38〉 화장실 이용시간에 따른 불편	147
〈표 3-39〉 화장실 사용	148
〈표 3-40〉 세면시간	149
〈표 3-41〉 목욕/샤워횟수	150
〈표 3-42〉 목욕/샤워 시간	150
〈표 3-43〉 세탁시간	151

〈표 3-44〉 면도횟수	152
〈표 3-45〉 침구지급	152
〈표 3-46〉 침구청결	153
〈표 3-47〉 침구류 일광소독	154
〈표 3-48〉 일과표 진행	158
〈표 3-49〉 명상/수양시간	159
〈표 3-50〉 식사시간 준수여부	160
〈표 3-51〉 급식수준	161
〈표 3-52〉 식사량	161
〈표 3-53〉 식사량이 부족하여 배고픈 적이 있는지 여부	161
〈표 3-54〉 간식제공여부	162
〈표 3-55〉 식사를 많이 주면서 남기지 못하게 한 적이 있는지 여부	163
〈표 3-56〉 식사를 남긴다고 가혹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	163
〈표 3-57〉 식사시 감시에 따른 불편	163
〈표 3-58〉 물제공	164
〈표 3-59〉 식기세척	165
〈표 3-60〉 편지작성여부	166
〈표 3-61〉 독서허용여부	167
〈표 3-62〉 입창시 도서 휴대 여부	168
〈표 3-63〉 독서 강요	169
〈표 3-64〉 신문열독 여부	170
〈표 3-65〉 운동시간	171
〈표 3-66〉 운동장소	172
〈표 3-67〉 운동시간 준수	172
〈표 3-68〉 입창시 건강상태	173
〈표 3-69〉 입창시 건강검진	173
〈표 3-70〉 정기검진	174

〈표 3-71〉 영창에서 아팠던 경험	175
〈표 3-72〉 아팠을 때 조치	175
〈표 3-73〉 아팠을 때 휴식여부	176
〈표 3-74〉 검진신청여부	176
〈표 3-75〉 작업여부	177
〈표 3-76〉 작업방법	177
〈표 3-77〉 정신교육	178
〈표 3-78〉 종교행사 개최여부	179
〈표 3-79〉 종파에 따른 종교자유 침해	179
〈표 3-80〉 종교행사 신청여부	180
〈표 3-81〉 영창제도의 필요성 여부(입창자)	181
〈표 3-82〉 영창제도의 필요성 여부(영창관리자)	181
〈표 3-83〉 영창제도의 필요성 여부(헌병수사관)	181
〈표 3-84〉 영창제도의 필요성 여부(군검찰관)	182
〈표 3-85〉 징계영창제도가 필요한 이유(입창자)	182
〈표 3-86〉 징계영창제도가 필요한 이유(영창관리자: 복수응답)	183
〈표 3-87〉 징계영창제도가 필요한 이유(헌병수사관: 복수응답)	183
〈표 3-88〉 징계영창제도가 필요한 이유(군검찰관: 복수응답)	184
〈표 3-89〉 징계제도의 대안(입창자: 복수 응답)	184
〈표 3-90〉 징계영창제도의 대안(영창관리자: 복수 응답)	185
〈표 3-91〉 징계영창제도의 대안(헌병수사관: 복수 응답)	185
〈표 3-92〉 징계영창제도의 대안(군검찰관: 복수 응답)	186
〈표 3-93〉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영창관리자)	186
〈표 3-94〉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헌병수사관)	187
〈표 3-95〉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군검찰관: 복수응답)	187
〈표 4-1〉 육군의 영창운영	211
〈표 4-2〉 공군의 영창운영	212

〈표 43〉 해군의 영창운영	213
〈표 44〉 사병징계현황(2002. 9. 1~2003. 8. 31)	248
〈표 45〉 국방부 군사법제도 개선방안	258
〈표 46〉 관할관 확인조치권 운영현황(2002. 9. 1~2003. 8. 31)	268
〈표 47〉 순회군판사단 편성(안)	271
〈표 48〉 군사법원에 관한 각국의 제도	273

요 약 문

1.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상황을 실태조사 한 것으로서, 연구의 목적은 “군의 수사과정 및 군 영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함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총 10개(육군 7개, 공군 1개, 해군 1개, 해병 1개)의 영창을 방문조사하였으며, 영창에 수용중인 미결수용자 44명, 징계입창자 59명을 대상으로 인권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또한 영창관리자 16명, 헌병수사관 25명, 영창근무헌병 21명, 군검찰관 18명, 군판사 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였다. 이를 통해 미결수용자·징계입창자의 설문조사결과와 영창관리자, 헌병수사관, 영창근무헌병, 군검찰관, 군판사 면접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2. 군 수사과정 인권상황 실태조사 분석 및 평가

설문조사결과 미결수용자의 응답과 헌병수사관, 영창관리자, 군검찰관의 응답이 상당 부분 차이가 많이 났다. 미결수용자 설문조사에서는 수사절차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응답도 많았으나, 헌병수사관·영창관리자·군검찰관의 면접조사에서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수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권침해적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설문조사결과 우려했던 만큼의 인권침해사례는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창에서 인권침해는 많이 사라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인신구속의 경우 긴급체포가 많았고, 긴급체포는 군무이탈범죄가 대부분이었으며, 영장제시나 미란다 원칙고지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면접조사결과 구속기간의 연장은 중대범죄나 민간인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았고 특히 군무이탈죄의 경우에는 훈계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의 통지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가족에게 유선으로 통보되고 있었는데 피의자의 입장에서 구속통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응답비율도 35.7%나 되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인지도가 58%, 신청율이 35%로 인지도나 신청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군무이탈 피의자로서 어차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신청을 스스로 많이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관에 의한 구속영장실질심사 신청에 대한 고지는 자세히 해주는 경우가 50%, 형식적으로 고지해 주는 경우가 50%로 나타났다.

피의자신문시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지는 현병단계에서는 46.5%, 군검찰단계에서는 52.5%가 형식적 고지이거나 고지해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실무상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 자체에 진술거부권고지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므로 조서만으로는 실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러한 이유에서 진술거부권의 불고지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피의자신문과정에서의 부당행위는 현병 단계나 군검찰단계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병조사단계에서 진술강요와 유도신문은 38.7%, 모욕·위압적 신문은 35.4%, 폭행·구타 등 가혹행위는 0.5%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검찰조사단계에서는 진술강요 24.1%, 유도신문 32.1%, 모욕·위압적 신문 27.5%, 폭행·구타 등 가혹행위는 0.2%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부대내 중대사건이나 중대범죄의 경우에 부당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감시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중감·변경요구와 관련하여 현병조사단계에서 ‘요구하고 싶었지만 수사분위기가 할 수 없었다’는 응답비율도 28%나 되었다.

피의자신문시 보조자 참여와 관련하여 현병 단계에서는 66%, 군검찰단계에서는 81%가 참여자 없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결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군행형관련법이나 각군 규정에 미결수용자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수용시 이에 대한 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창의 환경에 대해서는 영창관리자들이 많이 배려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화장실 이용과 관련하여 간이 칸막이를 사용하는 영창도 있었으며, 거실내에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변기가 아니어서 사용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어 인격권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화장실 이용도 군무병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응답비율이 30.9%나 되었다.

침구류에 대한 세탁이 반기나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침구류 위생관리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면회와 관련하여 면회시설이 노후 된 영창의 경우에는 개선이 시급하였으며, 면회의 자유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각군 규정상 헌병대장이 포괄적으로 면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남용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편지작성의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작성하고 검열이 심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와 관련하여 육군의 경우 비교적 시내권에 근접한 영창의 경우에는 인근 시립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도서를 대출하여 수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호한 편이었으나, 전방부대의 경우에는 도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TV시청의 경우 시청시간이 규정보다 짧은 영창도 다수 있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권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라디오를 청취하는 영창은 많지 않았다.

운동과 관련해서는 실외운동이나 일광욕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의 경우에는 군의 특성상 영창관리자들이 가장 많이 배려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작업은 거의 실시하고 있지 않았으며, 정신교육은 부정기적으로 주로 헌병관계자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었다.

종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 영창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비정기적 또는 정기적으로 군종장교가 영창을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다만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배려하여 통합된 종교행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창내 가혹행위는 종전에 비하여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나 근무헌병에 의한 욕설이나 영창에 따라서는 과도한 정좌자세나 시간이 강요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창에서 물리적 가혹행위는 많이 사라진 반면 정좌가 영창군기를 잡거나 수용자에게 적당히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가 작성한 수양록의 경우 대부분의 영창이 이를 실질적이든 형식적이든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격권이 침해될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영창참관은 군행형법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병교육대가 있는 일부 영창의 경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장소에 대한 감찰은 미결수용자의 입장에서 형식적 감찰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3.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분석 및 평가

영창을 방문조사한 결과 징계입창자에 대한 처우가 각 영창에 따라 매우 달랐기 때문에 징계입창자 처우에 대한 국방부차원의 통일된 규정마련이 요구되었다.

설문·면접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징계입창자에 대한 영창에서의 처우가 미결수용자에 비하여 너무 열악하다는 점이었으며, 특히 형사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과도하게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었다.

징계사유로는 지휘관 지시위반, 상급자 명령 불복종이 38.1%의 비율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계급과 명령사회라는 군의 특성에 기한 징계사유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입창일수와 관련해서는 징계사유에 합치되게 징계일수가 적당하다는 응답도 많았으나 적당하지 않다는 응답비율도 44%나 되어 징계입창자의 입장에서 징계양형에 대한 불만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23.7%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지를 모르고 있었으며, 28%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52.1%가 변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고권에 대한 고지도 47.4%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부분 적법절차에 의해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창시에는 징계입창자의 권리와 관련한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에 영창생활에 대한 안내 외에 별 다른 권리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창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과에 대해서는 정좌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고, 영창에 따라서는 정좌자세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여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고 있었으며, 체력단련의 경우에도 영창에 따라서는 과도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반성문의 경우에는 영창에 따라서 작성횟수와 작성분량이 많아 입창자에게 지나치게 반성을 강요하였고, 수양록 작성의 경우에도 반성문과 마찬가지로 매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쓸 내용이 없어 고통스럽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영창에 따라서는 수양록, 반성문을 점검하거나 일정한 양의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었다.

영창생활 중 신체에 직접적 위형력을 행사하는 가혹행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근무자로부터 욕설이나 반말을 들었다는 경우는 있었다. 또한 식사시에 잔밥을 남기지 말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영창의 시설과 환경은 미결수용자와 같았으나 시설 내에서 미결자보다 못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응답이 33.8%나 되었다.

화장실의 경우에는 미결수용자와 똑같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는 자해나 도망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는 수시로 교체되기 때문에 침구류에 대한 세탁이나 일광소독을 자주 하여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징계입창자에게는 식사외 기타 부식이 제공되지 않는 영창도 있었으며, 식사후 징계입창자가 청소를 모두 하는 영창도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징계입창자들은 미결수용자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상근예비역의 경우에는 식수인원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에게는 간식이나 부식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자대에서도 점심만 제공되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아침·저녁 식사는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근예비역이 많은 후방 영창의 경우에는 식사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있었으며 식사외 기타부식을 제공해달라는 건의가 많았다.

징계입창자에게는 공군을 제외하고는 육군·해군·해병대 모두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서신의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은 영창도 있었다. 전화통화의 경우에는 모든 영창이 허용하고 있지 않아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독서가 허용되지 않은 영창도 있었으며, TV시청을 하지 못하는 영창도 있었다.

운동의 경우에는 대부분 실내 체력단련이나 실내운동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실외운동이나 일광욕이 미결수용자에게는 허용되었으나 징계입창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영창이 대부분이었다.

영창에서 의무대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경미하게 아픈 경우, 일과 시간 중 눕는 등의 휴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많았다.

종교행사는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군종장교가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었으나 종교행사 자체가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는 입창기간이 짧아 종교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영창의 종교행사는 특정종파의 군종장교가 순환식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에 종교자유가 침해받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징계영창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징계입창자나 영창관리자, 헌병수사관, 군검찰관 모두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으나, 징계입창자와 군검찰관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지 않다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징계영창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징계입창자의 경우 군기강 확립, 형사처벌보다는 징계영창처분이 가볍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영창관리자의 경우에는 지휘권 확보와 군기강 확립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헌병수사관의 경우에는 지휘권 확보, 군기강 확립, 형사처벌에 의한 전과자 양산방지가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왔으며, 군검찰관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의한 전과자 양산방지, 군기강 확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헌병수사관이나 영창관리자의 경우에는 지휘권 확보를 위해 영창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징계입창자와 검찰관의 경우에는 군기강 확립과 전과자 양산방지가 많았다.

만약 징계영창제도가 폐지된다면, 그 대안으로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는 휴가제한 활용과, 면회·외출제한 활용 등이 많았고, 영창관리자의 경우에는 휴가제한, 군복무일수 연장을 선호하였다. 헌병수사관의 경우에는 군복무일수 연장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군검찰관의 경우에도 군복무일수 연장과 휴가제한 활용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영창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는 처벌위주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반성하는 시간이 되는 영창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고, 영창관리자와 헌병수사관의 경우에는 현행제도 유지가 많았다. 군검찰관의 경우에는 입창시 검찰관에 의한 확인심사와 군판사에 의한 확인심사가 많았다.

4. 군 수사과정 및 영창에서의 인권보호방안

이하에서는 군 수사과정과 징계영창제도에 있어 인권보호를 위한 시급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방안으로는 첫째, 군 수사체계와 관련하여 헌병활동이 민간인과 접촉되는 상황이 많고 군에 대한 경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군사법경찰관의 임명과 권한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입법적 통제를 하여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군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관련 법규제정’

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인권의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헌병병과의 병에게 군사법경찰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긴급체포와 구속관행의 개선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억제하는 수사기관의 자세가 필요하고, 긴급체포보다는 영장에 의한 체포가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군무이탈죄의 경우에는 과도한 긴급체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체포영장제도를 활용하여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경미한 군무이탈이나 범죄인 경우에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셋째, 군무이탈의 경우 군검찰관에 의한 과도한 구속기간의 연장이 실시되고 있는데 재복무의지가 확실한 사병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을 통한 훈계보다는 신속한 재복귀를 통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와 구속적부심제도를 개선하여 피의자심문의 경우 필요적 심문으로 개정하고, 실질심사기간도 구속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며, 체포·구속적부심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피의자신문조사 절차의 개선방안으로 진술거부권이 실질적으로 고지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실무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조사시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중대범죄의 경우나 부대내 발생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참여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조서내용에 대한 중감·변경권도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피의자조사과정도 CCTV(비디오)녹화를 통하여 사후 인권침해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 반드시 보조자가 참여하여 피의자신문절차의 적법성과 정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곱째, 미결수용시설의 관리에 대한 개선으로서 미결수용시설 관리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와 같이 수사과에서 통합관리하는 영창의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영창업무를 담당할 담당관을 지정하여 수사관이 영창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여덟째, ‘영창’의 명칭도 영창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하여야 하며, 발전적으로 군 구치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 영창시설을 구치소와 정계입창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개편한다면 충분히 이러한 시설의 확보는 가능하다. 노후된 영창이나 지하에 위치한 영창의 경우에는 시급히 신축하여야 하며, 영창관리자

에 대한 인권교육도 자체교육보다는 외부인권단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홉제, 미결수용자의 입감절차의 개선으로서 입감시 미결수용자에 대한 권리 등의 고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진정권에 대한 고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진정권 보장을 위해 수용자들이 자유스럽게 진정할 수 있도록 진정함 설치는 거실내로 하여야 하고 필기구와 용지, 봉투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열번째, 화장실의 경우 간이칸막이를 사용하는 영창의 경우에는 고정칸막이로 개선하여야 하며, 거실 내에 화장실이 위치한 영창의 경우에는 양변기로 변기를 시급히 교체하여 수용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열 한 번째, 서신작성과 집필권, 전화통화, 독서·TV 시청, 실외운동 및 일광욕, 종교행사 신청권 등도 미결수용자의 권리에 맞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편안한 독서나 식사를 위해 책상과 방석지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규정된 실외운동과 일광욕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열 두 번째, 영창 내에서 가혹행위와 과도한 정좌자세가 방지될 수 있도록 근무자 교육과 정좌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야 하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수양록 점검의 폐지, 훈련병 영창참관 폐지, 군검찰관의 실질적 영창감찰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96개나 되는 미결수용시설인 영창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미결수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군미결구금집행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단행법을 제정 차원의 영창관리방안 마련이 어렵다면 적어도 국방부 차원의 미결수용시설에 대한 통합관리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군 수사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사관련자들의 인권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헌병을 배출하는 헌병학교에 인권과목을 신설하여 외부인권단체가 인권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병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의무와 복종만 강요되었을 뿐 권리나 기본권 보장은 도외시되었다. 이러한 열악한 사병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차원의 인권담당관제도 및 전담법률지원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징계영창제도에서 사병인권보호를 위해 현행 징계영창제도 존치를 전제로 한 시급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징계절차가 진행되도록 피징계자가 선

정한 대리인이 징계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영창처분은 사병에게 과도한 불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창처분을 제한적으로 활용하여 다른 징계벌목으로 비행이 교정되지 않을 때 최후수단이나 보충적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과도한 징계벌은 징계벌로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셋째, 현실적으로 사병징계에 법무장교가 간사로 참여할 수 없다면 지휘관이 징계입창처분시 군판사에게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것이 지휘관의 자의적 구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현재 사병징계에 있어서는 징계유예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영창처분에 징계유예제도를 도입하여 영창처분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병에게 재복무의 기회를 다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군과 해군의 경우 징계입창자를 수용할 때 수용자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징계입창자를 범죄자 취급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폐지하여야 한다.

여섯째, 징계입창자에게는 미결수용자에 비하여 과도한 정좌자세가 요구되고 있는데, 미결수용자뿐만 아니라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도 육체적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과도한 정좌자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일곱째, 징계입창자에 대한 반성문작성은 폐지되어야 한다. 반성문의 작성횟수나 작성의 양이 영창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요구되거나 이를 영창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양심의 자유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여덟째,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는 미결수용자에 비하여 수시로 교체되기 때문에 침구류에 대한 위생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현재와 같이 반기, 분기별로 실시되는 침구류에 대한 세탁은 그 기산을 더 단축하여 수시로 세탁하거나 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홉째, 징계입창자에게는 독서나 실외운동이 허용되지 않은 영창도 있었는데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이다. 미결수용자에게는 독서, 실외운동이 허용되면서 징계입창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이다.

열 번째, 징계입창자에게는 공군을 제외하고는 면회와 서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징계입창자는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면접권이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면회, 서신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

되어야 하며, 더불어서 전화통화도 허용되어야 하고, 부대내 종교행사에 대한 참여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영창에서 입창자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징계입창자 처우에 관한 국방부 차원의 독립된 규정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징계입창자에게 재복무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징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보다도 징계영창제도는 제도자체의 위헌성 여부뿐만 아니라 시설내 처우에 있어서도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인권침해의 위험성 가지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폐지하여도 다른 징계처분의 다양한 활용을 통하여도 징계벌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군사법개혁을 통한 군 인권보호방안으로 첫째, 군검찰이 외부적(지휘권)·내부적(법무병과계통)으로부터 독립하여 군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군검찰법’의 제정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는 군사법의 독립을 저해할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폐지하여 군사법의 독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의 사기와 전투력 강화는 군사법의 공정하고 엄격한 실현을 통하여 달성되는 것이다.

셋째, 순회군판사단제도 도입도 군사법의 독립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슬기롭게 논의되어야 하며, 군사법원의 민간법원으로의 이양 문제나 군법무관 획득방안도 군사법의 발전적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군검찰과 군판사의 보직분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동네 재판’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본 연구과제의 연구목적은 “군의 수사과정 및 군 영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함에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 수사과정과 군 영창이라는 두 가지 영역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통상 영창이라고 칭해지는 구금시설은 구속된 피의자를 수용하는 미결수용시설과 징계에 의해 영창처분을 받은 사병을 구금하는 징계집행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군 영창에서의 인권상황은 두 가지 수용시설로서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군 수사과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지적되어온 인권침해적 문제점은 군사법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강제수사 규정의 문제점과 현실적으로 군이라는 계급사회의 특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적 문제점으로 나눌 수 있다.

군사법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강제수사규정의 인권침해적 문제점은 ① 검찰관이 군사법경찰관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는 점, ② 군사법경찰관리의 계급이 너무 낮고, 인권의식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의무복무를 하는 헌병병과의 병에게까지 군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주었다는 점, ③ 구속통지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서면통지로 되어 있다는 점, ④ 피고인에 대한 실질적 국선변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엄격한 계급사회라는 군 특성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적 문제점은 ① 피의자가 사병인 경우에 수사관의 계급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수사관’이자 ‘상관’으로서 수사과정에서 위압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게 된다는 점, ② 군 수사과정에서는 사병과 간부간 차별적 대우가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사병의 인권이 더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 ③ 피의자심문의 고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1) 이 점에 대한 지적은 특히 한인섭,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군 사법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 개최 발표문, 2002. 11. 11(참여연대 웹페이지 참조).

신청율이 저조하다는 점, ④ 과도한 인식구속(긴급체포)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이다.

군 영창과 관련하여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것은 군 영창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복합성 때문이다. 영창이라는 제도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구속된 피의자를 수용하는 미결수용시설로서의 기능과 영창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병을 수용하는 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영창의 인권침해적 문제점은 미결수용시설로서의 문제점과 징계제도로서의 문제점으로 구분된다.

미결수용시설로서 영창이 가지고 있는 인권침해적 문제점은 ① 영창의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특히 지하에 위치한 영창이나 노후된 영창의 경우),²⁾ ② 미결수용시설에 견주어 시설의 운영이나 수용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 ③ 미결수용자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처우를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좌강요와 반성문 형식의 수양록 작성을 강요받음으로 인하여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 받는다는 점, ④ 영창에 대한 관리가 인원이나 부대편제상 문제 때문에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⑤ 미결수용시설인 영창을 헌병이 관리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교정기관이 분리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⑥ 구속장소에 대한 감찰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영창이 징계처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서 가지고 있는 인권침해적 문제점은 ① 영창에는 미결자, 기결자, 징계입창자가 혼재하여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신분에 걸맞는 교정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 ② 징계입창자는 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는다는 점, ③ 영창처분은 국제인권법이 금지하고 있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④ 영창처분이 군인사법이 정한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⑤ 징계영창처분이 일정한 기준이 없어 지휘관의 자의적 처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병간 차별대우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점, ⑥ 징계영창처분에 대한 항고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 ⑦ 징계영창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영창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사병에게는 과도한 불이익이 된다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이 영창은 미결수용시설로서의 기능과 징계처분제도로서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만큼 인권을 더 침해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

2) 이 점에 대한 지적은, 국가인권위원회, 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과 약, 2002 참조.

다.

본 연구는 군 수사과정의 인권상황과 영창의 인권상황 실태를 앞에서 지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원인과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 특히 사병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함에 그 근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본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군 수사과정 및 영창제의 인권침해 여부 분석
- 군 수사과정에 대한 군 구금시설 수용자 대상 설문조사
- 군 수사과정 및 영창제도에 대한 군 수사관 대상 면접조사
- 징계입창자 대상 설문조사
- 국제인권규약, 외국 제도 및 점·경에 요구되는 인권보호 방안 검토·분석, 준거를 마련
- 군 수사과정 및 영창에서의 인권보호방안 마련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군 수사과정의 인권상황은 군사법원법상의 인권침해적 규정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군 영창의 인권상황은 미결수용시설로서의 인권상황과 징계처분으로서의 인권상황으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군 수사과정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 군 수사절차상 인신구속제도 개관
 - 군 수사과정 인권상황 실태조사(미결수용자, 헌병수사관, 영창관리자, 영창근무헌병, 군검찰관, 군판사)
 - 설문·면접조사 분석과 평가
-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 징계영창제도의 개관
 -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징계입창자, 영창관리자, 영창근무헌병, 헌

병수사관, 군검찰관, 군판사)

- 설문·면접조사 분석과 평가
-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에서의 인권보호방안
- 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방안
- 징계영창제도에서의 인권보호방안
- 군 사법개혁을 통한 군 인권보호방안

제3절 연구의 방법

1. 선행연구 분석 및 문헌자료 검토

군의 인권문제가 사회의 관심사가 된 것은 근래의 일이다. 군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여부가 쉽게 노출되지 않으며, 인권유린이 발생하더라도 군의 폐쇄성과 특수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속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또한 군은 모든 국민이 접하는 것이지만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밖이 있었다. 따라서 군 수사과정이나 영창의 인권상황에 대한 연구나 이에 대한 자료도 매우 한정되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군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가 연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³⁾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2년도에 실시한 ‘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과약’은 이 분야의 연구에 효시로 평가될 만한 것이며, 이를 통해 군내 구금시설의 문제와 군 수사과정에 대한 인권침해적 문제점이 어느 정도 노출되었다.

‘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과약’ 보고서는 군대내 구금시설에 수감된 경험에 있었던 여호와 증인과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최근 군법무관 복무를 마친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또한 육군교도소와 7사단 헌병대 영창, 32사단 헌병대 영창, 해병 2사단 영창을 각각 방문

3)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도에 실시한 군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로는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과약’ 이 있다. 2003년도에는 본 연구 실태조사와 함께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현황 실태조사’, ‘군대 내 성폭력 현황 실태조사’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체포와 수사 중의 구금 문제, 97개에 달하는 피결수용시설에 대한 인권실태파악, 군 유일의 기결 수용시설인 육군교도소 수용자들의 인권실태, 징계입장자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군행형법, 군행형법시행령, 군행형법시행규칙 등을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그리고 수감자들의 처우에 관한 규칙과 비교하여 군행형 관계 법규의 문제점을 아주 상세히 파악하고 개선방안과 과제들을 현실적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동 실태조사보고서가 밝히고 있듯이,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군구금시설에 수용된 경험이 있던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현 시점의 군수사과정 및 영창의 인권실태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징계입창제도에 대한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준비부족으로 이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군 수사과정과 관련한 직접적 연구자료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다만 군사법제도나 군 인신구속제도와 관련해서는 군법무관·헌병수사관들의 학위논문이 다수 있으며, 각군 법무감실에서 발행하는 군사법연구에 이와 관련한 논문들이 다수 있다.⁴⁾ 이러한 논문들은 군사법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황인걸, “군사법원법상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2)과 박영만, “군사법원법상 인신구속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경북대 법학 제2집, 1998)이란 논문은 새로 도입된 군 인신구속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이해영, “현행 군사법제도상 군검찰제도에 관한 연구-군의 지휘권을 중심으로”(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01)과 이태휘, “군사법원제도에 관한 연구-사법권의 독립을 중심으로”(연

4) 이와 관련한 학위논문으로는 김동원,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군사법원법상의 즉심절차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2; 이해영, “현행 군사법제도상 군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군의 지휘권을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01; 정동호, “군 범죄수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9; 권종필, “수사절차상 인권보장방안에 관한 연구-군사법원법상의 제도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99; 권영덕, “군사법제도에 관한 연구-군검찰관 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8; 박홍식, “군사법원법상의 군 수사체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8; 김석철,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찰관의 직무상 지휘체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8; 홍인수, “군사법원법상 수사기관으로서의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찰관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7; 이종협, “군사법 운영체계에 관한 고찰-관할관·심판관 제도 및 수사체계를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97; 김만호, “군사법원법상의 검찰관의 지위에 관한 연구: 군사법운용체계의 역학적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2; 백동림, “군법회의법상 수사기관으로서의 군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의 관계에 관한 고찰”,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79 등이 있다.

세대 석사학위논문, 2000)는 지휘권과 군검찰제도와의 관계, 군사법권 독립을 실무적으로 잘 다루고 있어 이 부분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자료집인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2002)은 인권보호를 위한 군 수사과정 개선방안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민변에서 발행한 “군사법개혁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발행한 “군 사법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자료집”은 군사법에 대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본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군 영창과 관련한 연구보고서는 전무한 것이 현실이며, 군징계와 관련한 석사학위논문에는 한 부분만 차지하고 있을 뿐 구체적 실태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이 없다. 다만 서욱원, “군징계제도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육군을 중심으로-”(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8)는 영창처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간결하게나마 언급하고 있고, 김기준 “병에 대한 징계 및 그 유사제도에 관한 고찰,”(군사법연구 제13집, 육군본부, 1996)은 영창제도 및 사병징계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군 영창이 실제로 미결구금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미결수용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리에 대해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인 “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2001)와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2002)가 많은 참고자료가 되었다.

II. 방문조사

1. 방문조사 영창선정기준

현재 전군에 97개의 영창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면적 조사는 연구기간의 한정과 더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약 10%에 해당하는 10개 조사대상 영창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통계적 근거는 ‘2002년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I·II(군사법원소관)’을 참조).

- 수용인원 기준 10명 이상 수용되어 있는 영창 선정
- 전후방의 영창 운영실태 비교분석: 육군을 기준으로 1군, 2군, 3군 이하 영창 선정
- 각 군별 비교: 공군, 해군, 해병대 영창을 각각 선정
- 징계자만 수용하는 영창: 1개 선정

2. 방문조사 내용

본 연구는 총 10개(육군 7개, 공군 1개, 해군 1개, 해병 1개) 영창을 선정하여 방문 조사하였으며, 영창에 수용중인 미결수용자 44명, 징계입창자 59명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또한 영창관리자 16명, 헌병수사관 25명, 영창근무헌병 21명, 군검찰관 18명, 군관사 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였다. 이를 통해 미결수용자·징계입창자의 설문조사결과와 영창관리자, 헌병수사관, 영창근무헌병, 군검찰관, 군관사 면접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순번	조사대상 부대	일시	방문조사자	조사대상인원
1	육군 제76사단 헌병대 영창(강원도 홍천)	2008. 11. 4. 13:00~17:00	연구진, 인권위조사관	- 징계입창자: 5명 - 형무담당관: 1명 - 영창근무병: 1명
2	육군 제21사단(강원도 양구) 헌병대 영창/법무참모부	2008. 11. 11. 13:00~17:00	연구진, 인권위조사관	- 징계입창자: 3명 - 미결입창자: 2명 - 형무담당관: 1명 - 헌병수사관: 3명 - 영창근무병: 1명 - 군검찰관: 2명
3	육군 제8군단(강원도 양양) 헌병대 영창/법무참모부(보통군사법원)	2008. 11. 18. 13:00~17:00	연구진, 인권위조사관	- 징계입창자: 1명 - 미결입창자: 1명 - 형무담당관/ 책임장교: 2명 - 헌병수사관: 3명 - 영창근무병: 2명 - 군검찰관: 2명 - 군판사: 1명
4	육군 제39사단(경남 창원) 헌병대 영창/법무참모부	2008. 11. 24. 13:00~17:00	연구진, 인권위조사관	- 징계입창자: 16명 - 미결입창자: 11명 - 형무담당관/ 책임장교: 2명 - 헌병수사관: 2명 - 영창근무병: 2명 - 군검찰관: 2명 - 군판사: 1명
5	육군 제53사단(부산) 헌병대 영창/법무참모부	2008. 12. 2. 13:00~17:00	연구진, 인권위조사관	- 징계입창자: 4명 - 미결입창자: 13명 - 형무담당관/ 책임장교: 2명 - 헌병수사관: 3명 - 영창근무병: 2명 - 군검찰관: 2명

순번	조사대상 부대	일시	방문조사자	조사대상인원
6	육군 제26사단(경기 양주) 헌병대 영창/법무참모부	2003. 12. 9. 13:00~17:00	연구진, 인권위조사관	- 징계입창자: 3명 - 미결입창자: 3명 - 형무담당관: 1명 - 헌병수사관: 2명 - 영창근무병: 2명 - 군검찰관: 1명
7	육군 제1군단(경기) 헌병대 영창/법무참모부(보통군사법원)	2003. 12. 16. 13:00~17:00	연구진, 인권위조사관	- 징계입창자: 12명 - 미결입창자: 4명 - 형무담당관/ 책임장교: 2명 - 헌병수사관: 5명 - 영창근무병: 2명 - 군검찰관: 3명 - 군판사: 1명
8	해군 계룡대 군무지원단 헌병대 영창(구 치소)/ 해군교동검찰부	2003. 12. 23. 13:00~17:00	연구진, 인권위조사관	- 징계입창자: 3명 - 미결입창자: 2명 - 운영과장/ 구치소장: 2명 - 헌병수사관: 3명 - 영창근무병: 4명 - 군검찰관: 2명 - 군판사: 1명
9	공군작전사령부군무지원단(경기 오산) 헌병대 영창(교도반) 헌병대 영창/법무참모부(보통군사법원)	2003. 12. 30. 13:00~17:00	연구진, 인권위조사관	- 징계입창자: 무 - 미결입창자: 3명 - 교도반장: 1명 - 헌병수사관: 2명 - 영창근무병: 3명 - 군검찰관: 2명 - 군판사: 1명
10	해병대 1사단 (포항) 헌병대 영창(구 치소)와 법무참모부(보통군사법원)	2004. 1. 6. 13:00~17:00	연구진, 인권위조사관	- 징계입창자: 12명 - 미결입창자: 5명 - 구치소장/작전과장: 2명 - 헌병수사관: 2명 - 영창근무병: 2명 - 군검찰관: 2명

3. 영창시설 현황

(1) 수용

부대	구분	거실면적(평)	거실수	수용능력(최대)		
				인원수		1인당 점유면적(평)
				최대	적정	
	76사단	4.8	2	6	4	0.8
	21사단	18	7	52	26	0.35
	8군단	30.9	5	60	-	0.52
	39사단	35	5	50	30	0.7
	53사단	40	5	80	40~50	0.5

부대	구분	거실면적(평)	거실수	수용능력(최대)		
				인원수		1인당 점유면적(평)
				최대	적정	
	육군 제26사단	115	5	104	52	0.2
	육군 제1군단	98	6	120	70	0.34
	해군 계룡대근지단	104.8	5	50	10	0.9
	공군 작군단	34	3	14	9	0.33
	해병 1사단	21	6	42	30	0.5

(2) 편의시설

부대	구분	화장실	목욕탕/샤워실	식당	면회실	운동장(연병장)	특이사항
76사단		-	-	-	-	-	- 모든 시설 근무현병과 공동사용
21사단		1	.	1	1	1	
8군단	5(거실)	1	1	1	1	1	- 화장실이 각방에 위치
39사단		1	1	1	1	-	
53사단		1	1	1	-	1	- 목욕탕에 세탁기 운용 - 면회는 식당에서 실시 - 화장실 간이 칸막이 사용

구분 부대	화장실	목욕탕/ 샤워실	식당	면회실	운동장 (연병장)	특이사항
26사단	5(거실)	1	1	식당	1	- 화장실 각방에 위치
1군단	6(거실)	1	1	1	1	- 화장실 각방에 위치 - 책상비치
해군계룡대 근지단	5(거실)	1	-	1	1(농구장)	- 화장실 각방에 위치
중군작근단	1(공동)	-	-	1	-	- 세면장에 세탁기 운용 - 수용자용 식탁/ 책상비치 (스티로폼)
해병 1사단	6(거실)	-	-	1	1(족구장)	

(3) 교도교화시설

구분 부대	보유도서	TV	VTR	라디오	특이사항
76사단	69권(종교서적: 20, 소설: 25, 마 음의 양식: 1)	-	-	1	
21사단	교양서적, 종교서적	1	-	-	
8군단	384권(교양서적: 192, 종교서적: 55, 소설: 20, 기타 117)	1	1	-	
39사단	교양도서, 종교서적	1	1	-	- 창원시립도서관 도서확보: 4 주 단위 30권씩 대출
53사단	교양도서, 종교서적	1	1	-	- 해운대도서관 도서확보: 1회 200권씩 대여

구분 부대	보유도서	TV	VTR	라디오	특이사항
26사단	교양서적, 종교서적	1	-	-	
1군단	400권	1		-	- 과천시립도서관 도서 대여비 치(년 4회, 각 200여원) - 카세트 테이프 방송(영상시간)
해군 계룡대 근지단	493권	1	-	-	- 매년 영창운용품비에서 20만 원 상당 도서 구입 - CD(24), TAPE(31)
공군 작근단	343권	1	1	-	- 비디오 테이프 80개
해병 1사단	교양도서, 종교서적	1	1	1	

(4) 감시카메라 설치현황

구분	76사단	21사단	8군단	39사단	53사단
수량					
감시 카메라	-	4	8	5	6
모니터	-	3(지휘관실: 1, 수사과: 1, 당 직대: 1)	4(지휘관실: 1, 작전과장실: 1, 당직대 2)	3(지휘관실: 1, 작정장교실: 1, 당직대 1)	

구분	26사단	1군단	해군 계룡대 근지단	공군 근지단	해병 1사단
수량					
감시 카메라	8	9	4	4	1(회전식)
모니터	3(지휘관실 1, 수사과장실 1, 당직대 1)	5(당직대 4, 작 전과정 1)	4(당직대, 대 기 수사관실, 구치소장, 순 찰대)	2(당직대, 교 도반)	1(당직대)

제4절 실태조사 미비점과 보완 사항

본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은 각 군별 또는 각 영창에 따라 영창관리

조직이나 수용자에 대한 처우가 매우 달라 통일 된 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즉 설문조사나 면접조사에 있어서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가 각 영창에 따라 상이했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통일된 설문을 작성하기 어려웠다. 연구진행 중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설문조사내용을 부분 수정한 것이 있다.

수사과정에 대한 설문조사의 내용의 경우에는 문항 내용이 세분화되지 못해 수용자의 주관식 기재를 많이 요구하였는데 설문문항과 맞지 않은 내용의 기재도 있었으며, 설문 내용에 따라서는 미응답 내용이 조금 있었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절대 다수가 사병이었으며 그러다 보니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설문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물론 본 연구진이 설문조사가 끝날 때까지 영창 내에 있으면서 수용자들에게 설문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문을 받았으나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시정되지 못하였다.

징계입창자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미결수용자에 비해 미응답 비율이 많았다.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사전적 설명을 하였음에도 충실하지 못한 응답도 있었다.

영창관리자와 헌병수사관, 군검찰관의 면접조사의 경우에는 면접조사시간이 조금 부족하였으며, 군판사의 경우에는 각 부대에 상주하는 경우가 드물어 다양한 면접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하였다.

본 실태조사가 군 수사과정이나 군 영창의 인권실태를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10개에 달하는 영창을 방문하고 그 실태를 파악한 것은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자위해 본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대내 인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군 당국이 군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 개선을 하리라 본다.

실제로 각 영창을 방문하였을 때 헌병대장이나 영창관리자, 수사관들의 인권의식이 매우 고취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과거와 비교하여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군 인권이 개선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설문조사나 면접조사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응해 주었고, 이러한 연구가 군 인권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인권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영창의 인권실태나 기타 군 관련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간다면 군 인권개선에 획기적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판단된다.

제2장 군 수사과정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제1절 군 수사과정과 수사상 인신구속제도 개관

1. 군 수사과정

군이라는 특별권력 관계에 있는 자가 군형법이나 일반형법 등의 형벌법규에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일반국민과는 달리 특별한 소송절차에 의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군이라는 특별권력관계의 목적이나 임무의 특수성 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실현하는 과정을 군 형사소송이라고 한다.⁵⁾ 즉 신분적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속하는 경우 형사소송 절차는 일반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법원법에 의하여 진행되게 된다.⁶⁾ 군사법원법도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형사절차법정주의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군 형사소송절차 중 하나인 군 수사과정도 일반 수사과정과 크게 다른 점이 없으며, 군 수사기관에는 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이 있다.

수사는 형사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서 범죄혐의가 인정될 때 개시되는 조사활동으로서 군사재판이 재판권에 속하는 수사의 목적도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및 유지여부를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 수사과정은 특히 인권침해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에게 무제한적으로 재량을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수사는 임의수사이건 강제수사이건 불문하고 수사의 목적에 부합할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수사의 필요성 판단은

5) 황인걸, “군사법원법상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1, 4면.

6) 군사법원법은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해서만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규정된 죄(간접행위죄, 유해음식물공급, 초병에 대한 범죄, 군용물에 관한 죄, 초소침범죄, 포로에 관한 죄 등), 계엄법 제10조에 규정된 범죄(내란, 외환, 국교, 공안, 폭발물, 공무방해, 방화, 통화, 살인, 강도, 국가보안법 등) 등에 대해서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가진다(제2조).

평균인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고 이때 수사기관의 경험과 전문지식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수사는 필요성 이외에 상당성이 요구되는데, 이 때 상당성은 수사의 신의칙과 수사비례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이는 수사에 대한 실질적 한계가 됨으로써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군 수사과정도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여야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군 수사의 종류에도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 특히 강제수사의 경우에 형사소송법이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인신구속제도를 개정함에 따라 이들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여 군 강제수사에 있어서도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체포, 긴급체포,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II. 인신구속제도

군 수사과정에 있어 인신구속제도도 형사소송법과 그 요건이 같으나 세부절차에 있어서는 지휘관의 지휘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군검찰관이 피의자를 체포나 구속하기 위해 군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다.

1. 체포

군사법원법상 체포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통상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가 있다.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찰관은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검찰관에게 신청하여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⁷⁾ 다만 다액 50만

7) 1996. 12. 29, 법률 제5054호 및 1997. 12. 13, 법률 제5453호.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제232조의2 제1항). 검찰관이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이유와 붙여진 자료를 심사하여 체포영장의 군판사에 대한 청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군검찰사무운영규정⁹⁾ 제8조 제1항). 검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체포영장청구서를 작성하여 체포·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당해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규정 제7조 1항), 청구서를 받은 부대의 장은 그 청구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규정 제7조 2항).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체포의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32조의2 제2항).

긴급체포의 경우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하여 보통군사법원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제232조의3 제1항).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32조의3 제2항). 검찰관이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긴급체포를 한다는 사유를 알리고,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한 뒤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32조의5, 제112조).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찰관은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군사법경찰관

8) 여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관할보통군사법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서 정하는 관할을 가진 군사법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할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①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자, ②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 안에 있는 자군 부대의 속하는 자와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자, ③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 안에 현존하는 자와 그 지역 안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권오현, “개정군사법원법상 체포제도 고찰”, 법령연구논문집 제2집, 해군본부법무감실, 2001, 132면).

9) 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은 검찰관에게 신청하여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현행범체포의 경우는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제248조).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제251조).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249조 제1항).

2. 수사상 구속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찰관은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검찰관에게 신청하여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제238조 제1항).

검찰관은 구속영장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하여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당해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각한다는 뜻과 기각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신청한 군사법경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규정 제8조 제2항).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제238조 제4항),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3. 인신구속에 대한 구제제도

군사법원법도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수사권남용으로 인한 체포·구속으로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적 예방제도로서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를 두고 있으며, 사후적 구제제도로서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보석제도를 확대하여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제도도 도입하였다.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의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제238조의2 제1항).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군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의자 이외의 자가 군판사의 심문을 신청한 때에는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구속영장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군사법원의소송절차에관한규칙 제100조의8).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제238조의2 제3항).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경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¹⁰⁾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대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52조 제1항).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은 보통군사법원 또는 군판사가 심사한다.¹¹⁾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① 범죄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②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2조 제4항).

10) 긴급체포된 피의자,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대결 1997. 8. 27. 97모21).

11) 일반 형사소송의 경우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은 재정합의결정을 거쳐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미리 지정한 합의부가 담당하되 영장발부 판사를 제외하고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는 법원에서는 다른 판사가 단독판사로서 처리한다〔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의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송형 81-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제2판(형사), 1998, 246면 참조)〕.

제2절 군 수사과정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 수사과정에 있어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피결수용자의 설문조사내용과 헌병수사관, 군검찰관, 군판사의 면접조사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함께 분석하는 형태로 실태를 파악하였다.

1. 구금일반

1. 계급

조사대상자의 계급별 현황을 보면 상병이 36.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 계급별 현황

계급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부사관	장교	군무원	계
인원	8	8	16	4	3	4	1	44

2. 죄명

조사대상자의 죄명별 현황을 보면 군무이탈이 56.8%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군 사건의 대부분이 군무이탈죄임을 알 수 있다.

〈표 2-2〉 죄명별 현황

죄명	폭행	강간	절도	항명	군무이탈	기타	계
인원	5	1	-	-	25	13	44

3. 검거관서

조사대상자가 검거된 관서를 보면 현병이 가장 많은데 이는 군무이탈죄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 경찰에서 검거된 경우에는 기초조사만 한 후 가장 가까운 현병대로 이첩되고 있으며, 일반 검찰에 계속된 사건의 경우 군사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군사법원 검찰부 검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56조의2).

〈표 2-3〉 검거관서 현황

검거관서	현병	기무대	군검찰	경찰	일반검찰	기타	계
인원	22	-	2	11	-	9	44

4. 구금형태

조사대상자의 구금형태를 보면 긴급체포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긴급체포의 비율이 높은 것은 군무이탈의 경우 대부분 긴급체포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²⁾ 기타의 경우는 지수, 자대 간부에 의해 현병대로 인계된 경우이다.

〈표 2-4〉 구금 형태

구금형태	영장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구속	기타	계
인원	2	24	-	15	3	44

조사대상자의 신분상태는 대부분 미결수였고, 형이 확정되어 이감대기중인 자가 2명이었으며 이들은 분리 수용되어 있었다.

육군의 경우 육군규정 155 제176조에 수용자의 분리수용은 신분별(장교, 부사관, 병, 민간인), 징계처분자와 형사처분자, 기결수와 미결수, 초범자와 재범자, 사형선고자,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자 등으로 분리수용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영창이 이 규정에 따라서 분리수용을 하고 있었다.

12) 이 통계의 경우에는 응답자가 최초 구금형태를 정확히 모르고 답변한 것도 몇 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I. 체포·구속영장 집행절차

1. 영장제시

군사법원법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2조의5, 제123조 제1항).

체포나 구속시 영장 제시와 관련하여 ‘받았다’ 31명, ‘받지 못했다’ 12명으로 받았다는 인원이 더 많았으나 상당수는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물론 응답자의 경우에 영장에 의해 체포된 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긴급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집행된 경우이다. ‘받지 못하였다’의 응답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미결수용자들이 긴급체포가 되어 영창에 수감되어 있어 구속영장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2-5〉 구속영장을 제시받았는지 여부

구속영장을 제시받았는지 여부	인원
받았다.	32
받지 못했다.	12
계	44

헌병수사관 면접조사에서는 거의 모든 수사관이 항상 제시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제시할 때도 있고, 제시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소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긴급체포에 의하여 이미 신병이 영창에 확보된 수용자의 경우에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미란다 원칙 고지

헌법 제12조 제5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도 검찰관이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긴급체포를 한다는 사유를 알리고,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한 뒤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2조의5, 제112조).

구금당시에 수사관으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느냐와 관련하여 ‘들었다’ 40명, ‘듣지 못했다’ 4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듣지 못하였다는 응답의 경우에는 정말로 수사관이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체포나 구속시 피의자가 당황하여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군사법경찰관이 너무 빨리 간단하게 고지하여서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으며, 미리 작성된 문서에 피의자가 형식적으로 날인만 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 본인은 고지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또한 피의자의 학력수준이나 이해력 수준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고지한 권리내용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고지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¹³⁾

〈표 2-6〉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는지 여부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는지 여부	인원
들었다.	40
듣지 못하였다.	4
계	44

구속영장제시에 비하여 미란다 원칙의 고지의 경우에는 거의 들었다는 응답이었다. 이는 헌병수사관들의 인권의식이 함양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또한 구속전 고지확인서를 피의자로부터 직접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헌병수사관 면접조사에서도 모든 수사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자세히 고지하고 있다고 자신하였다. 다만 피의자가 체포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동시에 많은 인원을 체포한 경우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못하였다는 응답도 소수 있었다.

13) 이와 같은 추론은, 국가인권위원회,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조사,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보고서, 2008, 36면 참조

참고로 구속전 고지 확인서 양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속전 고지 확인서	
본적:	
주소:	
소속:	
계급:	군번:
성명:	(만 세)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200 년 월 일 경 제 사단 헌병대 수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사건에 대하여 군사법경찰관 헌병 로부터 사건요지 및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구속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기회가 주어졌으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0 위 확인자 (인)	
위 피의자를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구속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 날인 거부함) 200 제 사단 헌병대 군사법경찰관 헌병 (인)	

II. 구속의 통지/ 기간

1. 구속의 통지

헌법 제12조 제5항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사법원법 제127조는 구속의 통지와 관련하여 소속 부대장과 변호인, 가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사법원의소송절차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함) 제53조의2 제3항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속되었다는 취지 및 구속의 일시, 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된 후 가족에게 구속통지된 방법으로는 '경찰에서 전화통보' 1명, '헌병에서 전화통보' 16명, '헌병에서 전보로 통보' 1명, '헌병에서 편지로 통보' 1명, '군검찰에서 전화로 통보' 1명, '군검찰에서 편지로 통보' 1명, '어떻게 통지되었는지 모른다' 15명, 기타 5명(장교나 부서관인 경우 본인에게 직접통보) 등으로 나타나 구속통지가 어떻게 통지되었는지 모른다는 응답비율도 35.7%나 되었다.

〈표 2-7〉 구속통지 방법

구분	인원
경찰에서 전화통보	1
헌병에서 전화로 통보	16
헌병에서 전보로 통보	1
헌병에서 편지로 통보	1
군검찰에서 전화통보	1
군검찰에서 전보로 통보	2
군검찰에서 편지로 통보	1
어떻게 통지되었는지 모른다.	15
기타	5
계	42

헌병수사관 면접조사나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도 보통의 경우 전화로 미리 가족이나 부대지휘관에게 구속통지를 한 다음 서면으로 다시 한다고 모두 응답하였다.

2. 구속기간

구속기간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2일 1명, 5일 2명, 7일 1명, 8일 1명, 9일 2명, 14일 1명, 15일 2명, 16일 1명, 17일 2명, 18일 2명, 19일 1명, 20일 2명, 21일 2명, 22일 1명, 26일 1명, 29일 1명, 30일 1명, 31일 1명, 34일 2명, 36일 2명, 46일 1명, 47일 1명, 50일 1명, 53일 1명, 57일 1명, 60일 2명, 64일 1명, 70일 2명, 76일 1명, 110일 1명, 120일 1명, 124일 1명, 131일 1명이었다. 이중 구속일수가 100일 이상 된 자는 형이 확정되어 이감 대기중인 자 이거나 항소한 자이었으며, 미결수로서 76일 된 자가 가장 오래 구속된 자이었다.

3. 구속기간 연장인지 여부

군사법원법은 구속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제242조 제1항에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각각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다만 군사법경찰관이 구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검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검찰관이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⁴⁾

구속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알고 있는지는 질문에 ‘그렇다’ 16명, ‘그렇지 않다’ 25명으로 40.9%가 자신의 구속기간이 연장되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표 2-8〉 구속기간 연장인지여부

구속기간 연장인지여부	인원
그렇다.	16
그렇지 않다.	25
계	41

형사절차에 대해 문외한인 사병에게는 이들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형사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고지해줄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구속기간의 연장여부나, 기소여부, 재판일정 등은 교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배려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헌병수사관 면접조사에서는 구속기간을 연장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이 8명이

14) 다만 군사법경찰관도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군사법원법 제242조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27일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이 사건 법률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방법의 적정성 및 피해의 최소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그 결과 청구인의 신체적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군인신분의 피의자라는 이유로 군인이 아닌 일반 민간인 신분의 국민과 다르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청구인을 차별하여 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다(헌재 2008. 11. 27, 2002헌마193). 따라서 군사법경찰관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게 되었다.

었으며, ‘없다’가 15명이었다. 구속기간을 연장한 사유로는 증거확보나 중대한 사건으로서 수사기간이 필요한 경우 또는 민간인이 피해자인 경우 피해조사 및 참고인 진술 등의 어려움 때문에 구속기간을 연장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경우에도 군검찰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위험성은 없다고 하였다.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는 구속기간을 연장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5명, ‘없다’가 1명으로 오히려 구속기간의 연장이 군검찰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장의 사유로는 ‘사안이 복잡하여 수사의 기간이 더 필요하였기 때문’ 12명, ‘구속된 피의자에게 훈계하는 차원에서’ 8명 등이었다.¹⁵⁾ 특히 군무이탈죄의 경우에는 훈계차원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이 많이 이루어졌다. 즉 군무이탈기간이 짧고 피의자가 반성하고 재복무의지가 확고한 경우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훈계차원 또는 군무이탈을 하여 징계입창처분을 받은 자와 형평을 고려하여 구속기간을 연장시킨다는 것이다.

IV. 변호인 선임/ 의뢰/ 접견

1. 변호인 선임여부

변호인 선임여부와 관련하여 ‘민간변호인 선임’ 8명, ‘국선변호인 선임’ 10명, ‘선임하지 않음’ 25명으로, 사병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민간변호인이 선임된 경우는 대부분 장교나 부사관 등이었다.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상 피고인에 대해서만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되고 난 후 선임된 경우이다.

〈표 2-9〉 변호인 선임여부

구 분	인 원
민간변호인 선임	8
국선변호인 선임	10
선임하지 않음	25
계	43

15) 이 응답은 복수응답으로 이외에 ‘범죄가 중해서’ 1명, ‘업무가 바빠서’ 1명이었다.

2. 민간변호인 접견관련

(1) 접견시기와 접견시 상태

민간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최초 변호인을 접견한 시기는 ‘군검찰조사과정’에서 2명, 기타로 ‘헌병조사후’가 6명으로 초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적극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의 접견이 자유로웠냐는 질문에 ‘그렇다’ 6명, ‘그렇지 못하다’ 2명으로 나타났다. 자유스럽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어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지 못했다. 자유스럽지 못하였다는 응답의 경우에는 입회헌병이 있어 그런 것으로 판단되나, 공군과 해군의 영창관리규정에는 변호인의 면회에는 영창근무자가 참여하지 않으며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변호인과 접견하는 것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제한받은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는 모두 ‘없다’라고 응답하여 제한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변호인 선임여부에 따른 대우

변호인의 선임여부에 따라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수용자에 대한 대우가 크게 달라지냐는 질문 ‘그렇지 않다’라고 모두 응답하여 변호인 선임여부와 수용자의 대우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변호인 선임의뢰

군사법원법은 변호인 선임의뢰와 관련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군검찰관·군사법경찰관, 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제246조, 제130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병수사관에게 특정한 변호사 선임을 의뢰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두 '없다'고 응답하였다.

헌병수사관이나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도 모두 '없다'고 응답하였다.

3. 국선변호인 접견관련

군사법원법은 국선변호인 선임과 관련하여 제62조에 “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국선변호인을 최초 접견한 시기와 관련하여 '군검찰조사과정에서' 1명, '재판전' 3명, '없음' 6명이었다. 군검찰조사과정에서 접견하였다는 응답의 경우에는 아직 기소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는 답변으로 평가된다.

접견 횟수의 경우 '1회' 3명, '2회' 1명이었고, 접견 시간의 경우 '10분 이내' 2명, '30분 이상' 2명이었으며, 만남도 '형식적이었다'가 4명으로 실질적인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나 형식적 이여서 전혀 없다'고 기재하였다.

군검찰관이나 군판사의 면접조사에 따르면 예전과 같지 않게 법무장교 국선변호인들이 사선변호인 못지 않게 성실하게 변론을 해 준다 답변하였다. 다만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이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또한 보통군사법원에 따라서는 사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인에게 재판당일 피고인들의 국선변호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에도 시간상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구속영장실질심사

1. 구속영장실질심사인지 여부

군사법원법도 부당한 구속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속전 피의자심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238조의2 제1항은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의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제도의 인지여부와 관련하여 ‘알고 있다’ 25명, ‘모른다’ 18명으로 응답자 중 58% 정도가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제도를 알고 있었으며, 42%정도가 모르고 있어,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모른다는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2-10〉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대한 인지여부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인지여부	인원
알고 있다.	25
모른다.	18
계	43

2. 구속영장실질심사 고지여부

구속영장실질심사신청과 관련하여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군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의자 이외의 자가 군판사의 심문을 신청한 때에는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구속영장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100조의8). 또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을 할 수 있음을 말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군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 기타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

다(제238조의2 제2항).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군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함에 있어 피의자가 군판사의 심문을 받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구속의 사유에 대하여 변명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규칙 제100조의6 제1항).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있어 심문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경우에 그 취지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 외에서 그 고지를 하는 때에는 피의자가 서명한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규칙 제100조의6 제2항).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통지의 상대방에게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음과 피의자 이외의 자가 군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이미 군판사의 심문을 신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칙 제100조의6 제3항). 이에 대한 고지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또는 신청하기 전까지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신속히 이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100조의6 제4항). 서면 및 전화 등에 의하여 고지를 한 경우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은 수사기록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100조의6 제5항).

헌병수사관(군검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31명, ‘그렇지 않다’ 13명으로, 70% 정도가 고지받았으며, 30% 정도가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2-11〉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고지받았는지 여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고지받았는지 여부	인원
그렇다.	31
그렇지 않다.	13
계	44

구속전 피의자신문(구속영장실질심사)의 고지와 관련해서는 군사법원법과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에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의자의 입장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법경찰관이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참고로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심문에 대한 고지 확인서를 다음과 같은 양식에 의거하여 피의자에게 받고 있었다.

확인서	
피의자 성명:	
계급/군번: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200 경 ——— 헌병대 사무실에서 수사관으로부터 군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구속영장 청구시 군판사의 심문을 신청 ()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기에 불신청()	
확인합니다.	
	위 확인자 (인)
위 피의자에게 위와 같이 군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	
————헌병대 군사법경찰관 헌병 (인)	

3. 구속영장실질심사 고지시 군사법경찰관의 태도

헌병수사관이 이를 고지를 할 때 어떠한 태도를 보였느냐는 질문에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신청하면 구속일수가 길어지기 때문에 불리하다 말하였다' 1명,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신청해 보아야 어차피 영장이 발부된다고 말하였다' 6명,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헌병수사관이 위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1명, '구속영장실심사라는 것이 있는데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식으로 형식적으로 물어 보았다' 7명,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며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15명, 기타 5명은 '기억이 없다', '고지해 주지 않았다' 등이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부당하게 고지한 경우가 15명, 적극적·긍정적 고지가 15 명으로 같은 수로 나타났으나 부당하게 고지하는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군사법경찰관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표 2-12〉 구속영장실질심사 고지시 군사법경찰관의 태도

고지시 태도	인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면 구속일수가 길어지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말하였다.	1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보아야 어차피 영장이 발부된다고 말하였다.	6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현병수사관이 위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1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이 있는데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식으로 형식적으로 물어보았다.	7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며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15
기타	5
계	35

실제로 수사기록에 영장실질심사고지여부를 피의자가 확인하기 때문에 고지여부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실질심사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느냐가 문제이다. 다만 현병수사관의 면접조사에 따르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자세히 고지해 준다고 하였다.

4. 구속영장실질심사 신청여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느냐의 질문에 ‘그렇다’ 15명, ‘그렇지 않다’ 27명, 기타 1명으로 신청율이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군무이탈의 경우 어차피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 ‘실질심사에 대해 자세히 모르기 때문’, ‘구체적 내용을 몰라’로 기재하였다.

〈표 2-13〉 구속영장실질심사 신청여부

신청여부	인원
그렇다.	15
그렇지 않다.	27
기타	1
계	43

현병수사관의 면접조사에 따르면 구속영장실질심사신청율이 예전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며, 군판사가 의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실질심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심사의 비율이 늘어났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군무이탈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여 신청을 많이 포기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은 군판사의 면접조사에도 마찬가지였다.

5.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

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군사법원 청사 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헌병대,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규칙 제100조의15).

군판사는 심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송헌병 기타의 자를 퇴실하게 하고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규칙 제100조의16).

실질심사과정에서는 호송헌병이 없어서 군판사의 심문에 자유롭게 답변하였다는 응답이 모두이었다.

실질심사를 받은 장소는 모두 군사법원내 군판사실 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군판사실은 군사법원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참모부 건물 안에 군판사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

피의자를 심문할 때 군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규칙 제100조의16 제1항). 검찰관과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38조의2 제5항).

심문시 진술거부권과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고지는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14명, ‘그렇지 않다’ 1명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진술거부권과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은 피의자심문절차에서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Ⅵ. 체포·구속적부심사

군사법원법은 체포·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6)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대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5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인지여부에 대한 질문에 ‘모른다’ 40명, ‘알고 있다’ 2명으로 거의 모든 피의자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청구도 모두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이 제도의 인지도나 이용률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Ⅶ. 피의자신문

피의자신문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헌병수사단계와 군검찰수사단계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하였다.

1. 헌병수사단계

(1) 밀실조사여부

헌병수사관에게 밀실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없다’ 42명, ‘있다’ 1명이었으나, 있다는 응답의 경우 그 장소가 범죄와 관련한 부대 내의 장소였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없다’가 전부인 것으로 평가된다.

헌병수사관 면접설문에서도 밀실 수사를 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16) 긴급체포된 피의자,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대결 1997. 8. 27, 97도21).

(2) 조사횟수와 시간

조사횟수와 관련하여 ‘1회’ 20명, ‘2회’ 12명, ‘3회’ 7명, ‘4회 이상’ 1명, 기타 3명으로 1회의 비율이 전체응답자의 46%를 점하고 있어 군 사건이 대부분 단순한 사건임으로 보여 주고 있다. 기타 중 50여회 이상 조사를 받았다는 응답도 있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대 내 통기분실과 관련된 사건으로 중대하고 복잡하여 많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2-14〉 조사횟수(헌병)

횟수	1회	2회	3회	4회	4회 이상	기타	계
인원	20	12	7	-	1	3	43

헌병수사관 면접조사에서도 경미사건의 경우에는 1번,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2~3번 정도 조사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조사시간의 경우에는 2시간 이하가 26명으로 61.9% 비율을 점하고 있어 조사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15〉 조사시간(헌병)

횟수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이상	기타	계
인원	3	9	14	7	9	-	42

(3) 진술거부권고지여부

헌법 제12조 제2항 후단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초로 “모든 국민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을 명시하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진술거부권은 비록 양심의 자유 등과 그 성격이 다르지만 그 성질상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법률에 의한 외부적 제약을 가하기에는 적당치 못한 기본권의 범주에 속한다.¹⁷⁾

군사법원법도 피의자신문과 관련하여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연령·본적·소속·계급·군번·주민등록번호·주거 및 직업을 물어 피의 자임에 틀림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제233조),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 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제23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진술거부권 고지여부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고지받았다’가 23명으로 많은 수를 점 하고 있으나 ‘형식적 고지’ 17명, ‘고지받지 못한’ 경우도 3명으로 46.5%가 형식적 고 지를 받았거나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6〉 진술거부권 고지여부(헌병)

고지의 형식	인원
헌병수사관이 형식적으로 고지하였다.	17
헌병수사관이 진술거부권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23
헌병수사관이 고지해 주지 않았다.	3
기타	-
계	43

헌병수사관 면접조사에서는 조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진술거부권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임의문답식으로 서두에 재차 설명해 주어 확인을 받는 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조서에 부동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고지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실무상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 자체에 진술거부권고지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므로 조서만으로는 실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러한 이유에서 진술거부권의 불고지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해야 한다.¹⁸⁾

17) 헌재 1990. 8. 27, 89헌가118.

18) 신양균,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0, 125면.

(4) 유리한 사실 진술 기회부여

군사법원법 제234조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대립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사법보장의무에 따른 사실해명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적 청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¹⁹⁾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28명, ‘그렇지 않다’ 15명으로 35% 정도가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7〉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부여 여부(헌병)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부여 여부	인원
그렇다.	28
그렇지 않다.	15
계	43

헌병수사관 면접조사에서는 모두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고 응답하였다.

실무상으로는 조사 말미에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라고 신문하고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수 있다.

(5) 신문시 부당한 행위

신문시 진술강요와 유도신문은 38.7%, 모욕·위압적 신문은 35.4%, 폭행·구타 등

19) 신양균, 앞의 책, 126면.

가혹행위와 이를 통한 허위자백은 0.5%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 부당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8〉 신문시 부당행위 여부(헌법)

부당행위 내용	응답 내용		계
	그렇다(있다)	그렇지 않다(없다)	
진술강요	12	31	43
유도신문	12	31	43
모욕·위압적 신문	11	32	43
폭행·구타 등 가혹행위	2	41	43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	2	41	43

진술강요의 내용은 ‘질문시 화를 냄’, ‘일방적인 질문’, ‘빨리 답변하라는 고성’, ‘거짓말하지 말고 바른대로 말해’,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 사생활 질문’, ‘너밖에 범인이 없어’ 등으로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도의 내용은 ‘한 쪽방향으로 물고 감’, ‘이렇게 했겠네 맞자’, ‘공범이 있지’, ‘공범이 이미 붙었다’, ‘뭐 때문에 그런 것이 맞자’ 등으로 나타났다.

모욕·위압적 신문의 내용은 ‘욕설’, ‘고성’, ‘너는 정신상태가 썩어 빠졌다’, “이까짓 것으로 탈영했느냐, ‘거짓말 하고 있네’, ‘반성의 기미가 없네’, ‘거짓말 하면 선처도 없다’, ‘너는 육군교도소로 갈 것이다’, ‘너는 몇 년 형이야’ 등으로 신문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모욕·위압적 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응하는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당한 내용은 ‘냉바닥에 앉아 심문을 받았다’, ‘온갖 욕설을 들었다’, ‘밤새도록 조사를 받으면서 존 다고 소리지르고 정신차리라고’ 등으로, 이 경우에는 일반경찰에서 밤을 새워 조사를 받고 헌병대에서 다시 0700경부터 16:00까지 조사를 다시 받았다고 기재하였다.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응답한 2명의 경우에 1명은 군내 사건(총기분실관련)과 관련된 피의자이며, 다른 1명은 강도상해사건의 피의자로서 부대내 사건이나 강력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응답한 2명은 ‘머리를 맞았다’, ‘진술서를 새벽까지 쓰게 하고 잠을 재워주지 않았다’ 등이었다. 다만 이를 통

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재여부가 없어 확정하기 어렵다.

(6) 야간·밤샘조사

야간조사의 경우에는 22.8%, 밤샘조사의 경우에는 0.2% 정도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9〉 야간·밤샘조사(헌병)

구 분	응답 내용		계
	있다	없다	
야간조사	8	35	43
밤샘조사	1	42	43

야간에 조사를 받은 시간대는 20:00~23:00, 23:00~05:00, 20:00~20:40, 01:00~05:00 등이었다. 야간 조사를 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긴급체포사건으로서 경찰에서 이첩된 사건이거나, 군무이탈사건이었다.

밤샘조사를 받은 시간대는 20:00~04:00경 이었다.

헌병수사관 면접조사에 따르면 야간조사나 밤샘조사는 야간에 발생한 긴급체포 사건이나 일반경찰에서 야간에 이첩된 사건에 대해서만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1차로 피의자에게 동의서를 받으며, 2차로 대표 군사법경찰관인 헌병 대장이나 수사과장의 지휘를 받는다고 하였다.

(7) 보조자 참여

현행 군사법원법은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신문절차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일정한 자의 참여와 조서의 작성을 보장하고 있다. 즉 군사법원법 제235조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한 경우에 당해 조서나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헌병수사관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동료수사관이 참여하였느냐와 관련하여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66%로 ‘그렇다’는 비율 34%보다 훨씬 높아 대부분의 경우 참여자 없이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헌병수사관의 수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사고 예방활동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2-20〉 보조자 참여여부(헌병)

참여여부	인원
그렇다	15
그렇지 않다	29
계	44

헌병수사관 면접조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 동료 헌병수사관이 함께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나, 항상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있었다.

(8) 신문조서 열람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군사법원법 제36조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어야 하며 오기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열람여부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게 하였느냐와 관련하여 ‘그렇다’ 40명, ‘그렇지 않다’ 3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신문조서를 읽어보았다고 응답하였으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있었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는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기 때문에, 조서를 읽어보지 않게 하고 강제로 날인하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피의자가

신문조서를 읽어보지 않았다는 응답의 신빙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표 2-21〉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았는지 여부(헌병)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 보았는지 여부	인원
그렇다.	40
그렇지 않다.	3
계	43

- 증감·변경요구 여부

조사내용을 읽어 본 후 증감·변경을 요구하였느냐와 관련하여 ‘그렇다’ 6명, ‘요구하고 싶었지만 수사분위기가 할 수 없었다’가 10명, ‘요구할 내용이 없어 요구하지 않았다’가 19명, 기타 1명은 ‘수사관이 빨리 읽으라고 하여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요구하고 싶었지만 수사분위기가 할 수 없었다’는 응답비율도 28%로 나타났나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22〉 증감·변경요구 여부(헌병)

구분	인원
그렇다.	6
요구하고 싶었지만 수사분위기가 할 수 없었다.	10
요구할 내용이 없어 요구하지 않았다.	19
기타	1
계	36

헌병수사관 면접조사에서는 피의자가 조서를 읽어보고 증감·변경을 청구한 경우 성실히 응해 준다고 모두 응답하였으나 미결수용자 응답결과에서는 수사분위기가 할 수 없었다는 응답이 상당수였다.

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인 사병이 조서를 읽어보고 증감·변경을 청구하기란 수사분위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조서작성 후에 피의자에게 충분히 읽어보게 한 후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증감·변경요구시 헌병수사관의 태도

증감·변경 요구시 헌병수사관의 태도와 관련하여 ‘신경질적이었지만 응해 주었다’ 2명, ‘순순히 응해 주었다’ 5명, ‘응해 주지 않았다’ 1명으로 나타났다. 이 응답에는 증감·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자도 응답한 경우가 있어 정확한 응답이라고 볼 수 없으나, 신경질적으로 응해주었다는 응답도 있어 이에 대한 수사관들의 의식개선이 요구된다. 응해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치에 맞지 않았다’라고 기재하였다.

〈표 2-23〉 증감·변경요구시 수사관의 태도(헌병)

증감·변경요구시 수사관의 태도	인원
신경질적이었지만 응해 주었다.	2
순순히 응해 주었다.	5
수정을 요구한다고 욕설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
증감·변경을 요구하였지만 응해 주지 않았다.	1
기타	-
계	8

헌병수사관으로부터 군검찰관에게 조사받기 전에 군검찰에서도 똑 같은 진술을 하라는 강요나 회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있다’ 2명, ‘없다’ 41명으로 나타났으며, ‘있다’의 경우 1명은 ‘군검찰에 가서 그냥 잘못하였다고 싸작 빌어라’는 내용이어서 진술 강요로 보기는 어렵고, 1명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 조사시 생리현상 해결

조사시에 생리현상의 해결과 관련하여 ‘수사관에게 말하고 갈 수 있었다’ 21명, ‘급했지만 수사 분위기상 말을 할 수 없었다’가 8명, ‘조사과정 중 생리현상이 없었다’ 12명으로 나타났다.

생리현상과 관련하여 수사 분위기상 말할 수 없었다는 응답도 상당수가 되어 조사시간이 오랜 시간 지속될 경우에는 생리현상에 대해 수사관이 물어보고 이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4〉 조사시 생리현상 해결(헌병)

내용	인원
수사관에게 말하고 갈 수 있었다.	21
급했지만 수사 분위기상 말을 할 수 없었다.	8
수사관에게 말하였지만 화장실 이용이 허락되지 않았다.	-
조사과정 중 생리 현상이 없었다.	12
기타	-
계	41

2. 군검찰단계

(1) 밀실/ 야간/ 밤샘 조사여부

군검찰관에게 조사받을 때 밀실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야간과 밤샘에 조사를 받은 적도 모두 ‘없다’는 응답을 하였다.

군검찰관 면접조사에도 야간조사나 밤샘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모두 응답하였다. 이는 군검찰이 헌병과 같이 일반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지 않으며, 직접 긴급체포하거나 인지한 사건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조사횟수/ 시간

군검찰관에게 조사를 받은 횟수는 ‘1회’ 28명, ‘2회’ 8명, ‘3회’ 1명, ‘4회 이상’ 1명으로 1회의 비율이 73.6%로 그다지 조사횟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5〉 조사횟수(군검찰)

횟수	1회	2회	3회	4회	4회 이상	기타	계
인원	28	8	1	-	1		38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도 조사 횟수와 관련하여 경미사건의 경우에는 1회, 중대사건의 경우에는 2~3회 한다고 응답하였다.

조사시간은 '30분 이상' 11명, '1시간 이상' 17명, '2시간 이상' 8명, '4시간 이상' 1명, 기타 1명으로 조사시간도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6〉 조사시간(군검찰)

횟수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기타	계
인원	11	17	8	-	1	1	38

(3) 진술거부권 고지여부

진술거부권 고지여부와 관련하여 '형식적으로 고지하였다' 14명, '자세하게 고지하였다' 18명, '고지해 주지 않았다' 6명으로, 형식적 고지나 고지해 주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52.5%로 높게 나타났다.

〈표 2-27〉 진술거부권 고지여부(군검찰)

고지의 형식	인원
군검찰관이 형식적으로 고지하였다.	14
군검찰관이 진술거부권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18
군검찰관이 고지해 주지 않았다.	6
기타	-
계	38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는 구두로 충분히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헌병수사관의 면접조사와는 달리 신문조서에 부동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고지한다는 응답도 상당수였다.

군검찰의 조사도 헌병조사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실무상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 자체에 진술거부권고지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므로 조서만으로는 실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러한 이유에서 진술거부권의 불고지가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4) 유리한 사실 진술 기회부여

군검찰관이 조사시에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느냐와 관련하여 ‘그렇다’ 28명, ‘그렇지 않다’ 10명으로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비율도 26%나 되었다.

〈표 2-28〉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부여 여부(군검찰)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부여 여부	인원
그렇다.	28
그렇지 않다.	10
계	38

군검찰의 조사도 헌병조사단계와 마찬가지로 실무상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작성시 조서말미에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라고 신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

(5) 신문시 부당한 행위

신문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진술강요 24.1%, 유도신문 32.1%, 모욕·위압적 신문 27.5%, 폭행·구타 등 가혹행위가 0.2%로 나타나 군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부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9〉 신문시 부당행위 여부(군검찰)

부당행위 내용	응답 내용		계
	그렇다(있다)	그렇지 않다(없다)	
진술강요	7	29	36
유도신문	9	28	37
모욕·위압적 신문	8	29	37
폭행·구타 등 가혹행위	1	36	37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	-	37	37

진술을 강요한 내용은 ‘고성을 통하여’,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선처할 수 없다’ 등이라고 기재하였다.

유도신문의 내용은 ‘몇 번했지’라는 말로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모욕적이거나 위압적인 신문 내용 ‘니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나쁜 새끼 고생 좀 해야 되겠네’, ‘형량을 말하면서 너 같은 놈이 더 위험해’, ‘이놈 완전히 상습범이네’, ‘신경질을 내면서 조사’ 등으로 피의자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겁을 주면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구타 등 가혹행위의 경우에는 ‘서류를 던지고, 막 일어나서 왔다갔다’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다만 이 경우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가혹행위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군검찰관의 가혹행위에 의하여 허위자백을 한 적이 있느냐하는 질문에는 모두 ‘없다’라는 응답을 하였다.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는 당연히 모욕·위압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미결수용자의 설문에서는 이러한 수사를 당하였다는 응답도 상당수 있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 보조자 참여

군사법원법 제235조는 “검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검찰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검찰관이 조사시 동료 수사관이 함께 있었느냐와 관련하여 ‘그렇다’ 7명, ‘그렇지 않다’ 30명이었다. 이와 같이 군검찰관 조사시에는 81%가 참여자 없이 검찰관이 단독 신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0〉 군검찰관 조사시 보조자 참여여부(군검찰)

보조자 참여 여부	인원
그렇다.	7
그렇지 않다.	30
계	37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는 피의자신문시 군검찰서기가 참여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상당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군검찰의 경우 보통검찰부에 검찰수사관(부서관)이 1명씩 밖에 없어 피의자신문시에 일일이 참석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7) 신문조서 열람

- 신문조서 열람

군검찰관에게 조사를 받은 후, 검찰관이 조서를 읽어보게 하였느냐와 관련하여 ‘그렇다’ 36명, ‘그렇지 않다’ 2명이었다.

〈표 2-31〉 신문조서열람 여부(군검찰)

신문조서열람여부	인원
그렇다.	36
그렇지 않다.	2
계	38

군검찰조사단계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신문조서를 읽어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있었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는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기 때문에(제236조 제3항), 조서를 읽어보지 않게 하고 강제로 날인하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피의자가 신문조서를 읽어보지 않았다는 응답의 신빙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증감·변경청구 여부

조서를 읽어 본 후 조사내용에 대해 증감·변경을 청구하였느냐와 관련하여 ‘그렇다’ 10명, ‘그렇지 않다’ 26명이었다.

〈표 2-32〉 증감·변경청구여부(군검찰)

증감·변경청구여부	인원
그렇다.	10
그렇지 않다.	26
계	36

- 증감·변경요구시 검찰관의 태도

증감·변경의 청구에 대해 군검찰관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느냐와 관련하여 '신경질적이었지만 용해 주었다' 3명, '순순히 용해 주었다' 6명, 기타 1명이었다. 용해해주지 않았다는 응답은 없었으나 신경질적으로 용해주었다는 응답도 있어 피의자신문서에 피의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3〉 증감·변경요구시 검찰관의 태도(군검찰)

증감·변경요구시 검찰관의 태도	인원
신경질적이었지만 용해 주었다.	3
순순히 용해 주었다.	6
수정을 요구한다고 욕설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
증감·변경을 요구하였지만 용해 주지 않았다.	-
기타	1
계	10

(8) 진술번복 여부

군검찰에 송치된 후, 헌병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적이 있느냐와 관련하여 '있다' 1명, '진술을 번복하고 싶었지만, 헌병대 영창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1명, '없다' 33명, 기타 1명이었다.

현재와 같이 헌병이 교정기관과 수사기관을 겸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피의자의 신병이 영창에 있기 때문에 군검찰에서 자유스럽게 진술할 수 없을 위험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표 2-34〉 진술번복여부(군검찰)

내용	인원
있다.	1
진술을 번복하고 싶었지만, 헌병대 영창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1
없다.	33
기타	1
계	36

(9) 생리현상 해결

군검찰관에게 조사 받을 때 화장실 사용과 관련하여 ‘말하고 갈 수 있었다’ 14명, ‘급했지만 수사분위기상 말을 할 수 없었다’ 7명, ‘생리현상이 없었다’ 16명으로 나타났다. 수사 분위기상 말할 수 없었다는 응답도 7명이나 되어 조사시에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5〉 조사시 생리현상 해결(군검찰)

내용	인원
수사관에게 말하고 갈 수 있었다.	14
급했지만 수사 분위기상 말을 할 수 없었다.	7
수사관에게 말하였지만 화장실 이용이 허락되지 않았다.	-
조사과정 중 생리 현상이 없었다.	16
기타	-
계	37

(10) 기소후 수사여부

군사재판에 회부된 후에도, 헌병수사관에게 불러간 적이 있느냐와 관련하여 ‘없었다’가 36명, ‘있었다’가 1명으로 거의 모두 기소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있었다는 응답은 여죄수사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참고로 판례는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검사의 피고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소제기후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로서 제한이 없으므로 제1회 공판기일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는 적극설의 입장에 있다.²⁰⁾

그러나 군검찰도 아닌 단순한 수사기관에 불과한 헌병수사관이 수사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즉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의 신문을 인정하게 되면 피고인의 소송주체로서의 성격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공판정 외에서 변호인 없는 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강제수사뿐만 아니라 피고인신문이나 기타 임의수사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VII. 미결구금자의 처우

1. 입창절차

군행형법 제6조 제1항은 신입자의 수용과 관련하여 “소장은 수용자로서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신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또는 재판서 기타 서류를 조사·확인한 후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 육군규정 155 제174조 수용절차에 따르면 형사처분자를 영창에 수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속영장과 입감의뢰서를 조사한 후에 수용하여야 하며, 입감전에 신체 검색 및 의류를 검사하여야 하고 허가되지 않은 품목은 회수하여 영치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사진촬영과 행장카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용자는 전투복을 착용하고 현대·전투화 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명확정자는 계급장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영창에는 행장카드 또는 수용자 신분카드의 형식으로 영창수용자들의 신원, 범행동기, 범행관할, 입소와 출소 일시 등을 기재한 등록부를 비치하고 있었다.

공군, 해군의 규정에 육군의 규정과 비슷하게 신입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속자를 수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미결수용자로서의 제반 권리나 형사절차의 고지에 대해서는 군행형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20) 대판 1982. 6. 8, 82도754; 1984. 9. 26, 84도1646.

(1) 권리 및 형사절차 고지

영창에 입창시 헌병관계자로부터 미결수용자로서의 권리나, 앞으로 진행될 형사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듣지 못하였다’ 26명, ‘형식적으로 들었다’ 6명, ‘자세히 들어 영창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10명으로 상당수가 듣지 못하였거나 형식적으로 들었다고 응답하였다. 듣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61.9%나 되어 영창관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무신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6〉 수용시 미결수용자로서 권리 등을 고지받았는지 여부

내용	인원
듣지 못하였다.	26
형식적으로 들었다.	6
자세히 들어 영창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10
기타	-
계	42

(2) 청원제도 등에 대한 고지

청원제도와 관련하여 군행형법 제4조는 “① 수용자가 그 처우에 불복하는 때에는 참모총장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 수용자가 참모총장에게 청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소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교도관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못한다. ③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듣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키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모총장이 청원에 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소장은 그 결정서를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창에 입창시 헌병관계자로부터 청원제도, 불복신청권, 소원수리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듣지 못했다’ 27명, ‘형식적으로 들었다’ 10명, ‘자세히 들어

영창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7명으로 상당수가 듣지 못하였거나 형식적으로 들었다고 응답을 하였다. 듣지 못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61.3%나 되어 수용자의 권리고지에 대한 개선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7〉 수용시 청원권 등을 고지받았는지 여부

내용	인원
듣지 못하였다.	27
형식적으로 들었다.	10
자세히 들어 영창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7
기타	-
계	44

(3) 영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여부

영창에 입창시 헌병관계자로부터 수용시설 내 적응에 필요한 정보(일과, 규율, 처우, 시설물 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듣지 못했다' 7명, '형식적으로 들었다' 16명, '자세히 들어 영창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20명, 기타 1명(시설이용방법만 들었다)으로 나타나, 앞의 수용자관련 권리고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영창생활에 대한 제반 정보를 고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권리고지에 대해서는 이를 고지해야할 특별한 내용이 군행형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못하고 또한 영창관리자들이 이에 대한 고지 자체를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만 영창생활에 대한 정보고지의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야 영창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지받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8〉 수용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고지받았는지 여부

내용	인원
듣지 못하였다.	7
형식적으로 들었다.	16
자세히 들어 영창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20
기타	1
계	44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입창시 이러한 내용과 교육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고 거의 모두 응답하여 수용자들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설명해준다거나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응답도 소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고지들을 수용자가 입창시에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고지받았다면 이들 내용에 대한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수용자의 권리나 형사절차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각 영창 거실 내에 부착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각 영창방문시에 수용자의 권리 내지 형사절차에 관한 내용을 형무담당관실에 부착하고 있는 영창은 있었으나 영창 거실내에 부착하고 있는 영창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연구진이 거실내에 부착할 수 있도록 형무담당관이나 관리자에게 권고하였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진정권 고지와 보장²¹⁾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시설수용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 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설수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 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등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등의 구금·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1) 미결수용자 설문문항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으나 영창관리자의 면접조사와 설치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정권 고지와 설치상황을 점검하였다.

⑥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⑦ 소속 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⑧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보호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 및 그 밖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6조 (진정방법의 고지 등) ①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를 최초로 보호·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수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인권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진정함의 설치·운동) ①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구금·보호시설 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함을 설치한 때에는 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합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합용 봉투의 양식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위원회명의로 서신을 개봉한 결과 당해 서신이 위원회가 진정인인 시설수용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서신 중 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① 시설수용자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그 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작성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고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군의 경우 공군규정 14-1 제38조에 “헌병대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인권침해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사실과 진정방법을 고지하여야 하며, 영창내 식

당, 화장실 등 수용자가 이용 가능한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 구치소업무규정 제28조와 제29조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절차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8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절차

수용자의 진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용자가 수용 중 인권침해 행위를 당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요청할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진정서의 작성, 봉합, 투여는 수용자(진정인)가 직접 실시하며, 구치소장은 진정서 작성, 봉합 및 투여에 필요한 필기구, 용지(진정서 양식), 봉합용 봉투 및 진정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진정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구치소장은 그 접수사실을 지체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진정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신, 방문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수용자(진정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헌병대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제출을 요구 및 방문조사시, 이에 대한 자료와 편의를 제공한다.
5.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과 수용자(진정인)와의 면회시 교도헌병이 입회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할 수 없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6. 구치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전향의 내용을 교육하여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 진정서 관리 및 조치

1. 진정서는 개봉할 수 없으며, 봉합된 상태로 국가인권위원회로 송부한다.
2.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명의를 회신 중 열람금지를 요청한 서신에 대해서는 교도관계관의 열람을 금한다.
3. 수용자의 진정서 작성 등의 의사표명시 교도관계관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4. 구치소장은 수용자(진정인)에게 진정사실과 관련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5. 수용자가 징벌위원회의 조사 중 이거나, 징벌중일 지라도 진정서 작성 등의 기회를 부여하여 진정권을 보장한다.

방문한 모든 영창의 경우 영창 내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있었다.

00부대 영창의 경우에는 부당한 처우를 받을 시 작성하도록 진정함 및 진정양식을 비치하고 있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권에 관한 내용을 윤독시킨 후 서명을 받아 문서로 첩하고 있었다.

00부대의 영창의 경우에도 수용자 입감전 일과표, 주간교육예정표, 국가인권위원회법, 진정권, 군행형법시행령 등을 고지하고, 이를 고지여부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

하여 서명을 받아 문서로 첩하고 있었다. 또한 진정함 옆에 진정서를 비치하고 있었다.

다만 진정함 설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이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구금·보호시설 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치장소의 경우에는 영창에 따라 거실별(수용실별)로 설치한 부대, 근무병이 근무하는 복도에 설치한 부대 등으로 나뉘어졌다. 또한 진정함만 설치된 영창도 있었으며 진정함과 진정서를 함께 설치한 영창도 있었다. 필기도구와 봉합용봉투를 비치하고 있는 영창은 없었다.

참고로 00부대의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진정권 관련 안내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00부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진정권 관련 안내문
1. 수용자가 수용 중 인권침해 행위를 당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진정의 방법은 서면에 의한 방법과 면담(대면)에 의한 진정이 있다. 3. 서면에 의한 진정은 구치소내 비치된(진정서 양식) 및 봉합용 봉투를 사용하여 진정인이 직접 작성·봉합하여 진정함에 투여,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4. 면담(대면)에 의한 진정은 진정인이 위원회 소속 위원 또는 직원 면전에서 구두로 진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를 교부받는다. 5. 진정에 관한 의사표시 및 진정신청을 방해받을 수 없으며, 수용자는 진정으로 인한 신체·건강상 위해나 기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 난방시설

공군의 경우 공군규정 141 제97조 4호에 “난방은 보일러 시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일러실의 출입문은 건물 외부에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난방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영창이 온돌보일러 또는 라디에이터(스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영창의 온도와 관련하여 ‘매우 추위 생활하기 불편하다’ 2명, ‘추운편이다’ 6명,

‘보통이다’ 12명, ‘생활하기에 적당하다’ 24명으로 대체적으로 생활할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춥다고 응답한 경우는 새벽 등 난방시간대가 아닌 경우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표 2-39〉 영창의 온도

내용	인원
매우 추워 생활하기 불편하다.	2
추운편이다.	6
보통이다.	12
생활하기에 적당하다	24
기타	-
계	44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 따르면 영창의 온도는 보통 17~18, 20~22℃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시기는 규정에 따라 보통 채난기인 당해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로 되어있으나, 수용자를 배려하여 근무현병 내무실보다 더 일찍 난방을 한 부대도 있었으며, 온도에 따라 수시로 난방을 해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현병부대 지휘관에 따라서는 기온에 따라 미리 난방을 하는 영창도 있었다. 난방시간대는 중앙난방인 경우 보통 현병대 난방시간에 따라 실시하고 있었다.

3. 영창의 밝기/ 환기

(1) 밝기

영창의 밝기와 관련하여 ‘어둡다’ 8명, ‘보통이다’ 16명, ‘밝다’ 17명, ‘매우 밝다’ 1명이었다. 채광시설이 잘되어 있는 신축영창의 경우에는 밝은 편이었으며, 채광시설이 나 영창 거실 내에 형광등이 없고 복도에만 있는 영창의 경우에는 어두운 편이었다. 지하에 위치한 영창의 경우에도 의외로 밝다는 응답이 많았다.

어두운 영창의 경우에는 본 연구진이 시정을 권고하였다.

〈표 2-40〉 영창의 밝기

내용	인원
매우 어둡다.	-
어둡다.	8
보통이다.	16
밝다.	17
매우 밝다.	1
계	42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영창이 어둡다는 응답은 없었다.

(2) 환기

영창내 환기상태는 어떠한냐는 질문에 ‘환기가 매우 잘된다’ 5명, ‘잘되는 편이다’ 23명, ‘보통이다’ 12명, ‘환기가 되지 않는 편이다’ 14명으로 대체적으로 영창내 환기가 괜찮다는 응답을 하였다. 영창에 따라서는 환풍기를 설치하여 환기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었다. 지하에 위치한 영창의 경우에도 환기가 대체적으로 잘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환기가 잘 되지 않는다는 영창은 화장실이 거실 내에 위치한 영창의 경우에 그 응답수가 많았으며, 특히 보온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문을 비닐로 폐쇄한 영창의 경우에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1〉 영창의 환기

내용	인원
환기가 매우 잘된다.	5
잘되는 편이다.	23
보통이다.	12
환기가 되지 않는 편이다.	14
환기가 되지 않아 공기가 탁하다.	-
계	44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는 환기상태가 보통 이상이라고 거의 모두 응답하였으나 보통이거나 환기가 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영창에 따라서는 환기를 위해 환풍기를 설치한 곳도 있었으며, 영창내 쾌적한 공기를 위해 방향제를 설치한 영창도

있었다.

(3) 취침시 영창 밝기

취침시 영창내의 밝기는 어느 정도이냐는 질문에 ‘불편하지 않다’ 33명, 기타 9명으로 대체적으로 취침시 조명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타의 경우 근무자가 위치한 조명이 너무 밝아 불편하다는 내용도 있었으며, 또한 취침시 거실내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 쇠창살 소리 때문에 불편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수용자에 대한 수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조명에 대한 배려와 함께 쇠창살 소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²²⁾

〈표 2-42〉 취침시 영창 밝기

내용	인원
취침등만 켜고 취침하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다.	33
모든 조명을 다 켜고 취침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
기타	9
계	42

(4) 습도

영창내 습도와 관련하여 ‘습기가 조금 있다’ 5명, ‘보통이다’ 33명, ‘습기가 차지 않는다’ 5명, 기타 1명이었다. 습기에 따른 영창내 생활은 그리 불편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영창이 지하에 위치한 영창의 경우에도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습기가 조금 있다는 응답이 1명이어서 지하에 다른 습도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참고로 “안양교도소와 청송제2교도소에서 수용자 취침시간에 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수면권 침해”라며 조모씨가 2003년 5월과 6월 안양교도소장 및 청송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양교도소장과 청송제2교도소장에게 폭행·자살·자해·도주 등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 취침시 조도를 낮출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두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일선 교정기관이 조명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용자의 수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전국 교정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교정시설 거실 내 조도와 관련 법무시설기준규칙(법무부훈령 제475호)은 ‘취침 전 30lux 이상, 취침 후 60 lux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1. 26 보도자료 참조).

〈표 2-43〉 영창의 습도

내용	인원
습기가 많이 있다.	-
습기가 조금 있다.	5
보통이다.	33
습기가 차지 않는다.	5
기타	1
계	44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습도와 관련하여 보통이거나 습기가 차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4. 화장실 이용

(1) 화장실 위치

영창내 화장실의 위치는 각 영창에 따라 영창 거실 내에 위치한 곳도 있었고, 거실 밖에 위치한 곳도 있었다.

특별한 것은 00부대 영창의 경우 거실 내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취침시에는 소변통을 제공해 주고 있었다.

(2) 화장실 청결상태

화장실의 청결상태에 대해서는 ‘매우 청결하다’ 12명, ‘청결한 편이다’ 20명, ‘보통이다’ 11명, ‘불결하다’ 1명이었다. 화장실 청소의 경우 수용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화장실 청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2-44〉 화장실 청결상태

내용	인원
매우 청결하다.	12
청결한 편이다.	20
보통이다.	11
불결하다.	1
매우 불결하다.	-
기타	44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도 매일 점호준비와 개인정비를 통하여 화장실 청결을 유지한다고 응답하였다.

(3) 화장실 구조

화장실 구조와 관련하여 ‘높이가 낮아 수치스럽다’ 13명,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라 수치스럽지 않다’ 19명,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이기는 하나 이용시 큰소리로 숫자 등을 외치게 해 수치스럽다’ 1명, 기타 9명이었다.

〈표 2-45〉 화장실 구조

내용	인원
높이가 낮아 수치스럽다.	13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라 수치스럽지 않다.	19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이기는 하나 이용시 큰소리로 숫자 등을 외치게 해 수치스럽다.	1
기타	9
계	42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경찰서 유치장의 화장실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보통의 평범한 성인인 청구인들로서는 내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역겨운 냄새, 소리 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용변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 때마다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고 나아가 생리적 욕구까지도 억제해야만 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사건 청구인들로 하여금 유치기간동안 위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비인도적·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록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²³⁾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후 영창의 경우에도 거실내 화장실의 경우에는 모두 높이를

조절하여 용변을 볼 때에는 머리 부분정도가 보이는 정도의 높이였으며, 00부대 영창의 경우에는 실내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용변시 신체 전체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개조하였다.

00부대 영창의 경우에는 영창 거실 밖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좌변기의 출입문이 없이 간이 칸막이를 사용하여 앞이 터져 있는 구조라 용변시 매우 수치스러운 구조로 되어 있었다.

00부대 영창의 경우에는 거실내 화장실이 양변기가 아닌 좌변기 구조로 되어있어 용변시 냄새와 소리로 인해 인격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화장실이용과 관련한 건의사항에도 용변시 환기가 안되어 냄새가 많이 난다는 내용도 있었으며, 영창에 따라서 사용한다고 큰소리를 외친다거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용자번호를 외친다는 영창도 있었다.

화장실 문의 높이가 낮은 이유는 영창관리자의 말에 의하면 모두 자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하나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화장실 문의 높이가 낮은 영창의 경우에는 본 연구진이 높이를 더 올려달라는 권고를 하였다.

(4) 화장실 이용 방법

23) 현재결 2001. 7. 19. 2000헌마546. 이 사건 청구인들 유치당시(그 후 이 사건 화장실은 개수되었다) 이 사건 화장실의 구조는 장방형으로서 2개면은 천장까지 이어져 있는 유치실 벽면에 붙어 있고, 나머지 2개면 중 1개면은 그 높이가 거실 바닥으로부터 약 76cm인 차폐벽으로, 유치실 전면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나머지 1개면은 같은 높이의 차폐벽과 그 높이가 거실 바닥으로부터 약 74cm인 화장실문으로 가려져 있었고(그러나 화장실 바닥이 거실 바닥보다 약 12cm 더 낮다), 화장실문에는 그 상단으로부터 약 4cm아래의 위치에 가로 약 30cm, 세로 약10cm의 직사각형의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차폐벽이나 화장실문의 윗 부분은 거실과의 사이에 차폐시설이 없이 개방된 구조이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사용하는 방식의 수세식변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화장실이나 유치실내에는 창문 등의 별도의 환기시설도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인들이 용변을 볼 때는 그 소리와 냄새가 같은 유치실내 거실로 직접 유출될 수 있고, 옷을 벗고 입는 과정에서 둔부 이하가 이 사건 유치실 내의 다른 동료 유치인들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유치실 밖에 있는 같은 층의 경찰관들이나 특히 유치실을 앞쪽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2층에 있는 경찰관들에게는 옷을 추스르는 과정에서 허벅지 등이 보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화장실 이용방법과 관련하여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하여 불편하다’ 2명, ‘언제든지 헌병에게 이야기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하지 않다’ 29명, ‘헌병의 허락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불편하다’ 11명, 기타 2명이었다. 기타의 내용으로는 ‘소변은 정해진 시간에, 대변은 영창근무헌병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내용과 ‘휴식시간까지 기다려서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내용 등이었다.

〈표 2-46〉 화장실 이용방법

내용	인원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하여 불편하다.	2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하지만 불편하지 않다.	-
언제든지 헌병에게 이야기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하지 않다.	29
헌병의 허락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불편하다.	11
기타	2
계	42

화장실 이용과 관련하여 거실내 위치한 경우에는 근무자에게 보고와 동의를 구해야 하기는 하지만 근무자가 일일이 문을 열어주고 잠그는 불편한 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용자가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화장실 사용시 냄새와 소리에 따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거실밖에 화장실이 위치한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시 냄새와 소리에 따른 수치심의 부담은 없으나, 근무자가 일일이 문을 열고 따라가서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자의 기분에 따른 통제가 따를 수 있고 수용자가 이용에 따른 부담감을 가져 경우에 따라서 휴식시간까지 참을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²⁴⁾

(5) 화장지 사용

화장실 이용시 화장지 사용과 관련하여 ‘헌병이 제공해 주니까 부족하다’ 2명, ‘헌병이 제공해 주긴 하지만, 충분하다’ 18명, ‘본인이 알아서 가져가기 때문에 충분하다’ 19명, 기타 5명은 간부들의 경우 화장지 부족한 경우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한다고 기재하였다. 화장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불편한 것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24) 국가인권위원회, 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 파악, 46면 참조.

〈표 2-47〉 화장지 사용

내용	인원
헌병이 제공해 주니까 부족하다.	2
헌병이 제공해 주긴 하지만, 충분하다.	18
본인이 알아서 가져가기 때문에 충분하다.	19
기타	5
계	44

(6) 화장실 사용금지

영창에서 체벌수단으로 화장실 이용을 금지 당한 적이 있느냐와 관련하여 ‘있다’ 2명, ‘없다’ 23명이었으며 ‘있다’의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어 어떠한 형태의 체벌로 이용되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체벌수단으로 화장실 이용을 금지 당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밖의 화장실 사용과 관련하여 건의하고 싶은 내용으로는 ‘화장실(대·소변) 모두 자유롭게 이용’, ‘화장실의 높이가 낮다’, ‘악취’, ‘청소도구 부족’, ‘청소세제부족’ 등이었다.

5. 신체위생

(1) 세면도구 지급

영창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면도구는 비누, 치약, 칫솔, 화장품, 수건 등이었으며 면도기의 경우에는 자해의 위험성 때문에 헌병이 일괄보관하고 면도시에만 지급하고 있었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기본적인 것은 수용자가 자대에서 가져오고, 부족한 경우에는 헌병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입창할 때부터 헌병대 인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보급품을 헌병대에서 지급한다.

해군의 경우 구치소업무규정 제48조에 “일용품은 수용자의 원소속 부대에서 신입소시 휴대조치해야 하며, 휴대물품으로는 세면도구, 필기구, 화장지 등이며, 1개월 이

상 수용자에 대해서는 구치소 운영 헌병대에서 일괄청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세면시간

세면·세족 시간과 관련하여 ‘충분하다’ 24명, ‘보통이다’ 15명, ‘충분하지 못하다’ 3명, 기타 1명으로 대체 적으로 시간이 그리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8〉 세면시간 정도

내용	인원
충분하다.	24
보통이다.	15
충분하지 못하다.	3
부족하다.	-
매우 부족하다.	-
기타	1
계	43

(3) 목욕/샤워

군행형법 제22조에는 목욕과 관련하여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4조에는 목욕횟수와 관련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는 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소장이 정하되 6월부터 9월까지의 5일에 1회 이상, 10월부터 5월까지의 7일에 1회 이상의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군의 경우에는 공군규정 14-1 제69조에 “수용자 목욕횟수는 제한 없이 허용하고, 신입자는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즉시 목욕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에는 구치소업무규정 제52조 1.에 “수용자의 목욕 횟수는 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치소장이 정하되, 6월부터 9월까지 5일에 1회 이상, 10월부터 5월까지의 7일에 1회 이상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목욕/샤워 시설 구비

목욕시설의 경우 각 영창에 따라 신축한 영창의 경우에는 목욕탕이 구비되어 있었으나, 오래된 영창의 경우에는 영창 내에 독립된 목욕탕이 구비되어 있지 못해 현병대 병사들이 사용하는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었다.

- 횟수

목욕이나 샤워의 횟수는 ‘매일’ 32명, ‘주 1회’ 6명, ‘기타’ 5명으로 목욕이나 샤워는 대체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9〉 목욕/ 샤워 횟수

횟수	매일	주 1회	주 2회	2주 1회	하지 못함	기타	계
인원	32	6	-	-	-	5	43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샤워의 경우에는 개인정비시간이나 세면시간대 수용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세면시설이 거실 내에 위치한 영창의 경우에는 간단한 샤워 정도는 수용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 시간

목욕이나 샤워시간의 경우에는 ‘충분하다’ 38명, ‘그렇지 못하다’ 5명으로 대체적으로 10~30분 사이의 시간을 주는데 그리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0〉 목욕/샤워 시간

목욕/샤워시간이 충분한지 여부	인원
그렇다.	38
그렇지 못하다.	5
계	43

(4) 수건 사용

수건의 사용의 경우에는 공동사용 한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모두 개인적으로 하나씩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수건건조의 경우 실내에서 건조하는 영창이 있어 이에 대해 일괄소독을 권고하였다.

(5) 세탁

- 세탁횟수 및 방법

세탁과 관련하여 속옷세탁의 경우에는 세면시나 개인정비시간에 대부분 세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복의 경우에는 보고후 세탁하거나 1주일에 1회씩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영창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세탁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이 좋은 영창의 경우에는 수용자를 위해 세탁기를 구비하고 있어 세탁기에 빨래를 넣어 놓으면 근무헌병이 세탁해 주는 영창도 있었다.

세탁장소의 경우에는 거실 내에 세면시설이 되어 있는 영창의 경우에는 이 곳에서 세탁하고 있으며, 세면장이 따로 거실밖에 구비되어 있는 영창 경우에는 이곳에서 세탁하였다.

- 세탁시간

세탁할 시간에 대해서는 ‘매우 충분하다’ 5명, ‘충분하다’ 23명, ‘보통이다’ 10명, ‘부족하다’ 3명, ‘매우 부족하다’ 2명으로 대체적으로 그리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2-51〉 세탁시간

내용	매우 충분	충분	보통	부족	매우 부족	계
인원	5	23	10	3	2	43

(6) 면도

면도와 관련하여 군행형법 제21조는 “수형자의 수염은 짧게 깎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3조는 “수염은 10일에 1회 이상 깎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군과 해군의 규정에는 수염은 10일에 1회 이상 깎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도의 경우에는 ‘세면시 언제든지’ 13명, ‘2일에 1회’ 2명, ‘3일에 1회’ 12명, ‘1주일에 1회’ 9명, ‘거의 하지 않고 영창에 특별한 사람이 올 때만 한다’ 1명, 기타 7명(5일 1회, 원할 때 언제든지 등)으로 나타났다. 면도의 경우에도 비교적 자주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2-52〉 면도횟수

내용	인원
세면시 언제든지	13
2일에 1회	2
3일에 1회	12
1주일에 1회	9
거의 하지 않고 영창에 특별히 사람이 올 때만 한다.	1
기타	7
계	44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면도의 경우 주 2회 실시, 5일 1회 실시, 필요시 수시로, 매일 저녁하고 하고 싶은 인원제 한해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발과 관련하여 군행형법 제21조는 “수형자의 머리카락은 짧게 깎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3조는 “수용자의 두발은 1월에 1회 이상 깎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영창방문시에 두발이 지저분하거나 긴 수용자는 없었다.

6. 침구/ 의복/ 위생용품

(1) 침구지급 정도

침구지급과 관련하여 군행형법 제17조 제1항은 “수용자에게는 의류와 이부자리를 급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의류와 이부자리는 계절과 수용자의 건강유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 제1항에는 “수용자가 사용하는 의류 및 이부자리의 수는 품목별로 1인에 대하여 1매로 한다, 다만 공동사용품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침구지급과 관련하여 육군의 경우 육군규정 155 제185조에는 “수용자에게는 일정

한 의류와 침구를 급여하고, 침구에 관한 사항은 수용자 피복소지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군의 경우 공군규정 141 제64조에는 "영창에는 수용능력, 인원수에 따라 침구류를 비치하여야 하고, 침구류는 공군 지급품목으로 한다. 다만 시트류 사용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창에서 지급되는 침구가 어떠한지는 질문에 ‘부족하다’ 2명, ‘보통이다’ 15명, ‘충분하다’ 19명, ‘매우 충분하다’ 8명으로 침구류 지급 정도는 그다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3〉 침구지급정도

내용	인원
매우 부족하다.	-
부족하다.	2
보통이다.	15
충분하다.	19
매우 충분하다.	8
계	44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 따르면 미결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침구류는 보통 모포의 경우 2개 내지 4개 정도였으며 1개만 지급하는 영창도 있었다. 매트리스와 베개는 모두 1개씩 지급하였고, 방석을 따로 지급하는 영창도 있었다.

(2) 침구청결상태

침구의 청결상태에 대해서는 ‘매우 불결하다’ 3명, ‘불결하다’ 6명, ‘보통이다’ 23명, ‘깨끗한 편이다’ 10명, ‘매우 깨끗하다’ 2명으로 나타났으며, 불결하다는 응답도 20%나 되어 침구의 청결상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용자가 많은 영창의 경우에 불결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2-54〉 침구청결상태

내용	인원
매우 불결하다.	3
불결하다.	6
보통이다.	23
깨끗한 편이다.	10
매우 깨끗하다.	2
계	44

(3) 침구류 일광소독

해군의 경우 구치소업무규정 제52조 2 3.에 “주 1회 이상 침구의 일광소독을 실시하고 파손부분을 보수하여야 하며, 피복은 수시로 세탁후 건조시켜 깨끗하게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침구를 얼마나 자주 말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언제든지 말릴 수 있다’ 3명, ‘1주일에 1회’ 16명, ‘2주일에 1회’ 2명, ‘말릴 수 없다’ 10명, 기타 13명으로 ‘월 1~2회’, ‘두달에 한번’, ‘보고후 허락시’, ‘자주말림’, ‘관리자 마음대로’ 등의 내용이었다. 1주일에 1회의 응답이 많은 것은 일반사병과 마찬가지로 토요일날 내무검사준비를 하면서 일광소독을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만 말릴 수 없다는 응답 비율도 22.7%나 되어 침구류 일광소독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55〉 침구류 일광소독

내용	인원
언제든지 말릴 수 있다.	3
1주일에 1회	16
2주일에 1회	2
말릴 수 없다.	10
기타	13
계	44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보통 1주일에 1회 내지 수시로 말린다고 대부분 응답하였다. 침구류 세탁과 관련해서는 영창에 따라 분기 내지 반기 1회로 보통의 경우 현병대 세탁을 할 때 통합세탁 한다고 응답하였다.

영창에서는 수시로 수용자가 교체되기 때문에 청결유지를 위해 수시로 세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미결수용자 의복

영창에서 수용자의 피복착용은 현역군인에 준하되, 허리띠, 군화 등 안정상 유해로운 것은 착용을 금한다.

영창에서 입는 의복은 자대에서 입던 본인의 전투복을 모두 입고 있었으며, 군무이탈로 체포된 수용자의 경우에는 자대에서 전투복이 올 때까지 현병에서 지급하는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다만 00부대의 경우에는 군무복이 전투복이 아니기 때문에 영창에 수용할 때 전투복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군무원의 경우에도 사복 대신에 전투복을 영창에서 지급하여 입고 있었다.

참고로 해군의 경우 구치소업무규정 제43조에 수용자 피복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품목	단위	지급기준	물품상태	비고
전투복	작	1	보수품	
전투모	개	1	개인피복	
런닝	매	2	〃	
팬티	〃	2	〃	
모양말	족	2	〃	
교무신	〃	1	구매지급	
동내의	작	1	개인피복	

7. 감시

영창 내의 감시는 대부분 현병군무병 2명이 상주하면서 1명은 감시대에 1명은 복도에 위치하는 형태로 수용자를 감시하고 있었다. 규모가 작은 영창의 경우에는 군무

병 1명이 근무대에서 상주하며 감시하고 있었다. 보통 2명이 영창내에 근무하는 영창의 경우에는 2시간 단위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다.

모든 영창이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영창에 따라 수용자의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근무자만 감시하는 영창도 있었으나, 수용자 및 근무헌병 모두를 감시하고 있는 영창도 있었다. 다만 영창의 경우에는 군 구금시설의 특성상 감시카메라가 사생활의 보호측면보다는 근무병의 가혹행위나 구금자 간의 폭행과 같이 영창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²⁵⁾

모니터의 경우에는 지휘관실, 작전장교(형무담당관), 당직대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었으며 24시간 감시하는 형태였다.

공군의 경우에는 공군규정 141 제97조 6호에 “CCTV의 모니터는 당직대, 교도반장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용자 관리책임자인 헌병대장실에 추가 설치시에는 밀폐형 보관함을 제작 비치하여 수용자의 생활이 일반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육군의 경우 육군규정 155 제179조에 수용시설 경비요령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가. 수용시설내의 출입을 엄중히 하고 출입 수용자에 대하여 신체와 의류를 검사한다.
- 나. 형무장교, 형무담당관, 근무병 이외 지휘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수용시설 내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 다. 무기를 휴대하고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 라. 경계병은 담배와 인화물질을 휴대하고 근무할 수 없다.
- 마. 책임장교는 1일 1회 이상 거실을 검사하여야 한다.
- 바. 전항 이외의 사항은 보조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에 의한다.

8. 일과

(1) 각군 영창 일과표

영창의 일과는 군행형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각군 규정에 일과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5) 국가인권위원회, 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현황파악, 54면 참조

육군의 경우 육군규정 155 붙임 #21에 일과표를 규정하고 있다.

육군 표준 일과표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비고
아침	06:00~0630	기상 및 일조점호							근무자
	0630~07:00	세면 및 청소							근무자
	07:00~08:00	조식							근무자
오전	08:00~09:00	수양 정좌	수양 정좌	수양 정좌	수양 정좌	수양 정좌	내무검 사준비 및 실시	종교 행사	형무부사관
	09:00~10:00	독서	제식 훈련	독서	독서	독서			전담분대장 형무부사관
	10:00~11:00		독서			교화위 원초청 대화설 교			담당교관
	11:00~12:00			군법					특별정 훈
	12:00~13:00	중식							근무자
오후	13:00~14:00	체력 단련	제규정 교육	체력 단련	제식 훈련	제규정 교육	내무검 사결과 시정	자기 반성	소대장 형무부사관
	14:00~15:00	독서	독서	독서	독서	창의 제안	전담분대장 형무부사관		
	15:00~16:00						전담분대장		
	16:00~17:00	수양 정좌	수양 정좌	수양 정좌	수양 정좌	수양 정좌	형무부사관		
야간	17:00~18:00	석식							근무자
	18:00~19:00	개인정비							근무자
	19:00~20:00	TV/VTR 시청							근무자
	20:00~21:00	수양록 작성/ 반성시간							근무자
	21:00~22:00	점호/ 명상의 시간							당직사관
	22:00~06:00	취침							근무자

※ 단, 징계처분자인 경우 1) 독서시간을 체력단련시간으로 활용
2) 수양시간을 반성문 작성시간으로 활용

이러한 일과표도 육군규정 155 제197조에는 수용자관리부대 지휘관 재량에 의거조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영창의 경우 동계일과표와 하계일과표가
구분되어 있었으며, 부대 사정에 따라서 일과표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해군구치소의 경우에는 해군규정 구치소업무규정 제58조 미결수용자의 일과표 규정
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일과를 규정하고 있다. 해병대 영창도 해군 규정에 따라 일
과표가 정해진다.

해군 계룡대 근지단 헌병대대 구치소 수감자 일과현황(동절기)

시간	내용	세부실시사항
0630	출기상	하절기 06:00
06:30~07:00	실내정돈, 체조, 세면	
07:00~08:00	조식 및 개인운동	
08:00~09:00	정좌세심 및 방송청취	국군방송청취
09:00~12:00	오전과업	독서 및 한문공부
12:00~13:00	중식 및 개인운동	국방일보 신문 구독
13:00~17:00	오후과업	독서 및 한문공부
17:00~18:00	석식 및 개인운동	
18:00~19:00	개인정비	
19:00~20:00	석별과업	독서 및 한문공부
20:00~2030	수양록작성	
20:30~21:00	점호준비	
21:00~21:30	TV시청	
21:30~22:00	점호 및 취침	

공군은 공군규정 14-1(헌병업무) 제34조에 의거하여 수용자 일과시간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군 피결수용자 일과시간표

시간	일과내용
06:00~06:30	기상 및 일조점호
06:30~07:00	세면 및 청소
07:00~08:00	조식
08:00~09:00	정신수양
09:00~11:00	교육(군법, 인격지도 등)
11:00~12:00	일량육 및 실외운동
12:00~13:00	중식
13:00~14:00	교양활동
14:00~16:00	독서
16:00~17:00	영창검사
17:00~18:00	석식
18:00~19:00	개인정비
19:00~20:00	TV·VTR 시청 및 신문구독
20:00~21:00	교양활동
21:00~21:30	건강상태 확인
21:30~22:00	일석 점호 및 명상의 시간
22:00~06:00	취침

(2) 일과표 준수여부

영창일과표는 각 거실내에 부착하고 있었다.

영창의 일과는 규정대로 행하여지느냐 하는 질문에 '그렇다' 36명, '일과는 규정대로 이루어지지만 일과표와 그 내용은 다르다' 6명, 기타 1명으로 '진행되지 않는 일과도 있다' '근무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내용이었다. 대체적으로 일과에 의거하여 일과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6〉 일과표 준수여부

내용	인원
그렇다.	36
일과는 규정대로 이루어지지만 일과표와 그 내용은 다르다.	6
현병 마음대로 이루어진다.	1
일과표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다.	-
기타	1
계	44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도 대체적으로 일과표대로 영창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대사정(훈련 등) 등으로 일과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3) 일과에 대한 건의

영창의 일과와 관련하여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내용으로는 ‘샤워시간 전에 간단한 운동’, ‘도서의 수시교체’, ‘필기도구 일과시간 지급’, ‘자격증 취득 등 시험공부 허용’ 등의 내용이었다.

9. 식사

(1) 식사 장소/ 시간

영창에서의 식사장소는 독립된 식당을 구비한 영창의 경우에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독립된 식당이 구비되지 못한 영창에서는 각 거실 내에서 식사를 하였다.

영창에서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하느냐와 관련하여 ‘그렇다’ 33명, ‘그런 편이다’ 11명으로 정해진 시간에 식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7〉 식사시간 준수여부

내용	인원
그렇다.	33
그런 편이다.	11
그렇지 않다.	-
기타	-
계	44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특별히 00부대의 경우 미결수용자는 도주 등 제2사고의 발생우려가 있어 거실 내에서 식사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2) 급식 수준

식량의 급여와 관련하여 군행형법 제18조는 “수용자에게는 체질·건강·연령 및 작업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식량을 급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는 “식사량의 급여의 기준은 현역군인의 급식기준에 준하고, 기타 식량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군 영창관리규정에도 수용자의 급식수준은 현역군인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주류와 연초를 급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창의 급식수준에 대해서는 ‘자대 보다 좋다’ 3명, ‘자대와 같은 수준이다’ 21명, ‘자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16명, ‘자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4명으로 나타났다. 자대에 비해 낮다는 응답비율이 45.4%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의 경우에는 수용자가 많은 영창과 헌병대에 독립된 취사시설이 없어 타 부대에서 식사를 추진하는 영창에서 많은 응답이 나왔다.

〈표 2-58〉 급식수준

내용	인원
자대보다 좋다.	3
자대와 같은 수준이다.	21
자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16
자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4
기타	-
계	44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영창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도 헌병사병들이 먹는 식사와 같은 수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3) 식사량

영창의 식사량에 대해서는 ‘매우 충분하다’ 7명, ‘충분하다’ 15명, ‘보통이다’ 19명,

‘부족하다’ 3명으로 나타나, 식사량의 경우에는 그리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부족하다는 응답은 수용자가 많은 영창의 경우이다.

〈표 2-59〉 식사량

내용	인원
매우 충분하다.	7
충분하다.	15
보통이다.	19
부족하다.	3
매우 부족하다.	-
계	44

헌병이 식사를 너무 조금 주어 배고픈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간혹 있다’ 5명, ‘없다’ 37명, 기타 2명으로 ‘반찬의 양이 적다’, ‘국이 식어서 온다’는 내용이었다.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식사량이 충분히 제공된다고 하였다. 다만 자율배식이 아니라 헌병이 식판에 식사를 배식하는 영창의 경우에는 식사량이 부족할 위험이 있다. 00부대의 영창의 경우에는 식사를 추진할 때에 수용자를 배려하여 보온통을 구비하여 음식이 식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4) 배식방법

영창에서의 식사배식 방법은 각 영창마다 조금씩 달랐다. 수용자가 적은 영창의 경우에는 헌병이 직접 식판에 배식하였으며, 수용자가 많은 영창의 경우에는 자율배식과 함께 선호 반찬의 경우에는 헌병이 직접 배식하는 방법, 징계입창자가 배식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특히 수용자가 많은 영창의 경우에는 거실별로 식사배식 당번이 정해져 자체배식을 하고 있었다.

또한 식사장소와 관련해서는 독립식당이 있는 곳에서는 수용자 자율배식 내지는 헌병배식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거실 내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헌병이 식판에 배식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특히 거실 내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탁자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한 자세

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식사관련 가혹행위

헌병이 식사를 지나치게 많이 주면서 강압적으로 남기지 못하게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두 '없다'라는 응답을 하였다.

헌병이 식사를 남긴다고 가혹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두 '없다'고 응답하여, 헌병이 식사와 관련하여 가혹행위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물 제공

영창에서 식사시 마실 물은 충분히 제공되느냐와 관련하여 '충분히 제공된다' 30명, '보통이다' 12명, 기타 2명으로 대체적으로 충분히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0〉 물 제공

내용	인원
충분히 제공된다.	30
보통이다.	12
부족한 편이다.	-
매우 부족하다.	-
기타	2
계	44

(7) 간식 제공

영창에서도 자대에서도 같이 식사 외에 간식(음료수, 과일 등)이 제공되느냐는 질문에 '제공되지 않는다' 17명, '규정에 따라 제공된다' 26명으로 나타났다.

〈표 2-61〉 간식제공

내용	인원
제공되지 않는다.	17
제공되나, 헌병이 경우에 따라서는 주지 않는다.	-
규정에 따라 제공된다.	26
기타	1
계	44

영창관리자 면접조사결과 식사외 간식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수용자가 상근예비역인 경우로서 상근예비역의 경우에는 자대에서도 점심만 제공되고 아침, 저녁 식사와 기타 부식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영창에 따라서는 징계입창자에게는 부식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미결수용자에게만 지급할 수 없어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8) 식기세척

식사 후에 식기 세척과 청소의 경우에는 각 부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였는데, 대부분의 영창이 개인식기는 개인이 세척하였으나 영창에 따라서는 식판과 식판 식당 등의 청소를 징계입창자가 모두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두 곳의 영창은 식기세척기가 구비되어 있어 수용자가 식기세척을 직접 하지 않고 있었다.

(9) 식사시 감시

식사 중 현병의 감시가 심하여 불편했던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5명, '없다' 31명, 기타 1명으로 '근무자에 따라 간혹 있다'는 내용이었다. 감시에 따른 식사시 불편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있다는 응답도 소수가 있어 식사시 감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62〉 식사시 감시에 따른 불편

식사 감시에 따른 불편	인원
있다.	5
없다.	31
기타	1
계	37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식사시만큼은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수저 은

닉 등의 여부만을 감시한다고 응답하였다.

(10) 기타 식사관련 건의사항

식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내용으로는 '수용자가 많은 경우에 식사가 부족하다', '식사시 옆 사람과 간격이 좁아 불편하다', '식탁수가 부족하다', '머리를 조금 숙여도 현병이 지적한다', '수용자간 대화가 금지된다', '먹을 때만이라도 편하게 먹고 싶다' 등의 내용이었다.

10 면회/ 서신/ 전화

(1) 면회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면회의 횟수)는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는 매주 2회로 하되, 참모총장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변호인과의 면회는 그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2002년 4월 25일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졌으며,²⁶⁾ 이에 따라 영창에서도 매일 면회가 허용되었다. 또한 이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3년 11월 27일, 동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제75조에 위반될

26) 헌재 2002. 4. 25. 2002헌사129(가. 면회제도는 피구속자가 가족 등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적절히 개방, 유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파멸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조력하고자 존재하는 것으로 군행형법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들의 면회의 권리를 행형법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매일 1회 면회할 수 있는 피구속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면, 군행형법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자들은 이로 인하여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이나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행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나. 위 규정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군인의 신분이거나 군행법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가 외부인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공소제기나 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국가방위와 관련된 중요한 국가기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수용기관은 면회에 교도관을 참여시켜 감시를 철저히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면회를 일시 불허함으로써 증거인멸이나 국가기밀누설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을 인용한다 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집견교통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²⁷⁾

각 군 영창관리 규정에는 수용자의 면회는 일과 시간 내에 매일 1회, 3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행형법 제15조에는 “수사중인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검찰관이 이를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횃수

영창에서 면회 횃수에 대해서는 ‘매일 할 수 있다’가 대부분이었으나 ‘모른다’도 5명이나 있어 입창시에 이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면회시간

군행형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는 “면회시간을 3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변호인과의 면회의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회 시간에 대해서는 ‘30분 이내’ 31명, ‘부대 상황이나 피의자에 따라 일정치 않음’ 1명, ‘수용자가 원하는 시간동안 자유롭게’ 3명, ‘모르겠다’ 6명, 기타 2명으로 ‘면회시간이 짧다’, ‘제한 당한 적이 없다’ 등으로 대부분 규정에 따라 30분 이내로 면회가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3〉 면회시간

내용	인원
30분 이내	31
1시간 이내	-
1시간 30분	-
2시간 이내	-
2시간 이상	-
부대상황이나 피의자에 따라 일정치 않음	1
수용자 원하는 시간동안 자유롭게	3
모르겠다.	6
기타	2
계	43

27) 헌재 2008. 11. 27, 2002헌마198.

영창관리자의 면접조사에 따르면 규정대로 면회가 이루어지나, 원거리에서 부모 등 보호자들이 면회를 온 경우에는 시간상 배려를 해 준다고 하였다.

- 면회장소

면회장소와 관련하여 군행형법시행령 제45조는 “면회장소와 관련하여 면회는 면회실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회실외의 장소에서 면회하게 할 수 있고, 수용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가 아니면 그 거실에서 면회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군과 해군의 규정에도 원칙적으로 면회장소는 면회실로 규정하고 있고, 헌병대장은 필요시 면회실 외의 장소에서 면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회장소는 영창마다 달라 면회실을 따로 구비하고 있는 영창도 있었으나, 식당을 면회장소를 활용하는 부대도 있었다. 면회실의 구조는 영창에 따라 시설의 격차가 너무 심하였다. 00부대 영창의 면회실은 차단막이 없이 휴게실과 같이 매우 안락하게 되어있었으나, 00부대 영창의 면회실의 경우는 매우 좁고 웅색하여 면회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 면회자유

군행형법 제15조 제3항에는 “수용자의 면회에는 교도관의 참여를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군의 경우 공군규정 14-1 제44조 제3항에는 “수용자의 면회는 영창근무자의 참여를 요한다. 다만 변호인 면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 구치소업무규정 제34조에는 “1. 수용자와의 면회는 교도헌병이 반드시 참관하여야 하며, 면회부에 직업, 성명, 연령, 수용자와의 관계, 면담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면회를 원하는 자가 당해 사건의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 포함)인 경우에는 면회에 교도헌병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듣거나 녹음하지 못한다. 변호인의 성명과 주소만을 기록하고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회가 자유스러웠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자유스러웠다’ 2명, ‘자유로운 편이다’ 19명, ‘입회헌병이 있어 자유스럽지 못하였다’ 12명, ‘입회헌병이 있어 매우 자유스럽지 못하였다’ 7명, 기타 1명으로 46.3%가 비교적 자유스럽지 못하고 응답하였다.

〈표 2-64〉 면회자유

내용	인원
매우 자유스러웠다.	2
자유로운 편이었다.	19
입회헌병이 있어 자유스럽지 못하였다.	12
입회헌병이 있어 매우 자유스럽지 못하였다.	7
기타	1
계	41

(2) 편지

군행형법 제15조와 제16조는 서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조 (면회와 서신의 수발)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면회하거나 서신을 수발할 수 있다. 다만, 수사중인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검찰관이 이를 허가한다.

② 수용자의 면회와 서신수발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수용자의 면회와 서신수발은 교도관의 참여와 검열을 요한다. 다만,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 면회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의 검열·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이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 서신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⑥ 면회에의 참여, 서신의 검열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서신 등의 영치) 수용자에게 교부된 서신 기타 문서는 본인이 열람한 후 이를 영치한다. 다만,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신 기타 문서는 이를 영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행형법시행령도 제47~51조에 서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7조 (서신수발의 횟수)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은 그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신발송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회”는 “서신발송”으로, “회”는 “통”으로, “횟수”는 “통수”로 본다.

제48조 (서신의 작성) ①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경축일·일요일 기타 공휴일 또는 휴게시간에 한하여 이를 작성한다.

② 수용자가 서신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요구에 의하여 교도관이 대서할 수 있다.

제49조 (서신의 검열) ① 소장은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합을 하지 아니하고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용자가 수령할 서신은 소장이 개봉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

제50조 (서신용지)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의 용지 및 우편료는 자비부담으로 한다. 다만, 자비부담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소장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

제51조 (서신의 처리) 소장은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의 검열·발송 및 교부를 신속히 알려주어야 하며, 서신의 발송·교부 및 폐기의 연월일을 당해 수용자의 서신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각 군 규정에도 서신작성의 경우에는 공휴일 및 휴게시간에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신수발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헌병대장은 필요시에 군행형법시행령의 규정에 준하여 서신발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군규정 141 제47조 4.에는 미결수용자의 경우 매일 1회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편지작성

영창에서의 편지작성과 관련하여 ‘정해진 시간대에만 작성하기 때문에 부자유스럽다’ 17명,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상대가 가족 등에 한정되어 있어 부자유스럽다’ 1명, ‘편지에 대한 검열이 심하기 때문에 부자유스럽다’ 12명, 기타 14명 중 ‘검열 때문에 쓰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다’ 1명 그리고 ‘보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작성한다가 대부분이었다.

편지작성이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비율이 68.1%로 정해진 시간대 편지작성과 검열 때문에 자유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5〉 편지작성

내용	인원
정해진 시간대에만 작성하기 때문에 부자유스럽다.	17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상대가 가족 등에 한정되어 있어 부자유스럽다.	1
편지에 대한 검열이 심하기 때문에 부자유스럽다.	12
작성한 편지의 내용을 헌병이 삭제한 적이 있다.	-
기타	14
계	44

서신작성과 관련하여 영창에 따라 편지작성의 경우 일요일 오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수양록 작성시간을 이용하여 서신을 작성하는 영창도 있었다. 특히하게 00부대 영창의 경우에는 월 1회 부모님께 효도서신을 작성하고 있었다. 다만 필기구의 경우 대부분의 영창에서 사고를 우려하여 근무현병이 있는 영창감시대에 통합보관하고 있었으며, 또한 편지지도 통합보관하여 작성시간 때에만 일괄지급하고 있었다.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도 모든 서신은 다 검열하고 있었으며, 편지수발대장에 근거기록을 유지하고 있었다.

- 편지수발

영창에서의 편지수발과 관련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받아 볼 수 있다’ 32명, 기타 5명으로 그 내용은 현병이 미리 보고 주니까 부자연스럽다가 대부분이었다. 편지작성에 비하여 수신인 경우는 비교적 자유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6〉 편지수신

내용	인원
외부에서 온 편지를 현병이 주지 않은 적이 있다.	-
외부에서 온 편지를 현병이 부분적으로 삭제한 적이 있다.	-
비교적 자유롭게 받아 볼 수 있다.	32
기타	5
계	37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도 모든 서신은 검열한다고 응답하였다.

육군의 경우 육군규정 155 제184조 3에 서신검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84조 서신

3. 책임장교는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

가. 미 봉함

나. 개폐하여 검인(수령할 서신)

다. 교화상 부적격 내용 수발불허

라. 불허된 서신 1년후 폐기

마. 답신된 서신 열독 후 영치(교화상 필요시 개인휴대)

공군의 경우 공군규정 141 제48조에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개봉하여 헌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령할 서신에 대해서는 헌병대장이 개봉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 구치소업무규정 제37조에 “구치소장은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을 검열하고 우편물 검열대장에 기재하며,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하지 아니하고 제출시키며, 수령할 서신은 개봉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편지수발에 대한 제재

영창에서 편지 작성이나 수발에 대해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 ‘없다’가 대부분이었으며, ‘있다’는 응답은 3명이었다. 그 내용은 ‘편지지가 부족하여’, ‘편지작성시간외에 작성’ 등이었다.

11. 도서·신문 열독/ TV 시청

(1) 도서

도서열람과 관련하여 군행형법 제30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도서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군의 경우 공군규정 141 제78조에 도서의 열람과 관련하여 “① 헌병대장(교도반장 소관)은 수용자가 도서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가 본인의 영치금으로 도서를 구입,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 구치소업무규정 제59조(도서의 열람)에 “헌병대장은 수용자가 도서의 열독을 신청할 때와 자신의 영치금으로 도서를 구입코자 할 때에는 인격도야와 개과천선을 촉진시킬 수 있는 내용에 한하여 허가하고,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독서 관련사항

영창 내에서 이루어지는 독서에 대하여는 ‘읽을 만한 책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독서하는 척 한다’ 11명, ‘영창일과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독서를 강요당한다’ 4명, ‘독서는 정좌를 강요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6명, ‘읽고 싶은 책을 헌병에 요청하여 읽을 수 있다’ 29명, ‘책을 수시로 교체해 주면 좋겠다’ 23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영창의 일과가 대부분 독서로 이루어지는데 도서부족으로 인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67〉 독서관련 사항(복수응답)

내용	인원
읽을 만한 책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독서하는 척 한다.	11
영창일과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독서를 강요당한다	4
독서는 정좌를 강요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6
읽고 싶은 책을 헌병에 요청하여 읽을 수 있다.	29
책을 수시로 교체해 주면 좋겠다.	23
독서가 허용되지 않는다	-
기타	2
계	75

특히 도서부족의 현상은 전방에 위치한 헌병대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였다. 헌병대 자체예산에 격별보수비로 지급되는 도서구입비가 3~4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서구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육군의 경우 도시와 근접한 영창이나 후방후대의 영창의 경우에는 인근 시립도서관에서 1달에 한번씩 200~300권 가량의 도서를 대여하여 입창자들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 도서확보율이 나은 편이었다.

책을 보관하는 장소도 각 영창에 따라 식당에다 비치하고 있는 영창, 거실에 비치하고 있는 영창, 영창 내 복도에 비치하고 있는 영창, 형무담당관실(행정실)이나 면회실에 비치하고 있는 영창 등 다양하였다.

- 도서 신청

영창에서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여 읽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그렇다’

36명, ‘그렇지 않다’ 7명이었다.

영창관리 면접조사결과 영창에 따라서는 아침에 도서목록을 제공하고 수용자가 선택한 도서를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독서시간대에 개인이 선택하는 영창도 있었다. 그러나 도서의 양이 절대 부족한 영창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 도서 관련 건의사항

독서와 관련하여 특별히 건의한 내용으로는 ‘도서가 부족하다’, ‘헌병부대원과 함께 도서를 공유하기 때문에 보고싶은 책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책이 낡았다’, ‘장기간 수용된 경우 읽을 책이 없다’, ‘최신도서 제공’ 등의 내용이었다.

(2) 신문

입창 후 신문을 읽어보았느냐는 질문에 ‘있다’ 38명, ‘없다’ 5명으로 대부분의 경우 신문을 읽어 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8〉 신문열람여부

신문열람여부	인원
있다.	38
없다.	5
계	43

신문열람과 관련해서는 군행형관련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각군 영창관리규정에도 없다.

신문의 경우에는 모든 부대의 영창이 국방일보를 수용자에게 제공해 주고 있었다. 국방일보를 거실내에 비치하고 있는 영창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영창은 국방일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문열독시간에 제공해 주고 있었으며, 점심시간에 제공해주는 영창도 있었다. 또한 수용자가 보고싶다면 헌병이 제공해주는 방법을 택하는 영창도 있었다.

(3) TV시청

TV시청과 관련하여 군행형법시행령 제75조는 “① 소장은 수행자가 사회복귀에 유익한 정보를 취득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도소 등에서 관리·운영하는 방송설비에 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도소 등의 안전과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 구치소업무규정 제60조에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과 관련하여 “1. 헌병대장은 수행자가 사회복귀에 유익한 정보를 취득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도소 등에서 관리·운영하는 방송설비에 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58조에 의한 주간 교육계획표에 의거, 시간을 지정하여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을 허용할 수 있다. 2. 헌병대장은 구치소의 안전과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문조사한 모든 영창에 TV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TV시청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없었다.

시청시간대는 각 부대의 영창관리 사정에 따라 19:00~20:00, 19:30~21:30, 20:00~21:00, 20:00~20:30, 21:00~21:30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시청장소는 거실이 많았으며, 이 경우에는 복도중앙으로 TV를 이동시켜 시청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또한 식당에서 시청하는 영창도 있었으며, 각 거실에 모여 시청하는 영창도 있었다. 다만 사각이 존재하여 TV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영창도 있었으며, 화면상태가 좋지 못해 시청이 불편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시청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모든 영창이 뉴스나 교양프로그램을 위주로 하여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에게 TV 채널 선택권은 거의 모든 영창이 없었다. 다만 00부대 영창의 경우에는 시청시간대에 수용자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할 것인지 의견을 청취하여 시청하고 있었다.

(4) 라디오

라디오가 설치되어 있는 영창은 3개소가 있었으며, 나머지 영창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청취시간대는 00부대 영창의 경우에는 08:00~09:00에 국군의 방송을 틀어 주었으며, 00부대 영창의 경우에 뉴스를, 00부대의 영창의 경우에는 21:30~22:00 명상의 시간대에 틀어 주었다.

(5) 기타 건의사항

TV시청과 관련하여 특별히 건의한 내용은 ‘시청시간 연장’, ‘채널선택권 보장’, ‘TV 화면상태가 불량하다’, ‘주말에는 연장신청’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집필권과 관련하여 수양록 작성시간 이외에 다른 것을 집필할 수 있도록 집필권을 보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다.

신문열독과 관련해서는 국방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신문도 구독해 주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다.

12. 운동

운동과 관련하여 군행형법 제22조는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5조는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우천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시간은 독방수용자에 한하여 2시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군규정 155 제188조에는 “1일 1시간 이내의 운동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군규정 141 제70조에는 “① 헌병대장은 우천시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에 대하여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외운동을 미 실시하거나 실내운동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자에게 변동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독방수용자는 운동시간을 2시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군 구치소업무규정 제55조에는 “1. 수용자에 대하여는 매일 1시간 이상 실외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시간은 독방수용자에 한하여 2시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운동시간

영창 생활 중 운동이 허용되는나의 질문에 ‘15분 이내’ 7명, ‘30분 이내’ 10명, ‘1시간 이내’ 16명, 기타 11명으로 그 내용은 ‘땀나면 샤워를 할 수 없으므로 일광욕만 한다’, ‘쉬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한다’ ‘밥먹기 전에 한다’, ‘충분히 한다’, ‘관리자 마음대로’, ‘수시로 한다’ 등이었다. 영창에서의 운동은 대부분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당수는 규정상 운동시간도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9〉 운동시간

시간	인원
15분 이내	7
30분 이내	10
1시간 이내	16
운동시간 없다.	-
기타	11
계	44

(2) 운동장소

운동을 하는 장소는 ‘영창 거실내’ 28명, ‘연병장(운동장)’ 3명, 기타 13명으로 그 내용은 ‘기상이 좋은 경우 실외운동’, ‘일광욕’, ‘영창 밖 공간’ 등이었으며, 수용자의 운동은 대부분 거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0〉 운동장소

장소	거실 내	복도	연병장(운동장)	기타	계
인원	28	-	3	13	44

영창에 따라 영창시설에 부속된 외부 공간이 있었으나 그 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운동할 만한 장소가 되지 못하였으며, 계호의 어려움 때문에 일광욕과 걷기 정도가 실시되고 있었다.

00부대 영창의 경우에는 작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우천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00부대 영창의 경우에는 농구시설을 갖추어 금요일 운동시간에 농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00부대 영창의 경우에는 족구장을 구비하여 족구 경기를 실시하고 있었다.

실내에서 주로 실시하는 운동은 주로 팔굽혀펴기, 도수체조, 윗몸 일으키기, 가벼운 몸풀기 등의 개인운동 이었다.

영창 내에 운동시설, 운동기구 등을 갖추고 있는 영창은 없었고, 00부대 영창의 경우에는 영창 내에 체력단련장이 있었으며, 00부대의 영창에는 농구공과 축구공 정도를 구비하고 있었다.

(3) 운동시간 준수

영창 하루 일과 중 운동에 관한 규정을 알고 있다면, 규정대로 운동이 실시되고 있는지는 질문에 ‘규정대로 운동을 한다’ 28명,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1명, ‘헌병 마음대로 허용된다’ 1명,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다’ 13명, 기타 1명이었다. 비교적 규정대로 운동이 실시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응답도 상당수가 되어 이에 대한 안내나 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71〉 운동시간 준수

내용	인원
규정대로 운동을 한다.	28
부분적으로만 허용된다.	1
현병 마음대로 허용된다.	1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다.	13
기타	1
계	44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운동을 할 만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계호상 어려움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의 영창이 현실상 인적·물적 어려움 때문에 규정에 정한대로 운동을 실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4) 기타 건의사항

그 밖의 운동과 관련하여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내용으로는 ‘샤워/ 세면시간 전에 가벼운 실내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운동기구 설치’, ‘일광욕 시간외 별도의 체력단련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 등의 내용이었다.

13. 의료

(1) 입창시 건강상태

입창시 건강상태는 ‘건강했다’ 19명, ‘보통이었다’ 20명, ‘건강하지 않은 편이었다’ 3명, ‘검진을 받을 정도로 이팠다’ 1명으로 대부분 건강상태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2〉 입창시 건강상태

건강상태	인원
건강했다.	19
보통이었다.	20
건강하지 않은 편이었다.	3
검진을 받을 정도로 아팠다.	1
기타	
계	43

(2) 입창시 검진

공군의 경우에는 공군규정 141 제71조에 입창시 반드시 군의관의 검진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해군의 경우에도 구치소운영규정 제10조 1호에 “신입자에 대하여는 군의관의 진단을 받게 하여야 하며 진단결과 수용할 수 없는 전염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는 그 입소를 거절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에 따라 군외병원에 이송할 수 있고 이송된 자는 수용자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창시에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군의관에게 받았다’ 14명, ‘자대에서 입창되기 전에 미리 형식적으로 받았다’ 3명, ‘받지 못하였다’ 25명, 기타 1명(의무대에서 받았다) 등으로 받지 못하였다는 응답도 58.1%나 되었다.

〈표 2-73〉 입창시 검진

내용	인원
군의관에게 받았다.	14
헌병에게 받았다.	-
자대에서 입창되기 전에 미리 형식적으로 받았다.	3
받지 못하였다.	25
기타	1
계	43

검진을 받지 못했다는 인원이 많은 것은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는 입창시에 군의관 소견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군의관의 검진을 받게 되는데, 형사처분자의 경우에는 입감시 구속영장과 입감의뢰서만 첨부하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입감전에 신체검색 및 의류를 검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때 형무담당관이나 책임장교가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도 입감자의 건강상태는 군의관의 소견서로만 확인한다는 응답도 있었으며, 형무담당관이 직접확인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해군과 공군의 영창의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반드시 군의관의 검진을 거친 후에 입감시킨다고 하였다.

(3) 정기검진

정기검진과 관련하여 군행형법시행령 제66조는 "소장은 독방수용자 및 20세 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3월에 1회 이상, 그 외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6월에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 육군규정 155 제189조에는 "책임장교는 월 1회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단서류를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군의 경우 공군규정 141 제71조는 수용자의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영창을 방문하여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전체수용자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진단
2. 독방 및 20세 미만 수용자: 3개월에 1회 이상
3. 신입자: 지체 없이 군의관의 건강진단
4. 이송자: 이송전 군의관 건강진단(이송이 건강상 유해시 이송중지)

영창 수용 중에 군의관으로부터 정기검진을 받은 적이 있느냐와 관련하여 '있다' 13명, '없다' 28명으로 대부분 군의관의 정기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규정상 정기검진의 기간이 길고 수용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수용자는 정기검진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2-74〉 정기검진여부

정기검진여부	인원
있다.	13
없다	28
계	41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주 2회 군의관이 방문진료를 하는 영창, 매주 수요일

군외관이 내진 하는 영창, 월 2회 군외관이 방문진료를 한다는 영창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영창의 경우 필요시 수시로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군이라는 특성상 매일 점호시간에 당직사관이 건강여부를 점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문제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00부대 영창의 경우에는 위생하사가 상주하면서 수용자들의 건강을 점검하고 있었다.

(4) 수용중 아팠던 경험

영창에서 아팠던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11명으로 병명은 허리디스크, 치통, 치질, 아토피성 피부, 피부병, 독감, 변비, 신경성 장염 등이었다. '없다'는 32명이었다.

아팠을 때 어떤 조치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영창으로 군외관이 와서 진료를 하였다' 1명, '의무대로 가서 군외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6명, '특별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 1명, 기타 3명으로 본인이 약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이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군외관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별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응답도 있어 영창관리자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75〉 아팠을 때 조치

내용	인원
영창으로 군외관이 와서 진료를 하였다	1
영창으로 위생병이 와서 진료를 하였다.	-
현병이 의무대에 가서 약을 조제하여 왔다.	-
의무대로 가서 군외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6
특별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	1
기타	3
계	11

(5) 아팠을 때 휴식

영창에서 의무대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경미하게 아픈 경우, 일과 시간 중 눕는 등의 휴식이 허용되느냐의 질문에 '그렇다' 16명, '그렇지 않다' 22명으로 57.8%가 눕거

나 하는 휴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경미하게 아픈 경우를 폐병으로 오해한다든지 영창 군기상 허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76〉 경미하게 아픈 경우 휴식허용여부

경미하게 아픈 경우 휴식허용여부	인원
그렇다.	16
그렇지 않다.	22
계	38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경미하게 아픈 경우에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응답하여 수용자 설문조사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6) 진찰신청

헌병에게 사단 의무대 외진이나 군의관 진찰을 신청한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 ‘신청하여 외진을 받았다’ 4명, ‘신청하여 군의관의 진찰을 받았다’ 3명, ‘신청하고 싶었지만 영창 분위기상 할 수 없었다’ 3명, ‘신청한 적이 없다’ 31명으로 나타났다. 신청하고 싶었지만 영창분위기상 할 수 없었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영창관리자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77〉 진찰신청

내용	인원
신청하였지만, 진찰을 받지 못하였다.	-
신청하여 외진을 받았다.	4
신청하여 군의관의 진찰을 받았다.	3
신청하고 싶었지만, 영창분위기상 할 수 없었다.	3
신청한 적이 없다.	31
기타	2
계	43

(7) 기타 건의사항

영창의 의료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내용으로는 ‘상비약 부족’, ‘아파도 사람이니까 욕설이나 무시하지 말아달라’, ‘너무나 형식적인 진료이다’, ‘무좀 연고 지급해 주어라’ 등이었다.

모든 영창이 비상구급함을 구비하고 있었다. 다만 상비약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14. 작업 및 교육

(1) 작업

군행형법 제63조는 미결수용자의 작업과 관련하여 “미결수용자에게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과하거나 교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6조는 “소장은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수용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 교도 소동의 밖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군의 경우 공군규정 14-1 제80조에 “징계처분자, 금고 및 미결수용자는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는 당해 수사기관장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작업장소는 공군부대 내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에는 구치소업무규정 제62~65조에 작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96조에는 “미결수용자에게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과하거나 교회를 행할 수 있다. 다만 구치소 밖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2조 작업장소

수용자에 대한 작업장소는 관할부대 내로 한한다.

제63조 작업대상 및 범위

1. 작업대상

수형자 및 징계자에 한한다.

2. 작업범위

교도교화 목적상 수형자 및 징계자로 하여금 구치소내 환경작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4조 신청에 의한 작업

구치소장은 법 35조의 규정에 의한 수형자의 신청에 의하여 취업한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

는 한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작업의 종류를 변경하지 못한다.

제65조 부과금지 작업

수용자에게 다음에 명시한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1. 타 수용자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작업
 - 가. 구치소 열쇠 취급 업무
 - 나. 죄수의 행장기록 취급업무
2. 군견훈련, 차량운전, 차량정비 등 작업
3. 악품, 주류, 무기, 탄약, 금전 등을 취급하는 작업
4. 폭발물 부설 등 안전에 유해로운 작업

입창 기간 중 작업(사역)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간혹 있었다' 1명, '없었다' 42명, 기타 1명이었다. 있었다고 응답한 자는 '헌병대 복도 걸레 청소, 기타는 '헌병대 창문닦기'였다.

〈표 2-78〉 작업여부

작업여부	인원
간혹있었다.	1
없었다.	42
기타	1
계	44

작업은 '신청자에 한해 이루어졌다'가 2명으로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작업이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그 실시도 신청자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을 실시한 자의 경우 09:00~11:50사이에 헌병대 복도와 창문닦기를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도 미결수용자에게는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모두 응답하였으며,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동의서를 받는다고 응답한 영창도 있었다.

(2) 군사교육

육군의 경우 육군규정 155 제191조 2에 재복무 훈련에 관한 규정으로서 “가. 군 복귀자를 대상으로 군 교육지침에 의한 병 공통과목에 중점을 둔다. 나. 국가관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정신 훈련을 실시한다. 다. 모든 훈련은 출소시까지 받

복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군의 경우 공군규정 141 제74조에 “헌병대장은 수용자가 사회 또는 군에 복귀함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 구치소업무규정 제57조에 “헌병대장은 수용자의 죄질, 성격, 연령, 경력, 형기 등을 참작하여 적절한 교육계획을 세워 수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장소는 구치소 시설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장훈련이나 기합을 목적으로 한 수용자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창 기간 중에 군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2명이 있었으나, 이 경우는 VTR로 정훈교육을 받았다고 기재하여 정신교육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도 미결수용자에게는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00부대 영창의 경우에는 재복무/ 규정교육으로서 주 2회(화·금요일)에 걸쳐 군인복무규율, 병영생활 규정, VTR 시청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3) 정신교육

육군의 경우 육군규정 155 제191조 1. 가.에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인격 도야 및 개과천선을 위한 정신교육에 중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군의 경우 공군규정 141에 제7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6조(교육·교회기준) ① 헌병대장은 수용자의 인격도야, 개과천선을 위한 교육 또는 교회를 관련참모와 협조,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제목	기준시간	담당자
교회	주 1회(1시간)	군종장교
정신교육	월 1회(1시간)	정훈, 군종장교
군법	월 2회(매 1시간)	법무, 헌병장교
기타 교육훈련	일과시간표	헌병중대장(교도반장 소관)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교육훈련을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를 수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해군의 경우 구치소업무규정 제56조는 헌병대장은 구속수용자와 징계입소자의 인격도야와 개과천선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육제목	기준시간	담당자	비고
선도교회	주 1회(1~2시간)	군종장교	
군법교육	월 2회(매 1시간)	법무, 정훈장교	
정신교육	월 1회(1~2시간)	정훈, 군종장교	
기타교육훈련	일과표에 의거	구치소장	

입창기간 중 정신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헌병 장교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 3명, ‘헌병 부사관으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 4명, ‘군종장교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 7명, ‘없다’ 18, 기타 11명은 다른 부대 간부 등으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특별한 정신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교육을 받은 시간은 1시간 정도, 내용은 인권과 영창내 규율에 관한 것이었다.

〈표 2-79〉 정신교육 내용

내용	인원
헌병장교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	3
헌병 수사관으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	4
군종장교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	7
법무장교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	-
없다.	18
기타	11
계	43

영창관리자 면접조사결과 미결수용자에 대한 정신교육을 헌병대장, 책임장교, 형무담당관이 주로 실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00부대 영창의 경우에는 군경력이 많은 부사관들을 교화위원형식으로 초청하여 교화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15. 종교

군행형법에는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다만 각군 규정에 종교행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육군의 경우 육군규정 155 제191조 1. 가.에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인격 도야 및 개과천선을 위한 정신교육에 중점을 둔다. 나. 정신교육은 신앙심 양양에 바탕을 두고 주 1회 군중 활동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군의 경우 공군규정 141 제75조에 “헌병대장은 수용자가 신봉하는 종파의 교의에 의한 교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종파에 위촉하여 교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 구치소업무규정 제56조에 주 1회 1~2시간 종교행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종교행사

영창에서의 종교행사와 관련하여 ‘종교행사 자체가 없다’ 19명, ‘군종장교가 비정기적으로 영창을 방문하여 종교행사를 진행한다’ 10명, ‘군종장교가 정기적으로 영창을 방문하여 종교행사를 진행한다’ 8명, 기타 4명으로 수용자 자체 종교행사 실시, 신청하여 참석 등이었다.

종교행사 자체가 없다는 응답비율도 46.3%나 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0〉 종교행사

내용	인원
종교행사 자체가 없다.	19
군종장교가 비정기적으로 영창을 방문하여 종교행사를 진행한다.	10
군종장교가 정기적으로 영창을 방문하여 종교행사를 진행한다.	8
기타	4
계	41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 따르면 영창에서의 종교행사는 수시로 군종장교(군목, 법사 등) 등이 영창을 방문하여 실시한다고 하였다. 영창일과규정에 일요일 종교행사가 오전동안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교행사가 실시되고 있는 이유는 군종장교가 일요일 일반사병의 종교행사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따라서 평일에 수시로 진행한다는 것이

다.

00부대 영창의 경우에는 영창 수용기간 중 종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도교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창내 미결/징계자 자체 군종병을 지정하여 매주 수·일요일 자율적인 종교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00부대 영창의 경우에는 비교적 군종장교가 많이 확보되어 있어 기독교의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13:00~16:00), 천주교의 경우 격주 토요일(10:00~12:00), 불교의 경우 매년 2~3회(불규칙적)씩 종교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영창에서 종교행사가 이루어진다면, 특정종교의 군종장교가 종교행사를 주관하여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1명으로 특정종교의 군종장교가 종교행사를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낀 수용자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창기간 중 외부 종교행사에 참석한 적은 없었다.

(2) 종교행사 신청

종교행사를 신청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신청이 불가능하다’ 15명, ‘신청하였지만 허용되지 않았다’ 1명, ‘신청이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다’ 10명, ‘종교가 없어 모르겠다’ 5명, 기타 5명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지정한 바와 같이 영창에서의 종교행사는 군종장교들이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주관하고 각종 위문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일반사병과 같이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주관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종교행사를 원하는 수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 2-81〉 종교행사 신청여부

종교행사 신청여부	인원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다.	15
신청하였지만, 허용되지 않았다.	1
신청하여 종교행사에 참석하였다.	-
신청이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다.	10
종교가 없어 모르겠다.	5
기타	5
계	41

16 부당한 대우/ 가혹행위 등

(1) 영창에서 가장 힘든 일과

영창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으로는 ‘정좌’ 17명(허리, 다리 통증, 관절통증), ‘반성문 작성’ 1명, ‘수양록 작성’ 3명(일과가 반복되기 때문에 작성할 내용이 없음), ‘독서’ 3명(정좌의 수단), 기타 8명으로 ‘인격모독’, ‘미래에 두려움’, ‘힘들게 없음’ 등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00부대 영창의 경우 사단 군의관이 방문진료한 환자의 50%가 허리·무릎통증 환자로 나타나 이른바 ‘정좌’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82〉 가장 힘든 일과

내용	인원
정좌	17
반성문 작성	1
수양록 작성	3
독서	3
군기교육	-
기타	8
계	32

(2) 정좌자세

영창에서의 대부분의 일과는 독서와 정좌로 이루어진다. 정좌와 관련하여 육군의 경우에는 ‘수양정좌’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해군(해병)의 경우에는 ‘정좌세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공군의 경우에는 ‘정신수양’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군행형관련법규에는 정좌자세 내지는 앉아 있는 자세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영창에 따라 정좌자세의 형태가 다양하였으며, 영창에 따라서는 미결수용자와 정계입창자가 다른 자세로 앉아 있는 영창도 있었다.

영창에서 어떠한 자세로 앉아 있느냐의 질문에 ‘① 편안한 양반다리자세로 앉아 있다’ 25명, ‘② 시선을 고정하고 양반다리 자세로 허리를 곧게 펴고, 주먹 편 손을 무릎 위에 팔이 구부러지지 않게 올려놓은 자세로 앉아 있다’ 7명, ‘①② 자세를 병행하

여 앉아 있으나 ② 자세를 주로 하여 앉아 있다' 2명, 기타 9명(②번 자세에서 팔은 구부러진 자세로) 이었다. ②의 자세로 앉아 있다는 응답도 있어 일부 영창의 경우에는 과도한 정좌자세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3〉 정좌자세

정좌자세	인원
편안한 양반다리자세로 앉아 있다.	25
시선을 고정하고 양반다리 자세로 허리를 곧게 펴고, 주먹 쥔 손을 무릎 위에 팔이 구부러지지 않게 올려놓은 자세로 앉아 있다.	7
시선을 고정하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허리를 곧게 펴고, 주먹 쥔 손을 무릎 위에 팔을 구부러지지 않게 올려놓은 자세로 앉아 있다.	-
①② 자세를 병행하여 앉아 있으나 ② 자세를 주로 하여 앉아 있다.	2
①②③ 자세를 병행하여 앉아 있다.	
기타	9
계	43

영창에서의 정좌자세는 각 부대의 영창마다 조금씩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대부분 편안한 양반다리자세로 앉아 있다고 응답하였다. 영창일과가 대부분 정좌수양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아무리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는 다고 해도 편할 수가 없다. 영창이 휴식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눕거나 엎드리는 자세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00부대 영창의 경우에는 앉아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20분 정좌에 10분 휴식을 취한다는 영창도 있었다.

(3) 정좌강요

근무헌병으로부터 영창 일과 시간 중 정좌(위 문항의 ② 자세)를 강요받은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 '있다' 14명, '없다' 28명으로, 33.3%가 정좌자세를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4〉 정좌강요

정좌강요	인원
있다.	14
없다.	28
계	42

있다면, 그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자세가 흐트러진 경우 호명을 하면서 근무현병이 자세 교정하라고 지시’(1명), ‘3시간’(3명), ‘2시간 이상’(1명), ‘7시간’(1명), ‘근무현병에 따라 다르다’(1명), ‘처음 입창시 1주일 동안 정좌시간에’(1명) 등이었다. 이와 같이 정좌자세도 수용자의 태도에 따라서는 휴식시간이 없이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간부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사병에 비하여 아주 편안하게 자유스러운 자세로 앉아 있어 정좌자세에서도 간부와 사병간 차별대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정좌시간

영창에서 정좌는 하루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 하는 질문에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14명, ‘규정된 시간대에’ 16명, 기타 6명으로 그 내용은 ‘독서할 경우에도 정좌자세로’, ‘일과표에 정해진 행동 후 모든 대기시간 및 남은 시간’ 등이었다.

이와 같이 영창에 특별한 일과가 없기 때문에 정좌로 하루일과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85〉 정좌시간

내용	인원
휴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14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동안	-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동안	-
규정된 시간대에	16
현병근무자 마음대로	-
기타	6
계	36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도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다는 응답도 있어 수용자들이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가혹행위

영창에서 근무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3명, ‘그렇지 않다’ 41명으로 근무병에 의한 가혹행위는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6〉 가혹행위 여부

가혹행위를 당하였는지 여부	인원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1
계	44

가혹행위의 이유로는 1명만 ‘정좌자세 불량’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가혹행위의 유형은 ‘규정시간외 일차려’ 1명, ‘욕설’ 2명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우려했던 만큼 영창 내에서 가혹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무자에 의한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00부대 영창의 경우에는 영창근무자가 근무투입전에 근무자 선서문을 낭독하고 이에 서명한 후 영창근무에 들어가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6) 미결자와 징계입창자 차별대우

영창에서 현병으로부터 징계입창자가 미결수나 기결수보다 못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8명, ‘없다’ 24명이었다.

〈표 2-87〉 징계입찰자에 대한 차별대우

징계입찰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원
있다.	8
없다.	24
계	32

차별대우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징계입찰자가 미결수용자도 못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미결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이고 장기간 수용된 자이기 때문에 징계자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다’, ‘징계입찰자가 식당청소, 목욕탕청소, 화장실청소를 모두 한다’, ‘징계입찰자는 사람 취급 안 한다’, ‘징계입찰자는 하루 종일 정좌’, ‘정좌자세가 미결보다 심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미결수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어느 정도 권리를 보장해 주어 대우를 해주는 데, 징계입찰자의 경우에는 이미 징계혐의가 확정되어 징계벌이 집행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자에게 모든 일을 시켜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간부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사병에 비하여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창내에서 미결수용자와 징계입찰자간, 간부와 사병간 부당한 차별대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수양록/ 반성문 점검

반성문이나 수양록 작성을 헌병이 읽어보는 것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12명, ‘그렇지 않다’ 30명, ‘모르겠다’ 1명이었다. 그렇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비하여 적었으나 자기의 양심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수양록을 헌병이 읽어보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는 응답도 27.9%로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표 2-88〉 수양록/ 반성문 점검

수양록/반성문 점검에 따라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	인원
그렇다.	12
그렇지 않다.	30
모르겠다.	1
계	43

반성문이나 수양록 작성을 잘못하였다고, 근무헌병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는 모두 ‘없다’고 응답하였다.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반성문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수양록의 경우에는 형무담당관이나 책임장교 등이 수양록을 읽어보고 미결수용자의 반성정도를 파악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수양록을 읽어보지는 않지만 작성여부는 파악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8) 부당한 작업

영창에 있으면서 부당한 작업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응답하였다.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도 미결수용자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작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작업동의서를 받기 때문에 부당한 작업이 이루어질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훈련병 참관

수용시설 참관과 관련하여 군행형법 제59조는 “미결수용실은 참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창 내에 있을 때 훈련병이 영창을 참관한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 ‘있다’ 10명, ‘없다’ 29명이었다. 이는 신병교육대가 있는 부대의 경우에는 훈련병에 대한 교육목적으로 영창을 참관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나, 미결수용시설을 참관시키는 것은 군행형법 위반이다.

〈표 2-89〉 훈련병 영창참관

훈련병 영창참관 여부	인원
있다.	10
없다.	29
계	39

훈련병이 영창을 참관한 적이 있다면, 그때 느낀 감정은 어떠했느냐는 질문에 ‘모멸감을 느꼈다’ 1명, ‘별 감정이 없었다’ 5명, ‘부끄러웠다’ 3명, 기타 1명으로 ‘뒤돌아
앉아 있었지만 명찰이 있기 때문에 창피하였다’ 등으로 모멸감 내지는 부끄러웠다는
응답도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10) 선임수용자의 가혹행위

입창기간 중 귀하보다 먼저 입창한 수용자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 ‘없다’가 42명으로 대부분이었으나, ‘있다’ 1명도 있었다.

가혹행위의 내용은 간부수용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11) 불복 신청 등

영창내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불복신청, 소원수리 등을 헌병간부에게 한 적이 있었
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모두 응답하였다.

참고로 각 헌병대에서는 퇴창시 소감문이나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수용자를 대상
으로 영창내 생활과 가혹행위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시정하고 있었다.

참고로 00부대의 영창수용자 설문수리 결과보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영창 수용자 설문수리 결과

■ 개요

- 일시: 03. 11. 4(화) 13:00~14:00
- 장소: 영창
- 대상: 영창 수용자 32명(미결수용자 9명 포함)
- 설문수리: 중사 000

■ 설문수리 결과

설문수리내용	비고
· 보급품이 많이 모자란다(3)	· 정계병은 소속대에서 지급, 미결수는 지급하고 있음
· 식사할 때 반찬이나 밥이 모자란다(12)	· 기준량은 지급하고 있음
· 식기세척시 빨래비누가 아닌 세제를 썼으면 좋겠다(2)	· 보급품 수령시 지급하겠음
· 분대마다 책을 보충해 줬으면 좋겠다(4)	· 군종부와 협조 후 조치
· 모기약을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5)	· 영창에 모기약 비치
· 모포와 매트리스를 소독·세탁을 했으면 좋겠다(2)	· 수시 일광건조 시키고 있음
· 수요일·일요일 종교활동시간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2)	· 자체 종파별 실시하고 있음
· 따뜻한 물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 라지에이터를 틀어 주어 실내공기를 좀더 올려 줬으면 좋겠다(6)	· 수용자 교육
· 샤워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7)	· 검토후 조치
· 수건 사용후 수건에 물기가 축축히 묻어 있다(2)	· 일광건조 조치
· 화장실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2)	· 수용자 교육
· 근무자들이 반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2)	· 근무자 교육(이동병 대상)
· 오전에도 체력단련 시간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2)	· 수용자 교육
· 항상 걱정해 주시고 근무인원이 고생이 많으신 거 같다(18)	

작 전 과

17. 구속장소 감찰/ 징벌

(1) 감찰

군사법원법 제230조에는 검찰관의 체포·구속장소감찰과 관련하여 “① 검찰관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기관의 피의자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신문하고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기관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행형법 제3조 제2항에는 “군판사와 검찰관은 교도소 및 미결수용실을 수시로 살펴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에는 “① 군판사 또는 검찰관이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하고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교도소장(교도지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미결수용실을 설치한 부대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경우에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창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군검찰관이나 군판사 등이 영창을 감찰하였느냐는 질문에 ‘하지 않았다’ 16명,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둘러보았다’ 18명, ‘영창내 상황이나 권리침해여부를 상세히 감찰하였다’ 7명, 기타 2명(보지 못하였다)으로 형식적인 감찰을 하였다는 응답도 43.9%나 되어 실질적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입창기간이 짧기 때문에 감찰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90〉 영창감찰

내용	인원
하지 않았다.	16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둘러보았다.	18
영창내 상황이나 권리침해여부를 상세히 감찰하였다.	7
기타	2
계	41

군검찰관과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정기적으로 매월 1회 또는 수시로 영창을 감찰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규정에 따라 실질적 감찰을 한다고 하였다.

참고로 육군의 경우 군검찰관의 구속장소 감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내용	결과
1	수용능력초과여부	
2	공범자의 분리수용 및 상호접견금지규정의 준수여부	
3	위생시설, 청결상태	
4	가혹행위 여부	
5	수용자 상호간의 구타행위여부	
6	장교, 사병, 기결, 미결, 징계처분자 등 혼거수용여부	
7	환자에 대한 별도 수용 및 조치상태	
8	군의원 정기진료여부	
9	신입수감자 건강진료여부	
10	수감자에 대한 교육실시여부	
11	영 치금품의 보관 및 관리상태	
12	거실에 면찰,죄명 및 구속일 게시여부	
13	항소권포기 강요 여부	
14	불법감금여부	
15	입건송치해야 할 사건을 징계회부한 사례여부	
16	면회 및 접견 불허용 여부	
17	기타 규정에 의한 이행상태 여부	

(2) 징벌

군행형법 제44조는 징벌의 종류에 “징벌인 경고, 상으로서의 처우의 정지 또는 취소, 2월 이내의 도서열람제한, 신청에 의한 작업 정지, 작업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삭감, 2월 이내의 금치”를 규정하고 있다.

영창 내에서 징벌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은 1명뿐이었는데, 그 내용은 ‘차렷 자세로 벽보고 30분 동안 서 있기’였다. 따라서 이 경우는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가혹행위에 해당한 것이다.

제3절 설문·면접조사 분석과 평가

설문조사결과 피결수용자의 응답과 헌병수사관이나 영창관리자, 군검찰관의 응답이 상당 부분 차이가 많이 났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헌병수사관, 영창관리자, 군검찰관들의 입장에서 부정적 응답을 기대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면접조사에서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 이었다.

피결수용자의 설문조사의 경우에도 모두 솔직한 응답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률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오해하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고 미응답이나 불성실한 답변도 있었다. 다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결과 우려했던 만큼의 인권침해사례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영창 내에서의 인권침해는 많이 사라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긴급체포는 군무이탈범죄가 많았으며,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군무이탈범죄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통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인지도나 신청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헌병수사관이 실질심사에 대한 고지를 자세히 해주는 경우도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형식적 고지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피의자신문과정에서의 부당행위는 헌병단계나 군검찰단계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부대내 중대사건이나 중대범죄의 경우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감시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피결수용자와 관련한 처우에서는 피결수용자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입창절차에 있어 피결수용자에 대한 권리고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창의 환경에 대해서는 영창관리자들이 배려를 많이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화장실 이용의 불편사항과 침구류에 대한 위생관리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사나 간식지급과 관련하여 상근예비역의 경우에 이들은 식수인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수용자가 많은 영창의 경우 부식지급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회와 관련하여 면회시설이 노후 된 영창의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하였으며, 면회의 자유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각군 규정에 따라서는 헌병대장이 포괄적으로 면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남용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편지작성의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작성하고 검열이 심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의 경우 각 영창에 따라 비교적 시내권에 근접한 영창의 경우에는 시립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도서를 대출하여 수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양호한 편이었으나 전방부대의 경우에는 도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TV시청의 경우 시청시간이 규정보다 짧은 영창도 다수 있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권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는 영창은 많지 않았다.

운동과 관련해서는 실내운동이나 일광욕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의 경우에는 군의 특성상 영창관리자들이 가장 많이 배려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작업은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았으며, 정신교육은 부정기적으로 주로 헌병관계자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었다.

종교행사의 경우에는 실시하고 있지 않은 영창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은 비정기적 또는 정기적으로 군종장교가 영창을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다만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배려하여 통합된 종교행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창내 가혹행위는 종전에 비하여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나 근무헌병에 의한 욕설이나 영창에 따라서는 과도한 정좌자세나 시간이 강요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창에서 물리적 가혹행위는 많이 사라진 반면 정좌가 가혹행위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체력단련이 시행되어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영창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결수용자가 작성한 수양록의 경우 대부분의 영창이 이를 점검하고 있어 인격권 침해여부가 논란이 될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영창참관은 군행형법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병교육대가 있는 일부 영창의 경우에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장소에 대한 감찰은 미결수용자의 입장에서 형식적 감찰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제3장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제1절 사병징계제도 개관

I. 사병징계제도의 의의

군징계는 군인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촉진하는 인사활동 중의 한 분야로서 군인이 군율에 위반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그 분야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군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인사법상의 징계규정에 의하여 과하는 징계제도를 말한다.²⁸⁾

군은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전형적인 특별권력관계이며 군인은 국가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규율과 기강이 요구되는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엄격한 지휘체계 아래서 군사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한 기관으로서 군대는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더 엄격한 규율준수를 요구하며 이에 위반할 때 더 엄격한 징계가 따르게 된다.

사병도 군인으로서 군율에 위반하여 군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징계를 하게 된다. 다만 사병이란 신분적 특수성으로 장교나 부사관 등과 같은 직업적 군인에 비해 징계의 종류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병에 인정되고 있는 징계의 종류에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이 있으며, 특히 영창이라는 징계처분은 병에게만 적용되는 징계벌로서, 이른바 ‘영창’이라는 수용시설에 격리하여 군인으로서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징계이다. 즉 영창제도는 징계에 속하는 것이나 형사상의 제재인 구류처분과 같은 것으로서 인신구속을 징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것이다.

군인사법이 규정한 병 징계의 종류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8) 서옥원, “군징계제도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육군을 중심으로-,”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2면.

〈표 3-1〉 병 징계의 종류와 내용

종류	내용
강등	- 당해 계급에서 1계급 내림 -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대상
영창	-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장소에 구금함 - 영창처분기간은 군복무기간 미산입
휴가 제한	- 휴가(연가)일수를 비위정도에 상응하여 1회 5일 이내로 하며 복무기간 중 총제한 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고, 휴가회수(매 휴가시 최초 5일은 보장)의 박탈은 불가 함
근신	-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훈련 또는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하고 징계권자가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함 - 징계권자는 근신기간 중 수행할 과외업무 지정 가능

II. 징계위원회 심의절차

사병에 대한 징계절차도 군인사법을 근거로 하여 각군의 징계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징계절차는 크게 조사절차, 결정절차, 처분절차, 집행절차로 구분된다. 육군의 징계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순서	제목	내용
1	개최보고	- 정계간사(서기) 위원장에게 보고
2	개최선언	- 위원장의 개최선언 - 간사는 정계협의자를 입장시킴
3	인정신문	- 위원장은 정계협의자의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직책 등 인정사항을 신문(부분적 생략 가능)
4	비행사실요지 낭독	- 간사는 정계사건의 비행사실 요지 낭독
5	정계협의자 신문	- 위원장은 비행사실과 정상에 관하여 정계협의자를 신문 - 위원장 신문이 끝나면 위원들 신문
6	증거조사	- 위원장 증거조사 실시 - 간사의 증거요지 낭독 및 위원장의 확인 후 위원장은 정계협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 - 정계협의자는 증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확인
7	추가신문	- 증거조사 후 위원장 또는 위원의 정계협의자에 대한 추가 신문
8	간사의견진술	- 간사는 비행사실에 해당하는 정계별목, 상벌 등 정상관계에 대한 진술
9	정계협의자의 최종진술	- 위원장은 정계협의자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부여
10	정계협의자 퇴장	- 위원장은 최종진술 종료 후 정계협의자 퇴장
11	평의(토의 및 투표)	- 위원장과 위원은 간사로부터 별목의 종류, 양형, 정상, 사실관계 및 관계규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별목 등을 토의 후 무기명 비밀투표 실시 - 이 때 간사는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투표가 끝나면 투표용지를 집계하여 위원장에게 인계
12	정계결과 발표	- 위원장은 투표결과를 정리하고 정계별목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계별목을 선언
13	의결서 서명	- 간사는 정계선언이 있는 후 위원장으로부터 정계의결서에 서명과 별목란에 결정별목을 기재받은 후 위원들 서명
14	폐회선언	- 위원장은 정계의결서에 서명이 끝난 후 폐회선언
15	종결보고	- 위원장의 폐회선언이 끝나면 간사는 종결보고

II. 사병 징계사유 및 양형기준

군인 징계사유의 경우 군인사법 제56조에 “징계는 군인으로서 군율에 위반하여 군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고 징계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징계사유에 있어 주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17158호)이며, 동 규율에는 복무와 관련하여 충성의 의무(제6조), 성실의 의무(제7조), 국민에 대한 친절의 의무(제7조의2), 정직의 의무(제8조), 품위유지의 의무(제9조), 비밀엄수의 의무(제10조), 전쟁법 준수의 의무(제10조의2), 청렴 및 검소의 의무(제11조), 환경보전의 의무(제11조의2), 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 금지(제12조), 집단행위의 금지(제13조), 직권남용의 금지(제14조), 사적 제재의 금지(제15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제16조), 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제16조의2), 대외발표 및 활동(제17조), 정치적 행위의 제한(제1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형태로 무수히 발생하는 범행이나 비위의 사실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율 및 군기강 등의 법령이나 각종 규정에 명문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이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징계권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위임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병의 경우에는 이로 인해 지휘관에 의한 징계가 남용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각군의 경우 법무규정(징계)을 통하여 징계사유 및 양형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다. 특히 육군의 경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육군규정을 중심으로 사병의 징계사유와 양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⁹⁾

29) 육법고 37152-212(97. 9. 30) 병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대한 지침. 이 지침에 따르면 병을 징계함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위의 규정에 의하고, 징계를 양정함에 있어서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그런 특별한 사정을 징계의결서 중 심사개요란 또는 징계의결기록 중 징계권자의 조치란에 간략하게 밝혀 기재하여야 한다.

1. 성실의무위반

관련분야	징계사유	구체적 비행유형	양정기준	비고
경계근무 관련	초병근무 지 이탈	의식적으로 정하여진 경계근무지를 이탈, 수면 기타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영창 10일 이상	1. 경계근무에 관련된 비행으로 간접침투가 용 이하게 되는 등 구체적으로 복 과군에 유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강등 또 는 영창 15일
		근무교대시 의식적으로 경계근무에 임하는 것을 거부하고 수면을 취하는 경우	영창 5일 이상	
		후임자 교대거부를 방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경계근무지 이탈	휴가제한	
		경계근무 중 용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경계근무지 이탈	휴가제한	
	초형위반	근무교대시점을 넘겨 수면을 취하는 등, 지정된 시간보다 늦게 경계근무지에 도착	휴가제한	
		경계근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수면	영창 10일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경계근무에 임하게 하는 행위	영창 5일 이상	
		질병 등 참작할 만한 사유로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경계근무에 임하게 하는 경우	영창 5일 이상	
	경계근무 소홀	피로 등의 이유로 무의식중에 경계근무 중 가면 상태에 빠지는 행위	휴가제한	2. 초병 근무지 이탈 및 초형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타인의 요구 또는 강요에 의하여 대신 경계근무에 임하는 행위	휴가제한	
		초병으로서의 임무 미완수(불침번이 유동병력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위병이 허락 받지 않은 출입자를 통과시키는 행위 등)	영창 10일 이상	
	경계근무 태도불량	경계근무 중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행위(잡담, 놀이 등)	영창 5일 이상	1회적이면 휴가 제한
		수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순찰을 돌던 상급자에게 적발된 경우	휴가제한	
	경계근무 태도불량	경계근무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자세에 어긋나는 행위(휴연, 복장해체, 전열기구 소지, 앉거나 기대는 행위 등)	영창 5일 이상	1회적이면 휴가 제한

관련분야	징계사유	구체적 비행유형	양형기준	비고
일반근무·영내생활관련	근무지이탈	근무지에서 이탈하여 근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행위	영창 8일 이상	
		점호나 구보 기타 단체활동에서 임의로 열외하는 행위	휴가제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취침시간 중 내무반 이탈(예컨대 TV 시청)	휴가제한	
	근무소홀	일과시간 중 근무지에서 근무를 소홀히 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독서, 수면, 라디오 청취 등)	영창 5일 이상	1 회 적 이면 휴가 제한
	직무유기	자신의 보직, 주어진 특정임무와 관련,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행하여야 할 구체적 직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	영창 8일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부주의에 의하여 비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직무유기를 한 경우	영창 5일 이상	1 회 적 이면 휴가 제한
안전사고관련	안전사고 야기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를 야기	영창 10일 이상	안전사고 비경우 형사처벌에 지경한 관련의 형사처벌에 포함한다.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야기	휴가제한 또는 근신	
		부주의로 인하여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손괴	영창 5일 이상	
		위 각 경우에 그 피해가 극히 경미하여 결과적으로 부대 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	휴가제한 또는 근신	
	운전병 교통사고	운전병이 임무수행 도중 야기한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중앙선침범·신호위반·횡단보도 사고·줄임운전 등 중대한 과실이 개입하여 인명피해를 낸 경우	영창 10일 이상	
		위와 같이 중대한 과실로 물적 피해를 낸 경우	영창 5일 이상	
		그 외의 과실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	휴가제한 또는 근신	
		그 외의 과실로 물적 피해만을 낸 경우	휴가제한 또는 근신	
	운전병 법규위반 운전	운전병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안전 수칙·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영창 5일 이상	
		위와 같은 운전이 1회적인 경우	휴가제한 또는 근신	
가혹행위 등 관련	가혹행위 감독소홀	구타 등 사고 발생관련, 분대장·내무실장의 책임을 가진 자가 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휴가제한 또는 근신	
기타	자살·자해기도	자살 또는 자해를 기도한 경우 (자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영창 12일 이상	
	그 외의 경우	그 외 병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일체의 경우에는 위 각 징계사유 및 양형기준을 유추하여 처리		

2. 복종의무위반

관련분야	징계사유	구체적 비행유형	양형기준	비고
하급상	명령·지시불복종	지휘관 등 명령권을 가진 상관 면전에서 고의적인 불복종 행위	영창 12일 이상	하급상 관련 비행은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명령권을 가진 상관의 구체적·개별적 지시에 고의적으로 불복종, 또는 불복종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행위	영창 8일 이상	
		면전여부를 막론하고 명령권 없는 상급자의 구체적·개별적 지시에 고의적으로 불복종 하는 행위		
		상관 또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부주의 또는 잊어버림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불복종 하는 행위	휴가제한(영창 5일 이상)	
	상급자에 대한 불손한 언동	소대장 이상 지휘관(징계협의자의 소속 부대 지휘관)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불손한 행동을 하는 경우	강등 또는 영창 15일	다른 병사들로 하여금 관련 비행을 하도록 선동하는 자 역시 강등 또는 영창 15일
		기타의 상급자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불손한 행동을 하는 경우	영창 12일 이상	
		상급자에 대한 계속적이고 의도적인 불손한 언사(반말 사용 등)	영창 8일 이상	
안전사고 관련	총기관리 소홀	총기를 함부로 방치하여 일시적으로 분실하는 행위	영창 12일 이상	
		총기를 함부로 방치하다가 적발된 경우	영창 8일 이상	
	위험물주의 소홀	유류고·탄약고 등 폭발·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흡연·취사 기타 폭발·화재의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는 행위	휴가제한(영창 5일 이상)	

관련분야	징계사유	구체적 비행유형	양형기준	비고
가혹행위 등 관련	물리적 가혹행위	집합·지시·일차려·군기교육·암기강요 등 이른바 병 5대 금지 사항위반 및 폭언·욕설·구타 등 후임병에 대한 일체의 가혹행위 중 구타 기타 물리적인 가격·접촉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영창 10일 이상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비물리적 가혹행위	단순한 집합 및 교육행위 또는 일차려의 부여 등 위와 같은 가혹행위 중 물리적인 가격·접촉행위가 없는 경우	영창 8일 이상	
	가혹행위 보고소홀	분대장·내무실장의 책임을 가진 자가 위와 같은 사고발생사실을 알고도 불보고하는 경우	영창 8일 이상	
		피해자가 이러한 사고발생사실을 불보고 하여 계속적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기타의 자가 이러한 사고발생사실을 알고도 불보고하는 경우	영창 5일 이상	
	병상호가 싸움	병 상호간의 감정적이고 우발적인 싸움 위와 같은 사고발생사실을 알고도 불보고하는 경우	영창 8일 이상	후임자는 하극상 처리
상근예비 역 특수 유형	상근운전	지휘관이 퇴근 후 일체의 차량운전을 금지시켰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행위	영창 8일 이상	1회적 사유가 참작 가능한 경우 휴가제한·근신
	상근음주	지휘관의 퇴근 후의 음주를 금지시켰음에도 그 다음날의 출근 및 임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심한 음주를 한 행위		
기타	휴대금지 품목 휴대	휴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호출기·휴대폰 등)의 소지	휴가제한	
	야전군기 문란	훈련 중 작전 수행에 지장이 되는 일체의 군기문란 행위(무단출연, 취식 등), 사격장에서의 안전수칙위반 등 군기문란 행위	영창 5일 이상	1회적인 경우 휴가제한
	그 외의 경우	그 외 병으로서의 복종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일체의 경우에는 위 각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을 유추하여 처리		

3. 부대이탈금지위반

관련분야	징계사유	구체적 비행유형	양형기준	비고
일반 근무·영내 생활관련	영외이탈	군무를 기피할 목적에서의 영외 이탈행위로 형사처벌을 면한 경우	영창 12일 이상	
		군무기피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영외로 이탈한 경우(형사처벌을 면한 경우)	영창 10일 이상	
휴가 등 관련	위 계에 의한 휴가 등의 획득	휴가·외박·면회 등 부대를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유를 허위로 조작하여 휴가 등을 얻어내는 행위	영창 8일 이상	경조사 등 동기참작 가능시 휴가제한(영창 5일 이상)
	지연복귀	군무기피목적을 가지고 휴가·외박·면회 등에서 정하여진 시간보다 늦게 복귀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면한 경우	영창 12일 이상	
		군무기피목적은 없으나 고의적으로 휴가·외박·면회 등에서 늦게 복귀한 경우	영창 10일 이상	
		부주의로 필요한 교통편을 놓치는 등의 이유로 비의도적으로 지연복귀한 경우	휴가제한	
	위수지역 이탈	면회 등의 사유로 외박명령을 받은 경우에 위수지역을 이탈하는 행위	영창 8일	경조사 등으로 동기참작 가능시 영창 5일 이상
상근예비역특수유형	상근지각	상근예비역이 정하여진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하는 경우	영창 8일 이상	1회적이면 휴가제한·근신
	상근소개 파악불가	불시소집·변개통신·통신점호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퇴근 후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는 병사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부대의 시도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수 없는 상태에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행위	휴가제한 또는 근신	
기타 그 외의 경우		그 외 병으로서 부대이탈금지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일체의 경우에는 위 각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을 유추하여 처리		

4. 공정 의무 위반

관련분야	징계사유	구체적 비행유형	양정기준	비고
일반근무 · 영내생활 · 활관련	허위공문 · 서작성	그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공문서의 내용을 사실과 어긋나게 하여 작성하 는 행위(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영창 10일 이상	중요하지 않은 내용 에 관한 것으로 사안 경미하거나, 상급자 의 강요 등에 의한 경우 영창 5일 이상
휴가 등 · 관련	문서위조 · 변조	휴가·외박 등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는 행위(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영창 10일 이상	경조사 등으로 참작 가능시 영창 5일 이 상
기타 그 외의 경우		그 외의 병으로서의 공정 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일체의 경우에는 위 각 징계사유 및 양 정기준을 유추하여 처리		

5. 청렴 의무 위반

관련분야	징계사유	구체적 비행유형	양정기준	비고
일반근무 · 영내생활 · 활관련	군용물 · 은닉·반 출	실탄·탄피 등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임의로 은닉하거나 영외로 유출하는 행위(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영창 8일 이상	대상물 가치가 작고 위험성이 없으며, 동 기참작 가능시 휴가 제한
휴가 등 · 관련		영내에서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 거나, 기망·폭력 등의 수단으로 빼앗 는 행위(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영창 5일 이상	
기타 그 외의 경 · 우		그 외의 병으로서의 청렴 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일체의 경우에는 위 각 징계사유 및 양정 기준을 유추하여 처리		

6. 비밀엄수의무 위반

관련분야	징계사유	구체적 비행유형	양정기준	비고
일반근무 · 영내생활 · 활관련		음어를 평문으로 통신하거나 음어낭을 분실하는 등 음어를 누설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	영창 10일 이상	작전 중에는 영창 15일
휴가 등 · 관련		전화·편지 등으로 보안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영창 5일 이상	
기타 그 외의 경우		그 외의 병으로서의 비밀엄수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일체의 경우에는 위 각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을 유추하여 처리		

7. 품위유지의무위반

관련분야	징계사유	구체적 비행유형	양정기준	비고
휴가 등 · 관련	음주상태 · 복귀	휴가 등으로부터 복귀하면서 위병이나 기타 부대 간부에 의하여 제지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복귀하면서 그 제지에 불응하는 경우	영창 10일 이상	
		그 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복귀하는 경우	영창 8일 이상	
기타 그 외의 경우		강간 기타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합의 등을 이유로 군검찰부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영창 10일 이상	
		교통사고(음주운전 포함) 또는 폭력 등으로 인한 민간 수사기간에 최초 입건되어 군사법원으로부터(정식·약식재판)을 선고받은 경우	영창 5일 이상	
		폭력사건을 저지르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예 입건되지 않거나 또는 군검찰부로부터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처분 등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휴가 제한 근신	

관련분야	징계사유	구체적 비행유형	양형기준	비고
음주관련	음 주 후 군기문란	영내에서 술을 마신 후 난동·폭행·폭언을 행하고 상관의 제지에도 불응하는 행위	영창 12일 이상	
		같은 행위를 하던 중 동료병사들의 제지에 불응하는 행위	영창 10일 이상	
		단순한 고성방가·인사불성 등 기타 술로 인하여 영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영창 8일 이상	음주자체는 부대내 행사 등 허가된 거이고 제지에 응한 경우에는 휴가제한
	단순 주류반입·음주	영내에 주류를 무단반입하여 이를 다른 병사들과 함께 음주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	영창 10일 이상	
		영내로 주류를 무단반입하여 이를 혼자 음주하는 경우	영창 8일 이상	
		영외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음주	영창 5일 이상	
		영외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병사들이나 민간인들과 어울려 음주		
		자신이 마실 목적으로 영내에 단순히 주류를 무단반입한 경우		
	선임병 또는 동료병사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마실 목적은 없이 단순히 주류를 영내에 반입하여 주거나 그러한 행위에 협조한 경우	휴가제한		
기타	군중기문란행위	상급자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례하지 않은 행위	휴가제한	
		이유를 막론하고 동료 병사들로부터 금전을 각출하는 행위		
		복장불량 또는 자세불량		
	그 외의 경우	그 외 병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일체의 경우에는 위 각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을 유추하여 처리		

제2절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도 징계입창자의 설문조사와 영창관리자(책임장교, 형무담당관) 면접조사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을 함께 하였다.

I. 징계일반

1. 징계사유 등

(1) 징계입창자의 계급

징계입창자 계급은 '이병' 2명, '일병' 9명, '상병' 25명, '병장' 23명으로 상병, 병장 등 이른바 고참병사의 입창자가 81.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3-2〉 징계입창자 계급

구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계
인원	2	9	25	23	59

(2) 부대 단위

소속된 부대 단위는 '사단' 9명, '여단' 5명, '연대' 2명, '대대' 29명, '중대' 11명, '소대' 2명으로 대대급과 중대급이 67.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3-3〉 징계부대 단위

구분	군사령부	군단	사단	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기타	계
인원	-	-	9	5	2	29	11	2	1	59

(3) 징계지휘관의 계급

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제5호는 “병에 대한 징계는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58조 제2항 제4호에는 “병에 대한 강등은 연대장·함정장 및 전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지휘관의 직급은 ‘중대장’ 18명, ‘대대장’ 33명, ‘연대장’ 3명, 기타 5명으로 대대장과 중대장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4〉 징계지휘관 계급

구분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여단장	기타	계
인원	18	33	3	-	5	59

(4) 징계사유

징계영창처분 사유로는 ‘하급자 폭행’ 8명, ‘상급자 명령 불복종’ 9명, ‘근무태만’ 7명, ‘음주’ 4명, ‘지휘관의 지시위반’ 12명(무단외출, 허위보고, 언어폭력, 군무이탈, 물리적 가혹행위 등), 기타 15명으로 지휘관의 지시위반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3-5〉 징계사유

구분	인원
하급자 폭행	8
상급자 폭행	-
동료간 싸움	-
상급자 명령 불복종	9
근무태만	7
음주	4
지휘관 지시위반	12
기타	15
계	55

(5) 입찰기간의 부당성

입찰기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일수가 너무 길다’ 26명, ‘징계사유에 맞게 징계일수가 적당한 것 같다’ 30명, ‘징계일수가 적은 것 같다’ 1명으로,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일수가 너무 길다는 비율도 44%나 되어 피징계자의 입장에서 징계일수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입찰기간의 부당성

구분	인원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일수가 너무 길다	26
징계사유에 맞게 징계일수가 적당한 것 같다	30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일수가 적은 것 같다	1
기타	2
계	59

2. 징계절차

(1) 징계위원회 개최 인지여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지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45명, ‘그렇지 않다’ 14명으로 나타나 대부분 징계자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비율도 23.7%나 되어 지휘관에 의한 일방적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징계위원회 개최 인지여부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인원	45	14	59

(2) 징계위원회 참석여부

군인사법시행령 제71조는 징계혐의자의 참석과 관련하여 “①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혐의사실에 대하여 변명할 수 있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변명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불참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써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가 2회 이상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41명, ‘그렇지 않다’ 16명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28%나 되어 징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않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징계위원회 참석여부

참석여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인원	41	16	57

(3) 이익되는 사실 진술여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귀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였느냐는 질문에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계급사회라는 군의 특성상 할 수 없었다’ 12명, ‘진술한 기회가 주어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16명,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지휘관이 일방적으로 신문만 하였다’ 8명, ‘참석은 하였지만, 이미 징계절차가 끝난 상태에서 징계일수에 대한 일방적 통보만 받았다’ 4명, 기타 6명이었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응답도 다수 있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계급사회라는 군의 특성상 할 수 없었다는 비율이 52.1%나 되어 피징계자들이 청문권 내지 변명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이익되는 사실 진술여부

구분	인원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계급사회라는 군의 특성상 할 수 없었다	12
진술한 기회가 주어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16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지휘관이 일방적으로 신문만 하였다	8
참석은 하였지만 이미 징계절차가 끝난 상태에서 징계일수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다	4
기타	6
계	46

(4) 입창기간이 지휘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하여 결정되었는지 여부

입창기간이 지휘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보느냐의 질문에 ‘그렇다’ 29명, ‘그렇지 않다’ 30명으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그렇다 응답비율도 49.1%나 되어 상당수는 피징계자의 입장에서 지휘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해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3-10〉 입창기간이 지휘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인원	29	30	59

(5) 징계의 부당성 여부

징계영창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그렇다’ 11명, ‘그렇지 않다’ 47명으로 영창처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하다는 이유로는 ‘사소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영창에 왔다’, ‘한마디 말 실수에 비해 징계일수가 너무 길다’, ‘조그마한 일을 크게 부풀려 중징계가 이루어진다’, ‘피해자의 말에 치중하여 공평하지 않다’, ‘지휘관 마음대로 처분한다’ 등의 내용으로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표 3-11〉 징계의 부담성 여부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인원	11	47	58

(6) 항고권 고지여부

징계시 영창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는 말을 지휘관(징계위원)으로부터 들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31명, ‘그렇지 않다’ 28명으로 항고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비율이 47.4%나 되어 항고권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항고권 고지여부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인원	31	28	59

(7) 항고여부

항고를 하였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1명, ‘그렇지 않다’ 42명이었다. 항고권에 대한 고지가 상당 부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항고권에 대한 행사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항고여부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인원	1	42	43

(8) 징계영창처분과 관련한 차별

이른바 뒷 배경이 있는 사병이 징계영창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창을 가지 않은 경우를 본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 ‘그렇다’ 22명, ‘그렇지 않다’

35명으로 이른바 징계영창처분이 상대적 또는 차별적으로 적용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병의 징계의식 속에 이른바 뒷 배경이 있으면 영창에 가질 않을 수 있다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4〉 징계영창과 관련한 차별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인원	22	35	57

징계절차가 실질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확인은 사후적으로 서류로밖에 할 수 없다. 징계권자는 사병이 영창에 입창되기 전에 법무참모부에 징계결과를 서류로 보고하고 이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며 이후 입창의뢰서와 징계처분장, 군의관소견서를 첨부하여 입창시키게 된다.

영창관리자의 면접조사결과 징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개최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징계서류를 검토하고 의심스러울 때에는 입창자에게 직접확인 한다고 하였다.

II. 입창절차

육군의 경우 육군규정 155 제174조 1.의 수용절차에 따르면 징계처분자의 경우에는 입창의뢰서, 징계처분장, 군의관소견서 등 적법서류를 조사한 후에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에는 입감 전에 신체 검색 및 의류를 검사하여야 하며 허가되지 않은 품목은 회수하여 영치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군의 경우 공군규정 141 제29조 제1항에는 “신입자 수용시 헌병대장은 집행지휘서 및 기타서류를 조사·확인한 후 수용하여야 하며, 신체검사 및 수용관련 서류작성 그리고 신입자 처우에 대한 조치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 구치소업무규정 제99조에 징계입창자에 대한 입소절차를 다음과 같이 따로 규정하고 있다.

제99조 입소절차

1. 징계자의 인적 사항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입소의뢰서

나. 징계처분장

다. 신체검사서

2. 신체검색 및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며, 불필요한 물품은 소속대에 인계한다.
3. 입소시간 중 사용할 침구류 및 피복을 지급한다.
4. 구치소장은 상기사항을 직접 확인 후 입소기간 중의 제한사항 및 준수사항을 교육한다.
5. 구치소장은 징계자의 신체·정신적 상태가 입창에 부적합할 경우 지휘계통을 통하여 원소속대에 통보, 입소절차를 중지한다.

1. 입창시 현병조사

(1) 조사여부

입창시 현병에서 조사를 받았느냐를 질문에 ‘그렇다’ 27명, ‘그렇지 않다’ 28명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내용은 소속, 계급 징계사유 등을 조사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3-15〉 입창시 현병조사 여부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인원	27	28	55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징계입창자의 경우 현병에서 특별히 조사하는 내용은 입창에 필요한 적법서류검토, 건강상 영창생활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입창사유 검토 후 직접적으로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한 것으로 상당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현병수사관에게 의뢰하여 조사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2) 조사시 부당한 대우

조사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모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하였다.

〈표 3-16〉 조사시 부당한 대우

조사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여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인원	-	36	36

2. 영창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입창시에 헌병관계자로부터 영창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교육을 받았지만, 형식적이어서 영창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20명, ‘자세한 교육을 받아 영창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29명,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7명, 기타 1명으로 형식적 교육 내지는 받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상당수가 되어 영창관리자가 이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7〉 영창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구 분	인원
교육을 받았지만 형식적이어서 영창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20
자세한 교육을 받아 영창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29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7
기타	1
계	57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미결수용자에 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고, ‘징계입창자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해주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징계입창자에게 영창생활의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일과, 규율, 처우, 시설물 이용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입창자의 응답에서는 형식적인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도 다수 있어, 형무담당관 등 영창관리자가 입창자의 입장에서 영창생활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부당한 대우/ 가혹행위 등

1. 영창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과

영창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좌’ 21명(이유: 허리, 무릎 통증), ‘반성문 작성’ 3명(이유: 하루에 두 번 작성), ‘수양록 작성’ 2명(이유: 반복되는

일과), ‘독서 2명(이유: 고정된 자세에서만 할 수 있음), ‘군기교육’ 5명(이유: 체력단련 시 근무자에 따라 강도가 다름, 계속 누적시 고통스러움), 기타 15명으로 영창에서는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일과 없이 정좌수양만 하기 때문에 정좌가 가장 견디기 힘들다는 응답을 하였다.

정좌의 경우에는 영창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장시간 앉아 있어 무릎·허리통증을 호소하였으며, 반성문의 경우에는 많은 양 작성 요구, 수양록 작성의 경우에는 쓸 내용이 없음, 독서의 경우에는 읽을 만한 책이 없음, 기타의 경우에는 근무병의 언어적 위압감 조성 등이었다.

〈표 3-18〉 영창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과

구분	정좌	반성문 작성	수양록 작성	독서	군기교육	기타	계
인원	21	3	2	2	5	15	48

2. 정좌

(1) 정좌자세

영창에서 어떠한 자세로 앉아 있는지는 질문에 ‘① 편안한 양반다리자세로 앉아 있다’ 26명, ‘② 시선을 고정하고 양반다리 자세로 허리를 곧게 펴고, 주먹 권 손을 무릎 위에 팔이 구부러지지 않게 올려놓은 자세로 앉아 있다’ 8명, ‘③ 시선을 고정하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허리를 곧게 펴고, 주먹 권 손을 무릎 위에 팔을 구부러지지 않게 올려놓은 자세로 앉아 있다’ 6명, ‘①② 자세를 병행하여 앉아 있으나 ② 자세를 주로 하여 앉아 있다’ 8명, 기타 11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각 헌병대에 따라 정좌자세가 다르기 때문이며 또한 정좌자세가 과도한 경우는 이를 통하여 적절한 고통을 줌으로써 징계벌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00부대의 영창의 경우에는 징계입창자에 대해서만 너무 가혹하게 ③의 자세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였다.

〈표 3-19〉 정좌자세

구분	인원
편안한 양반자세로 앉아 있다.	26
시선을 고정하고 양반다리 자세로 허리를 곧게 펴고, 주먹 쥔 손을 무릎위에 팔이 구부러지지 않게 올려놓은 자세로 앉아 있다.	8
시선을 고정하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허리를 곧게 펴고 주먹 쥔 손을 무릎 위에 팔을 구부러지지 않게 올려놓은 자세로 앉아 있다.	6
①② 자세를 병행하여 앉아 있으나 ②자세를 주로 하여 앉아 있다.	8
①②③ 자세를 병행하여 앉아 있다.	-
기타 자세	11
계	59

(2) 정좌자세 강요

근무현병으로부터 영창 일과 시간 중 정좌(위 문항의 ② 자세)를 강요받은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있다’ 15명, ‘없다’ 40명이었으며, 얼마 동안 그 자세를 취하고 있었느냐에 대해 ‘2시간’, ‘일과시간 내내’, ‘휴식시간 빼고는 거의 모두’ 등이었다.

〈표 3-20〉 정좌자세 강요

구분	있다	없다	계
인원	15	40	55

3. 가혹행위

(1) 가혹행위 여부

영창에서 근무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그렇다’ 4명, ‘그렇지 않다’ 53명으로 가혹행위는 많이 근절된 것으로 보인다.

〈표 3-21〉 가혹행위 여부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인원	4	53	57

(2) 가혹행위를 당한 이유

가혹행위를 당한 이유로는 ‘정좌자세 불량’ 1명, ‘영창내 규율위반’ 1명, 기타 2명으로 ‘목소리가 작다’, ‘식사를 남긴다’고 등이었으며, 3명은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자도 응답한 경우이다.

〈표 3-22〉 가혹행위를 당한 이유

구분	잠버릇 불량	정좌자세 불량	영창내 규율위반	식사태도 불량	기타	계
인원	-	1	1	-	2	4

(3) 가혹행위 내용

가혹행위의 내용으로는 ‘욕설’ 1명, 기타 1명은 ‘식사를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등이었으며 나머지 응답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표 3-23〉 가혹행위 내용

구분	욕설	폭행	원산폭격 (머리박기)	규정시간외 정좌강요	잠 안 재우기	기타	계
인원	1	-	-	-	-	3	4

(4) 가혹행위시 부당하다고 느꼈는지 여부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4명 모두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3-24〉 가혹행위시 부당하다고 느꼈는지 여부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인원	4	-	4

4. 미결수용자와의 차별대우

영창에서 징계입창자가 미결수용자보다 못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있다' 21명, '없다' 33명으로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응답도 38.8%로 상당수가 되었다.

〈표 3-25〉 미결수용자와의 차별대우

구분	있다	없다	계
인원	21	33	54

차별대우 내용으로는 '미결은 오래 있고 징계는 정해져 있는 기간 때문에 미결수용자를 더 편하게 해준다', '뭐든지 영창에서는 미결수 먼저', '일과표도 미결수 위주로 편성', '미결수는 행동까지 헌병이 신경을 안 쓴다', '배식은 징계자만 하고 휴식도 미결이 더 많으며 독서시간도 많다', '배식에 있어서도 미결수용자는 간식이 제공되지만 징계자는 제공되지 않는다', '징계자만 청소한다', '미결수용자는 독서를 하지만 징계자는 독서가 허용되지 않는다', '미결자는 편하게 앉아 있지만 징계자는 정좌자세로 앉아 있다' 등의 내용이었다.

5. 수양록/ 반성문작성

(1) 수양록/ 반성문작성 여부³⁰⁾

영창에서 작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수양록 작성 4명, 반성문 작성 10명, 수양록·반성문 모두 작성 1명이었다.

〈표 3-26〉 수양록/ 반성문 작성여부

구분	수양록	반성문	수양록, 반성문 모두	기타	계
인원	4	10	1	-	15

영창에서 따라서는 징계입창자의 경우 반성문 작성의 시간이 일과표에 따로 규정

30) 반성문/수양록작성 부분과 관련한 문항은 8차 방문부대영창부터 새로이 추가된 문항이기 때문에 이후 설문조사 응답내용이다.

된 영창도 있어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었다.

(2) 수양록/ 반성문 열람에 따른 인격침해

반성문이나 수양록 작성을 헌병이 읽어보는 것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꼈느냐 하는 질문에 ‘그렇다’ 13명, ‘그렇지 않다’ 24명, ‘헌병이 읽어보는지 모르겠다’ 12명, 기타 10명(읽어보지 않는다)으로 나타났다.

〈표 3-27〉 수양록/ 반성문 열람에 따라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헌병이 읽어보는지 모르겠다	기타	계
인원	13	24	12	10	59

영창관리자의 면접조사에서는 징계입창자에 대한 수양록 점검방법으로는 형무담당관이 수양록을 읽어보고 징계입창자의 반성정도를 파악한다는 응답도 있었으며, 형식적으로 작성여부만 파악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영창에 따라서는 반성문을 작성하는 영창의 경우에는 퇴창시에 소속대로 보낸다고 하였다.

(3) 반성문/수양록 작성에 따른 부당한 대우

반성문이나 수양록 작성을 잘못하였다고, 근무헌병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 ‘있다’ 6명, ‘없다’ 53명으로 대부분의 경우 수양록 작성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영창의 경우에는 ‘반성문의 양을 일정정도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28〉 반성문/수양록 작성에 따른 부당한 대우

구분	있다	없다	계
인원	6	53	59

6. 부당한 작업

영창에 있으면서 부당한 작업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는 응답이 1명이었으며, 내용은 목욕탕 청소였다.

〈표 3-29〉 부당한 작업 여부

구분	있다	없다	계
인원	1	58	59

7. 훈련병 참관

영창 내에 있을 때 훈련병이 영창을 참관한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다’ 2명, ‘없다’ 57명이었으며, 있다는 응답자 중 모멸감을 느꼈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별 감정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훈련병 참관시 훈련병과 마주 보고 앉아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표 3-30〉 훈련병참관 여부

구분	있다	없다	계
인원	2	57	59

8. 선임입창자에 의한 가혹행위

입창기간 중 본인보다 먼저 입창한 입창자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 모두 ‘없다’고 응답하였다.

IV. 영창시설과 생활환경

1. 영창온도/ 난방시설

현재 영창내의 온도와 관련하여 ‘매우 추워 생활하기 불편하다’ 7명, ‘추운편이다’

11명, '보통이다' 13명, '생활하기에 적당하다' 21명, 기타 7명으로 '추워서 새벽에 잠에서 깬다', '외풍이 심하다', '바닥이 차다' 등으로 춥다는 응답도 30.5%를 차지하고 있어 미결수용자에 비하여 춥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3-31〉 영창의 온도

구분	인원
매우 추워 생활하기 불편하다	7
추운 편이다	11
보통이다	13
생활하기에 적당하다	21
기타	7
계	59

2. 영창의 밝기/환기

(1) 영창의 밝기

영창내의 밝기와 관련해서는 '어둡다' 4명, '보통이다' 21명, '밝다' 28명, '매우 밝다' 6명으로 보통과 밝다는 응답이 많았다. 영창내 밝기도 각 영창에 따라 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창관리자에게 영창 내 밝기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표 3-32〉 영창의 밝기

구분	매우 어둡다	어둡다	보통이다	밝다	매우 밝다	계
인원	-	4	21	28	6	59

(2) 환기

영창내의 환기상태와 관련해서는 '환기가 매우 잘된다' 8명, '잘 되는 편이다' 23명, '보통이다' 24명, '환기가 되지 않는 편이다' 4명으로 대체적으로 환기가 잘 되는 편으로 나타났다.

〈표 3-33〉 환기

구분	인원
환기가 매우 잘 된다.	8
잘 되는 편이다.	23
보통이다.	24
환기가 되지 않는 편이다.	4
환기가 되지 않아 공기가 매우 탁하다.	-
계	59

(3) 취침시 밝기

취침시 영창내의 밝기와 관련하여 ‘취침등만 켜고 취침하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다’ 37명, ‘모든 조명을 다 켜고 취침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2명, 기타 12명(거실은 소등하고 식당 등만 점등, 근무자가 있는 곳만 점등, 취침등이 너무 밝다)으로 취침시 조명의 밝기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창에 따라 취침시 근무자가 근무하는 위치의 등이 너무 밝은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취침시 밝기

구분	인원
취침등만 켜고 취침하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다	37
모든 조명을 다 켜고 취침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2
기타	12
계	51

(4) 습도

영창내의 습도와 관련하여 ‘습기가 많이 있다’ 4명, ‘습기가 조금 있다’ 5명, ‘보통이다’ 40명, ‘습기가 차지 않는다’ 9명, 기타 1명이었다. 습기와 관련해서는 그리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3-35〉 습도

구분	인원
습기가 많이 있다	4
습기가 조금 있다	5
보통이다	40
습기가 차지 않는다	9
기타	1
계	59

3. 화장실 이용

(1) 화장실 위치

화장실의 위치는 정계입창자와 미결수용자가 함께 영창에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미결수용자와 똑 같았다. 다만 정계자만 수용하고 있는 육군 제76사단의 경우에는 헌병대 사병과 같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2) 화장실 청결상태

화장실의 청결상태와 관련하여 ‘매우 청결하다’ 6명, ‘청결한 편이다’ 22명, ‘보통이다’ 30명, ‘불결하다’ 1명이었다. 화장실 청소는 거실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각 거실의 입창자가 청소하였으며, 거실 밖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계입창자가 청소하기 때문에 청결도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3-36〉 화장실 청결상태

구분	인원
매우 청결하다	6
청결한 편이다	22
보통이다	30
불결하다	1
매우 불결하다	-
계	59

(3) 화장실 칸막이 높이

화장실의 구조와 관련하여 ‘높이가 낮아 수치스럽다’ 21명, ‘밖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라 수치스럽지 않다’ 24명,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이기는 하나 이용시 큰 소리로 숫자 등을 외치게 해 수치스럽다’ 1명, 기타 13명(조금 수치스럽다, 문이 작아 용변볼 때 불편함, 밖에서 볼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나 입창자들이 다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치스럽지 않다) 등이었다. 화장실의 높이는 미결수용자와 똑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높이가 같았으며, 이에 따라 정제입창자들도 화장실 칸막이의 높이가 낮아 수치스럽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3-37〉 화장실이 칸막이 높이

구분	인원
높이가 낮아 수치스럽다	21
밖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라 수치스럽지 않다	24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이기는 하나 이용시 큰 소리로 숫자 등을 외치게 해 수치스럽다	1
기타	13
계	59

(4) 화장실 이용시간

영창에서 화장실과 관련하여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하여 불편하다’ 2명,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하지만 불편하지 않다’ 2명, ‘언제든지 헌병에게 이야기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하지 않다’ 35명, ‘헌병의 허락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불편하다’ 18명, 기타 2명이었다. 화장실 이용의 경우에는 정해진 휴식시간에 이용하기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헌병의 허락을 받아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응답이 33.8%를 차지하고 있다.

〈표 3-38〉 화장실 이용시간에 따른 불편

구분	인원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하여 불편하다	2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하지만 불편하지 않다	2
언제든지 헌병에게 이야기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하지 않다	35
헌병의 허락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불편하다	18
기타	2
계	59

(5) 화장지 사용

화장실 이용시 화장지 사용과 관련하여 ‘헌병이 제공해 주니까 부족하다’ 4명, ‘헌병이 제공해 주긴 하지만, 충분하다’ 14명, ‘본인이 알아서 가져가기 때문에 충분하다’ 31명,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어 충분하다’ 8명, 기타 2명으로 화장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그리 불편한 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9〉 화장실 사용

구분	인원
헌병이 제공해 주니까 부족하다	4
헌병이 제공해 주긴 하지만, 충분하다	14
본인이 알아서 가져가기 때문에 충분하다	31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어 충분하다	8
기타	2
계	59

(6) 화장실 사용과 관련한 가혹행위

영창에서 체벌의 수단이나 가혹행위로 화장실 이용을 금지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없다’라는 응답을 하였다.

그 밖의 화장실 사용과 관련하여 건의하고 싶은 내용으로는 주로 ‘칸막이가 낮다’는 것이었다.

V. 입장자 위생관련

1. 신체 위생

(1) 세면도구

영창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면도구는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면도기, 비누, 치약, 칫솔, 화장품, 수건이었으며 면도기의 경우에는 자해의 위험성 때문에 현병이 보관하였다가 면도시에만 지급하고 있었다.

영창관리자의 면접조사에 따르면 영창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면도구의 경우 정제입창자가 원칙적으로 자대에서 가져오지만, 부족한 경우에는 현병대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하였다.

(2) 세면시간

세면이나 세족 시간과 관련하여 ‘충분하다’ 33명, ‘보통이다’ 23명, ‘충분하지 못하다’ 3명으로 대체적으로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0〉 세면시간

구분	충분하다	보통이다	충분하지 못하다	매우 부족하다	기타	계
인원	33	23	3	-	-	59

(3) 목욕/샤워

- 목욕실구비 여부

목욕실이나 샤워실의 경우 신축한 영창의 경우에는 구비되어 있으나 노후된 영창의 경우에는 독립된 목욕실이 없고, 현병사병과 같이 목욕탕을 사용하고 있었다.

- 목욕/샤워 횟수

목욕이나 샤워의 횟수와 관련하여 ‘매일’ 33명, ‘주 1회’ 2명, ‘주 2회’ 7명, ‘2주 1회’ 1명, 기타 15명(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싶을 때)으로 목욕이나 샤워는 비교적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입창기간이 짧아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표 3-41〉 목욕/샤워횟수

구분	매일	주 1회	주 2회	2주 1회	전혀 하지 못했다	기타	계
인원	33	2	7	1	1	15	59

영창관리자의 면접설문에서도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비시간이나 세면에 언제든지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목욕탕이 구비되어 있지 못하는 영창의 경우에는 거실내 세면장에서 간단한 샤워정도는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 목욕/샤워시간

목욕이나 샤워 시간이 충분하냐는 질문에 ‘그렇다’ 38명, ‘그렇지 못하다’ 12명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2〉 목욕/샤워 시간

충분한지 여부	그렇다	그렇지 못하다	계
인원	38	12	50

- 수건사용

수건의 사용은 개인적으로 하나씩 사용한다고 모두 응답하였으나 수건 건조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응답도 있어 가급적 수건을 사용하고 나서는 일광건조를 시켜 사용하는 것이 위생상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세탁

- 세탁횟수

세탁의 경우 속옷의 경우에는 세면시에 세탁하거나 개인정비시간에 또는 세탁을 원할시 헌병에게 보고하고 세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복의 경우에는 개인이 원할 때 세탁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00부대 영창과 같이 영창에서 군복을 지급받고 있는 곳에서는 군복세탁의 경

우에는 개인이 하지 않고 일괄세탁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세탁을 하여도 충분히 건조할 만한 공간이 없어 세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충분한 일괄건조가 되지 않는다는 영창도 있었다.

- 세탁장소

세탁하는 장소는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세면장에서 세탁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세탁장이 따로 구비되어 있는 영창에서는 세탁장에서 세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본인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세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세탁시간

세탁할 시간과 관련하여 ‘매우 충분하다’ 8명, ‘충분하다’ 21명, ‘보통이다’ 16명, ‘부족하다’ 7명, 기타 1명(세면할 때 같이 한다) 등으로 세탁시간이 그리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3〉 세탁시간

구분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기타	계
인원	8	21	16	7	-	1	53

(5) 면도

면도의 횟수와 관련하여 ‘세면시 언제든지’ 23명, ‘2일에 1회’ 3명, ‘3일에 1회’ 5명, ‘1주일에 1회’ 2명, ‘거의 하지 않고 영창에 특별한 사람이 올 때만 한다’ 7명, 기타 14명(안해 봐서 모르겠음, 징계자는 하지 않음)으로 나타나 면도는 비교적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창에 특별한 사람이 올 때만 한다는 응답도 있어 일부 영창에서는 면도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4〉 연도횟수

구분	인원
세면시 언제든지	23
2일에 1회	3
3일에 1회	5
1주일에 1회	2
거의 하지 않고 영창에 특별한 사람이 볼 때만 한다	7
기타	14
계	54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2일 1회를 기준을 필요시에 면도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으며, 저녁 개인정비시간에 원할 때, 5일 1회 정도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6) 기타 건의사항

신체위생과 관련한 기타 건의사항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모포·전투복이 청결하지 않다’, ‘화장품을 사용했으면 한다’ 등이 있었다. 샤워에 대한 건의는 영창내에 독립된 샤워실이 없는 영창의 경우이며, 전투복이 청결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투복을 일괄지급하는 영창의 경우이다.

2. 침구/ 의복/ 위생용품

(1) 침구지급

현재 영창에서 지급되는 침구와 관련하여 ‘매우 부족하다’ 2명, ‘부족하다’ 11명, ‘보통이다’ 30명, ‘충분하다’ 11명, ‘매우 충분하다’ 5명으로 나타났다. 입창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침구류가 지급되지만 입창자가 많은 영창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45〉 침구지급

구분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계
인원	2	11	30	11	5	59

영창관리자의 면접조사에서는 징계입창자에게 지급되는 침구는 미결수용자와 똑같이 지급한다고 응답하였다.

(2) 침구청결

영창에서 지급되는 침구의 청결상태와 관련하여 ‘매우 불결하다’ 5명, ‘불결하다’ 21명, ‘보통이다’ 21명, ‘깨끗한 편이다’ 11명, ‘매우 깨끗하다’ 1명으로 대체적으로 불결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44%로 상당한 비율을 점하고 있다. 입창자가 많이 있는 영창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결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3-46〉 침구청결

구분	매우 불결하다	불결하다	보통이다	깨끗한 편이다	매우 깨끗하다	계
인원	5	21	21	11	1	59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 따르면 미결수용자의 침구의 세탁과 마찬가지로 각 영창마다 분기 내지 반기별로 헌병대 침구류세탁소에 일괄세탁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영창과 같이 입창자가 수시로 교체되는 상황에서는 침구류세탁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영창관리자가 수시로 점검하여 세탁하는 것이 입창자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

(3) 침구류 일광소독

침구(이불, 모포, 침낭)는 얼마나 자주 햇볕에 말릴 수 있는지의 질문에 ‘언제든지 말릴 수 있다’ 4명, ‘1주일에 1회’ 28명, ‘2주일에 1회’ 2명, ‘말릴 수 없다’ 9명, 기타 16명(수용자가 건의하여 헌병의 허락후, 자주 말리기는 하나 청결하게 건조시키지 않는다) 등으로 보통 1주일에 1회 정도 일광소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7〉 침구류 일광소독

구 분	인원
언제든지 말릴 수 있다	4
1주일에 1회	28
2주일에 1회	2
말릴 수 없다	9
기타	16
계	59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대부분 언제든지 말릴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영창에 따라 주 1회, 2주 1회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침구류에 대한 세탁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침구류의 일광소독은 수용자의 건강을 위하여 횟수에 상관없이 수시로 점검하여 소독하여야 한다.

Ⅵ. 감시

영창에서의 징계입창자에 대한 감시도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감시카메라(CCTV)와 영창내에 근무헌병이 상주하여 감시하고 있는 체계였다.

설문조사결과 감시카메라의 사각지대가 있어 가혹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응답도 1명이 있었는데, 이는 입창자의 인격보호를 위해 거실을 감시하지 않은 영창의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모두 감시카메라가 잘 작동되고 있으며 모니터를 상시 감시한다고 응답하였다.

Ⅶ. 영창내 처우

1. 일과

(1) 일과표

징계입창자에 대한 일과표는 미결수용자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육군의 경우 육군규정 155 붙임 #21에 일과표가 규정되어 있으며, 징계입창자의

일과가 미결수용자와 다른 점은 독서시간을 체력단련시간으로 활용하고, 수양시간을 반성문 작성시간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육군의 경우 육군규정 155 제197조 1.에는 수용자 관리부대 지휘관의 재량에 의거 일과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 영창마다 조금씩 달랐다.

육군 00부대 징계자(개선 일과표: 군기활동 실무지침서 육군본부 '95. 11. 30)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비고		
아침	08:00~06:00	기상 및 일조점호							근무자		
	06:30~07:00	세면 및 청소									
	07:00~08:00	조식									
오전	08:00~09:00	반성문 작성					내무검 사준비 및 실시 특별 징훈	반성문 작성	형무담당관		
	09:00~10:00	체력단련	제식 훈련	체력 단련	체력 단련	교화위 원초정 대화 설교		체력 단련	형무담당관 근무자		
	10:00~11:00		체력 단련			군법			특별 징훈	담당교관	
	11:00~12:00										
오후	12:00~13:00								근무자		
	13:00~14:00	체력단련	제규정 교육	체력 단련	제규정 교육	체력 단련	내무검 사결과 시행 체력단 련	자기 반성	소대장 형무 담당관		
	14:00~15:00	체력단련/사역								체력단 련	형무담당관
	15:00~16:00										
	16:00~17:00	반성문 작성									
	야간	18:00~19:00	석식							근무자	
19:00~19:30		개인정비									
19:30~20:00		TV/ VTR 시청									
20:00~21:00		수양록 작성 /반성시간									
21:00~22:00		점호/ 명상의 시간							일직사관		
22:00~06:00		취침							근무자		

공군의 경우에는 미결수용자와 징계입창자 구분 없이 같은 일과표를 가지고 일과를 진행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에는 구치소업무규정 제102조에 징계자의 일과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해병대의 경우에는 해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과표를 규정하고 있다.

해군 징계자 표준일과표

시간		내용		
하계	동계	월~금	토	일/공휴일
06:00	06:30	총기상		
06:00~07:00	06:30~07:30	조별과업, 실내정돈, 체조, 세면		
07:00~08:00	07:30~08:30	조식 및 개인운동		
08:00~10:00	08:00~10:00	오전일과(주간교육계획 의거)	점검준비 및 주말점검	오전일과(주간교육계획 의거)
10:00~12:00	10:00~12:00			
12:00~13:00	12:00~13:00	중식 및 개인운동		
13:00~15:00	13:00~15:00	오후일과(주간교육계획 의거)		
15:00~17:00	15:00~17:00			
17:00~18:00	17:00~18:00	석식 및 개인운동		
19:00~20:00	19:00~20:00	신변정리		
20:00~20:30	20:00~20:30	반성문 작성		
20:30~21:00	20:30~21:00	점호준비		
21:00~22:00	21:00~22:00	점호 및 취침		

해군 00부대 영창 정계자 일과현황(동절기)

시간	내용	세부실시사항
06:30	총기상	하절기 06:00
06:30~07:30	실내정돈, 제조, 세면	
07:30~08:30	조식 및 개인운동	
08:00~09:00	정좌세심/방송청취	국군방송청취
09:00~10:00	체력단련	팔굽혀 펴기/ 25회 / 휴식 팔벌려 뛰기/ 25회 / 휴식 앉아 뛰며돌기/ 25회 / 휴식
10:00~11:00	정좌세심	50분 정좌, 10분 휴식
11:00~12:00	식사후진	교도헌병 2명 동행
12:00~13:00	중식 및 휴식	
13:00~14:00	체력단련	09:00~10:00 과업동일
14:00~16:00	정좌세심	50분 정좌, 10분 휴식
16:00~17:00	식사후진	교도헌병 2명 동행
17:00~18:00	석식 및 휴식	
18:00~20:00	개인정비	
20:00~20:30	정좌세심	50분 정좌, 10분 휴식
20:30~21:00	점호준비	
21:00~21:30	TV시청	
21:30~22:00	점호 및 휴식	

해병대 징계자 표준일과표

시간	내용	방법	장소	교관	비고
06:30~06:40	기상 및 거실 정리정돈	실습	거실 및 작업장	교도헌병	
06:40~07:30	제조/라디오정취				
07:30~08:30	청소/세면/조식				
08:30~09:00	명상의 시간			구치소장	
09:00~09:30	신문구독				
09:30~10:30	체력단련				
10:30~12:00	환경정리				
12:00~13:00	중식				
13:00~14:00	명상의 시간				
14:00~15:00	체력단련				
15:00~17:00	명상의 시간				
17:00~18:00	석식/청소			교도헌병	
18:00~19:30	개인정비(샤워 및 세탁)				
19:30~20:30	수양록작성/TV뉴스시청				
20:30~21:00	순검준비			당직사관	
21:00~21:30	순검				
21:30~22:00	취침 정비 및 명상의 시간			교도헌병	
22:00~06:30	취침				

영창 거실 내에는 규정된 일과표가 모두 부착되어 있었다. 육군규정 제196조에는 수용생활에 필요한 일과표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일과표 진행

영창의 일과는 규정대로 행해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46명, ‘일과는 규정대로 이루어지지만 일과표와 그 내용은 다르다’ 9명, ‘헌병(책임장교, 형무담당관, 당직사관) 마음대로 이루어진다’ 1명, ‘일과표를 알지 못하여 모르겠다’ 2명, 기타 1명(징계자 일과표가 아니다) 등으로 나타났다. 징계입창자에 대한 일과는 대체적으로 일과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3-48〉 일과표 진행

구분	인원
그렇다	46
일과는 규정대로 이루어지지만 일과표와 그 내용은 다르다	9
헌병(구 치소장, 당직사관, 형무담당관) 마음대로 이루어진다	1
일과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다	2
기타	1
계	59

(3) 영창일과 중 지루한 시간과 고통스러운 시간

영창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지루한 시간과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대해 대부분 정좌라고 적었으며, ‘수양록 작성 시간이 너무 길다(1시간)’, ‘체력 단련시간이 과도하다’, ‘책 없이 수양하는 시간’, ‘반성문 작성’이라고 기재하였다.

(4) 명상/수양시간³¹⁾

명상시간에는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앉아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수양시간에는 앉아서 자기반성, 독서 및 음악감상, 반성문 작성, 국방일보 열독, 운동, 수양록 작성 등 영창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표 3-49〉 명상/수양시간

구분	인원
그냥 눈만 감고 앉아 있다.	6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앉아 있다.	16
일과표에 명상 시간은 있으나 실시하고 있지 않다.	-
기타	8
계	30

(5) 건의사항

31) 이 문항은 6차 방문조사에부터 새로이 추가된 문항이기 때문에 응답수가 적다.

영창의 일과와 관련하여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내용으로는 ‘체력단련시 자율운동’,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수용자들에게 자신감 부여’, ‘체력단련 폐지’, ‘미결수용자와 같은 대우’, ‘정좌시간이 너무 길다’,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광욕 제공’, ‘도서시간 제공’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입창자들에 대한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식사

(1) 식사장소

식사는 장소는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거실에서 식사하는 영창, 독립된 식당에서 식사하는 영창이 있었다.

(2) 식사시간 준수

영창에서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46명, ‘그런 편이다’ 13명으로 식사는 정해진 시간대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0〉 식사시간 준수여부

구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기타	계
인원	46	13	-	-	59

(3) 급식수준

영창의 급식 수준과 관련하여 ‘자대 보다 좋다’ 5명, ‘자대와 같은 수준이다’ 26명, ‘자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17명, ‘자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11명으로 자대와 같은 수준이라는 응답과 자대보다 급식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특히

자대보다 급식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후방사단의 경우에 많았다.

〈표 3-51〉 급식수준

구분	인원
자대보다 좋다	5
자대와 같은 수준이다	26
자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17
자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11
기타	-
계	59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정계입창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도 현병대 사병이 먹는 식사와 급식수준이나 식사량이 모두 똑 같다고 응답하였다.

(4) 식사량

영창의 식사량과 관련하여 ‘매우 충분하다’ 8명, ‘충분하다’ 24명, ‘보통이다’ 21명, ‘부족하다’ 3명, ‘매우 부족하다’ 3명으로 나타났다. 부족하다는 응답은 입창자 수가 많은 영창에서 나왔다.

〈표 3-52〉 식사량

구분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계
인원	8	24	21	3	3	59

식사가 부족하여 배고픈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주 있다’ 1명, ‘간혹 있다’ 5명, ‘없다’ 53명으로 배식되는 식사량이 그리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족하다는 응답은 입창자의 수가 많은 영창의 경우이다.

〈표 3-53〉 식사량이 부족하여 배고픈 적이 있는지 여부

구분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없다	기타	계
인원	1	5	53	-	59

(5) 배식방법

영창에서 식사배식 방법은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영창 내에 식당이 구비되어 있는 영창의 경우에는 식당에서 자율배식을 하였으며, 수용자가 적은 영창의 경우에는 헌병이 식판에 식사를 직접 타다가 가져다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특히 입창자의 수가 많은 영창의 경우에는 정제입창자로 배식조를 구성하여 돌아가면서 배식을 하고 있었다.

(6) 간식제공

영창에서도 자대에서도 같이 식사 외에 간식(음료수, 과일 등)이 제공되느냐는 질문에 ‘제공되지 않는다’ 25명, ‘제공되나, 헌병이 경우에 따라서는 주지 않는다’ 2명, ‘규정에 따라 제공된다’ 9명, 기타 6명(종교활동시 제공)으로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3-54〉 간식제공여부

구분	인원
제공되지 않는다.	25
제공되나, 헌병이 경우에 따라서는 주지 않는다.	2
규정에 따라 제공된다.	9
기타	6
계	42

영창관리자 면접설문에서는 정제입창자에게도 규정상 부식이 지급되어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는 영창도 있었으나 정제입창자에게는 규정상 부식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영창도 있었다.

식사와 관련하여 헌병대에 자체 취사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보와 식수인원이 일찍 보고되는 관계로 입창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에는 식사가 부족할 위험성이 있으며, 상근예비역의 경우에는 자대에서도 점심만 제공되고 기타 부식(우유, 빵, 음료수

등)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영창에서도 이들을 식수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아 식사나 부식이 부족할 수 있다.

(7) 식사와 관련한 가혹행위

식사를 지나치게 많이 주면서 강압적으로 남기지 못하게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간혹 있다’ 5명, ‘없다’ 54명으로 나타났으며, 있다는 응답의 경우에는 현병이 식사를 배식하는 영창으로 식사시에 잔밥량을 줄이기 위해 강압적 말투로 남기지 마라고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표 3-55〉 식사를 많이 주면서 남기지 못하게 한 적이 있는지 여부

구분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없다	기타	계
인원	-	5	54	-	59

식사를 남긴다고 가혹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4명, ‘없다’ 55명으로 나타났으며, 있다는 경우에는 근무현병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기재하였다.

〈표 3-56〉 식사를 남긴다고 가혹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

구분	있다	없다	계
인원	4	55	59

(8) 식사시 감시

식사시 감시가 심하여 불편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10명, ‘없다’ 46명, 기타 3명이었다. 불편한 경우는 식사시 근무현병이 근접거리에서 시선을 고정하고 감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57〉 식사시 감시에 따른 불편

구분	있다	없다	기타	계
인원	10	46	3	52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식사시 감시는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수저 등 은닉 여부 만을 감시하며 직접적인 시선은 피한다고 하였으나, 입창자에 따라서는 감시가 심하여 불편하다는 응답도 있어 식사시 감시에 대한 배려가 요망된다.

(9) 물 제공

식사시 마실 물 제공과 관련하여 ‘충분히 제공된다’ 36명, ‘보통이다’ 17명, ‘부족한 편이다’ 2명, ‘매우 부족하다’ 2명, 기타 2명으로 식사시 물 제공은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8〉 물제공

구분	인원
충분히 제공된다.	36
보통이다.	17
부족한 편이다.	2
매우 부족하다.	2
기타	2
계	59

(10) 식기 세척

식사 후에 식기 세척이나 청소와 관련하여 ‘개인식기만 세척한다’ 23명, ‘징계입창자가 미결수용자들 식기까지 세척한다’ 11명, ‘징계입창자가 미결수용자뿐만 아니라 현병들 식기까지 세척한다’ 2명, ‘식당청소까지 한다’ 12명, 기타 8명으로 징계입창자가 식기세척과 청소를 모두 하는 영창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징계자가 현병식기까지 세척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표 3-59〉 식기세척

내용	인원
개인식기만 세척한다.	23
정계입창자가 미결입창자들 식기까지 세척한다.	11
정계입창자가 미결입창자뿐만 아니라 헌병들 식기까지 세척한다.	2
②와 함께 식당청소까지 한다.	12
기타	8
계	56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도 각 영창에 따라 식기세척을 하는 방법이 달랐다. 00부대 영창의 경우에는 정계입창자가 미결수용자의 식사도구까지 모두 세척하였으며, 00부대의 경우에는 정계자가 식관, 식기, 식당청소를 모두 하고 있었다. 00부대의 경우에는 거실별로 미결·정계자 구별 없이 세척 및 청소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영창의 경우에는 자기의 식사도구만 세척한다고 응답하였다.

(II) 기타 건의사항

식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내용으로는 ‘식단표에 맞게 배식, 반찬량을 늘리고 국을 따뜻하게 주길, 식사량이 부족, 부식제공, 정계자가 식기와 청소를 모두 하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식사와 관련한 모든 일을 정계입창자가 다 한다는 것에 대하여, 정계입창자들은 미결수용자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면회/ 서신/ 전화

(1) 면회

정계입창자에 대한 면회는 공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되고 있지 않았다. 다만 자대관계자의 경우에는 헌병대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허용되고 있었다.

육군의 경우 육군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무담당관이나 책임장교의

면접조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징계입창자에게는 면회가 허용되지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대 관계자에게만 면회가 허용된다고 응답하였다.

공군의 경우 공군규정 141(헌병업무) 제3장 제42조에 징계별 수용자에게는 면회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 구치소업무규정 제103조는 징계지는 외부인과의 면회를 금하고 다만 필요시 헌병대장이 승인 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징계입창자에게도 면회가 허용되는 공군의 경우,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주말에 사전예약을 하면 언제든지 면회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면회시간은 공군 규정 141 제41조에 3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2) 편지³²⁾

징계입창자도 편지작성과 발송이 가능한냐는 질문에 ‘그렇다’ 20명, ‘그렇지 않다’ 19명이었다.

〈표 3-60〉 편지작성여부

편지작성여부	인원
그렇다.	20
그렇지 않다.	19
계	39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편지작성의 경우도 허용되는 영창이 있었으며, 허용되지 않는 영창도 있었다. 다만 공군의 경우 공군규정 141에 징계별 수용자의 경우에는 서신수발횟수를 무제한으로 규정하여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서신의 경우에는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모두 검열한다고 응답하였다.

(3) 전화통화

전화통화의 경우에는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모두 허용되지 않았다.

32) 이 문항도 6차 방문조사시부터 새로이 추가된 문항으로 응답인원이 적다.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도 징계입창자에게는 전화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영창에 따라서는 입창자가 가족과 통화를 원하는 경우에는 영창관리자가 지휘관에게 보고하여 허락하는 경우는 있었다.

각 군의 수용자관리규정에는 전화통화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군의 특성상 가족에게 내 위치를 알리고 가족의 안부를 묻는 정도의 전화통화는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는 미결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준하는 처우를 하면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4. 도서·신문 열독/ TV 시청

(1) 도서

- 독서허용여부

징계입창자도 영창에서 책을 자유롭게 읽는 것이 가능한냐는 질문에 ‘징계입창자에게는 독서가 허용되지 않는다’ 14명, ‘영창 내에 있는 책은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 14명, ‘규정된 시간대에만 독서를 할 수 있다’ 27명으로 대부분 영창의 경우 일과표에 있는 시간대로 독서가 허용되고 있으나, 육군의 경우에는 일과표 규정상 징계입창자는 독서시간을 체력단련시간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은 영창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군·해병대 영창의 경우에도 독서가 허용되지 않았다.

〈표 3-61〉 독서허용여부

구분	인원
징계입창자에게는 독서가 허용되지 않는다	14
영창 내에 있는 책은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	14
규정된 시간대에만 독서를 할 수 있다	27
기타	4
계	59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도 영창에 따라 징계입창자에게 독서가 허용되지 않는 영

창이 3개소가 있었다. 이러한 영창에서 징계입창자의 하루 일과는 주로 수양정좌로만 진행된다.

징계입창자에게도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독서가 허용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상도 필요하다. 영창은 고통을 주는 곳이 아니라 더 나은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 입창시 도서 휴대

영창에 입창시 자신이 읽을 수 있는 책을 가지고 갈 수 있는냐는 질문 ‘그렇다’ 9명, ‘그렇지 않다’ 44명이었다.

〈표 3-62〉 입창시 도서 휴대 여부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인원	9	44	53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도 자신의 읽을 수 있는 책은 군에서 허용되는 도서라면 가능하다는 응답도 있었으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영창도 있었다.

영창이 수양하는 장소라면 자대에서부터 자신이 영창생활 중 읽고 싶은 책이나 수양에 필요한 도서정도는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도서 비치장소

도서의 비치장소는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각 영창마다 달라, 헌병이 근무하는 복도에 비치하고 있는 영창, 거실내 비치하고 있는 영창, 형무담당관실에 비치하고 있는 영창으로 구분되었다. 헌병이 근무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부대에서는 입창자가 보고 싶은 책은 원할 때 근무병이 가져다주었으며, 입창자가 도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서목록을 제공하는 영창도 있었다.

모든 영창이 도서 정도는 거실내에 비치하고 언제든지 입창자가 읽고 싶은 책은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상 도서가 부족한 경우에는 도서목록을 입창자에게 제공하여 도서선택권을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독서 강요

영창에서 강제로 독서를 강요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4명, ‘없다’ 51명이었다. 영창생활에서 실시되고 있는 독서의 역기능은 독서가 정좌를 강요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독서하는 자세도 정좌자세와 같은 자세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표 3-63〉 독서 강요

구분	있다	없다	계
인원	4	51	55

영창에서는 독서가 좋은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좌의 수단 내지는 육체적 고통을 주는 한 수단이 될 위험성이 있다. 특히 맨 바닥에서 책상도 없이 앉은 자세로 책을 읽는다는 것은 대단한 육체적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영창방문시 본 연구진과 인권위조사관은 입창자들이 편안하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책상을 제공해주고, 바닥이 딱딱한 관계로 모포나 방석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영창관리자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이미 조치를 취한 영창도 있었다.

00부대의 영창의 경우는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스티로폼로 되어 있는 탁자를 제작하여 지급한다고 응답하였다.

- 독서관련 건의사항

독서와 관련하여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주로 ‘신간도서 제공’, ‘다양한 도서의 확보’, ‘독서시간 증대’, ‘편안한 자세로 독서’, ‘책 선택을 직접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징계입창자도 독서를 허용해주어라’ 등이었으며 미결수용자와 비슷한 내용을 건의하였다.

(2) 신문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도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신문은 ‘국방일보’를 열독하고 있었으나, 열독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상당수로 나타났다. 이는 영창의 처우가 징계입창

자 위주가 아니라 미결수용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문의 제공도 미결수용자에게 우선 제공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64〉 신문열독 여부

구분	있다	없다	계
인원	37	21	58

열독방법은 거실 내에 신문을 비치하고 있지 않은 영창의 경우에는 근무헌병이 신문열독시간에 제공해 주고 있었다.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도 징계입창자에게 신문이 제공되지 않은 영창이 있었다.

(3) TV시청

대부분의 영창이 TV를 설치하고 있었으나 TV가 설치되지 못해 TV시청이 불가능한 영창도 있었다. 시청방법은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형태로 식당에서 시청하는 영창, TV시청실에서 시청하는 영창, 징계자가 한 거실에 모여 시청하는 영창 등 시설에 따라 시청방법이 다양하였다.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TV 채널 선택권이 거의 없었으나, 00부대 영창의 경우에는 입창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청시간대에 입창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었다.

시청시간, 프로그램 모두 미결수용자와 같았다.

(4) 라디오 청취

라디오 청취의 경우에도 미결수용자와 같이 대부분의 영창에 라디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청취하지 않았으며, 00부대 영창의 경우에는 08:00~09:00 시간대에 국군의 방송을 청취하고 있었다.

(5) 기타 건의사항

그 밖의 독서·신문 열독, TV시청과 관련하여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내용으로는 ‘TV설치요망’, ‘TV시청시간의 확대’,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이 있었다.

5. 운동

(1) 운동시간

영창 생활 중 운동시간과 관련하여 ‘15분 이내’ 5명, ‘30분 이내’ 2명, ‘1시간 이내’ 23명, ‘운동시간이 없다’ 10명, 기타 16명(정해진 시간대에, 체력시간이 운동시간) 등으로 대부분 1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운동시간이 없다는 영창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5〉 운동시간

구분	15분 이내	30분 이내	1시간 이내	운동시간이 없다	기타	계
인원	5	2	23	10	16	56

(2) 운동장소

운동을 하는 장소로는 ‘영창 거실내 내’ 50명, ‘복도’ 1명, ‘연병장(운동장)’ 1명, ‘기타’ 4명이었다. 주로 하는 운동은 ‘팔굽혀펴기’, ‘도수체조’, ‘발바퀴 뛰기’, ‘앉았다 일어서기’, ‘복근운동’ 등으로 대부분이 실내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각 영창마다 시설이 다르고, 운동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운동은 대부분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영창에 부속된 연병장(운동장)이 없는 것도 이유이지만, 현병인력부족으로 계호병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영창의 일과가 미결수용자 위주로 진행되며,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군행형관련법에 의하여 운동시간이 제공되지만 징계입창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영창에 따라서 체력단련시간이 운동시간인 영창도 있었다.

〈표 3-66〉 운동장소

구분	감방 내	복도	연병장(운동장)	기타	계
인원	50	1	1	4	56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도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군행형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외운동 내지는 일광욕이 허용되었지만, 징계입창자에게는 일광욕이나 실외운동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따라서 징계입창자에게 충분한 실외 운동이 제공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00부대 영창의 경우에는 징계입창자의 경우 1일 2회씩 체력단련 체조를 적극 시행하여 징계자의 정신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영창의 경우에는 좋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징계자의 설문조사에서는 체력단련이 너무 과도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3) 운동시간 준수

영창 하루 일과 중 운동에 관한 규정을 알고 있다면, 규정대로 운동이 실시되고 있는지는 질문에 ‘규정대로 운동을 한다’ 28명, ‘부분적으로만 허용된다’ 2명, ‘현병 마음대로 허용된다’ 4명,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3명,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다’ 18명, 기타 1명으로 규정대로 운동을 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규정을 몰라 모른다는 응답도 많았다.

〈표 3-67〉 운동시간 준수

구분	인원
규정대로 운동을 한다.	28
부분적으로만 허용된다.	2
현병 마음대로 허용된다.	4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3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다.	18
기타	1
계	56

(4) 기타 건의사항

그 밖의 운동과 관련하여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내용으로는 ‘운동기구 비치’, ‘지을

운동', '일광욕 시간 제공', '체력단련의 횟수가 너무 많다', '체력단련 시간에 개인운동을 하였으면 좋겠다'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6. 의료

(1) 입창시 건강상태

정계입창자의 입창시 건강상태는 '건강했다' 30명, '보통이었다' 19명, '건강하지 않은 편이었다' 5명, '검진을 받을 정도로 아팠다' 3명, 기타 2명으로 대체적으로 입창시 건강상태는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8〉 입창시 건강상태

구분	인원
건강했다	30
보통이었다	19
건강하지 않은 편이었다	5
검진을 받을 정도로 아팠다	3
기타	2
계	59

(2) 입창시 건강검진

입창시에 건강검진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군외관에게 받았다' 40명, '자대에서 입창되기 전에 미리 형식적으로 받았다' 16명, '받지 못했다' 1명, 기타 2명(군외관에게 형식적으로)으로 대체적으로 군외관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9〉 입창시 건강검진

구분	인원
군외관에게 받았다	40
현병에게 받았다	-
자대에서 입창되기 전에 미리 형식적으로 받았다	16
받지 못하였다	1
기타	2
계	59

각군 규정상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는 입창서류에 군의관 소견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다. 공군의 경우에는 규정에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징계자의 경우 군의관이 영창을 방문하여 지체없이 건강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에도 규정에 신입자에 대하여 군의관의 진단을 받게 하고 있다.

영창관리자의 면접조사에 따르면 입창자의 건강상태는 징계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군의관소견서로 확인한 다음, 징계서류를 참조하여 형무담당관이 직접확인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징계자의 경우에는 영창생활이 불가능하게 아픈 경우에는 헌병의 입장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입창을 거부한다고 응답하였다.

(3) 정기검진

영창 수용 중에 군의관으로부터 정기검진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19명, '없다' 40명이었다.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은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는 입창기간이 짧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표 3-70〉 정기검진

구분	있다	없다	계
인원	19	40	59

징계입창자에 대한 정기검진도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각군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영창관리자의 면접조사에서는 매월 1회 군의관이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나 입창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점호시에 수용자의 건강여부를 점검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주기적으로 순회진료가 여건상 어려운 영창의 경우에는 입창자가 진료요구시 군의관이 왕진하여 처방 및 치료를 하고 있는 영창도 있었다.

(4) 영창에서 아팠던 경험

영창에서 아팠던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다’ 14명(병명: 감기, 두통, 허리디스크, 무릎통증 등), ‘없다’ 42명이었다.

〈표 3-71〉 영창에서 아팠던 경험

구분	있다	없다	계
인원	14	42	56

아팠던 적이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영창으로 군의관이 와서 진료를 하였다’ 7명, ‘약을 조제하여 왔다’ 1명, ‘의무대로 가서 군의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1명, ‘특별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 4명, 기타 2명이었다. 특별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있어 입창자들의 건강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2〉 아팠을 때 조치

구분	인원
영창으로 군의관이 와서 진료를 하였다.	7
영창으로 위생병이 와서 진료를 하였다.	-
현병이 의무대에 가서 약을 조제하여 왔다.	1
의무대로 가서 군의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1
특별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	4
기타	2
계	14

(5) 아팠을 때 휴식 여부

영창에서 의무대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경미하게 아픈 경우, 일과 시간 중 눕는 등의 휴식이 허용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20명, ‘그렇지 않다’ 22명이었다. 아무리 영창생활이라고 하지만 아픈 경우에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표 3-73〉 아팠을 때 휴식여부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인원	20	22	42

(6) 검진신청

헌병에게 사단 의무대 외진이나 군의관 진찰을 신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신청하여 외진을 받았다’ 3명, ‘신청하여 군의관의 진찰을 받았다’ 2명, ‘신청하고 싶었지만 영창 분위기상 할 수 없었다’ 3명이었다. ‘신청한 적이 없다’ 46명으로 진찰을 받지 못한 경우는 없었으나 신청하고 싶었지만 영창 분위기상 할 수 없었다는 응답도 있어 영창관리자가 입창자에게 군의관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74〉 검진신청여부

구분	인원
신청하였지만, 진찰을 받지 못하였다.	-
신청하여 외진을 받았다.	3
신청하여 군의관의 진찰을 받았다.	2
신청하고 싶었지만, 영창 분위기상 할 수 없었다.	3
신청한 적이 없다.	46
기타	2
계	56

(7) 기타 건의사항

영창의 의료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내용으로는 ‘의무대로 직접 데려가 진료했으면 좋겠다’, ‘약만 주지말고 실질적인 진찰을 해주었으면 한다’ 등이 있었다.

7. 작업 및 교육

(1) 작업

입창 기간 중 작업(사역)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주 있었다’ 3명, ‘간혹 있었다’ 19명, ‘없었다’ 32명, 기타 3명이었다.

〈표 3-75〉 작업여부

구분	자주 있었다	간혹 있었다	없었다	기타	계
인원	3	19	32	3	57

어떠한 방법으로 작업이 이루어 졌느냐는 질문에 ‘의무적으로 이루어졌다’ 2명, ‘신청자에 한해 이루어졌다’ 18명이었다. 작업시간은 20~30분, 1시간 정도로 그 내용은 ‘잡초제거, ‘바닥청소’, ‘걸레 빨기’, ‘영창내외 청소’, ‘페인트칠’ 등 환경정리 등이었다. 위 내용으로 보면 작업내용은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6〉 작업방법

구분	인원
의무적으로 이루어졌다	2
신청자에 한해 이루어졌다	18
기타	1
계	21

영창관리자의 면접조사에 따르면 작업의 실시는 신청자에 한해 작업동의서를 받은 후에 실시하는 영창도 있었으며, 작업동의서를 받지는 않지만 신청자에 한해 작업을 실시하는 영창도 있었다. 또한 영창 안에 앉아 있는 것이 지루하기 때문에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신청한다고 응답하였다. 작업내용은 부대환경정리가 대부분이었다.

(2) 군사교육

입창 기간 중에 군사교육은 주로 VTR 시청교육을 통한 재복무교육이었으며, 총검술, 제식훈련 같은 군사교육은 없었다.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도 미결수용자와 같이 대부분 징계입창자에게도 군사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00부대 영창의 경우에는 징계입창자에게 제식훈련을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3) 정신교육

입창기간 중 정신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헌병 장교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 2명, ‘헌병 부사관으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 2명, ‘군종장교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 10명, ‘법무장교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 2명, ‘없다’ 12명, 기타 18명(받지 않았다, 라디오를 통해서,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 타부대 간부 등) 등으로 대부분의 정신교육이 군종장교 내지는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7〉 정신교육

구분	인원
헌병 장교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	2
헌병 부사관으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	2
군종장교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	10
법무장교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	2
없다.	12
기타	18
계	46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 따르면 입창자 정신교육은 규정된 시간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지만, 대부분 헌병대장, 영창관리장교, 형무담당관이 수시로 실시하며, 영창에 따라서는 주임원사 등과 같이 군생활 경험이 많은 장교나 부사관 등을 교화위원과 같은 형식으로 선정하여 교화를 실시하거나 군종장교가 수시로 영창을 방문하여 상담 및 정신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8. 종교

(1) 종교행사

영창에서의 종교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냐는 질문에 ‘종교행사 자체가 없다’ 9명, ‘군종장교가 비정기적으로 영창을 방문하여 종교행사를 진행한다’ 14명, 기타 26명의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군종장교가 방문한다고 기재하였다. 종교행사 자체가 없다는 영창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8〉 종교행사 개최여부

구분	인원
종교행사 자체가 없다	9
군종장교가 비정기적으로 영창을 방문하여 종교행사를 진행한다	14
기타	26
계	49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도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군종장교가 비정기적으로 영창을 방문하여 종교행사를 진행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정기적으로 종파별로 순환하면서 종교행사를 실시하는 영창도 있었다.

(2) 종파에 따른 종교자유 침해

영창에서 종교행사가 이루어진다면, 특정종교의 군종장교가 종교행사를 주관하여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있다’ 3명, ‘없다’ 30명으로 없다가 대부분이었으나 침해받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3-79〉 종파에 따른 종교자유 침해

구분	있다	없다	계
인원	3	30	33

(3) 외부 종교행사 참석

입창기간 중 외부 종교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명이었으며, 종교행사의 장소는 부대내 종교시설에 참석하였다는 응답이었다.

영창관리자 면접조사결과 대부분 징계자의 경우에도 계호상의 어려움 때문에 외부 종교행사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00부대 영창의 경우에는 외부종교행사 참석이 가능하지만 입창자들이 거부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4) 종교행사 신청

입창기간 중 종교행사를 신청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다’ 9명, ‘신청하였지만 허용되지 않았다’ 1명, ‘신청하여 종교행사에 참석하였다’ 2명, ‘신청이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다’ 4명, ‘종교가 없어 모르겠다’ 8명, 기타 15(몰라서 안했다, 신청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 신청하지 않았다)이었다.

〈표 3-80〉 종교행사 신청여부

구분	인원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다.	9
신청하였지만 허용되지 않았다.	1
신청하여 종교행사에 참석하였다.	2
신청이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다.	4
종교가 없어 모르겠다.	8
기타	15
계	39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도 징계입창자에 대한 종교행사도 미결수용자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고 응답하였다.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는 미결수용자에 비하여 계호상의 어려움이 그리 많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일반병사와 마찬가지로 직접 종교시설에 가서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물론 헌병의 입장에서는 계호할 병사가 충분치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모든 징계입창자가 자해를 한다거

나 탈영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VII. 징계영창제도

1. 징계영창제도의 필요성 여부

(1) 징계입창자

징계영창제도가 사병에게 필요하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에 ‘그렇다’ 32명, ‘그렇지 않다’ 26명으로 징계입창자의 입장에서 징계영창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조금 많았다.

〈표 3-81〉 영창제도의 필요성 여부(입창자)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인원	32	26	58

(2) 영창관리자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15명,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명으로 대부분 징계영창제도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82〉 영창제도의 필요성 여부(영창관리자)

구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계
인원	15	3	18

(3) 헌병수사관

헌병수사관 면접조사에서도 절대 다수가 징계영창제도는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3-83〉 영창제도의 필요성 여부(헌병수사관)

구분	폐지해야 한다.	존치해야 한다.	계
인원	1	24	25

(4) 군검찰관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도 '존치해야 한다'는 응답과 의견이 많았지만 헌병수사관이
나 영창관리자에 비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표 3-84〉 영창제도의 필요성 여부(군검찰관)

구분	폐지해야 한다.	존치해야 한다.	계
인원	6	12	18

2. 징계영창제도가 필요한 이유

(1) 징계입창자

징계영창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군기강 확립' 18명, '지휘관의 지휘권 강
화' 2명, '형사처벌보다는 징계영창처분이 가볍기 때문' 14명, 기타 4명(인내와 자기반
성의 시간이 됨, 사소한 것까지 영창에 보낼 필요 없음)이었다.

〈표 3-85〉 징계영창제도가 필요한 이유(입창자)

구분	인원
군기강 확립	18
지휘관의 지휘권 확보	2
형사처벌보다는 징계영창처분이 가볍기 때문	14
기타	4
계	38

(2) 영창관리자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지휘관의 지휘권 확보와 군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
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3-86〉 징계영창제도가 필요한 이유(영창관리자: 복수응답)

구분	인원
군기강 확립	9
지휘관의 지휘권 확보	10
형사처벌보다는 징계영창처분이 가벌기 때문	4
기타	-
계	23

(3) 헌병수사관

징계영창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헌병수사관 면접조사에서는 지휘권 확보, 군기강 확립, 형사처벌에 의한 전과자 양산방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관의 입장에서 징계영창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까지 형사입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병의 인권보호차원에서도 징계영창제도는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표 3-87〉 징계영창제도가 필요한 이유(헌병수사관: 복수응답)

구분	인원
군기강 확립	11
지휘관의 지휘권 확보	13
형사처벌에 의한 전과자 양산방지	11
기타	
계	35

(4) 군검찰관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는 징계영창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형사처벌에 의한 전과자 양산방지, 군기강 확립, 지휘권 확보순으로 나타났으며 헌병수사관과 비슷하게 징계영창제도가 폐지된다면 사소한 문제까지 형사입건하여 전과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88〉 징계영창제도가 필요한 이유(군검찰관: 복수응답)

구분	인원
군기강 확립	6
지휘관의 지휘권 확보	2
형사처벌에 의한 전과자 양산방지	8
기타	-
계	16

3. 징계영창제도의 대안

(1) 징계입창자

만약 징계영창제도가 폐지된다면, 그 대안으로 어떠한 제도가 좋다고 생각하는나의 질문에 ‘휴가제한 활용’, 29명, ‘면회·외출제한 활용’ 21명, ‘감봉활용’ 8명, ‘군복무일수 연장’ 14명, 기타 3명(군기교육)으로 휴가제한, 면회·외출제한 활용이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군복무일수 연장도 상당수 응답하였다.

〈표 3-89〉 징계제도의 대안(입창자: 복수 응답)

구분	인원
강등 활용	-
휴가제한 활용	29
면회·외출제한 활용	21
감봉활용	8
군복무일수 연장	14
기타	3
계	75

(2) 영창관리자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휴가제한, 군복무일수 연장, 면회·외출제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병의 입장에서는 군복무일수가 연장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공군이나 해군과 같이 모병을 하는 군에서는 사병들이 휴가제한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3-90〉 징계영창제도의 대안(영창관리자: 복수 응답)

구분	인원
감등 활용	-
휴가제한 활용	8
면회·외출제한 활용	4
감봉 활용	-
군복무일수 연장	7
기타	-
계	19

(3) 헌병수사관

헌병수사관 면접조사에서는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군복무일수 연장, 휴가제한, 면회·외출제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입창기간 중 사회봉사활동 활용, 병사들의 징계를 차상급부대로 격상시키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

〈표 3-91〉 징계영창제도의 대안(헌병수사관: 복수 응답)

구분	인원
감등 활용	-
휴가제한 활용	5
면회·외출제한 활용	3
감봉 활용	-
군복무일수 연장	17
기타	4
계	29

(4) 군검찰관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 만약 징계영창제도가 폐지된다면 그 대안으로 군복무일수 연장, 휴가제한 활용, 면회·외출제한 활용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2〉 징계영창제도의 대안(군검찰관: 복수 응답)

구분	인원
강등 활용	1
휴가제한 활용	6
면회·외출제한 활용	5
감봉 활용	-
군복무일수 연장	9
기타	1
계	22

4.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1) 징계입창자

사병의 입장에서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처벌위주보다는 반성하는 시간이 되는 영창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반성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신체적 고통만 줌’,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함’ 등의 의견이 있었다.

(2) 영창관리자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징계영창제도의 개선방안으로 현행제도유지가 대부분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징계위원회 개최시 타부대 간부 참여, 징계입창자에 대한 정확한 권리 규정, 지하영창 지상으로 신축 등의 내용이었다.

〈표 3-93〉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영창관리자)

내용	인원
징계위원회 개최시 검찰관 입회	2
징계위원회 개최시 군관사 입회	-
징계절차를 즉결심판절차로 대체	1
입창시 검찰관에 의한 확인심사	1
입창시 군관사에 의한 확인심사	-
현행제도 유지	10
기타	1
계	15

(3) 헌병수사관

헌병수사관 면접조사에서도 현행 제도 유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3-94〉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헌병수사관)

내용	인원
징계위원회 개최시 검찰관 입회	1
징계위원회 개최시 군판사 입회	2
징계절차를 즉결심판절차로 대체	2
입창시 검찰관에 의한 확인심사	3
입창시 군판사에 의한 확인심사	-
현행제도 유지	15
기타	-
계	23

(4) 군검찰관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는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개선방으로 입창시 검찰관에 의한 확인심사, 군판사에 의한 확인심사, 징계위원회 개최시 군검찰관 입회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5〉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군검찰관: 복수응답)

내용	인원
징계위원회 개최시 검찰관 입회	3
징계위원회 개최시 군판사 입회	-
징계절차를 즉결심판절차로 대체	2
입창시 검찰관에 의한 확인심사	8
입창시 군판사에 의한 확인심사	7
현행제도 유지	1
기타	1
계	22

제3절 설문·면접조사 분석과 평가

징계입창자에 대한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피결수용자에 비하여 설문문항을 정리하기가 더 어려웠다. 실제로 각 영창을 방문한 결과 시설과 처우가 매우 달랐기 때문에 이에 맞는 설문을 작성하기 위해 수정을 많이 가하였다. 또한 같은 시설에 있으면서도 피결수용자와의 처우가 달랐기 때문에 중복되는 설문과 징계입창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설문문항을 정리하기 어려웠다.

특히 피결수용자에 비하여 징계입창자의 경우 설문문항에 따라 무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충실하지 못한 답변도 많았다. 이는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는 어차피 몇 일 있으면 영창을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설문에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각군의 영창관리규정을 늦게 입수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실태조사를 하여 부족한 점이 있다.

설문·면접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징계입창자에 대한 처우가 피결수용자에 비하여 너무 열악하다는 점이었으며, 특히 형사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과도하게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징계사유로는 지휘관 지시위반, 상급자 명령 불복종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계급과 명령사회라는 군의 특성에 기한 징계사유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입창일수와 관련해서는 징계사유에 합치되게 징계일수가 적당하다는 응답도 많았으나 적당하지 않다는 응답도 상당수 있어 징계입창자의 입장에서 징계양형에 대한 불만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고 있지 않았다. 입창절차시에도 징계입창자에 대한 권리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에 별 다른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창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과에 대해서는 정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영창에 따라서는 정좌자세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여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고 있었다. 반성문의 경우에는 영창에 따라서 일과에 작성횟수와 작성량이 많아 입창자에게 지나치게 반성을 강요하였고, 수양록 작성의 경우에도 반성문과 같이 매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쓸 내용이 없어 고통스럽다고 하였다. 또한 영창에 따라서는 수양록, 반성문을 점검하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었다.

영창생활 중 신체에 직접적 위형력을 행사하는 가혹행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자로부터 욕설이나 반말을 들었다는 경우는 있었다. 또한 식사시에 잔판을 남기지 말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영창의 시설과 환경은 미결수용자와 같았으나 징계입창자만 수용하는 육군 제76사단의 경우에는 거실이 너무 협소하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해 반드시 신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화장실의 경우에는 미결수용자와 똑 같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는 자해나 도망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는 수시로 교체되기 때문에 침구류에 대한 세탁이나 일광소독을 자주 하여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징계입창자에 대한 일과는 전체적으로 미결수용자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식사와 부식과 관련하여 징계입창자에게는 식사와 기타 부식제공의 경우 제공되지 않는 영창도 있었으며, 식사후 청소를 징계입창자가 모두 하는 영창도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결수용자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응답도 많았다.

징계입창자에게는 공군을 제외하고는 육군·해군·해병대의 경우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서신의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은 영창이 있었다. 전화통화의 경우에는 모두 허용되지 않아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독서가 허용되지 않은 영창도 있었으며, TV시청이 가능하지 않은 영창도 있었다.

운동의 경우에는 대부분 체력단련이나 실내운동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실외운동이나 일광욕이 미결수용자에게는 허용되었으나 징계입창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영창이 대부분이었다.

입창기간 중 아팠을 때 특별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있었으며, 이 경우는 경미하게 아팠거나 또는 입창자의 입장에서 영창분위기상 아프더라도 쉽게 근무자나 관리자에게 건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창에서 의무대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경미하게 아픈 경우, 일과 시간 중 눕는 등의 휴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작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영창시설의 환경정리나 헌병부대의 주변환경 정리 정도

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신교육의 경우에는 주로 군종장교가 교회활동과 유사하게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창관리자나 헌병대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행사는 정기적·부정기적으로 군종장교가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었으나 종교행사 자체가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는 입창기간이 짧아 종교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영창의 종교행사는 특정종파의 군종장교가 순환식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에 종교자유가 침해받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징계영창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징계입창자나 영창관리자, 헌병수사관, 군검찰관 모두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으나, 징계입창자와 군검찰관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징계영창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징계입창자의 경우 군기강 확립, 형사처벌보다는 징계영창처분이 가볍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영창관리자의 경우에는 지휘권의 확보와 군기강 확립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헌병수사관의 경우에는 지휘권 확보, 군기강 확립, 형사처벌에 의한 전과자 양산방지가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왔으며, 군검찰관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의한 전과자 양산방지, 군기강 확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헌병수사관이나 영창관리자의 경우에는 지휘권의 확보를 위해 영창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징계입창자와 검찰관의 경우에는 군기강 확립과 전과자 양산방지가 많았다.

만약 징계영창제도가 폐지된다면, 그 대안으로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는 휴가제한 활용과, 면회·외출제한 활용 등이 많았고, 영창관리자의 경우에는 휴가제한, 군복무일수 연장을 선호하였다. 헌병수사관의 경우에는 군복무일수 연장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군검찰관의 경우에도 군복무일수 연장과 휴가제한 활용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영창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는 처벌위주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반성하는 시간이 되는 영창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고, 영창관리자와 헌병수사관의 경우에는 현행제도 유지가 많았다. 군검찰관의 경우에는 입창시 검찰관에 의한 확인심사와 군판사에 의한 확인심사가 많았다.

제4장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에서의 인권보호방안

제1절 군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방안

I. 군수사체계의 개선

1. 군사법경찰관직무집행관련 법규제정

현재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한 법규는 군사법원법이 유일하며 일반사법경찰관리와 같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나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못하다. 다만 각군의 참모총장이 제정하고 있는 복무규정에 수사활동에 관한 내용이나 헌병업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었다. 육군의 경우 육군규정 155(헌병근무규정)에는 헌병의 업무로 군기활동, 헌병작전활동, 사고예방활동, 수사활동, 과학수사, 특수범죄사고 수사활동, 수용자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병수사관 면접조사에서도 군사법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한 법규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았다. 헌병의 수사나 방법활동은 기본적으로 사병이나 군의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민간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특히 군부대가 밀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경우에는 헌병순찰활동이나 교통통제, 검문소 운영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헌병의 경우 검문소나 교통통제를 각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어, 잘못 운영되는 경우 민간인의 인권도 침해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규정들은 입법적 통제를 받지 않고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으로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인권침해적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와 방법업무, 교통통제 업무 등의 한계와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고 적법절차에 의해 헌병의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³³⁾

33) 영국의 경우 국군법 제2조에 헌병의 사람, 차량 등에 대한 검문검색의 권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국회웹페이지 해외입법정보 참조).

2. 군검찰의 수사지휘권 확보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1항은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소송법과 같이 군사법경찰관이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법경찰관도 독자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동조 제2항에는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단순히 문언적으로 보면 군사법경찰관은 검찰관에게 단순한 통보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군사법원법 제45조는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계급상 상관의 명령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군검찰관을 상관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은 군사법경찰관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차 수사기관인 헌병이 지휘관에게 보고하여 결론을 내린 후 군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하기 때문에 군검찰부의 기능이 상당히 제한되고 군검찰의 견제장치 미비로 군사법경찰관의 불법수사 내지 위법수사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를 할 수가 없다.³⁴⁾

일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경찰의 수사권독립과 관련하여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사권독립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인권침해적 위험성을 일반사회에 비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군 수사과정에서 본다면 검찰관의 수사지휘 필요성이 더 제기될 여지가 있다.

군 검찰의 경우 헌병이나 기무사 등에 비하여 그 조직이나 위상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헌병이나 기무사와 같은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 및 통제, 이를 통한 장병들의 실질적 인권보장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 공정한 군검찰권의 행사를 위하여 군 검찰조직의 위상을 보다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군검찰법’을 제정하

34) 이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김경환, “현행 군사법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군 사법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 개최 발표문, 2002. 11. 11(참여연대웹 페이지 참조).

는 것도 필요하다.³⁵⁾

군검찰관과 군판사의 면접조사에서도 현재 군사법경찰관이 군의 특성상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에 대해서는 군검찰관이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대다수였으며, 형사소송법과 같이 군검찰관의 지휘를 받아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현행 군사법원법을 개정하여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반드시 군검찰관의 지휘를 받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군사법경찰관리의 계급문제

군사법원법 제43조는 군사법경찰관을 ① 헌병과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의하여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하는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법령에 의한 기무부대에 소속하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및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자, ④ 검찰수사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6조는 군사법경찰리를 ① 헌병인 병, ② 법령에 의한 기무부대에 소속하는 병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군사법원법은 너무나 낮은 계급에까지 광범위하게 군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주고 있으며, 심지어는 인권의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의무복무를 하는 병에게까지 군사법경찰리의 권한을 주고 있어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 군탈체포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헌병사병은 군사법경찰리로서 직접적으로 체포나 긴급체포, 임의동행 등 수사상의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인권의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병에게 군사법경찰리의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군사법경찰관의 직급도 수사전문화를 통하여 일정 계급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부 헌병대의 경우에는 면접조사결과 군무일탈자 체포시 군탈체포요원이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현행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은 긴급체포를 할 수

35) 이행규, 앞의 발제문, 6면.

있는 자를 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탈체포요원이 긴급체포를 하는 것은 위법한 강제수사에 해당하며 또한 미란다 원칙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긴급체포된 자의 인권을 곧바로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사법경찰관리의 계급이나 직급을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II. 인신구속제도 관련 개선

1. 긴급체포와 구속관행의 개선

(1) 과도한 인신구속의 억제

군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발부율이 거의 98~99%에 달하고 있어 거의 예외 없이 모든 범죄에 영장이 발부되고 있는 현실이다.³⁶⁾ 군사법원법 제231조는 제1항은 “강제처분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법원법도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군판사들이 구속사유를 엄격히 심사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경중, 신분(계급), 사단검찰부의 입장, 소속부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속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³⁷⁾

특히 군무이탈사건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긴급체포에서 구속으로 이어진다. 육군의 경우 ‘군무이탈자 사건처리지침’을 보면 종래에는 미귀이탈자 중 48시간 혹은 72시간 내에 복귀한 자 중 ‘군무기피 목적이 없는 자’는 소속대에서 위임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체포 및 지수한 헌병대에서 구속수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군무이탈의 경우에는 목적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인신구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36) 국방부의 ‘2002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에 의하면 육군의 경우 2000년에 구속영장 발부율이 98.9%, 2001년에는 97.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 2002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989면).

37) 박영만, “군사법원법상 인신구속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경북대 법학 제2집, 경북대 법학연구소, 1998, 195면 각주) 27 참조.

물론 군형법 제30조 군무이탈죄의 경우에는 군무이탈을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는 적전, 전시·사변 또는戒嚴지역을 제외한 기타의 경우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군무이탈자는 대부분 긴급체포와 구속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군무이탈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군무이탈을 할 목적이 아닌 일시 미귀인 경우에는 구속을 통하여 형사처벌을 하기보다는 징계나 다른 제재를 통하여 재복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복무의사가 확실한 병사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사소한 미귀인 경우에 실형선고보다는 기소유예를 통하여 수사가 종결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불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영장에 의한 체포의 활용

군사법원법이 상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인신구속의 형태는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원칙이며, 긴급체포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형사절차상 인신구속에 있어서는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 군사법원에 대한 2002년도 국회의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따르면 긴급체포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군 수사과정에서 긴급체포에 의한 인신구속이 남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긴급체포가 남용되는 이유는 체포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보다는 일단 긴급체포를 하여 신병을 확보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수사상 편리하고 또한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군검찰관과 군판사의 면접조사에서도 체포제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긴급체포나 구속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체포제도는 군 수사과정에서 별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군 수사과정에서 긴급체포가 남용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상의 편의'와 '수사상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체포영장제도를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다. 특히 군무이탈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긴급체포를 하게 되는데 이는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자칫 긴급체포권이 없는 군무이탈체포요원이 긴급체포권을 행사하여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체포영장의 집행은 군사법경찰로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군의 경우 군판사·군검찰관 면접조사결과에 의하면 군무이탈자를 체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군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군무이탈자를 체포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군의 경우에도 공군과 같이 영장에 의한 체포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피의자가 군 수사기관과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통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편리할 수 있으나, 단순히 수사상 편리 때문에 인신구속을 남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

군사법경찰관이나 검찰관 모두 수사편의를 위한 구속수사를 자제하여야 한다. 또한 군판사는 엄격한 영장심사를 걸쳐 구속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단순한 수사상의 편의 때문에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다.

(3) 긴급체포시 군검찰관의 사전승인

군사법원법 제232의3 제2항은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즉시 검찰관의 승인을 얻게 하고 있다.

헌병수사관과 검찰관의 면접조사에서는 헌병수사관이 긴급체포할 때 대부분 군검찰관에게 미리 전화를 통하여 상의하고 긴급체포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사전에 조율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선상으로 즉시 승인을 받는다고 하여 군사법원법상에는 사전승인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협의형식의 사전 승인을 통하여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왕이면 현재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긴급체포시 사전승인을 법으로 규정하여 사전승인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병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특히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군검찰관의 일반적 수사지휘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지 있지 않는 현실에서 군사법경찰관의 인신구속남용에 대한 사전통제의 필요성은 더욱 요청된다.³⁸⁾

38) 이 점에 대한 주장은, 박영만, 앞의 논문, 193면 참조.

2. 체포와 구속요건의 개정

(1) 체포요건의 개정

군사법원법상 체포의 요건의 하나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가 긴급체포를 남용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즉 현실적으로 군에서 수사대상이 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체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실무에서는 체포보다는 구속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사전체포영장이 아닌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를 이용하여 체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는 것이다.³⁹⁾ 그리고 체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긴급체포가 남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 체포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체포의 요건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다만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는 위 체포요건의 삭제와 관련하여 ‘찬성’ 4명, ‘반대’ 10명으로 반대의 의견이 많았다. 반대의 의견은 군의 경우에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많으며, 형사소송법과 구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2) 구속요건의 개정

군사법원법은 구속요건 중의 하나인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를 독립된 구속사유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된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고 언제나 도망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반대로 주거가 일정하다고 해서 도망의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⁴⁰⁾

따라서 군에서는 비현실적인 구속의 요건 중에 하나인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도 삭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군형사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및 군무원 등의 경

39) 권오현, 앞의 논문, 131면.

40) 이 점에 대한 지적은, 황인걸, 앞의 논문, 68면. 또한 군의 특수성에 맞는 구속요건에 대한 해석 내지는 판단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지적은, 박영만, 앞의 논문, 201~207면 참조.

우에 주거부정을 구속사유로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실제 상근예비역의 경우 자사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주거가 부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군 생활의 근거는 소속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엄격한 의미로 보면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구속사유로 주거부정을 명시하는 것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다소 현실감이 떨어진다.⁴¹⁾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의 삭제와 관련하여 ‘찬성’ 8명, ‘반대’ 8명이었다. 반대의견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과 구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3. 신속한 구속의 통지

군사법원법 제127조는 구속의 통지와 관련하여 소속 부대장과 변호인, 가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일반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곳이며, 군복무를 대부분 전·후방 오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구속통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물론 ‘군사법원의소송절차에관한규칙’ 제53조의2 제3항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속되었다는 취지 및 구속의 일시, 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군대는 민간에 비해 외부와 소통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공간적 특수성으로 인해 가족들이 피의자의 상황이나 행적 등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피의자의 자기 구제범위나 신속하게 가족·친지에 의해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민간에 비해 훨씬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⁴²⁾ 특히 사병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구속통지를 해주지 않으면 수사 초기단계에서 인권침해를 당해도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

헌법 제12조 제5항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규정

41) 박영만, 앞의 논문, 191면.

42) 국가인권위원회, 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과약, 24면.

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서면통지보다는 전화나 모사전송 등 신속한 방법을 통하여 피의자 가족에게 신속하게 통지함으로써 피의자의 접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구속 수사 중의 인권침해적 위험을 방지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군사법원법 제127조와 규칙 제53조의3 제3항을 개정하여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전화나 모사전송 등 신속한 방법을 통한 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통지를 보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헌병수사관 면접조사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구속통지는 전화로 미리 한 다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에 군사법원법을 개정하여 전화와 같은 유선통화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구속통지를 신속하게 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설문조사에서는 구속통지가 어떻게 통지되었는지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구속통지시 피의자에게 통지대상이 누구이며, 어떻게 통지되었는지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구속기간 연장의 억제

군사법경찰관에게도 구속기간 연장신청권을 준 군사법원법 제241조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졌다. 다만 군검찰관은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구속기간의 연장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 거의 모든 검찰관이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사건이 복잡하여 수사의 시간이 더 필요하였기 때문'과 '구속된 피의자에게 훈계하는 차원'에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최근의 군검찰 사건의 처리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전체 범죄 11,478건 중 폭력범죄 3,954건, 교통범죄 3,220건(이 중 음주 1,210건), 군무이탈 1,374건, 기타 2,930건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도에는 전체 범죄 9,644건 중 폭력범죄 3,131건, 교통범죄 2,788건(이 중 음주 1,116건), 군무이탈 1,447건, 기타 2,278건으로 나타나 군 범죄의 대부분이 단순 폭력범죄, 교통범죄, 군무이탈 등 비교적 사안이 단순하고 경미한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까지 수사를 계속할 만한 사건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⁴³⁾ 다만 헌병수사관이나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는 민간인이 피해자이거나 참고인인 경우 소환과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속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할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피의자 훈계차원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대부분 군무이탈죄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군무이탈기간이 짧아 기소유예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인 경우에 1차 구속기간에 기소유예로 석방하게 되면 처벌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며, 사소한 군무이탈로 인하여 영창처분을 받은 사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사소한 군무이탈이고 재복무의사가 확실한 사병인 경우에는 하루빨리 석방하여 군복무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나 사병 개인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군무이탈자의 경우에만 과도하게 구속기간을 연장하여 장시간 구속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불어 영창관리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언제 군검찰에 송치되었고, 구속기간이 연장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고지해 주어야 한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필요하며, 법에 무지한 사병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5.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와 구속적부심제도의 개선

(1) 필요적 심문으로 개정

군사법원법도 인신구속을 제한하는 제도로써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제도와 구속적부심사제도를 두고 있으나, 본 제도의 활용이 일반형사소송절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⁴⁾

군판사 면접조사나 헌병수사관 면접조사에서는 예전에 비해 실질심사를 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였으며, 헌병수사관들이 적극적으로 실질심사를 권유하고, 군

43) 군 검찰 사건처리 현황은, 국방부, 2002년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20면 참조

44)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영장실질심사를 이용하는 비율은 10~20%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파악, 21면 참조).

관사도 의심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질심사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군무이탈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심사를 하는 경우가 적고 군무이탈피의자들이 자기잘못을 반성하여 스스로 실질심사를 포기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영장실질심사가 저조한 이유⁴⁵⁾에 대해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해 보아야 이미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영장이 청구되므로 기각될 확률이 없기 때문’과 ‘피의자가 무슨 제도인지 몰라 신청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⁴⁶⁾

현재 영장실질심사는 관사의 재량에 의한 임의적 심문으로 되어 있다.⁴⁷⁾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권리는 법적 청문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요청되는 것이고, 재량에 의한 피의자심문은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9조 제3항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동규약은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공무원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적 피의자심문이 더욱 군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이유는 영장실질심사에 의한 관사대면을 통해 체포 또는 신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외부에 노출시키고 이를 통해 강압수사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강력

45) 앞의 미결자 설문조사에서는 실질심사가 무슨 제도인지 모른다가 42%정도 되었으며, 신청율은 35% 정도 되었다.

46)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는 기각될 확률이 없어서 6명, 피의자가 몰라서가 5명이었다. 기타 7명의 경우에는 신청률이 저조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47) 대관 1999. 8. 20, 99도2029(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관사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피의자를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관사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를 심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영장담당관사가 피의자를 심문함이 없이 영장을 발부하였다 하여, 영장발부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히 제기되고 있다.⁴⁸⁾ 현재 법무부도 필요적 피의자심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사관이 불성실하게 고지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필요적 심문으로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실질심사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

군사법원법 제238조의2 제8항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군검찰부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수사실무에서는 군사법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기간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적도 있다.⁴⁹⁾ 미결수용자 설문조사에서는 헌병수사관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해 주나 어차피 실질심사를 청구해 보아야 영장이 발부된다고 고지하였다는 응답도 있었으며, 위와 같은 점을 부각시켜 헌병수사관의 고지하였다는 응답도 1명이 있었다. 또한 사병의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불이익 때문에 의견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구속전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이 열악한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신청권을 포기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⁵⁰⁾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피의자심문으로 2일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수사기간이 단축된다는 점이나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48시간이라는 사실상의 무영장상태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인신구속상태하의 무영장상태가 2배로 연장되는 비인권적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수 있다.⁵¹⁾

48) 송광섭,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10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8, 60면; 신동운, “인식구속제도를 둘러싼 법적용의 왜곡과 그 해결방안,” 법학 제39권 1호, 서울대 법학연구소, 1998, 30면; 이은모, “피의자 인신구속제도의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제19호, 형사형사법학회, 2008, 117면; 이재석,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1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9, 196면; 황정근,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50면;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08, 234면; 신양균, 앞의 책, 157면.

49) 이형규, 앞의 발제문, 5면.

50) 황인걸, 앞의 논문, 67면. 피의자심문기간의 구속기간 불산입 규정의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이다.

51) 황인걸, 앞의 논문, 67면.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이 많았으며,⁵²⁾ 그 이유는 피의자가 자유로이 신청한 것이고, 수사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필요적 심문으로 개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군 사건이 대부분 복잡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수사를 요하지 않아 실질심사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체포·구속적부심의 적극적 활용

구속적부심의 경우 거의 모든 피의자가 무슨 제도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신청도 거의 하지 않았다. 군 인신구속에 있어 구속적부심사제도는 무의미한 제도가 되고 말았다.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① 피의자들이 어떤 제도인지 모름, ② 청구해 보아야 석방될 가능성이 없음, ③ 재판구성이 어려움, ④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동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당한 구속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병전담국 선변호인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는 그 2000년 5월 1일 이후 시행된 이래 군형사소송절차에서 그 시행이 거의 전무한 현실이다. 그 이유는 사건수가 적은 이유도 있지만, 처음부터 피의자보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는 체포·구속심리단계에서 법관이 직권으로 석방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특색이다. 따라서 체포·구속적부심을 담당하는 법관들은 종래의 타성에서 벗어나 기소전 보석의 적정성 여부까지 심리·판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피의자 보석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체포·구속적부심청구권과 기소전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을 피의자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이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⁵³⁾ 다만 현재와 같이 군수사절차에서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가 활용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영장실

52)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는 이 견해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12명이었다.

53) 황인걸, 앞의 논문, 88면.

질심사단계에서 보석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과도한 구속과 부당한 구속을 예방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⁵⁴⁾

II. 변호인 제도개선

1. 사병전담변호인제도 도입

군 수사과정은 계급사회라는 군의 특수성 때문에 위압적 수사분위기가 지배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 피고인들이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행사를 하기 어렵다. 일반 수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종종 지적되지만 군대사회의 경우에는 수사관의 계급이 더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관’이자 ‘상관’으로서 더더욱 위압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게 된다. 특히 사병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는 수사관 대 피의자의 관계에다 상관 대 부하의 관계가 추가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⁵⁵⁾ 그러다 보니 특히 말단사병의 경우 자신의 주장을 펼칠 능력도 가능성도 실질적으로 봉쇄되게 된다.

또한 군 수사과정에서는 사병의 방어권 행사가 극히 위축되는 반면, 장교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나치게 관대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사병의 인권이 더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 장교의 범죄에 대하여는 계급이나 그 출신에 따라 대우가 관이하며, 피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급장교로 대우하여 소환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신문을 한다든지, 봐주기 축소수사를 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형평성을 침해하게 된다. 그러나 군 입대당시부터 헌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거나 군 복무 중에 이들 병과에 대한 막강함은 느낀 사병이라면 방어권을 행사할 염두를 내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인식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사병인 범죄피의자의 인권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병의 변호를 전담하는 사병전담변호인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⁵⁶⁾ 이는

54)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보석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한 논거는, 정진수, “인신 구속제도와 구속심사제도의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3호, 1998, 173면 참조.

55) 이 점에 대한 지적은 한인섭, 앞의 발표문 참조.

56) 한인섭, 앞의 논문, 참조.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병전담변호인제도를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각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헌병수사관 면접조사에서는 사병전담변호인제도에 대해 찬성의견이 많았으나,⁵⁷⁾ 군 검찰관 면접조사에서는 사병전담변호인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거의 비슷하였다.⁵⁸⁾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자격을 민간변호사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사병전담변호인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를 민간변호사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무장교의 경우에는 군검찰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당사자가 이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지방변호사협회에 협조를 구하여 사병전담변호인을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공익법무관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일반에서도 지적되는 내용이지만 국선변호료의 비현실성이나 국선변호의 불성실성이 해결과제이다.

2. 국선변호의 실질화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하여 군사법원법 제62조는 형사소송법과 달리 모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선변호인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에 비하면 매우 바람직한 규정이다.⁵⁹⁾ 그러나 실제로 재판기일 약 1주일 전에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그것도 인근 부대의 검찰관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1회 접견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피의자는 사실상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미결수용자 설문조사에서도 국선변호인과의 만남이 형식적이었다고 응답하여 실질적으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군사법원법이 모든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제도가 실질적으로 만족할만한

57) 헌병수사관 면접조사에서는 이 견해에 대해 찬성 18명, 반대 4명이었다.

58)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는 이 견해에 대해 찬성 10명, 반대 8명이었다.

59) 군사법원법상 국선변호인 선정은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2조 제10항).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군검찰관이나 검찰관시보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민간변호인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여야 사병의 인권이 더 보호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민간변호인이기 때문에 법무장교보다 더 좋다는 막연한 생각이 전제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현행과 같은 군사법원의 국선변호제도 운영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평가인 것 같다.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도 국선변호인의 자격을 민간변호사로 하는 것에 대해 찬성의견이 많았다.⁶⁰⁾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하여 군사법원은 그냥 피고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선정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못하므로 실질적 국선변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의 선정시기를 기소직후로 하여 공판기일전에 충분히 접견하고 피고인을 조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으로 군사법원법이나 국선변호인선임 절차시기가 개정되어야 한다.

물론 피의자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적 문제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피의자가 사병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기 권리나 수사 및 기소절차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상명하복식 규율에 익숙해져 있는 피의자들이 군대 내 영창이라는 위압감 때문에 더욱 수동적인 태도로 위축되어 피의자가 법적 보호 절차를 받지 못하는 점을 방지할 수 있다. 더불어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서도 국선변호인이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심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IV. 피의자신문조사 절차의 개선

60)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는 이 견해에 대해 찬성 14명, 반대 3명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에게 국선변호인 선택권을 주기로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동아일보 2002. 9. 24). 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서울지방법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28명의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위촉하여 사선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택하도록 하고, 시행결과를 검토한 뒤 국선변호인 선택제를 육해공군 소속 보통군사법원에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2004년부터 체포·구금된 피의자가 수사를 받을 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보통군사법원에까지는 국선변호인 선택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참여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

1.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고지

피의자신문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는가의 여부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즉 실무상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 자체에 진술거부권고지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므로 조서만으로는 실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러한 이유에서 진술거부권의 불고지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미결수용자 설문조사결과 현병수사단계에서는 진술거부권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는 비율이 51%정도 되었고, 형식적으로 들었다는 비율이 40%정도가 되었으며, 듣지 못했다는 응답도 7%정도로 나타났다. 군검찰단계에서는 자세한 고지가 47%, 형식적 고지가 37%, 고지해 주지 않았다가 15%로 나와 아직도 진술거부권에 대한 형식적 고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도 형식적으로 고지한다는 응답도 상당수 있었다. 이는 조서를 작성하는 수사관이나 검찰관이 진술거부권에 고지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피의자의 입장에서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지를 해 주더라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서작성시 조서내용의 첫머리에 문답형식으로 수사관이 진술거부권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받았다는 신문내용을 작성하여 기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사관들의 인권의식이 함양되어 진술거부권을 자세하고 진지하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조사시 가혹행위 근절방안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여전히 수사관에 의한 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결수용자 설문조사결과 현병수사단계에서는 진술강요 39%, 유도신문 38%, 모욕·위압적 신문 34%, 폭행·구타 5%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검찰단계에서는 진술강요 27%, 유도신문 32%, 모욕·위압적 신문 27%, 폭행·구타 3%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들의 인권의식이 많이 고취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과거의 수사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력범죄와 군부대내 총기분실과 같은 중한 범죄에 대해서

는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구타나 욕설, 모욕적 신문, 밤샘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지대책으로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사병전담변호인제도를 도입하여 중대범죄에는 변호인 참여없이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사관이나 검찰관의 인권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3. 피의자신문시 보조자 참여 준수

군사법원법 제235조에는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검찰서기나 군사법경찰관리의 참여를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피의자신문절차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군과 같이 폐쇄된 사회에서 보조자의 참여없이 단독조사를 하는 경우 가혹행위 등과 같은 부당한 행위가 피의자에게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수용자 설문조사에서는 현병조사단계에서 66%가 보조자 없이 조사를 받았으며, 군검찰조사단계에서는 81%가 보조자 참여없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현병수사관이나 군검찰서기의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모든 조사에 이들이 일일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서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피의자신문시에 보조자를 반드시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4.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감·변경권 보장

미결수용자 설문조사결과 현병조사단계에서는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후 증감·변경을 청구하고 싶었지만 수사분위기가 할 수 없었다는 응답비율도 2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분위기에 억압되어 자신의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사관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려 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증감·변경요구시 현병수사관의 경우 신경적으로 응해주었거나, 응해주지 않았다는 응답도 있었고, 군검찰단계에서도 증감·변경을 요구시에 신경질적으로 응해 주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특히 사병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감·변경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위험성은 수사과정에서 그 신분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내용은 법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채택된다. 따라서 자신이 행하지 않거나 행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조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된다. 이러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이며 또한 증감·변경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아니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철저히 배제하여야 한다.⁶¹⁾

5.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보장

사병전담변호인제도를 도입하여 피의자신문시 참여하게 하면 위와 같이 제기되는 인권침해문제는 근절될 것이다. 현재 법무부에서도 피의자신문시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⁶²⁾

사병인 피의자의 열악한 신분상태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병전담변호인제도를 도입하여 변호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사병전담변호인이나 국선변호인이 적은 보수로 수사과정 내내 피의자의 옆에 앉아 있으면서 이를 지켜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여건이라면 불가능할 것이다. 일반경찰의 경우에도 1999년 6월 최초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실시하였으나 초창기에는 변호인들의 참여회피와 선임률의 저조로 기대했던 만

61)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낭독해 주고 오기여부를 확인하고 피의자가 조서내용에 대하여 증감·변경을 청구한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하며,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는 절차를 위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관례는 피의자의 서명, 날인 및 간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만(대판 1981. 10. 27, 81도1370; 1992. 6. 23, 92도954), 조서의 내용을 피의자에게 열람 또는 낭독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신문절차의 위법에도 불구하고 조서 자체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1988. 5. 10, 87도2716; 1990. 5. 14, 90도486).

62) 현재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참여 허용'은 전문가들 모두가 공통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도 토론자 모두 변호인참여를 가혹행위 방지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کم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고 한다.⁶³⁾

따라서 사병전담변호인제도가 국선변호인을 전제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국가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국가는 비록 범죄를 행한 사병이라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가 필요에 의해 징집한 사병을 죄를 범했다고 하여 방치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군이라는 존재가 없었더라면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이다(특히 군무이탈이나 운전병의 업무상 과실범죄). 따라서 국가가 보호자적 입장에서 그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 주어야 한다.

6. 피의자조사과정 CCTV녹화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매번 조사시에 일일이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물론 군관련 범죄들이 단순한 범죄들이어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현병이나 군검찰단계에서 각각 1~2번 조사받기 때문에 변호인 참여의 횟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조사횟수가 많고 특히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나 부당행위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이 참여하여야 하나, 군부대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변호인 참여가 여의치 않다면 보조적 수단으로 조사실이나 수사실에 CCTV를 설치하여 전 조사과정을 녹화해 둘 필요가 있다. CCTV(비디오)녹화는 법정에서 경찰수사의 불법성을 허위로 주장하는 피의자와 위증하는 경찰간의 문제, 허위자백의 문제, 자백의 임의성을 판단하는 문제 등을 가장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⁶⁴⁾

63) 경찰청, 경찰백서, 2003, 270면. 이에 따라 경찰은 변호사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출석요구서 통보시 참여 문구제', 관서별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는 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장기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조 변호인 참여에 대한 명문규정의 신설과 '국선변호인'의 참여범위를 경찰수사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 법령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참고로 일반경찰의 피의자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실적은 2002년도에 총 136명이었다.

64) 김성돈,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2. 11. 25, 28면.

V. 미결수용시설의 관리와 처우의 개선

1. 미결수용시설 관리

(1) 미결수용시설 관리의 전문화

군행형법 제2조 제7항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 및 대통령이 정하는 부대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군행형법시행령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으며, 통상 영창이라는 미결수용시설은 각군의 규정에 따라 장관급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의 헌병대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다.⁶⁵⁾

영창관리는 각군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육군의 경우 육군규정 155 제173조에 운영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표 4-1〉 육군의 영창운영

운영자	운영책임 내용
헌병대장	수용자 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한다.
책임장교	각급 부대의 군기과장과 군기과장이 없는 부대는 조사장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보직된 장교가 수용자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아래 업무를 과장하여야 한다. 가. 입·퇴감 통제 및 감독 나. 영 치금품 관리 다. 면회 및 서신 통제 라. 위생 상태 확인 마. 경비교육 및 감독 바. 수용자 교육 및 행형업무 처리
행무담당관	책임장교를 보좌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가. 수용 인원 파악 및 동태 관찰 나. 영 치금품관리 다. 경계 근무편성 및 교육확인 감독 라. 수용자 교육 및 행형업무

65) 이러한 영창이 전군에 97개가 있으며, 이 중 정계자만 수용하는 육군 제76사단을 제외하면 미결수용시설이 96개에 달한다.

공군의 경우에는 공군규정 141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다.

〈표 4-2〉 공군의 영창운영

관리책임	관리내용
헌병감	헌병감은 공군 각급부대 영창을 조정·통제·지도·감독하고 연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헌병대장	헌병대장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영창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헌병중대장(교도반장 소관)	헌병중대장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헌병대장의 영창관리 업무를 보조하고 수용자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영창근무병	영창근무병은 헌병중대장(교도반장 소관)의 명을 받아 수용자관리 및 경계·감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군의 경우에는 구치소업무규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표 4-3〉 해군의 영창운영

관리책임	관리내용
헌병대장	가. 구치소 운영을 위하여 헌병대장은 구치소장을 임명하여 군기과(헌병중대)에 소속토록 한다. 나. 구치소장에게 구치소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행형업무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이를 위임, 대행케 할 수 있다. 다. 헌병대장은 군행형법, 동 시행령 및 동시행규칙과 이 규정에서 정한 행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기과장(헌병중대장) 및 구치소장에게 위임, 대행된 업무에 대해 수시로 통제·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군기과장 (헌병중대장)	가. 군기과장(헌병중대장)은 헌병대장을 보좌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설보완 및 수용자 교도교화 활동 (2) 교도헌병에 대한 교육훈련 (3) 교도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 감독
구치소장 (헌병소대장, 교도부서관)	구치소장(헌병소대장, 교도부서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가. 시설보완 및 수용자 경비 나. 수용자에 대한 급식, 피복 등 일상생활 유지 다. 수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주간 교육계획표 작성) 라. 면회와 서신수발 마. 영치금품과 거실열쇠의 보관관리 바. 구치소 운영상 필요한 제반 행정관리 업무 사. 구치소 근무 헌병의 감독 아. 기타 법과 시행령 및 타법규에 정한 헌병대장의 임무보조
교도헌병	교도헌병은 구치소에 근무하는 헌병으로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가. 수용자 파악 및 경비 나. 면회 시 입회 및 대담내용을 기록 다. 수용자 교육훈련시 보조 라. 특히 근무중인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완전 복장착용 및 기립근무 (2) 수용자와의 사담 금지 (3) 수용자에게 구타, 폭언 등 비인도적인 가혹행위를 금하고 헌병대장 허가 없이 사역 또는 작업을 명할 수 없다. (4) 근무장소 이탈 금지 (5) 동시 2개 이상 거실문 개방금지

육군의 경우 전방의 사단 영창의 경우에는 책임장교나 형무담당관의 업무를 수사과장(보통 준사관)이 통합수행하고 있었다. 군단급 헌병대 영창의 경우에는 작전과장이 책임장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서관이 형무담당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

었다. 후방 사단 헌병대 영창의 경우에는 전방 군단 헌병대 영창과 마찬가지로 작전과장이 책임장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부사관이 형무담당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방 사단의 경우에는 형무업무를 수사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과중이 발생하며, 수사과 형무업무가 구별되어 있지 못해 효율적인 영창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수사관이 영창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창을 들어갈 수 있고, 이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물론 군단이나 후방사단의 경우와 같이 작전과에서 영창관리를 하는 부대의 경우에는 수사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작전과에 퇴감의뢰를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수사관의 경우에는 영창출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위험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인력상 문제는 있겠지만 미결수용시설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전방사단의 경우에도 행형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형무담당관을 따로 두는 것이 타당하며, 수사관이 영창출입을 할 수 없도록 통제를 하여야 한다.

영창의 가장 큰 문제점을 수사과 행형업무가 구별되지 못하고 수사기관이 행형업무까지 담당한다는 점이다. 물론 군의 현실상 수사과 행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반드시 형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수사관이 영창을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선 수사관들도 이점에서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였으며 형무를 담당할 인원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공군의 경우에 방문한 부대의 경우 교도반장이 지정되어 있어 교도업무만 관장하고 있었으며, 해군이나 해병의 경우에도 방문한 부대 모두 구치소장이 따로 구치소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었다.

(2) '영창'의 명칭 개정과 '군 구치소' 설치

현재 미결수용시설로 통하는 영창은 육군의 경우에는 통상 '영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공군의 경우에는 '교도반'이라는 명칭을, 해군과 해병의 경우에는 '구치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그런데 과거 영창이라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즉 군사문화의 잔재로 아직까지 일반교도소를 영창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현행법상 영창이란 군인사법상 사병징계의 일종으로 신체를 영창이라는 장소에 구금하는 징계처분을 말한다.

따라서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인 구치소란 명칭을 해군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하여 영창의 부정적 의미를 감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구치소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징계영창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징계처분은 형사처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사단급 헌병대에 설치되어 있는 영창시설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기간만 일시수용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군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독립된 구치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군 구치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헌병으로부터 독립된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국방부차원이나 각군본부 차원에서 신설하고, 구치소의 설치단위를 군단급이나 군사령부급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사법원이나 군검찰의 설치단위를 현재와 사단급에서 군단급 이상으로 또는 지역단위로 재편성하여 군사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와 같은 영창의 기능은 징계영창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은 징계벌을 실시하는 수용시설로 사용하고, 구속된 자와 완전분리를 하여 징계교육을 담당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재개편의 경우에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와 같은 군행형체계를 개혁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3) 영창의 시설의 개선

본 연구진이 방문한 영창의 경우에 영창관리자들이 영창의 시설환경과 관련하여 수용자를 위해 많은 배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노후 된 영창의 경우에는 시설이 아주 열악하여 수용자를 위한 독립된 목욕탕이나 식당이 구비되어 있지 못해 불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지하에 위치한 육군 제1군단 영창의 경우에는 영창을 들어가는 계단부터 음

습한 느낌이 들어 좋지 못하였으며, 수용자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또한 미결수용시설은 아니지만 징계자만 수용하는 육군 제76사단 영창의 경우에는 거실의 공간이 너무 좁아 수용시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였으며 모든 생활시설을 헌병사병과 함께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하게 보였다.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하에 위치한 영창과 징계자만 수용하는 부대의 영창의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수용시설을 신축해야 할 것으로 본다.

(4) 영창관리자 인권교육의 지속적 실시

영창관리자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행형업무와 인권과 관련한 특별한 교육은, 2003년의 경우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육군교도소에서 형무담당관 소집교육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 교육과정에서 행형업무와 인권위의 강사가 초빙되어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행형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⁶⁶⁾

이러한 특별교육이외에 인권과 관련한 교육은 대부분 초기 헌병학교에서 받았거나, 정기적으로 헌병감실에 실시하는 형무담당관 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수시로 자대간부(헌병대장, 작전과장)에게서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군행형업무의 전문성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하여 정기적인 행형교육,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군 자체 교육보다는 인권위나 기타 외부인권단체로부터 주기적으로 받아 인권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2. 미결수용시설 처우의 개선

(1) 권리 등의 고지와 진정권 고지에 대한 개선

66)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방대하게 실시하고 있고 있다. 2008년에는 경찰분야에 80회, 검찰분야 1회, 출입국 분야 3회, 교정분야 5회, 군대분야(해군헌병대, 육군교도소) 2회 등을 통해 총 9,040명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4년 업무설명회 자료, 2004, 78면 참조).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수용시에 수용자에 대한 권리를 자세히 설명해 준다고 대부분은 응답하였으나, 형식적으로 고지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미결수용자 설문조사에서는 영창에 수용시에 미결수용자로서의 권리나, 앞으로 진행될 형사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청원제도 등에 대하여 듣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입수용자의 경우에 반드시 권리와 권리구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구두로 설명한 후 이를 열람시키고 고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병의 경우에는 법률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형사절차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서 거실 내에 권리와 권리구제방법, 형사절차를 책자로 제작하여 비치하든지, 아니면 벽에 부착하여 항상 윤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규정되어 있는 진정권에 대한 고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영창이 이와 관련한 사항을 윤독시킨후 서명을 받고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영창도 있었다.

진정함 설치의 경우에도 복도에 설치한 영창이 많았으며, 일부 영창의 경우에는 거실에 설치한 곳도 있었다. 또한 일부영창의 경우에는 진정용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모든 영창이 필기도구와 봉투는 비치하고 있지 않았다.

수용자들이 자유롭게 진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진정함은 거실 내에 설치하고 항상 필기구와 진정용지, 봉투를 비치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⁶⁷⁾

(2) 화장실 칸막이와 이용 개선

영창내 화장실의 위치는 각 영창에 따라 영창 거실 내에 위치한 곳도 있었고, 거실 밖에 위치한 곳도 있었다. 화장실 칸막이의 높이는 헌법재판소의 유치장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이후 기존의 높이보다는 조금 더 높여 칸막이 높이에 대해 많은 신경을

67)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의 군관련 현황을 보면, 2002년에는 군검찰 1건, 군헌병 6건, 기무사 3건, 군구급시설 3건, 기타군사 39건이었으며, 2003년에는 군검찰 1건, 군헌병 4건, 기무사 3건, 군구급시설 6건, 기타군사 59건으로 군구급시설의 진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04년 업무실명회 자료집, 72면 참조).

쓰고 있었다.

다만 화장실에 간이 칸막이를 사용하는 영창의 경우에는 고정칸막이를 설치하고, 거실내 화장실의 경우 양변기가 아닌 좌변기를 사용하는 영창의 경우에는 양변기를 설치하여 용변시에 소리나 냄새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화장실 이용의 경우에도 영창에 따라서는 휴식시간에만 이용하는 영창이 있어 불편하다는 응답이 31%정도 나타났다. 화장실 정도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일광건조와 침구류 청결 유지

수용자가 많아 수시로 교체되는 영창의 경우에는 침구류의 청결상태가 불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방사단과 같이 수용자가 많은 영창의 경우에는 수시로 일광소독을 실시하고 침구류에 대한 세탁도 분기나 반기별로 하지말고 수시로 세탁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세탁의 경우도 일광건조를 충분히 시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감시카메라의 위치 개선

영창에 따라서는 감시카메라의 위치가 수용자 거실 내부를 모두 감시하고 있어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창의 경우에는 군 구금시설의 특성상 감시카메라가 사생활의 보호 측면보다는 근무병의 기혹행위나 구금자 간의 폭행 등과 같이 영창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계룡대 공군지원단 헌병대대가 군 영창을 운영하면서 영창 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일부 감시카메라를 철수하라고 권고하여,⁶⁸⁾ 공군 영창방문결과 거실 내를

68) 국가인권위원회 2008. 2. 21 보도자료 참조

감시하는 카메라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5) 상근예비역 수용자에 대한 식사/ 부식 제공 문제

상근예비역의 경우에는 자대에서 점심만 제공되기 때문에 영창에서도 아침, 저녁의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식수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근예비역이 자대에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점심만 제공되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영창에 수용된 경우 아침, 저녁이 행정적으로 식수인원 포함되지 않아 보급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상근예비역의 수용자가 많은 영창에서는 식사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징계입창자에게는 우유나 음료 등과 같은 부식이 제공되지 않는 관계로 미결자에게도 지급하지 않은 영창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개선되어야 한다. 징계입창자나 미결자 모두에게 현역에 준하여 모든 부식이 제공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며 각군 규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관계통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6) 서신작성과 집필권보장 문제

편지작성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만 작성하고 검열이 심하기 때문에 부자유스러운 경우가 많았다. 규정상 편지작성은 국가경축일, 공휴일, 일요일, 휴게시간에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영창에 따라서는 수양록 작성시간을 이용하여 서신을 작성하거나 일요일 오전시간을 이용하여 서신작성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필기도구를 사과의 위험성 때문에 모두 근무자가 통합보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필기도구를 통합보관하여 수양록 작성시간이나 서신작성 시간에만 지급하는 이유는 필기도구가 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용자에게 개인지급을 하지 않고 통합보관을 하게 되면, 특히 청원·고소·고발·국가인권위 진정 등의 집필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아,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제한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⁶⁹⁾

수용자의 집필권은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학, 학술 기타사항을 집필할 수

69) 국가인권위원회 2008. 8. 26 보도자료 참조

있는 자유로서 헌법 제10조(인간존엄과 가치),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 제22조(학문·예술의 자유), 제26조(청원권), 제27조(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통합보관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매우 한정된 시간에만 제공되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편지작성과 관련하여 편지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정도는 수용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집필권이나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서신횟수의 제한도 헌병대장은 필요시에 군행형법시행령의 규정에 준하여 서신발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검열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형자의 서신발송이나 서신횟수의 제한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⁷⁰⁾

(7) 전화통화의 자유 보장

모든 영창이 미결수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군행형관련법에도 이에 대한 규정은 없다. 행형법 제18조의3 제1항에는 “소장은 수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영창에 따라 수용자가 가족과 통화를 원하는 경우 영창관리자의 재량에 의하거나 헌병대장에게 보고한 후 자신의 핸드폰으로 통화를 해준다는 영창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긴급히 가족과 통화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8) 도서/ TV 시청

- 도서의 확보

70) 이 점에 대한 지적은, 정진수,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52면 참조

미결수용자의 일과는 대부분 수양과 독서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도서의 종류와 양이 매우 부족한 게 현실이다. 도서보급의 경우에는 정훈이나 군종부서의 협조를 얻어 확보하고 있었다. 헌병 자체예산의 경우에는 격별보수비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었는데 그 액수가 3~4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현재와 같이 도서구입에 따른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도서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후방사단이나 도시에 인접하고 있는 영창과 같이 시립도서관에서 정기대출을 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도서를 공급해 주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전방사단과 같이 격오지에 위치한 영창의 경우에는 지리상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도서구입이 어렵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서를 확보하는 정도는 가능하리라 본다. 시립도서관과 연계한 도서대출의 경우에는 영창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인원이 확보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진이 이러한 도서확보 방법을 건의하였을 때 수사과에서 영창을 통합관리하는 부대의 경우에는 수사나 사고예방활동 업무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였다.

- TV시청시간 및 채널선택권 보장

TV시청의 경우 정해진 시간대에는 모두 시청하고 있었으나, 시청시간이 대부분은 30분이었으며, 채널선택권은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TV시청 시간의 경우에는 규정상 1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청시간은 보장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대부분의 영창이 수용자들에게 채널선택권을 주지 않았는데 가능하다면 시청시간대에 수용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하면 좋을 것으로 본다. 실질적으로 00부대 영창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9) 실외운동 및 일광욕 시간 제공

미결수용자의 운동은 운동장이 구비되어 있지 못하거나 계호병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실외운동이 실시되지 못하는 영창이 많았으며, 대부분은 실내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체조 등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수용자가 수용기간 중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 운동이다. 시설과 계호 인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여 실외 운동이나 일광욕 시간이 제공되지 못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나 실내운동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공군규정과 같이 반드시 수용자에게 변동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10) 종교행사 신청권 보장

영창에서의 종교행사는 대부분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각 종파별로 군종장교가 영창에 방문하여 이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군종장교의 인력현황으로는 일반사병과 같이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수용자가 종교행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군종장교에게 연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종교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용자에게 종교행사 신청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인격순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군행형법에는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⁷¹⁾ 다만 군의 특성상 모든 사병에게 종교행사 참여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각군 규정에도 수용자의 종교행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공군의 경우에는 공군규정 141 제75조 “헌병대장은 수용자가 신봉하는 종파의 교의에 의한 교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종파에 위촉하여 교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종교행사 신청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1) 비변호인과의 면회제한 규정 개정 및 삭제

군사법원법은 비변호인과의 접견제한에 대하여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애거나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와 비변호인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71)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미결수용자가 종교집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사건 관련 수용자를 분리하는 등 수사나 재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법무부장관과 대전교도소장에게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1. 27 보도자료 참조).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제232조의5, 제131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의 제한을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관련 규정에 있어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나, 피의자의 비변호인과의 면회제한에 대한 준용규정은 공판절차에서 구속의 판단주체인 법원과 구속의 집행기관인 검사의 관계를 수사상 피의자구속에 준용하기로 한 규정일 뿐이고, 수사기관이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독자적 결정으로 비변호인과의 면회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⁷²⁾ 즉 법원의 결정으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군행형법 제15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면회하거나 서신을 수발할 수 있다. 다만 수사중인 수용자에 대하여는 검찰관이 이를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중인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찰관이 이를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육군규정 155 제182조는 “1. 군사법원은 도망하거나 증거의 인멸 또는 군사상 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군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면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군규정 구치소업무규정 제35조는 “수용자가 1. 신병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서 외부인과의 면회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 2. 규칙 제57조의 징벌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 면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회제도는 피구속자가 가족 등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적절히 개방, 유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가족 등 타인과의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과멸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조력하고자 존재하는 것이다.⁷³⁾ 이러한 면회제도는 일반사회에 비하여 특수하게 격리된 군대에서는 더욱 더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사법원법의 해석도 비변호인과의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 군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군판사의 결정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군행형법과 같이 군검

72)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5판), 홍문사, 2004, 267면; 신동운, 형사소송법 I (제2판), 1997, 207면; 신양균, 앞의 책, 177면; 임동규, 형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2008, 201면.

73) 현재결 2002. 4. 25, 2002헌사129.

찰관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든지 군관사의 결정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육군규정은 타당하나, 해군규정의 경우에는 해석상으로는 수용자에 대한 면회제한의 주체가 헌병대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한사유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당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12) 가혹행위와 과도한 정좌자세 방지

영창이 과거에 비하여 가혹행위나 부당한 행위는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나 규정 시간외의 일차려(체력단련)와 근무자가 수용자에게 욕설이나 반말을 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는 근무병이 가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영창에 따라서는 근무자가 영창에 근무투입전에 근무자 선서를 하고 서명함으로써 가혹행위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영창근무헌병 면접조사에서는 ‘근무자에게 영창관리에 대한 책임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입창자 통제를 위하여 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으며, ‘영창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입창자가 군기가 빠져 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수용 첫날에 영창군기를 잡기 위해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언어적으로 수용자에게 약간의 겁을 주기도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영창에서 물리적 가혹행위는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언어적 폭력이나 과도한 정좌자세 강요는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영창근무헌병에게 책임이 너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영창군기를 잡기 위해 가혹행위를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무헌병에게만 과도하게 영창관리를 맡기지 말고 영창관리자가 영창내에 상주하면서 폭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하며, 근무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13) 수양록 점검의 폐지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반성문을 작성하는 영창은 없었으며 매일 수양록 작성시간

에 수양록을 작성하고 있었다. 작성한 수양록은 형무담당관이나 책임장교가 점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검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낀다는 미결수용자도 20%나 되었다.

영창관리자가 수양록을 검토함으로써 수용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매일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같은 내용의 글을 쓰는 것은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한 일이며,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또한 영창관리자가 점검하는 관계로 잘못 작성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억지로 반성과 잘못을 하였다는 내용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양심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수양록 작성은 모든 일반사병이 하고 있는 일과의 하나 이기 때문에 수양록 작성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수양록 작성을 읽어보고 수용자의 반성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양록 점검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용자의 심리상태는 수시 상담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알아 볼 수 있다.

(14) 영창참관 폐지

군행형법 제59조는 미결수용실은 참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문조사결과 아직도 훈련병에게 영창을 참관시키는 곳도 있었다.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시설내 공동생활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으로서 향유하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⁷⁴⁾ 그런데 훈련병의 범죄예방과 사고방지라는 예방적 교육효과를 거두기 위해 미결구금시설인 영창을 참관시키는 것은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를 범죄자 취급하여 이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물론 훈련병이 참관할 때에는 수용자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다고는 하지만 영창 거실 앞에는 수용자의 이름과 죄명, 입소일자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⁷⁵⁾

군행형법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결수용시설의 참관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훈련병이나 기타 사병의 영창참관은 반드시 금지하여야 한다.⁷⁶⁾

74) 도종진, 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94면.

75) 해군의 경우에는 수용자 이름표를 천으로 덮어놓고 있었다.

(15) 실질적 영창감찰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는 영창에 대한 감찰을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감찰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미결수용자 설문조사에서는 형식적인 감찰이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는 정기적으로 매월 1회 또는 수시로 영창을 감찰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점적으로 감찰하는 부분은 ‘수용자의 건강상태’, ‘불법체포·구속 여부’, ‘가혹행위여부’, ‘영창의 환경’ 순이었다. 영창을 감찰 한 후 헌병에게 개선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으로는 정기진료요구, 감시카메라 수리, 방한의류지급, 변호인 접견실 마련, 환기, 일광욕 실시 등이었다.

군검찰관이 정기적으로 영창을 감찰한다고는 하지만 수용자 입장에서는 형식적 감찰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감찰시에는 수용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 감찰을 하고 수용생활의 어려운 점이나 가혹행위·부당행위여부 등을 철저하게 감찰하여야 할 것이다.

(16) 책상, 방석 및 관물대 지급

영창내 일과는 대부분 운동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정좌수양 내지 독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인데 책상이나 방석이 지급되는 영창은 두 곳에 불과했다. 영창관리자의 말에 따르면 자해나 흉기가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식사를 거실에서 하는 영창의 경우에는 식사도 불안정한 자세로 하여야 하며, 독서나 수양록 작성, 편지작성의 경우에도 매우 불편한 자세로 하여야 한다. 특히 독서의 경우에는 책상이 없이 장시간하고 있다면 이는 오히려 육체적 고통을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만약 책상이 자해나 흉기의 위험성이 있다면 공군의 영창과 같이 스티로폼로 책상을 제작하여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정도의 배려는 영창측에

76) 육군은 본 방문조사가 실시된 이후 2008. 11. 12 헌병감 업무지시로 영창견학을 금지시켰다.

서 당연히 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석의 제공도 필요하다. 방석제작이 어려우면 모포를 깔고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더불어 개인관물대도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영창의 경우에는 간이관물대가 있어 여기에 수전, 세면도구 등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매우 협소해 보였다. 따라서 개인관물대를 지급하여 세면도구나 개인의복을 청결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⁷⁷⁾

3. '군미결구금집행법'의 제정

현재 일반 행형관련법에도 미결수용자에 대한 별도의 독립된 '미결구금집행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 행형법상의 준용규정에 의해 처리되고 실제로도 각종 교정예규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려워 결국 미결수용자는 처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 교정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인 법률로써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⁷⁸⁾

군행형법도 형집행에 관한 법률로써 주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다. 미결수용자에 대한 규정은 제59조 미결수용실의 참관금지, 제60조 미결수용자의 분리수용, 제61조 미결수용자의 이발, 제62조 변호인과의 면회 등, 제63조 작업과 교회 등의 내용이 전부이다. 각군의 영창관리 규정도 군행형법을 근거로 하다보니 그 내용은 주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물론 영창에는 미결수만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행형법시행령 제117조에 의하여 참모총장은 6월 이내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수형자를 미결수용실 또는 헌병대영창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결수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기결수가 수용되어 있는 영창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군행형법이나 각군의 영창관리

77) 이와 같이 개인관물대 지급과 책상지급에 대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과, 146~149면에서도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78) 신양균,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122면; 도종진, 앞의 연구보고서, 160면.

규정은 미결수용자를 채우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각군 규정의 내용이 상이하고 각군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군별로 수용자 채우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채우도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미결구금집행법’을 제정하여 미결수용자의 권리를 명문화하여 철저히 보호하고, 96개에 달하는 미결구금시설인 영창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Ⅶ. 군사법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과거에 비하여 군이 투명화 되면서 인권의식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방문조사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설문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영창 내에서도 과도한 징좌, 욕설 등과 같은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군사법 관련 종사자들에게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이나 내용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전문적인 인권기관에 의해 인권교육을 받은 것은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2003년도 10월에 육군교도소에서 실시한 군행형담당관리자 소집교육이 전부였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대간부나 감실차원의 소집교육이었으며, 근무현병의 경우에는 현병학교에서 군행형법과 관련하여 교육받은 것이 전부였다. 군검찰관이나 군판사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아무리 인권의식이 강한 사람이라도 군의 명령·조직문화에 익숙해지면 인권의식이 무디어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전문적 인권교육이 상설화되고 정례화되는 것이 강력히 요청된다.

군검찰관이나 군판사의 경우에도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미결수용자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군검찰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군검찰관은 인권을 보호하는 수호자로서의 사명감과 의식을 가져야 하며, 군판사도 군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공정한 사법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독립은 군검찰관이나 군판사의 인권의식의 개선 없이는 무의미한 것이며 설령 독립되더라도 군 인권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 군검찰관과 군판사들의 인권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법제도의 개혁을 논하는 것은 공염불

에 해당하며 반론의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면접조사에서 한 형무담당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을 받고 나서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되었다는 말은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대변하는 것이다. 또한 헌병수사관들로 전문기관에 의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요구하였다. 한 법무참모도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이러한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여야 할 부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에 군사법기관에 대해 2회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앞으로는 그 횟수와 양을 더 늘려야 하며, 육군헌병학교 교육일정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신설하여 이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Ⅷ. 장병 인권담당관제도 및 전담법률지원시스템 구축

현재 장병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그들의 고충과 애로를 수시로 상담해 주고 필요한 경우 여러 구조활동과 보호수단을 강구해 줄 법률구조전담법무관이 전무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장병들의 고민의 해결은 지휘관 또는 군종장교 등의 면담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문제상황 발견 및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특수한 군지휘체통의 구조 속에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병영내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구타나 가혹행위 또는 당연시되는 과도한 기본권 내지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구조를 받지 못하고 또한 개인적이거나 가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해결책은 찾지 못해 자살 또는 탈영 등과 극단적인 행태로 나아갈 위험성이 상존하다.

그러므로 군내의 인권보장 상태를 수시로 감시하고 집단적 또는 개별적 문제를 적시에 적발, 해소하기 위한 인권담당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⁷⁹⁾

또한 장병들의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게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각군의 경우에 법률구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구조는 크게 법률상담과 법률대행으로 분류되어 있다.⁸⁰⁾ 법률상담은 구두 또는 서

79) 이러한 주장은 사법개혁위원회 제5차회의 보고자료,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2004. 1. 5, 249면 참조.

80) 이하의 내용은 육군규정 181(법무규정)의 내용이다.

면에 의한 법률적 조언이며, 법률대행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뢰인을 위하여 법률문서의 작성, 교섭, 화해, 조정, 알선 절차의 대행 등으로 소송구조를 제외한 모든 법률적 조력을 말한다. 법률상담의 방법은 당해 법무참모부에 구두 및 서면에 의해 공무 및 민형사상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 신청을 받은 당해 법무참모는 소속 법무관 중 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에 임하게 하여야 하고, 월별 통계를 법무감실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 군법률구조의 사무소는 각부대 법무참모부에 부설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참모가 없는 예하부대에도 그 분실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률구조를 위해 지휘관 또는 법무감은 군법률구조관을 법무장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현재 이러한 법률구조제도를 각군이 두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간부의 경우에는 비교적 원활하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으나 사병의 경우에 서면이나 구두로 법률구조를 받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법률구조 자체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장병인권담당관제도나 법률구조가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동제도의 도입에 따른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하며, 또한 장병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없이는 도입되나 마나이다. 이는 부단한 군법교육을 통하여 동제도가 있음을 홍보하고 인터넷에도 인권상담이나 법률상담 코너를 마련하여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장병들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군법무관이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 줄 수 있는 특별소송대리권을 법률적으로 부여하여 장병권익보장에 기여하여야 하며, 전·평시에 생명이 급박한 상황에서 장병들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함에 어려움이 있고 그 효력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군법무관이 공증인이 되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작성이 될 수 있도록 법무관에게도 공증인법을 개정하여 공증인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⁸¹⁾

81) 이러한 주장은, 사법개혁위원회 제5차회의 보고자료, 249면 참조.

제2절 징계영창제도에서의 인권보호방안

1. 징계영창제도 존치를 전제로 한 개선

1. 영창사유의 축소 및 양정규정의 개선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사병에게 적용되는 영창징계사유가 너무 방대하여 사소한 문제까지 모두 영창처분을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휘관의 자유 재량권이 너무 과도하게 주어지고 있어 징계영창처분이 자칫 남용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

육군의 경우에는 비교적 상세하게 징계사유와 양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다른 군의 경우에는 그리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영창처분의 사유와 양형에 있어 각 군별, 각 계대별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방부 차원의 통합적 징계양형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영창처분의 제한적 활용

사병에게 있어 영창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벌이다. 즉 영창이라는 수용시설에 구금되어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그 입창일수는 군복무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영창에서 형사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수용 된다고 하나 같은 시설에 수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병에게 가장 불이익한 징계처분임은 틀림이 없다. 더구나 비행사유에 따라 입창일수가 정해져 있으나 그 경중에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적정성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책임에 상응하지 않는 과도한 형벌이 형벌로서의 효과를 거둘 수 없듯이 과도한 징계벌 또한 징계벌로서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가벼운 비행사실에 대한 영창처분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군징계법 제29조는 “직무위반이 있는 경우 이를 징계할 것인가, 또는 교육처분을 할 것인가를 심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4조는 징계처분의 양형기준으로 “원칙적으로 가벼운 벌에서 시작하되, 재범인 경우 점차로 무거운 벌을 부과

한다. 영창은 교육, 훈련으로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군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체구금이 필요한 때에 한하여 선고한다”고 규정하여 영창처분을 제한하려는 취지를 입법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비재판적 처벌은 상담, 훈계, 권고, 불승인, 비판, 비난, 질책 등의 행정적 교정수단이 부적합할 때에야 비로소 고려되고 있다.⁸²⁾

현재 군의 구조는 징집된 사병에게 너무나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권리나 권한은 없고 의무와 복종만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다. 징집에 의해 강제복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병에게 지나친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하는 현행 구조하에서 사소한 잘못을 한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영창처분을 한다는 것은 사병에 대한 지나친 인권침해이다. 사병이 비행은 범한 경우에 징계벌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그들이 다시 한번 비행을 반성하고 복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가벼운 징계벌에서부터 무거운 징계벌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병에게 가장 강력한 징계벌인 영창의 경우에는 다른 가벼운 징계벌로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최후수단이나 보충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3. 징계절차개선

(1) 적법절차의 보장

설문조사결과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었으며 진술권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어지지 않았거나, 주어졌지만 사병이라는 신분상 할 수 없었다는 응답도 있었다.⁸³⁾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위한 절차적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이 행정절차인 징계에도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할 수 있다. 그

82) 이에 대해서는 김기준, “병에 대한 징계 및 그 유사제도에 관한 고찰”, 군사법연구 제13집, 육군본부, 1996, 105면 참조.

83) 다만 징계혐의자가 불참서를 제출하거나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심리를 할 수 있는 데 사병의 경우에는 영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불참석할 경우를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러나 행정절차의 경우에도 오늘날 행정국가화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행정권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권력을 적법절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은 그 의미가 반감되고 만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자유와 권리를 절차상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행정처분에 의하여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⁸⁴⁾

특히 영창처분은 사병의 신체를 구금하는 징계이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적법한 절차란 정당한 법규범에 따라 권리의 실질적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 고지·청문·변명 등의 방어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고지, 청문, 변명 등의 방어기회가 박탈되어 진행된 징계절차는 모두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징계는 무효이다.⁸⁵⁾

(2) 피징계자 대리인 참여 방안 마련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징계는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과 상관없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요구되는 기본원리이다. 그러나 사병의 경우 설령 징계위원회에 피징계자로 참석하고 진술이나 변명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자신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거나 이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개최시 형사사건과 같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즉 사병이 징계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론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절차에서와 같이 자신의 징계사건을 변론해줄 부대 간부를 선임하여 대리인(후견인)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대리인의 선임은 지휘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피징계자가 원하는 장교나 부사관 등을 선임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징계사병을 변론해 준다면 절차적 합법성을 담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8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402면.

85)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02, 241면.

(3) 징계위원회 개최시 법무장교 참여

현재 징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개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후적으로 입창시에 징계입창자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든지 또는 사후에 법무참모부에게 보고되는 징계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 구금이라는 인권침해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적법절차를 통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장교가 징계에 참석하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면접조사에서는 징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징계위원회 개최시에 군검찰관이나 군판사의 입회여부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낮았다. 이러한 이유는 현재 군검찰관, 군판사의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각군 징계관련규정은 법무장교를 징계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에는 육군규정 189(징계규정) 제8~9조에 징계간사의 임명과 임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8조는 “징계간사는 당해 부대 법무장교 중 징계권자가 임명하되 법무장교가 없는 부대의 경우에는 인사담당장교 또는 부서관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는 징계간사의 임무로 “1. 징계간사는 징계사건의 조사 및 증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을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때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의 진술서로써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2. 징계간사는 징계사건의 조사 및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사기관 및 기타 기관에서 사실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3. 징계간사는 기타 징계처분의 집행지휘 등 징계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군과 해군의 징계관련 규정도 이와 유사하게 징계간사의 임명과 임무가 규정되어 있다. 징계사무의 경우 법무실장이 주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무실장이 없는 부대에서는 겸직 법무장교 또는 인사참모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무감은 예하부대 징계업무에 관하여 연 1회 지도방문을 실시하며, 예하부대 법무실장은 매 반기 1회 예하부대의 징계업무에 관한 지도방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보면 징계간사로 법무장교가 참석하여 사실조사 및 징계집행지휘 등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무장교는 사단급이상 부대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사단 이하급 부대의 징계에는 인원여건상 참석이 불가

능하다. 따라서 장교 등 간부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만 법무참모(법무실장) 등이 간사로 참석한다. 사병의 징계에 법무장교가 간사로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공군이나 해군의 경우 법무실장이 근무하는 부대에서는 법무장교가 간사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현재와 같이 법무장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사병의 징계까지 일일이 법무장교가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으로서 영창처분은 군판사가 동의한 후에 비로소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즉 지휘관이 영창처분을 할 때에 군판사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절차, 영창일수를 보고하고 절차나 징계양형에 부당함이 없는 경우에 한해 군판사의 결정으로 영창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⁸⁶⁾ 이러한 방안은 현재와 같이 법무참모계통에서 징계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징계를 통제하는 것보다 진실보한 제도라 판단된다.

해군의 경우에는 징계규정 제31조에 징계번호부여와 관련하여 “1. 징계사건이 개시되면 법무감(법무실장)은 징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징계(향고)처리 대장의 징계번호

86) 김기준, 앞의 논문, 109면. 독일의 경우에도 중대장 또는 중대장급장교는 견책, 중견책, 벌금, 영내대기, 영창 등을 선고할 수 있고, 일부벌목은 병과할 수 있으며 이때 영창선고에 대해서는 관할법원 판사가 관여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즉 독일징계법 제36조는 “가. 영창은 관할군사법원(유사시에는 가장 가까운 군사법원)의 판사가 동의한 후에 비로소 선고될 수 있다. 판사는 징계처분이 적법,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정된 영창처분에 동의하며, 이 결정에는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다. 한편 판사는 군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집행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에는 첨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제43조의 가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징계권자가 판사에게 동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예정된 영창기간(동시에 영내대기를 명하는 때에는 그 기간도 포함한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즉시 집행을 신청서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징계권자는 신청서에 제28조에 따른 조사과정, 결정 및 처분내용, 징계처리대상 또는 인사자료상의 전과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실관계의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판사가 영창처분을 부동의하거나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의견에 대한 이유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판사가 사건을 사법적 징계에 회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기록을 개시관청에 송부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라. 전항 전문의 경우 징계권자는 판사의 결정고지후 1주일 이내에 사건을 군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군사법원은 본래의 영창처분 또는 단축된 영창처분이 적법,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스스로 판결할 수 있고, 이는 종국적인 결정이 된다. 피징계자는 그 결정 이전에 청문권이 있고 청문절차는 상관 입회 하에 공판정외에서 개최된다. 영창선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를 피징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이 영창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다른 징계별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사법적 징계에 회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기록을 개시관청에 송부하여 결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란에 연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2 법무실장이 없는 부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근 상급부대의 법무감(법무실장)으로부터 징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고, 징계번호를 부여한 법무감(법무실장)은 징계번호부여대장에 이를 기재한다. 다. 나. 항에 규정된 징계번호 부여신청, 징계번호의 부여는 서면(전문 또는 전통 포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 육군규정 189 징계규정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군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에 대해서만 법무참모가 징계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으며, 공군의 경우에는 공군규정 12-1 제70조에 혐의사실이 형사사건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실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4) 영창에 대한 징계유예제도 도입

현재 각군 규정에는 징계유예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육군의 경우에는 육군규정 제189조에 징계유예와 관련하여 “1.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경징계별목⁸⁷⁾에 한하여 1월에서 3월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를 경징계로 감경 후 유예를 할 수 없다. 2. 징계유예기간 중 징계권자(다만 징계유예기간 중 징계혐의자가 타부대로 전속되었을 경우에는 전 소속 부대의 징계권자)의 유예처분을 취소하고 확인 또는 감경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없이 유예처분한 날로부터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불문으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군의 경우에도 공군규정 12-1 제93조에 육군규정과 유사한 내용의 유예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군의 경우도 징계규정 제20조 3에 징계유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징계유예제도는 그 대상을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한정하고 징계별목도 경징계별목에 한정하고 있으나 사병에게는 징계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간부와 사병간 차별을 없애는 측면에서도 징계유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징계영창의 경우에는 실질적 구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집행의 신중을 도모하고 사병에게 비행을 반성하고 더 충실히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도 징계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87) 여기에서 경징계란 감봉, 근신, 견책을 말한다.

(5) 징계지휘관의 직급상향

현재 사병의 징계권자는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이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병징계지휘관의 직급을 차상급 부대로 격상시켜 적절한 징계권 행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대의 간부가 피징계자의 대리인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피징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과도하게 영창처분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6) 징계영창처분에 대한 가족 통지

영창처분을 당한 사병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현재 어떠한 상태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지 부모가 알 필요가 있다. 물론 부모나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괜한 걱정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현재 내 자식이 어떠한 신분상태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부모나 보호자가 있다면 이를 통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입창자가 가족에게 현재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질적으로 신체구금을 당하면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떠한 불상사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예컨대 원거리에서 면회를 온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영창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면회를 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4. 입창절차의 개선

(1) 징계입창자 입창시 고지절차 명문화

현재 징계입창자는 영창시설에 구금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권리도 군행형 관련법에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다만 입창절차에 대해 각군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 또한 입창에 필요한 서류검토가 주로 이루어지며, 징계입창자에 대한 권리나 불복제도도 특별히 없기 때문에 단순히 영창생활에 필요한 안내 정도만 받고 있다.

징계입창자는 미결수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군행형관련법에 고지절차를 규정할 수 없지만, 최소한 각군 규정에 입창시 이들의 권리나 불복제도를 반드시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징계입창자에 대한 권리규정의 마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진정권 고지 절차와 진정함 설치운영 개선

징계입창자도 실질적으로 수용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입창자도 진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현재 공군과 해군의 규정은 입창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진정권에 대해 반드시 고지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에도 영창관리규정에 이를 명문화시켜 진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진이 방문한 부대의 경우에는 진정함이 모두 설치되어 있었고, 수용자에게 이를 고지 또는 윤독시킨 후 서명을 받고 있는 영창도 있었다. 설치 장소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구금·보호시설의 장이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영창이 복도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있었으며, 거실내 설치한 영창도 있었다. 다만 필기구의 경우에는 근무자가 통합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창이 필기구를 비치하고 있지 않았으며, 봉투의 경우에도 비치하고 있지 않은 영창이 많았다. 용지의 경우에는 진정함에 옆에 비치하고 있지 않은 영창도 있었다.

징계입창자의 철저한 진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입창시 고지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거실 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진정함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영창내 복도에 설치하는 것보다 입창자가 자유롭게 진정할 수 있도록 거실 내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진정함 옆에 항상 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를 비치하여 징계입창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합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징계입창자 수용시 번호부여 폐지

해군과 공군의 경우에는 신입자에 대하여 번호를 부여하게 하고 있다. 공군의 경우 공군규정 14-1 제31조에 “수용자는 수용자 번호를 지정하고 수용 중 그 번호표를 상의 좌측 흉부에 부착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에는 구치소업무규정 제11조에 “1. 신입자에 대하여는 번호를 지정하고 수용 중 그 번호표를 상의의 왼쪽 옷깃 또는 왼쪽 가슴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번호표를 제거하게 할 수 있다. 2. 번호는 년도-신분구분-순번으로 부여하고 신분구분 번호는 1: 수형자, 2: 미결수용자, 3: 징계입소자로 구분하며, 순번은 년도별/신분구분별 순번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군과 공군의 규정은 군행형법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즉 동조는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번호를 지정하고 수용 중 그 번호표를 상의의 왼쪽 옷깃 또는 왼쪽 가슴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번호표를 제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기결수나 미결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지 징계입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규정이다.

징계입창자는 미결수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취급하여 가슴에 번호표를 부착하게 하는 것은 입창자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억제하고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징계입창자에게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폐지하여야 한다.

5. 부당한 대우/ 가혹행위 방지 방안

(1) 정좌자세의 개선

징계입창자의 대부분은 영창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과에 대해서 정좌라고 하였다. 물론 영창에 따라서는 편안한 자세로 비교적 짧은 시간 앉아 있다가 휴식을 취하는 곳도 있었으나 과도하리 만큼 힘든 자세로 앉아 있는 영창도 있었다.

현재 영창에서 군사훈련이나 가혹행위가 많이 사라지다 보니 정좌는 징계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정좌자세는 사라져야 한다.

특히 00부대의 경우에는 미결수용자와 다르게 징계입창자가 앉아 있는 자세를 정좌와 평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정좌는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를 말하며, 평좌는 양반다리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좌자세로 인하여 허리통증, 무릎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입창자가 많았으며, 정좌자세가 흐트러지는 경우 근무헌병의 지적을 받는다는지 또는 정좌자세를 강요하는 수단이 되고 있었다.⁸⁸⁾

00부대의 경우에는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는 아니지만, 시선을 고정하고 양반다리 자세로 허리를 곧게 펴고, 주먹 쥔 손을 무릎 위에 팔이 구부러지지 않게 올려놓은 자세로 앉아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영창의 경우 50분 정좌에 10분 휴식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현재 각군 규정에는 정좌자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정좌수양자세에 대한 규정을 각군 규정에 마련하여 과도한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정좌자세를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징계입창자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 현실에서는 정좌가 징계입창자를 통제하거나 적절한 징계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

(2) 미결수용자와의 차별대우 개선

영창에는 미결자와 징계입창자가 혼합하여 수용되어 있다. 물론 거실이 구분되어 분리수용을 하고 있지만 한 장소에 있다가 보니 영창내 처우에 있어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군행형관련법에 미결수용자나 피의자로서 어느 정도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만,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권리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징계입창자는 수용시설에 격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이 보호되고 있지 못하며, 단순히 징계벌로 수용되어 있는 객체에 불과하다.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는 징계벌이 확정된 자로서 형사범에 비추어 보면 형이 확정

88) 본 연구진이 00부대의 정좌자세에 대해 인권침해적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여, 헌병감 지시 공문으로 2004. 1. 2.부로 정좌·평자좌세를 폐지한다는 지시가 이루어졌다.

된 수형자로서 취급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결자에 비하여 과도한 정좌자세가 강요되고, 식기세척부터 각종 청소까지 다하는 영창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영창의 일과가 미결수용자 위주로 진행된다 보니 징계입창자의 입장에서 자기들은 형사 처벌을 받는 자도 아닌데 상대적으로 미결수용자보다 못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고 이 때문에 군에 대한 부정적 감정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입창자만 따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구비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징계입창자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어렵다면 ‘군 구치소’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별(거점별)이나 각 군단 또는 군사령부급의 영창시설을 징계입창자 수용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과도하게 많은 영창시설을 거점별로 미결수용시설(구치소)과 징계수용시설로 구분하여 재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징계입창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영창수용기간을 단순히 신체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복무를 할 수 있는 충전의 기회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징계영창 시설의 확보가 어렵다면 현재 영창의 구조를 동일 시설 내에서라도 칸막이 설치를 통하여 미결수용시설과 징계수용시설로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본다.

(3) 수양록/ 반성문작성의 폐지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도 수양록과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었다. 수양록의 경우에는 일 반사병의 경우에도 매일 작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양록 작성의 타당성은 논의 하고라도 지나치게 잦은 횟수의 반성문 작성과 반성문 작성량을 일정량만큼 강요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특히 작성한 반성문을 영창관리자가 읽어보거나 검토하고 이를 소속대로 다시 보내 반성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란 모든 사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각자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더불어 그 윤리의식이나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하기 때문이다.⁸⁹⁾ 이미 징계를 통해 자기의 비행을 반성한

89) 권영성, 앞의 책, 452면.

입창자에게 반복적 반성문 작성을 통하여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하게 많은 횟수의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거나 일정 분량을 요구하는 것은 폐지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과표상에도 많은 반성문 작성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영창의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반복되는 반성문 작성은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여 인격을 파탄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6. 화장실 관련 개선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는 미결자에 비하여 시설내 사고의 위험성이 더 없는 수용자이다. 따라서 미결자에 준하는 시설내 처우를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에는 거실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영창내에 독립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사생활 보호 측면이나 인격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고 본다.

영창내 시설이 여의치 않다면 사고의 위험이 없는 징계입창자의 화장실 칸막이의 높이를 근무자가 완전히 보지 못하도록 높여 화장실 이용에 따른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의 자유가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생리욕구 마저도 매번 근무현병의 허락을 받아 해결하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인 대우이다.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는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거실내에 위치하지 않고 영창 내에 위치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거실 철문의 시건장치를 제거하여 언제든지 입창자가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⁹⁰⁾

또한 화장실 이용시 거실 밖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영창에서는 화장실 이용시 숫자 등을 외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폐지되어야 한다. 물론 화장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영창과 같이 조그마한 화장실에서 자살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90) 실질적으로 본 연구진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영창관리자의 면접조사에 따르면 육군 제2 군사령부 영창의 경우에는 징계입창자 거실 문에 시건장치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위험한 물건이 있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화장실 이용시 번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영창에 수용되어 있는 징계입창자들이 모두 사고의 위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징계입창자가 영창생활을 하면서 미결수보다 더 심한 계호를 당할 만큼 위험한 사병이라면 애초 영창에 올 것이 아니라 군복무부적합자로 판정하여 군복무를 면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7. 침구류 청결개선

미결자에 비하여 징계입창자의 경우에 수시로 교체되기 때문에 침구류의 세탁과 일광소독에 더 많은 배려를 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반기와 분기에 1회로 되어 있는 침구류의 세탁은 그 횟수를 더 늘려야 하며, 일광소독의 경우에도 반드시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영창내 처우 개선

징계입창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사항은 군 당국자의 의식 속에는 징계입창자는 일반사병에 비하여 편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반사병의 경우에는 정해진 교육·훈련일정에 따라 고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영창에 있는 자가 이들 일반사병보다 편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단순히 구금만 하면 안되고 일정 정도 처우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합법적인 정좌수행이나 체력단련, 일반사병에게 주어지는 일과의 자율시간이나 휴식, 전화, 편지, 종교, 면회·외출·외박 등을 제한함으로써 징계벌의 효과를 높이려고 한다.

그러나 군은 이미 일반인이 누리는 기본권이 제한되어 있는 곳이다.⁹¹⁾ 그런데 영창

91) 헌법상 군사제도를 위한 기본적 인권의 제한은 군사목적상 제한되는 기본권으로서 군사적 부담(징발, 군사적 제한 등), 근로3권의 제한, 알 권리의 제한 등이 있으며, 군인의 기본권 제한으로서 일반법원에 의한 재판 청구권의 제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 군무 이외의 집단행위의 제한 등이 있다(권영성, 앞의 책, 252~254면).

이라는 수용시설에 격리되어 있으면서 일반사병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마저 누릴 수 없다면 이는 기본권에 대한 이중적 제한이 되며 너무 가혹한 것이다. 아무리 군대라고 하지만 영창이라는 일정공간에 갇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심리적·정신적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미결수용자도 미결수용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는데 징계입창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이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이는 인권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

(1) 징계입창자 처우에 관한 국방부 차원의 독립된 규정 마련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영창에서의 처우는 미결자 중심이고 징계입창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각군의 규정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결자에 준하여 대우하고 있다. 다만 해군의 경우 구치소업무규정에 징계입창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제16장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입소대상, 입소절차, 징계자의 번호, 징계자의 분리수용, 표준 일과표, 면회의 제한, 조사의 참여, 퇴소 등과 같은 내용으로 징계입창자의 권리와 관련한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형사피의자인 수용자와는 다른 징계입창자의 처우와 권리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징계입창자의 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최소한이라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영창관리규정이 각군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방부차원의 징계입창자에 대한 권리 규정이 따로 제정되어야 한다. 영창관리는 인사, 작전, 정보 등과 같이 각군의 특성이 그리 많이 반영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방부차원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리라 본다.

(2)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징계입창자 일과표 규정

위와 같은 통합규정에 의해 징계입창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반성, 체력단련, 정신교육위주로 되어 있는 일과를 과감하게 개정하여 영창생활을 의미 있는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 일부 영창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활동은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 하다. 징

정계입창자가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도 하면서 근면과 성실정신을 고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3) 면회의 자유 보장

정계입창자의 면회는 공군만이 규정상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며, 육군과 해군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정계입창자는 형사피의자가 아니므로 일반사병에게 인정되고 있는 최소한의 면회는 허용되어야 한다.

미결자에게도 허용되고 있는 면회가 정계입창자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병역의 의무를 위해 징집한 사병이라고 하여 그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은 인권보호사상에 어긋나는 것이다. 정계입창자에게 면회를 금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육군이나 해군도 공군과 같이 정계입창자에 대한 면회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4) 서신의 자유 보장

정계입창자에 대해서는 서신의 작성과 수발에 있어서도 일반사병에 준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이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의 자유도 물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미결수용자에 대해서 서신검열과 수발에 일정한 제재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계입창자는 형사피의자가 아니라 단순 영창이라는 징계벌을 받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영창에 수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신작성이나 수발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서신작성과 수발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서신검열을 받아서도 아니 된다. 정계입창자의 서신에 대한 제약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군이나 해군의 경우에도 공군과 같이 서신수발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며, 서신검열은 전면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일반사병에 준하는

최소한의 검열정도만 하여야 한다.

(5) 전화통화의 자유보장

징계입창자에게도 영창에서 전화통화가 허용되고 있지 않다. 물론 일반사병의 경우에도 가족이나 기타의 사람과 전화통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징계입창자가 가족이나 특별한 사유에 의해 전화통화를 하고 싶을 때 가능하다면 통신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종교의 자유 보장

징계입창자의 종교행사도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영창 내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는 도주나 탈영의 위험이 그리 많지 않는 수용자이다. 따라서 징계입창자가 원한다면 일요일 종교행사시간에 부대내 종교시설에서 일반사병과 같이 종교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영창 내에서 특정종교의 군종장교가 종교행사를 진행하여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징계입창자가 종교행사를 신청할 때 신속하게 관련 군종장교에게 연락하여 종교행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독서의 자유 보장

미결수용자에게는 독서가 허용되면서 징계입창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영창도 있었다. 미결수용자에게도 인정되는 독서가 징계입창자에게 허용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육군의 일과표에 징계입창자의 경우 독서시간을 체력단련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오히려 독서를 통하여 내면적으로 수양과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더 적극적으로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는 입창시에 읽을 수 있는 책을 가져오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마음의 양식을 더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신문열독 보장

징계입창자의 경우 국방일보도 제공되지 않는 영창이 있었다. 일반신문의 경우에는 일반사병의 경우에도 구독과 열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징계입창자에게도 국방일보 정도는 열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9) 운동시간 보장

현재 징계입창자에 대한 운동시간은 대부분 하루 1시간 이내로 실내에서 하는 체력단련이나 자유운동이 전부였다. 징계입창자에게도 정기적인 실외운동과 일광욕이 필요하다. 물론 미결수용자에 비하여 단기간 수용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하여 영창관리자가 무신경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에게는 행형규정에 따라 실외운동이나 일광욕을 실시하면서 징계입창자에게는 실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시설내에 수용되어 있는 자는 햇빛을 쬌 수 있는 일조권이 더 보장되어야 한다. 일조권도 인권의 하나이다. 징계입창자라고 하여 최소한의 일조권마저 침해받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II. 징계영창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한 대안

1. 징계영창제도 존폐여부에 대한 논거

(1) 국방부의 견해

현재 국방부의 입장은 영창제도에 대한 폐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이유는 참고로 국방부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군기강 확립과 지휘권을 보장하며 형사처벌에 의한 전과자 양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창제도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인권침해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입창시 법무장교 확인심사절차제도화와 영창시설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개선방안정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징계절차에 법무장교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즉 공군이나 해군의 경우에는 징계번호부여를 법무참모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심사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고, 입찰시에는 징계서류 검토를 법무장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방안은 의미가 없다.

앞의 설문조사에도 나왔지만 대부분의 군기강확립 차원에서 영창제도는 필요하다는 것이 군관계자들의 일반적 의식이다.

참고로 사병징계에 있어 영창처분이 약 7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4-4〉 사병징계현황(2002. 9. 1~2003. 8. 31)

계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경고
17,319	2	12,094	4,656	542	25

자료: 사법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보고자료, 236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당해 계급에서 1계급 내리는 강등의 경우에는 육군의 경우 연대장급 이상 부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또한 입대일을 중시하는 사병의 계급체제에서는 징계별로서의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강등처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째, 휴가제한의 경우에는 1회 5일로 복무기간 중 총 제한일수가 15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에 한계가 있다.

셋째, 근신의 경우에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하고 징계권자가 지정하는 일정장소에 비행을 반성케 하기 때문에 징계별로서의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휘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영창의 경우에는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 이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가장 손쉽게 징계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벌목이기 때문에 이를 지휘관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폐지의 논거

현재 징계영창제도의 폐지불가의 이유가 되고 있는 군기강 확립이나 지휘권 보장과 징계영창제도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즉 군기강 확립이나 지휘권보장이 군율위반 사병을 영창에 보냄으로써 확립되는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군기강 확립이나 지휘권의 보장 문제는 사병을 영창에 보냄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병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다양한 지휘기법·방법의 개발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며, 또한 달성되어야 한다. 즉 신세대에 맞는 병영생활과 복무의욕고취로 지휘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영창관리자의 면접조사에 따르면 영창의 생활이 과거에 비해 갈수록 편해지고 있기 때문에 영창에 오는 것을 사병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며 다만 입창기간이 군복무일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영창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1992년 12월 31일 병역법이 개정⁹²⁾되면서 징계입창자의 입창일수를 군복무에 산입하였는데 이때에는 힘든 훈련을 할 시기가 되면 사병이 사소한 비행을 일부러 저질러 영창처분을 받고 입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후 1997년 1월 31일에는 다시 병역법을 개정⁹³⁾하여 입창기간을 군복무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입창자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입창기간을 군복무기간에 산입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영창처분이 징계벌로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영창의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입창일수가 군복무기간에 산입되는가의 여부가 사병비행의 예방효과로 작용한다면, 굳이 영창이라는 수용시설에 구금시키지 말고 이에 군복무 일수를 연장시킬 수 있는 징계벌목을 군인사법에 제정하면 된다는 논리가 타당하다.

또한 기소유예로 석방된 사병의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를 군복무 기간에 산입시키는데 이는 범죄자는 영창에 있는 기간을 군복무에 산입시키고, 범죄보다 더 가벼운 비행을 저지른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는 군복무에 산입시키지 않아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징계영창제도는 피징계자에 너

92) 당시 병역법 제18조 제3항에는 “현역병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입창일수를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93) 현행 병역법 제18조 제3항은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나 가혹한 이중처벌이 될 위험성이 있다.⁹⁴⁾

영창의 기능은 앞으로 군복일수를 늘이는 기능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지휘관의 자의적 구금이라는 비판과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가면서 영창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⁹⁵⁾ 세계인권선언 제9조는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인권 B규약 제9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구금자 처우를 위한 최저기준규칙 제7조는 유효한 수용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수용되지 않는 점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에 의한 전과자 양산문제는 이미 차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금도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의 경우에는 각 지휘관들이 법무참모부나 헌병에 의견조율을 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만 징계영창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창전 법무참모부에서 징계서류를 검토하여 형사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더 징계입창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은 미결수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보다 더 못한 처우를 받은 다는 점이다. 즉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징계입창자는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군인이기 때문에 일반사병의 경우에도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적 근거와 이유, 그리고 적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94) 물론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헌재결 2003. 6. 26. 2002헌가14)이기 때문에 징계벌인 영창에는 헌법규정상 의미의 이중처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중처벌은 행정적 제재가 이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95) 징계영창처분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군관사 면접조사에서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가 3명, '해당하지 않는다'가 2명이었다.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가 8명, '해당하지 않는다'가 10명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수가 많았다.

야 한다. 단순히 영창에 있는 입창자이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따라서 위헌적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징계영창제도를 굳이 계속하여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군당국의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폐지에 따른 대안

(1) 즉결심판제도 활용에 대한 검토

현행 군사법원법 제501조의14 이하에는 즉결심판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즉 제501조의14에는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범중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 정한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01조의15에는 즉결심판청구와 관련하여 “① 즉결심판은 관할 헌병부대의 장이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영창제도를 폐지시키고 이와 같은 즉결심판제도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⁹⁶⁾ 그 전제조건으로서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류형을 군사법원법이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사법원법을 개정하여 구류형을 포함시키고, 즉결심판의 청구도 헌병부대의 장뿐만 아니라 해당지휘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첫째, 현재 사병징계에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대부분의 군율위반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이 비행사실이 형사입건 된다면 실체법적으로 대부분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은 구류

96)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 파악, 131~132면 참조

형이 하나도 없으며, 벌금형에 대한 규정도 몇 개의 죄에 불과하다.⁹⁷⁾ 따라서 군판사가 구류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즉결심판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이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의 경우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피고인의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검사가 기소절차에 배제됨에 따라 혐의가 없거나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하거나 2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야 할 사건을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도 있는 등 경찰서장의 권한범위가 불분명하여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법집행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⁹⁸⁾ 이러한 문제점은 군 즉결심판절차에서도 나타난다. 군판사 면접조사에 따르면 경미사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헌병대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즉결심판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⁹⁹⁾

셋째,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도 즉결심판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군사법원법의 수사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은 수사권이 없는 일반장교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사권이 없는 중대장이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이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은 현행 군수사체계상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대표군사법경찰관인 헌병대장의 즉결심판청구권도 앞에서와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하물며 해당 지휘관이 즉결심판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넷째, 현재와 같이 군판사의 수가 부족한 현실에서¹⁰⁰⁾ 즉결심판업무를 처리하기란 인력구조상 매우 어렵다.

97) 군형법이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73조와 제74조에 불과하다.

98) 외국의 경우 경미사건은 일반사건과 달리 간편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면서도 검사의 관여를 배제하는 사례는 없다고 한다(법무연수원, 수사지휘권, 2003, 286면 참조).

99) 이외에도 즉결심판청구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헌병이 벌금규정이 되어 있는 모든 범죄가 즉결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식의 억지 논리를 펴고 있어 향후 남용의 가능성이 농후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해야 하는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 즉결심판을 처리하겠다고 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이행규, 앞의 발제문, 11면).

100) 현재 육군의 경우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군판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사건이 많은 후방사단의 경우에는 사단에도 군판사가 상주하는 곳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즉결심판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없다.

(2) 다른 징계처분의 다양한 활용

오히려 징계영창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영창처분 이외에 다른 징계처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징계별이 다양하게 이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지휘관들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징계별이 영창처분밖에 없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강동의 경우에는 병들간의 관계가 속칭 ‘짬밥’이나 입대 순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 그다지 실효성이 없고, 감봉은 직업군인이 아닌 사병의 경우에는 적은 급여에 비추어 거의 제재가 되지 않으며, 경징계로서 근신·견책 등도 그 실효성이 적기 때문이다.¹⁰⁰⁾ 그러나 설령 영창처분이 사병에게 가장 강력한 징계별이고, 그 효과도 클지 모르나 오히려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지만 사소한 비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영창처분을 당한 사병의 경우에는 전역 후에도 지휘관이나 군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어 국민으로부터 지지 받는 군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영창에 갇다온 사병의 경우에는 문제사병으로 낙인 찍혀 계속되는 군복무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강동, 휴가제한, 근신 등의 징계별목을 적극적 활용하여 징계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영창관리자 면접조사에서도 휴가제한 별목의 경우에는 모병을 하고 있는 공군이나 해군의 경우에는 사병들이 대단히 두려워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만 보더라도 공군이나 해군의 경우에는 휴가제한을 잘 활용하면 될 것이다. 다만 휴가제한일수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그 이상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강동의 경우에 사병에게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다른 사병은 다 병장 전역을 하는데 자신은 상병전역을 한다면 이는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상당한 징계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병의 경우에도 계급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신의 경우에도 근신기간 중에 수행할 과외업무의 개발을 통하여 동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00) 김기준, 앞의 논문, 105면.

기타 군기교육대 활용도 고려할 만 한다. 현재 군기교육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군기교육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군사교육을 현역군인과 비교하여 적절하게 실행한다면 징계의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군기교육대를 운용하는 경우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절차와 교육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¹⁰²⁾

102) 종전 군기교육대는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국방부훈령 제487호, 1994. 12. 3)에 기한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시행 방침'(육방침 제20호, 1995. 4. 17) 및 구타가혹행위 근절지도 지침서에 근거하여 행해졌다. 군기교육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기준, 앞의 논문, 115면 이하 참조.

제3절 군사법개혁을 통한 군 인권보호

1. 군사법개혁에 대한 논의상황과 이념상의 쟁점

1. 논의 상황

얼마전 군 사법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前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재판관련 뇌물비리 문제로 군사법개혁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¹⁰³⁾ 군사법개혁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군 의문사건의 수사상 문제나 고위급장교들의 비리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군사법개혁의 문제는 항상 불거져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개혁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군사법개혁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군사법제도를 사법개혁의 과제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¹⁰⁴⁾ 또한 국가인원위원회에서도 군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군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군대는 모든 국민과 직접관련이 있고, 발전된 군사법개혁을 통해 장병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개혁에 따른 쟁점사항¹⁰⁵⁾

(1) 지휘권의 보장과 군사법의 독립

103) 김모 前법무관리관은 2000년 7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육군 법무감으로 재직하면서 변호사한테 1068만원을 받는 등 3명의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한테 모두 1513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구속 기소되었으며, 육군본부 군사법원 재판 사건의 국선 변호인으로 지정된 관련 변호사들의 예금통장을 미리 건네 받은 뒤 국선 변호료가 입금되면 이를 수시로 빼내 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참여연대는 2002년 10월 군 수사활동비 7600만원을 횡령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김모 前법무관리관을 고발했으나 국방부 검찰단이 무혐의 처리하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며, 이 사건은 김씨의 전역과 함께 서울고법으로 넘겨져 계류 중이다.

104) 사법개혁위원회의 군사법제도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보고자료, 224면 참조

105)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보고자료, 224면 참조.

군사법개혁을 논함에 있어 그 논의의 핵심은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사법의 독립성에 중점을 둘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군은 국가가 대외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고 대내적으로 국민의 자유·평화·재산권 등을 수호함을 궁극적인 존립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방위체제의 확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헌법은 국방체제와 군통수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을 정점으로 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국의 침략을 막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인 군은 일사불란하고 엄정한 군기가 유지되어야 하며, 군사법제도도 지휘관의 지휘권확립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므로 지휘관의 의지가 가장 잘 반영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사법의 독립성 측면에서 보면은 사법의 독립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있어 통치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주헌법의 보편적 원리로서 비록 일반법원의 조직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군사법원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군사법원법 제21조는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제1항), 재판관·검찰관 및 변호인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 기타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로써나마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헌법 제103조를 목적론적으로 해석하여 법관의 독립에 있어 ‘법관은 실질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법관을 포함하므로 군사법원의 재판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¹⁰⁶⁾

(2) 전시상황과 사법의 특수성

현재 우리나라의 군사상황을 전시상황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정전협정 상태이기 때문에 전시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군의 독자적인 사법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전쟁을 대비

106) 이태취, “군사법원제도에 관한 연구-사법권의 독립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0, 26면.

하여 평시에도 전쟁연습을 하여야 하고 현재의 독자적인 군사법체계는 전시를 대비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사법의 특수성이라는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정전협정 상태라고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남북의 화해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전협정상황을 전시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며, 군조직 어디라도 전시임을 상정하여 운용되고 있지 않으며 전쟁 중 사법제도 운영에 관하여는 전시군사법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전시라 하더라도 재판권은 다른 군대 조직과는 달리 그렇게 긴박하게 전시체제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발발한 뒤에 대처하여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Ⅱ.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사법제도 개선방안과 논점

1. 국방부의 군사법제도 개선방안

현재 국방부가 마련한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된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국방부의 군사법 개선방안에는 군 수사체계나 군검찰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표 4-5〉 국방부 군사법제도 개선방안

구분	내용
국방부 소속 순회 군판사단 운용	- 전국을 5개 지역으로 구분, 지역 내 보통군사법원에서 순회 재판 - 군판사단을 순회판사와 영장판사로 구성 - 근무평정을 포함한 인사관리는 군판사단에서 실시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공정성 보장	- 감경사유에 대한 사유작성 근거 추가 및 절차신설 - 확인조치결과 검증절차 신설 - 확인조치 감경기준 사례 작성 및 준용 - 군법교육 강화
관할관의 재판에 영향력 행사금지 법제화	- 관할관의 재판에 영향력 행사 금지 규정신설 · 관할관은 재판 구성원에게 사실판단, 형선고 등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질책, 훈계 등을 할 수 없음 ·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계획된 일반적인 지시, 지침, 교육 등은 적용하지 않음
국선변호인 수사단계지원 및 업무확대	-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선 · 선정시기: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 자격: 국선변호장교 ·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조사시 변호인의 참여 인정 - 국선변호장교의 소속을 각군본부로, 지휘계통에서 분리시켜 변호활동을 보장 - 국선변호장교 중원
입창절차/ 영창시설개선	- 징계입창시 법무장교 확인심사제도 신설 - 6개월 미만 기결수를 영창에 수용하는 현행의 근거규정 유지 - 영창시설 개선 · 6개월 미만 기결수, 미결수, 영창자를 구분 수용 · 장기적으로 징계자 영창시설 별도 신축
법무장교 획득/ 인사관리 개선	- 사시합격자에서 장기복무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개선 - 법무장교 장기복무자 장려수당 인상 - 특기에 의한 전문화 인사관리제도 도입 · 검찰/판사 특기로 분류, 참모/정책부서 직위는 공통보직 - 임시진급폐지 · 임시진급은 운용인원과 경과기간 적용하여 단계적 폐지 · 군인사법의 최저 복무기간 적용 시행

2. 사법개혁위원회 군사법제도 개혁 논점

현재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군사법제도 개혁의 주요 논의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¹⁰⁷⁾

- 군사법원 조직의 분리에 관한 논의
 - 지역별 상주법원 설치
- 재판의 독립과 관련된 논의
 - 심판관(참심)제도의 운영개선
 - 관할관제도의 운영개선
- 군검찰제도 개혁방향에 대한 논점
 - 군검찰법 제정
 - 헌병 및 기무부대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확보
 - 민·군 공동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강화
- 군법무관제도 개혁방향에 관한 논점
 - 사법시험 합격자 중 군법무관 선발
 - 특기에 의한 전문화 인사관리
- 징계절차의 개선
 - 즉결심판과 유사하게 군법무관에 인치하여 처분하는 방안
 - 영창에 있어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의 도입
- 군내 사망사고의 처리 절차 개선(의문사 방지)
 - 사망사고 발생시 즉시 유가족 및 외부인권단체에 연락
- 군내 구타방지를 위한 방안
- 수사단계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

Ⅲ. 군사법제도의 개혁방안에 관한 검토¹⁰⁸⁾

1. 군검찰의 독립

107) 사법개혁위원회의 군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점은, 사법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보고자료, 222면 이하 참조

108) 본 실태조사에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헌병 수사관과 군검찰관, 군판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민간 검찰의 지향점이라면 군검찰의 화두는 지휘권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전투력 보존과 군기유지를 명분으로 군 사법제도는 지휘관의 지휘권에 복속돼야 한다는 논리가 일반 장교사회는 물론 군법무 조직 저변에 뿌리내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군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국방부장관을 정점으로 하여 각군 참모총장,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검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방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군검찰동일체의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¹⁰⁹⁾ 이와 같이 군은 국방부장관을 정점으로 하여 계층적으로 사건처리에 있어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검찰사무에 대해서는 상급부대의 지휘관은 하급부대의 지휘관을 통해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¹¹⁰⁾

군검찰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군검찰관의 직무상의 상관은 소속 부대의 장이므로 지휘관의 지휘권에는 수사지휘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 및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의 행사는 원칙적의 지휘권에 복속되어 있다. 이는 군검찰관의 행사가 군대 내부에서의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군검찰관 행사의 공정을 기하고 수사상의 협력체계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¹¹¹⁾

그러나 위와 같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군검찰권이 지휘권에 복속되다 보니 오히려 검찰권 행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거나 아예 행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즉 지휘관은 자기 예하에 있는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이 자신의 진급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계급에 따라 검찰권의 행사가 불공정해진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는 특히 고위급장교에게는 아주 관대한 처벌을 하게 되며, 사병에게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처벌을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¹¹²⁾ 또한 지휘관은

109) 군사법원법 제38조는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관은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군참모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9조는 “각군참모총장은 각군검찰사무의 지휘·감독자로서 예하부대보통검찰부의 관할에 속하는 군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0조는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0) 군검찰관동일체의 원칙에 대해 육군규정 188(군검찰사무규정) 제5조는 “1. 검찰관은 검찰사무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2. 검찰부장은 소속 검찰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 검찰부장은 소속 검찰관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1) 이해영, 앞의 논문, 45면.

비범를가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의 엄정한 법적 판단도 기대하기 힘들다.

일선 군검찰관 면접에서도 군검찰이 헌병이나 기무사에 비해 인력면이나 처우면에서 열악하다보니 정보능력이나 첩보능력도 떨어지고, 지휘관들이 엄격한 법적 판단보다는 헌병이나 기무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기초한 밀실판단을 하기 때문에 검찰권행사가 어렵다는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였다.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도 현재 군검찰권이 지휘권으로부터 자유로운가에 대해 ‘그렇다’ 2명, ‘그렇지 않다’ 16명으로 절대다수가 현재 군검찰권이 지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1) 지휘권으로부터(외부적) 독립

현재와 같이 지휘관이 군검찰을 지휘하면서 부당한 압력을 군사법원법에 의해 쉽게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사항이다. 즉 군사법원법은 체포·구속영장청구시에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제238조 제3항). 물론 모든 구속영장청구에 있어 부대장이 실질적 승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전결내부에 의하여 사단급 부대의 경우에는 부사관이나 장교는 부대장이 직접 승인하고, 사병의 경우에는 법무참모가 전결을 하고 있다. 군단급의 경우에는 장교는 군단장, 부사관은 참모장, 사병은 법무참모가 전결하고 있다. 따라서 중대한 범죄가 아니고는 사병에 대한 인신구속의 경우에는 부대장이 직접승인을 하지 않지만 장교나 부(준)사관의 경우에는 부대장의 직접승인을 요하기 때문에 인신구속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그렇다’ 2명, ‘그렇지 않다’ 16명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구속여부와 관련하여 부대장이나 관할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명령 기타

112) 군사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준장 이상 고위 지휘관의 비위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21건 가운데 무혐의 4명·기소유예 8명·공소권 없음 1명·이송 1명 등 14명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풀려났고, 실제로 기소된 사람은 33%인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납품관련 뇌물수수 혐의자 4명에 대해서는 전원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 군검찰권이 고위급장교에 대해서는 무력함을 보여 주고 있다(오마이뉴스, 2008. 10. 2).

이와 유사한 압력을 받았는가와 관련해 ‘구속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3명, ‘불구속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5명,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8명이었다. 부당한 지시나 명령, 압력의 경우에는 법무참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군관사 면접조사에서도 이러한 압력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적은 수의 면접조사이기는 하지만 50%정도가 구속이나 불구속지시를 법무참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검찰권이 지휘권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그렇다’ 17명, ‘그렇지 않다’ 1명으로 절대다수가 군검찰권이 지휘권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영향을 받아 법규대로 구속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다’, ‘사건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여하는 것이 문제’, ‘체포·구속은 수사를 위한 것이며 검찰관의 판단으로 청구여부가 결정되어야지 법률문외한인 부대장이 관여할 필요는 없다’, ‘군사상 필요는 구속집행정지 등의 보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사건은폐·축소 문제점’, ‘고급장교의 경우 죄의 경중을 불문하고 구속하리란 극히 어렵다’, ‘부대장에 의한 부당한 간섭 가능성’, ‘자신의 안위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 ‘군식구 봐주기 성향이 많다’, ‘비사법적 이유로 체포·구속영장 승인이 안될 가능성이 있음’, ‘사법권 독립 저해’, ‘지휘관의 사건 개입으로 실체진실 왜곡이 가능’, ‘부대장의 승인은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경우를 야기할 수 있다’,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가 수사를 좌우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등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타당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군관사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하나 군검찰관은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지휘관이 군검찰을 지휘하는 것이 군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인정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범죄를 범한 자를 보호하거나 또는 경미한 범죄를 범한 자를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지휘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범죄를 범한 자를 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군의 사기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어느 한 사람의 처벌로 전투력이 상실되거나 군의 업무수행에 마비가 오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부대장을 구속한다고 하여 그 부대가 마비되거나 전투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이를 대체할 인력을 얼마든지

훈련되어 있고 보충시킬 수 있다. 우리 군이 그 정도로 취약한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보면 군검찰권의 행사와 지휘권의 확보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 지휘권이란 지휘관이 그 계급과 직책에 의하여 예하부대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용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관리와 부하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는 통솔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를 은폐하고 고급장교의 처벌을 막기 위한 권한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지휘관의 군검찰관에 대한 지휘가 부당하게 이루어져왔고, 또한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다면 군의 발전적 미래를 위하여 개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재 군검찰 조직을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선 군검찰관을 포함한 군법무관의 신분을 군인이 아닌 군무원으로 임명하여 각 부대 보통검찰부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¹¹³⁾ 이 방안에 대해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는 ‘찬성’ 8명, ‘반대’ 8명으로 똑 같은 비율로 나왔다. 군검찰관을 군무원으로 임명하여 파견하는 방안은 현재와 같이 군법무관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군무원으로 채용하자면 이미 군복무를 필한자를 임명해야 하는데,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군복무를 필한 자가 지금과 같이 군법무관이 대우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원하기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행 군사법원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휘관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군검찰관의 소속단위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는 검찰관의 소속단위에 대해 ‘국방부’ 13명, ‘각군본부’ 3명, ‘군사령부급’ 2명으로 국방부소속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특히 이 경우에는 기무사령부와 같이 국방부소속으로 하여야 독립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2) 내부적 독립

군검찰이 지휘권(외부적)으로부터 독립되는 것 못지 않게 내부적으로 독립되는 것도 선결해야 할 과제이다. 실제로 일선 군검찰관들은 법무관리관 또는 법무감 등과

113) 이행규, 앞의 발제문, 4면 참조.

같은 법무병과 조직 내부의 상급자에 의해 종종 사건과 관련한 청탁이나 압력을 받게 되며, 제1심 단계보다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인 2심 단계에서 고등검찰부 검찰관에게 무리한 공소장 변경 등을 강요한다든지 대법원 상고 과정에서 결재를 해 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군검찰권의 행사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¹¹⁴⁾ 따라서 현재와 같이 법무관리관 또는 법무감, 각 법무참모로 연결되는 군법무행정체계와 법무참모가 검찰부장을 겸하는 체계는 군검찰권의 행사를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관 통제의 수단이 되고 있는 인사 및 보직권 행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관인사위원회와 군검찰 업무를 감시할 독립적인 외부감찰위원회 등의 도입을 통하여 군검찰의 내부적 독립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¹¹⁵⁾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는 군검찰관인사위원회와 외부감찰위원회의 도입에 대해 ‘찬성’ 15명, ‘반대’ 3명으로 찬성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따라서 외부인권단체나 군사법 감시전문단체가 인사나 감찰에 참여하여 군검찰관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과 감시기능을 하게 된다면 내부적 독립도 어느 정도 확립될 것이다.

또한 군검찰이 지휘권으로부터 독립된다면 법무참모직을 폐지하고 검찰부장직은 군단급에 상주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법무참모는 법적 문제에 대해 지휘관을 보좌하는데 면접조사에서와 같이 지휘관이 법무참모를 통하여 수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2. 군사법원의 개혁 방안

(1) 관할관 제도의 폐지

군사법기능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은 군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검찰과 마찬가지로 피라미드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관할관이란 제도를 통해 달성되는데 현행 군사법원법상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이며(제7조 제2항),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장 또는 책임지휘관이다(제7

114) 이행규, 앞의 발제문, 4면 참조.

115) 이행규, 앞의 발제문, 4면 참조.

조 제3항). 다만 국방부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 즉 국방부장관이 겸임한다(제7조 제3항 단서).

관할관의 권한은 크게 군검찰에 관한 권한과 군사법원에 대한 권한으로 구분되는데, 군검찰에 대한 권한으로는 검찰관을 임명하고 지휘·감독할 권한(제38조~제42조), 범죄수사의 보고를 받을 권리(제284조),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을 받고 처리하는 권한(제301~304조), 형의 집행 및 정지에 관한 등이 있으며, 군사법원에 대한 권한으로는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할하는 권한(제8조)과 재판관을 지정함으로써 군사법원을 구성하는 권한(제25조),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제379조) 등이 있다.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부대에는 군검찰부도 함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관임과 동시에,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 또는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으로서 이러한 권한을 모두 가지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할관 또는 부대장은 수사·재판 모두를 지휘하는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막강한 관할관의 권한은 군 수사와 재판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검찰권과 재판권의 불공정한 행사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지휘관 한 사람이 모든 사법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군사법원법상 관할관제도는 폐지 내지는 획기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법상의 관할관제도나 심판관제도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¹¹⁶⁾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국민의 기

116)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의 설치, 군사법원관할관, 군판사의 임명, 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등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이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하도록 허용하되 대법원을 군사재판의 최종심으로 하고 있고, 구 군사법원법 제21조 제1항은 재판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같은 조 제2항은 재판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반드시 일반법원의 법관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군판사를 포함시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구 군사법원법 제6조가 일반법원과 따로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하도록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헌법이 허용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의 한계를 일탈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가 일반법원의 조직이나 재판부구성 및 법관의 자격과 달리 군사법원에 관할관을 두고 군검찰관에 대한 임명,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관이 심판관의 임명권 및 재판관의 지정권을 가지며 심판관은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 조항들 자체가 군사법원의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정당한 재

본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헌법에 반할 위험성이 있다.

(2) 관할관의 판결확인조치권 폐지

현행 군사법원법은 관할관의 확인조치로 판결확인과 집행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군사법원법 제379조 제1항은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관할관의 판결확인을 규정하고 있다.¹¹⁷⁾ 동법 제535조 제1항에는 “제534(18)조의 재판을 집행함에도 당해 군사법원 관할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확인은 당해 소송기록을 심사하여 행하되, 그 양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관할관의 집행확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관할관의 판결확인조치권이다.

판결확인절차와 관련하여 법무참모는 군사법원의 판결 및 약식명령이 선고되면 지체없이 확인서를 구비하여 관할관에게 판결에 대한 확인을 상신하여야 하며, 법무참모는 확인상신시에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선고된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인서의 의견란에 그 사유 및 형의 감경의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건의할 수 있다(육군규정 191 제5조). 관할관은 선고된 형의 감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선고된 형과 다른 종류의 형으로 그 형의 종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사형을 무기형으로 무기형을 유기형으로 감경할 수 있다(육군규정 191 제9조).

이러한 판결확인제도를 둔 것은 관할관의 지휘권을 보장하고 소속장병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군형법의 법정형이 일반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감경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인조치를 통하여 형량의 구

판을 받을 권리 및 정신적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헌재결 1996. 10. 31. 93헌바25).

117) 확인조치는 판결 및 약식명령에 한하며 결정이나 명령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본형에 부가된 부가형(몰수, 추징 등)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육군규정 191 제7조 참조).

118) 군사법원법 제534조는 계엄지역에서의 단심제에 관한 규정을 되고 있다.

체적 타당성을 실현하지는 데에 근본취지가 있다고 한다.¹¹⁹⁾ 또한 관할관이 당해 부대의 군기확립과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사법원판결과 약식명령을 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¹²⁰⁾

그러나 판결확인조치권은 형법 제51조 사유를 참작하여 그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형감경의 원칙과 한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전적으로 관할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¹²¹⁾ 또한 군형법의 법정형이 일반적으로 높아 판결확인조치권이 필요하다고 하나 실제로 순정군형사범은 그리 많지 않으며 판결확인조치권은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오히려 확인조치권 때문에 평의 과정에서 사후경감을 의식해 군사법원의 형량이 의도적으로 높아질 부작용도 발생한다. 또한 양형이 범죄의 경중과 책임에 상응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의 의중을 고려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확인상신과정에서도 법무참모가 형의 감경의 의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더욱더 큰 문제점은 고위급장교일수록 판결에 대한 감경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에 따라 군사법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점이다.¹²²⁾ 이러한 결과는 결국 군기강의 강화가 아닌 약화를 초래하고 군사기를 저하

119) 이상석, 군법과 군사재판, 청림출판사, 1994, 65면.

120) 이러한 목적은 육군규정 191(판결확인규정) 제4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121) 대법원 판례도 관할관의 확인조치로서 형의 감경을 함에는 반드시 형법 제55조의 법률상의 감경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1974. 9. 24, 74도1955: 군법회의법 제369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은 관할관이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함으로써 형법55조의 법률상의 감경에 따라 감경하여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나 관할관은 형법 44조에 따르지 않아도 무방하다).

122) 이러한 부당한 확인권조치권 행사는 종종 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8년 10월에는 장병 복지금으로 쓰일 국방회관 수입금 수천만에서 수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육군 장성과 군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특히 이들은 국방부 장관이 동년 7월에 확인조치권을 행사하여 1심 형량을 반으로 감경하여 집행유예 대상이 되도록 했던 당사자들이어서 논란이 되었다. 이로써 현역 장성 4명과 대령 3명, 군무원 1명과 부사관 1명 등 9명이 4년에 걸쳐 수입금 수익원을 횡령해 올해의 최대 군 비리 사건으로 주목받은 국방회관 사건 연루자 전원이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등으로 풀려난 것이다(한국일보, 2008. 10. 17).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판결확인조치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 따라서 판결확인조치권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판결확인조치권 운영현황을 보면 장교나 부사관의 감형비율이 25% 정도이며, 병이나 군무원의 감형비율이 20% 정도로 장교나 부사관의 감형비율이 병이나 군무원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6〉 관할관 확인조치권 운영현황(2002. 9. 1~2003. 8. 31)

구분	총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총계	2,202	274	710	1,112	103	3
원판결확인	1,710	205	531	889	82	3
감형	492	69	179	223	21	-

자료: 사법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 보고자료, 230면.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군사법과 지휘권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정의로운 군사법권의 행사는 지휘권을 보장해주고 나가 군의 사기를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만약 판결확인조치권이 군사법의 불신을 초래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도 ‘존치’ 1명, ‘폐지’ 16명으로 폐지의 의견이 절대다수였다.

(3) 심판관제도 폐지

현재 군사재판이 일반재판에 비해 특이한 점은 관할관 확인제도 이외에 심판관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심판관제도란 법관의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하여 군판사와 함께 재판관으로서 재판에 참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군사법원법상 보통군사법원에 있어서는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하며, 다만 약식절차에 있어서는 군판사 1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이 경우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 1인을 주심판사로 지정한다(제26조). 고등군사법원에 있어서는 군판사 3인을 재판관으로 하며,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인과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재판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 1인을 주심판사로 지정한다(제27조).

심판관의 자격은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자와 재판관으로서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자이어야 하며(제24조),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20년 정도 군복무를 한 중령 및 대령급 장교가 심판관으로 임명된다. 이 경우 헌병, 군중병과 및 보안, 감찰업무를 종사하는 장교는 심판관이 될 수 없다.¹²³⁾

군사법원법이 비법률가인 심판관을 재판부에 포함시켜 재판을 하도록 한 제도적 취지는 군사재판이 지나치게 법률논리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군의 특수성과 작전의 원활을 고려하여 재판의 합리적 운용을 기하는데 있다.¹²⁴⁾ 그러나 심판관제도가 달성하려는 목적이 얼마나 군사재판과 부합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며 이에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심판관제도의 문제점¹²⁵⁾은 첫째, 심판관제도는 재판에 있어 군 특수성을 반영하여 군사적 지식을 보완해 주려는 목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심판관의 법률지식 결여로 인하여 합의과정이나 양형에 있어 군판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여 합의제를 취하는 재판의 근본정신을 해친다.

둘째, 위와는 반대로 심판관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개입하려는 경우에는 재판의 독립성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관할관의 사전지시를 받고 재판에 임하는 경우도 있어 재판의 독립성 유지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비록 피고인이 군인의 신분이라든가 입대전의 범죄나 휴가 중 직무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자격이 없는 비법률가의 참여하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지휘관의 지휘권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군인이라는 특별권력관계에서도 불리한 차별대우가 되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보장의 이념에 반하게 된다.

넷째, 비법률가인 심판관은 주로 사실문제의 관여하게 될 것인데 사실문제보다 법률문제에 중점을 두어 다루게 되는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재판에도 심판관을 참여하게 하는 실정이다.

다섯째, 심판관은 군판사에 비하여 계급이 높은 게 일반적이는데 현행 군사법원법상 재판장은 선임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제22조 제3항) 재판장인 심판관이 평의에

123) 육군규정 190(재판사무운영규정) 제5조

124) 이태취, 앞의 논문, 66면.

125) 심판관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이태취, 앞의 논문, 68~69면 참조.

서 이루어진 합의내용과는 전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위험성이 있다.¹²⁶⁾

이상과 같이 심판관제도는 그 목적을 이미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군 사건이 상세한 군사에 관한 지식을 요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도 않으며, 설령 군사에 관한 지식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거조사의 절차를 통하여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심판관제도는 지휘권의 확립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공정한 재판만이 지휘권을 확보하고 군기강을 확립할 수 있다.

(4) 순회군판사단 도입문제

현재 보통군사법원은 육군의 경우 사단급(동원사단제외), 공군의 비행단급, 해군은 함대급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다.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의 소속은 각군본부로 되어 있다.

현재 보통군사법원은 육군에 53개, 해군에 15개, 공군에 19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육군의 경우 사건이 많은 후방사단의 경우에는 군판사가 상주하고 있으나, 전방사단의 경우에는 상주하지 않고 군단이나 군사령부에 상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판사를 지휘계통과 검찰과 분리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된 순회군판사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만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을 두는 현행제도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군사법원법과 같이 관할권제도는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다.

126) 이와 관련하여 심판관인 재판장이 군판사들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선고한 판결이 고등군사법원에서 뒤집힌 사실이 최근 발생하였다. 고등군사법원은 사격훈련 도중 통제 불응을 이유로 병사에게 열차려를 가해 난정중세를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대위에게 무죄를 내린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한 판결 대신 임의로 무죄를 선고했음이 입증됐다”며 “원심법원은 관련법을 위반,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대위는 99년 11월 육군 모 사단 중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격훈련 도중 문모 병장이 귀 안에 휴지를 넣은 상태에서 명령에 불응했다며 문 병장을 사격 중인 기관총 옆에 꿰어앉도록 해 ‘감각신경성 난청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인 해당 부대 인사참모 김모 중령과 군 판사인 2명의 법무관 등 3명의 재판부는 2 대 1로 유죄라는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까지 작성했으나 김 중령이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했다(동아일보, 2008. 9. 22).

국방부의 ‘순회군판사단’ 운영안에 따르면 전국을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내 보통군사법원에서 순회재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군판사단을 순회판사와 영장판사로 구성하여 순회판사는 중·대령을 보직하여 재판 및 재판장 업무수행을 하며, 영장판사는 위관급 장교로 보직하여 영장발부 및 재판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표 4-7〉 순회군판사단 편성(안)

구분	1지역 재판부	2지역 재판부	3지역 재판부	4지역 재판부	5지역 재판부
담당지역	서울	경기	강원	충청/호남	영남
담당군사법원 (86)	3	32	17	115	19
순회판사 (17)	2	5	3	3	4
영장판사 (18)	1	7	4	2	4

현행 체제의 보통군사법원 존치를 전제로 한 국방부의 순회군판사단제도의 장·단점은 아직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군판사의 소속을 국방부로 한 것은 매우 발전적 개선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는 현행과 같이 사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보통군사법원의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존치’ 1명, ‘폐지’ 15명으로 폐지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군판사 면접조사에서도 면접대상자 6명 모두 폐지를 주장하였다. 순회군판사단 운영에 대해서도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순회군판사단의 운영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많았으며, 군판사 면접조사에서는 반대 2명, 찬성 3명이었다.¹²⁷⁾

현행 보통군사법원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으로 상주법원이 없기 때문에 구속적부심, 영장 사건 등에 대한 처리가 지연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며, 전·평시에 독립 전투력발휘의 핵심단위인 사단에 있어서의 기동성 있는 보통군사법원의 운용이아말로 군기질서유지차원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군사적 관점에서는 사단급 1심 군사법원의 유

127) 국방부 설문조사(보통군사법원 설치부대 군지휘관 86명, 민변·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 26명)에서도 대체적으로 순회군판사단 운용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부단체의 경우에는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된다.¹²⁸⁾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설치보류 되었다가, 2000년 6월부터 설치보류 되었던 사단급 제대의 군사법원이 환원되었다. 국방부가 사단급 보통 군사법원은 부활시킨 이유는 사단급 군사법원이 없어지면서 사단장의 지휘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과 영장청구나 기록복사 등을 위하여 군단본부로 이동해야 하는 등 실무상의 번거로움도 그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이 부활하고 나서 발생하는 문제는 군법무관 인력부족현상, 군판사의 저계급·저연령화 현상, 겸직현상 등 군사법의 독립을 저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진이 면접조사를 하였던 군판사의 경우 중위계급에 연령은 20대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군판사의 저연령·저계급 현상이 생기게 되면 군판사가 재판을 함에 있어 계급과 연령이 현저히 높은 이들에 의해 부당한 영향력이 작용할 경우 이에 대한 저항이 어렵다는 점이다.¹²⁹⁾

만약 순회군판사단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관할관제도나 심판관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할관제도나 심판관제도가 존치하는 한 군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군판사가 어느 부대 단위에까지 상주해야 하는 문제는 지역별로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¹³⁰⁾

여하튼 순회군판사단제도가 운영되던 현행 체제의 군사법원이 운영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군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고 나서 군사법원의 운영단위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군판사의 소속을 굳이 국방부로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아예 고등군사법원을 국방부로부터도 독립시켜 고등군사법원장을 일반판사로 임명하거나 외부민간단체와 군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고등군사법원장을 임명하여 군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모든 군판사의 소속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128) 사법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보고자료, 248면 참조.

129)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이태휘, 앞의 논문, 38면.

130) 본 연구진이 전방부대를 방문하였을 때 어느 검찰서기는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는 목숨을 걸고 운전하여 영장을 청구하러 간다 하다고 하였다. 또한 가장 가까운 부대의 군판사가 외출이나 외박을 나간 경우에는 그보다 거리가 먼 군단까지 영창청구를 하러 가는데 사건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너무 힘들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5) 군사법원의 민간법원으로의 이양 문제

현행 헌법상 군사법원의 설치는 임의적인 것이기(헌법 제110조 제1항) 때문에 이에 군사법원을 민간법원으로 이양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1심은 현행체제와 같이 하고 제2심부터 민간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게 하는 방안과 모든 사건을 민간법원에서 관할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특히 평시에 군사법원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관할을 항명죄, 군용물에 관한 죄 등과 같은 순정군형사범에 국한시키고 일반형사범의 경우에는 민간법원의 관할로 하여 재판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¹³¹⁾

각국의 군사법원의 운용은 크게 군사법원을 운영하지 않은 국가, 국가법원과 민간법원을 혼합형으로 운영하는 국가, 군사법원을 운영하는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표 4-8〉 군사법원에 관한 각국의 제도

구분	국가	비고
군사법원을 운영하지 않은 국가	오스트리아, 체코,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스웨덴, 슬로베니아, 일본, 독일	- 일본은 1945년 이후 자위대 군사법원을 운영하지 않다가 최근 다시 설치 준비중임 - 독일은 법적 근거는 있으나 실제 운영하지 않음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을 혼합형으로 운영하는 국가	헝가리, 라트비아, 핀란드, 불가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일반법원에 특별부를 두거나 재판관의 일부를 군인으로 구성
군사법원을 운영하는 국가	캐나다, 덴마크, 영국,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스위스, 한국, 이스라엘, 터키, 미국, 이탈리아, 이집트, 남아공, 멕시코, 브라질, 호주, 페루,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칠레,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일반법원과 별개로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 설치

자료: 박주범, “외국의 군사법원/군사법원의 존립목적”, 군사법개혁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3. 4. 16, 19면; 사법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보고자료, 227면 참조

131) 이행규, 앞의 발제문, 10면; 한인섭, 앞의 발제문, 7면.

조

이와는 반대로 군사법원이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군대의 존재 목적이 전쟁에 대비한 준비태세 유지와 전쟁 발발시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신속한 재판과 그리고 재판에 따른 재배치를 위해서 민간법원제도와는 구별되는 군사법원을 둘 필요성이 있으며,¹³²⁾ 민간법원이 평시에 군인 등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고, 전시에는 독립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는 민간인들이 군인 세계의 특수성(극도의 위험과 스트레스, 생활형태, 엄격한 군기)에 대한 무지와 이해부족으로 군인들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것이다.¹³³⁾

군사법원의 민간법원으로 이양문제는 장시간의 검토를 요하는 문제이다. 현재와 같은 평화상태라면 굳이 군사법원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라 판단되며, 군의 특수성은 군복무를 하고 온 사람이면 얼마든지 느끼는 문제이다. 또한 군검찰권은 군에 두더라도 재판은 민간법원으로 하는 것이 군의 인권보호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민간법원으로 관할권이 이양된 경우 군검찰과 민간법원의 마찰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는 남는다. 즉 군검찰이 기소편의주의를 들어 민감한 사안의 경우 기소자체를 아예 하지 않을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는 기소법정주의가 채택되는 것이 타당하나 이는 민간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여하튼 군 사법이 개혁되지 않는 한 군사법원의 민간법원으로 이양문제는 계속해서 제기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군검찰관의 면접조사에서는 민간법원으로서의 이양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9명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다. 반대의견에는 전시예외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현실성이 부족하고 군의 특수성으로 고려한다면 군사법원은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132) 이에 대한 예로 민간법원이 군인 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경우, 군인이 전시예외 전투에 참가하는 것을 두려워해 전투지역으로 나가는 대신에 일부러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군인들에 대한 민간법원의 재판은 범법자가 시간을 끌기에 충분하여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박주범, 앞의 토론문, 26면).

133) 박주범, 앞의 토론문, 27면.

(6) 군법무관 획득방안

현행 군법무관은 크게 장기와 단기로 구별된다. 장기군법무관은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로서 그 복무기간이 10년이며(군인사법 제7조 제1항 1호)¹³⁴⁾ 단기군법무관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군복무를 필하지 아니 한 경우 3년(군인사법 제7조 제1항 2호)동안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이와 같은 군법무관 획득 제도에서는 단기의 비율이 장기에 비하여 훨씬 높다. 단기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단기의 경우에는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군복무를 필하지 아니 한 자가 지원하기 때문이며, 장기의 경우에는 2년마다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통해 20여명 정도밖에 선발하지 않기 때문이다.¹³⁵⁾ 단기의 경우에는 3년만 복무하고 전원이 전역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기의 경우에는 10년 복무 후에는 변호사 개업이 허용되기 때문에 거의 모두 전역한다. 이러한 인력구조이다 보니 영관급 장교의 수가 매우 적으며 특히 중령 이상의 군법무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원활한 군사법운동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국방부 법무장교 획득안에 따르면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폐지하고 매년 사법시험 합격자에 중에서 4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기준은 사시성적, 연수원성적, 면접실시를 통하여 복무기간은 10년으로 의무복무 5년차에 1회의 전역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장기복무자의 경우에는 민간검사의 80%수준까지 장려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었다.

군검찰관 면접조사 결과 사법시험 합격자만을 법무장교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찬성이 많았는데 찬성이나 반대 모두 현재와 같은 계급과 보수로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군판사 면접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가 대다수였다.

본 연구진이 법무참모부를 방문한 결과 군검찰관과 군판사의 계급이 대부분은 중위 내지 대위로 위관급 장교였으며, 심지어는 사단법무참모의 계급이 중위로 보직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낮은 계급으로는 원활한 군사법활동을 할 수가 없다. 군이 기

134) 군법무관의 임용자격에 대해서는 ‘군법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135) 2008년도 제17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22명이었다.

본적으로 계급사회이다 보니 아무리 군검찰관, 법무참모라고 하더라도 계급의 논리에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영관급 이상의 고위급장교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쉽지 않게 되어 있다. 또한 보수나 기타 대우 면에서도 일반장교와 별반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단기법무장교의 경우에는 주어진 의무복무기간만 채우고 나간다는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군사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6조에는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점은 군법무관의 처우에 대해 군당국이나 정부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지를 대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법시험합격자 중에서 장기복무자를 선발하는 제도는 고무적이나, 현재와 같은 군사법 구조하에서는 장기지원자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 민간검찰이나 판사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난다면 어느 누가 오지에서 군복무를 하려고 하겠는가. 따라서 군사법이 지휘권으로부터의 완벽하게 독립한 다음 계급과 보수를 대폭 상향조정을 통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군사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군검찰과 군판사의 보직 분리

현재 군검찰과 군판사의 보직은 순환보직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군검찰관을 하다가 군판사를 하기도 하며 군판사를 하다가 고등검찰관을 하기도 하며, 군검찰관을 하면서 인접 부대 국선변호인의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법무참모 등 정책부서도 순환식으로 맡게 된다. 이러한 순환보직제도로는 군검찰과 군판사의 상호간 견제와 감시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며 군검찰권 행사의 엄정함이나 군사재판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군판사가 상주하는 곳이 법무참모부 내이다 보니 법무참모나 군검찰관과 한 식구 같은 생활을 하게 되어 법무참모의 입김이 들어갈 소지도 있으며 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감시나 견제도 쉽지 않게 되어 있다.

이러한 순환보직제도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 따라서 먼저 군검찰과 군판사의 보직을 이원화하여 군판사를 전문화시켜야 한다. 군검찰관 면접조사에서도 군검찰관과 군판사 이원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이원화에 대해서는 거의 찬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군법무관 임용초기에는 검찰, 송무, 국선번호, 참모업무 등을 다양하게 경험한 후 복무기간이 일정기간을 지난 군법무관 중에서 군판사요원을 선발, 군사법원에 소속시키되 일단 군판사로 임명된 군법무관은 이후에는 재판과 재판연구 이외의 업무는 맡지 않도록 하여 군사법원의 인적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¹³⁶⁾

이러한 개선방안은 군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면 타당한 점이 있으나, 현재와 같이 군검찰과 군판사가 한 식구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 즉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하여 인력이 형성되게 되면 공정한 군사법권 행사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음부터 군판사의 보직으로 임명하여 전역시까지 군판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군법무관의 영역별 전문성 강화는 지휘권으로부터 독립된 군사법원과 군검찰이 운영되면 가능하리라 본다.

국방부 군사법 개선방안에는 군검찰관과 군판사가 이원화되더라도 참모나 정책부서의 직위는 공통보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참모나 정책부서가 공통보직으로 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법무참모의 입김이 군판사에게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정책부서의 경우에도 군판사의 경우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검찰관 면접조사에는 참모나 정책부서를 공통보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찬성의 비율이 높아 공통보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6) 이태휘, 앞의 논문, 39면.

제5장 결 론

이제 군이라고 하여 인권이 무시되거나 도외시 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군이기 때문에 종전에 암묵되었던 인권침해의 문제들도 이제는 하나씩 고집어내어 과감하게 개선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관련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장병인권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군이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조직으로 인식되어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이를 통하여 국가방위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군대는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군에서 최고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지휘권도 지휘관의 권위나 권한에 의해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장병의 인권이 소중히 지켜짐으로써 보장되고 확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도 과거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었던 군 수사과정과 영창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하여 인권침해적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장병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정보의 접근 곤란과 자료의 빈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가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으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연구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하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제까지 제시되어온 군 수사과정과 징계영창제도에 있어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다만 각 사안에 따라서는 군 현실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 있으나 부정적 자세보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개선방안에 있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실현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개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판단된다.

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방안으로는 첫째, 군 수사체계와 관련하여 군사법경찰 관리직무집행관련 법규제정, 군검찰의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 확보, 군사법경찰관리 계급의 상향조정 등이 이루어져 한다.

둘째, 긴급체포와 구속관행의 개선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억제하는 수사기관의 자세가 필요하고, 긴급체포보다는 영장에 의한 체포가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군무이탈죄의 경우에는 과도한 긴급체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체포영장제도를 활용하여 인권

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경미한 이탈이나 범죄인 경우에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셋째, 체포와 구속요건 중 군현실과 거리가 먼 요건들은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긴급체포시 군검찰관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전화나 팩스에 의한 신속한 구속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군무이탈의 경우 과도한 구속기간의 연장이 실시되고 있는데 군복무의지가 확실한 사병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을 통한 훈계보다는 신속한 재복귀를 통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변호인 제도개선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사병전담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국선변호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의 자격과 보수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와 구속적부심제도를 개선하여 피의자심문의 경우 필요적 심문으로 개정하고, 실질심사기간도 구속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며, 체포·구속적부심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을 하여야 한다.

일곱째, 피의자신문조사 절차의 개선방안으로 진술거부권이 실질적으로 고지되어야 하고, 조사시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피의자신문시 반드시 보조자를 참여시키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중감·변경권도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피의자조사과정도 CCTV(비디오)녹화를 하여 사후 인권침해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덟째, 미결수용시설의 관리에 대한 개선으로서 미결수용시설 관리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영창'의 명칭도 개정하고 발전적으로 군 구치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노후된 영창의 시설은 시급히 개선하여야 하며, 영창관리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홉째, 미결수용자의 입감절차의 개선으로서 입감시 미결수용자에 대한 권리 등의 고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진정권에 대한 고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진정권 보장을 위해 수용자들이 자유롭게 진정할 수 있도록 진정함설치는 거실내로 하여야 하고 필기구와 용지, 봉투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열 번째, 미결수용자의 시설내 처우와 관련하여 화장실 칸막이에 대한 개선과 변기의 개선 그리고 이용이 자유로워야 하며, 세탁물의 일광건조와 침구류에 대한 청결이

철저히 유지되어야 한다. 감시카메라의 위치도 수용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상근예비역 수용자에 대한 식사·부식 제공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서신작성과 집필권, 전화통화, 독서·TV 시청, 실외운동 및 일광욕, 종교행사 신청권 등도 미결수용자의 권리에 맞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집견교통권보장을 위해 비번호인과의 면회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각군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열 한 번째, 영창내에서 가혹행위와 과도한 정좌자세가 방지될 수 있도록 근무자 교육과 정좌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야 하며, 수양록 점점의 폐지, 영창참관 폐지, 군 검찰관의 실질적 영창감찰, 객상·방석 및 관물대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법규차원의 영창관리와 미결수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군미결수용자행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군사법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장병 인권담당관제도 및 전담법률지원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징계영창제도에서의 인권보호방안으로 현행 징계영창제도 존치를 전제로 한 개선은 첫째, 영창징계사유의 축소 및 양정규정의 개선, 영창처분의 제한적 활용, 징계절차개선을 통한 적법절차 보장, 피징계자 대리인 참여 방안 마련, 징계위원회 개최시 법무장교 참여, 영창에 대한 징계유예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징계영창 처분 통제방안으로 징계지휘관의 직급상향, 징계권 남용에 대한 효율적 제재, 징계영창처분에 대한 가족 통지 등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셋째, 입창절차의 개선으로 징계입창자 입창시 권리고지절차 명문화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진정권 고지 절차와 진정함 설치운영 개선, 징계입창자 수용시 번호부여 폐지 등이 있어야 한다.

넷째, 영창내 부당한 대우 및 가혹행위 방지 방안으로서 정좌자세의 개선, 미결수용자와의 차별대우 개선, 수양록·반성문작성의 폐지, 훈련병 영창참관 폐지 등이 있어야 하며, 화장실 칸막이 높이나 이용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위생관련 개선으로 일광건조 확보, 침구·의복·위생용품 등의 청결이 철저히 유지되어야 한다.

여섯째, 영창내 처우에 대한 근본적 개선으로서 징계입창자 처우에 관한 국방부 차원의 독립된 규정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징계입창자에게 재복무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징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식사·부식의 충분한 제공, 면회의 자유, 서신의 자유, 전화통화의 자유, 종교의 자유, 독서의 자유, 신문열

독의 자유, TV채널 선택권, 운동시간 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보다도 징계영창제도는 제도자체의 위헌성 여부뿐만 아니라 시설내 처우에 있어서도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른 징계벌목의 다양한 활용을 통하여도 징계벌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군사법개혁을 통한 군 인권보호방안으로 첫째, 군검찰이 외부적(지휘권)·내부적(법무병과계통)으로부터 독립하여 군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군검찰법’의 개정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는 군사법의 독립을 저해할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폐지하여 군사법의 독립을 달성하여야 한다.

셋째, 순회군판사단제도 도입도 군사법의 독립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슬기롭게 논의되어야 하며, 군사법원의 민간법원으로의 이양 문제나 군법무관 획득방안도 군사법의 발전적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군검찰과 군판사의 보직분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동네 재판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다.

이상의 개선방안은 장병의 인권보호에 최우선을 둔 것이기 때문에 설령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 당국이 장·단기적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다시 한번 부연하건대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군대는 국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02.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5판), 홍문사, 2004.
신동운, 형사소송법 I (제2판), 1997.
신양균,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0.
이상석, 군법과 군사재판, 청림출판사, 1994.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03.
임동규, 형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2003.
도중진, 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신양균,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정진수,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국가인권위원회,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조사, 2002년도 인권
상황 실태조사보고서, 2003.
국가인권위원회, 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파악, 2002.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 업무설명회 자료, 2004.
사법개혁위원회 제5차회의 보고자료,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2004. 1. 5.
국방부, 2002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200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제2판(형사), 1998.
법무연수원, 수사지휘권, 2003.
경찰청, 경찰백서, 2003.
- 권오현, “개정군사법원법상 체포제도 고찰”, 법령연구논문집 제2집, 해군본부
법무감실, 2001.
김경환, “현행 군사법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사법감시
센터, 군 사법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 개최 발표문, 2002. 11. 11.

- 김기준, “병에 대한 징계 및 그 유사제도에 관한 고찰”, 군사법연구 제13집, 육군본부, 1996.
- 김성돈,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2. 11. 25.
- 박영만, “군사법원법상 인신구속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경북대 법학 제2집, 경북대 법학연구소, 1998.
- 박주범, “외국의 군사법원/군사법원의 존립목적”, 군사법개혁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3. 4. 16.
- 송광섭,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10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8.
- 신동운, “인신구속제도를 둘러싼 법적용의 왜곡과 그 해결방안”, 법학 제39권 1호, 서울대 법학연구소, 1998.
- 이은모, “피의자 인신구속제도의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제19호, 형사형사법학회, 2003.
- 이재석,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1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9.
- 정진수, “인신구속제도와 구속심사제도의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3호, 1998.
- 한인섭,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군 사법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 개최 발표문, 2002. 11. 11.
- 황정근,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 권영덕, “군사법제도에 관한 연구-군검찰관 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8.
- 권종필, “수사절차상 인권보장방안에 관한 연구—군사법원법상의 제도를 중심

- 으로”, 경희대석사학위논문, 1999.
- 김동원,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군사법원법상의 즉심절차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2.
- 김만호, “군사법원법상의 검찰관의 지위에 관한 연구: 군사법운용체계의 역학적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2.
- 김석철,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찰관의 직무상 지휘체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8.
- 박홍식, “군사법원법상의 군 수사체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8.
- 백동림, “군법회의법상 수사기관으로서의 군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의 관계에 관한 고찰”,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79.
- 서옥원, “군징계제도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육군을 중심으로-”,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종협, “군사법 운영체계에 관한 고찰—관할관·심판관 제도 및 수사체계를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97.
- 이태휘, “군사법원제도에 관한 연구-사법권의 독립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0.
- 이해영, “현행 군사법제도상 군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군의 지휘권을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01.
- 정동호, “군 범죄수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9.
- 홍인수, “군사법원법상 수사기관으로서의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찰관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7.
- 황인걸, “군사법원법상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1.

부 록(설문지)

■ 미결수용자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사업인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내에서의 인권상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앞으로 장병의 인권이 더 존중될 수 있는 수사과정 및 영창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답해주신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구자만 알 수 있으며, 학술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완전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병이나 군 관계자들이 알 수 없으며 설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해주셔야 영창 내 인권상황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장병의 인권이 철저히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우시더라도 끝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관식 설문은 자세하게 꼭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중에 설문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구진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영창 인권실태와 관련하여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구금일반

1. 귀하의 생년월일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2. 귀하의 계급은 무엇입니까?
① 이병 ② 일병 ③ 상병 ④ 병장 ⑤ 부사관(계급:) ⑥ 장교(계급:)
3. 귀하의 죄명은 무엇입니까?
① 폭행 ② 강간 ③ 절도 ④ 항명 ⑤ 군무이탈 ⑥ 기타()
4. 귀하는 최초 어느 관서에서 검거되었습니까?
① 현병 ② 기무대 ③ 군검찰 ④ 경찰 ⑤ 일반검찰 ⑥ 기타()
5. 귀하는 어떠한 형태로 구금되었습니까?
① 영장에 의한 체포
② 긴급체포
③ 현행범체포
④ 구속
⑤ 기타()
6. 귀하는 현재 어떠한 신분 상태입니까?
① 미결수 ② 기결수

II. 미란다원칙 고지

1. 귀하는 체포·구속시에 수사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제시받았습니까?
① 받았다. ② 받지 못했다.
2. 귀하는 구금당시에 수사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① 들었다. ② 듣지 못했다.

III. 구속통지/기간

1. 귀하는 구속된 후 가족에게 구속통지가 어떠한 방법으로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① 경찰에서 전화통보
② 헌병에서 전화통보
③ 헌병에서 전보로 통보
④ 헌병에서 편지로 통보
⑤ 군검찰에서 전화통보
⑥ 군검찰에서 전보로 통보
⑦ 군검찰에서 편지로 통보
⑧ 어떻게 통지되었는지 모른다.
⑨ 기타()
2. 귀하의 현재 구속일 수는 몇 일입니까?
()
3. 귀하의 구속기간이 10일이 넘었다면, 구속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4. 연장되었다면, 그 기간은 몇 일입니까?
()

IV. 변호인선임/의뢰/접견

1. 귀하는 민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까?
① 민간변호사 선임 ② 국선변호사 선임 ③ 선임하지 않음
2. 귀하는 헌병수사관에게 귀하가 알고 있는 특정한 변호사의 선임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 변호사의 선임을 의뢰한 적이 있다면, 헌병관련자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① 친절하게 응대 주었다. ② 귀찮아 하였다. ③ 무시했다. ④ 기타()

※ 민간변호사를 선임한 사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민간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를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① 헌병조사 전에 ② 헌병조사과정에서 ③ 군검찰조사과정에서 ④ 재판전에
⑤ 기타()

2. 민간변호사를 선임 하였다면, 변호사의 접견(만남)이 자유로웠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았다(이유:)

3. 귀하는 변호사와 만나는 것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제한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5. 귀하는 변호사의 선임여부에 따라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수용자에 대한 대우가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달라진 내용:)

② 그렇지 않다.

※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국선변호사를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① 현병조사 전에 ② 현병조사과정에서 ③ 군검찰 조사과정에서 ④ 재판 전에

⑤ 없다. ⑥ 기타()

2. 귀하가 국선변호사와 만난 횟수는 몇 번입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없다. ⑥ 기타()

3. 귀하가 국선변호사와 만난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 이었습니까?

① 10분 이내 ② 20분 이내 ③ 30분 이내 ④ 30분 이상 ⑤ 없다. ⑥ 기타()

4. 귀하는 국선변호사와 만나기 전에 현병으로부터 미리 사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 귀하에게 국선변호사가 수사절차나 재판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까?

① 형식적인 만남이었다.

② 수사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③ 기타()

6. 귀하가 국선변호사로부터 받은 도움이 있다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V. 구속영장실질심사

1. 귀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라는 제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2.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병수사관(군검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3. 귀하에게 현병수사관이 구속영장실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면서 어떠한 말이나 태도를 보였습니까?

- ① 구속영장실결심사를 신청하면 구속일수가 길어지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말하였다.
- ② 구속영장실결심사를 신청해 보아야 어차피 영장이 발부된다고 말하였다.
- ③ 구속영장실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현병수사관이 위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 ④ 구속영장실결심사라는 것이 있는데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식으로 형식적으로 물어 보았다.
- ⑤ 구속영장실결심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며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 ⑥ 기타()

4. 귀하는 영장실결심사를 신청하였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신청하지 않은 이유:)

※ 구속영장실결심사를 신청한 사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군판사에게 영장실결심사를 받을 때 호송현병수사관이 함께 있었습니까?

- ① 호송현병이 있어서, 군판사의 심문에 자유롭게 답변할 수 없었다.
- ② 호송현병이 있었지만, 군판사의 심문에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었다.
- ③ 호송현병이 없어서, 군판사의 심문에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었다.
- ④ 기타()

2. 귀하가 영장실결심사를 받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현병대내 ② 군검찰부내 ③ 군사법원내 군판사실 ④ 기타()

3. 귀하는 영장실결심사를 받을 당시 군판사가 진술거부권과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4. 귀하는 영장실결심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Ⅶ. 제포·구속적부심사

1. 귀하는 제포·구속적부심사라는 제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2. 귀하는 제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제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사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제포·구속적부심사시에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2.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었다면, 제포·구속적부심사시에 국선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주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VII. 피의자신문

A. 헌병수사단계

1. 귀하는 헌병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을 때, 조사실 이외의 밀실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장소:)
② 없다.

2. 귀하는 헌병수사관에게 몇 차례나 조사 받았습니까?

-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⑤ 4번 이상 ⑥ 기타()

3. 귀하는 헌병수사관에게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조사를 받았습니까?

- ① 30분 ② 1시간 ③ 2시간 ④ 3시간 ⑤ 3시간 이상 ⑥ 기타()

4. 귀하는 헌병수사관에게 조사(피의자신문)를 받았을 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까?

- ① 헌병수사관이 형식적으로 고지하였다.
② 헌병수사관이 진술거부권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③ 헌병수사관이 고지해주지 않았다.
④ 기타()

5. 헌병수사관이 귀하를 신문할 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6. 헌병수사관이 귀하를 신문할 때, 진술을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강요의 내용:)
② 그렇지 않다.

7. 헌병수사관이 귀하를 신문할 때, 유도신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유도신문의 내용:)
② 그렇지 않다.

8. 헌병수사관이 귀하를 신문할 때, 모욕적이거나 위압적인 신문을 하였습니까?

- ① 그렇다.(모욕·위압의 내용:)
② 그렇지 않다.

9. 귀하는 헌병수사관으로부터 조사에 응하는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폭행, 구타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가혹행위의 유형:)
② 없다.

10. 귀하는 헌병수사관의 가혹행위에 의하여 허위자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가혹행위의 유형:)
(허위자백의 내용:)
② 없다.

- ① 있다.(장소:)
 ② 없다.
2. 귀하는 군검찰관에게 야간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시~시까지)
 (야간 조사를 받은 이유:)
 ② 없다.
3. 귀하는 군검찰관에게 밤샘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귀하는 군검찰관에게 몇 차례나 조사 받았습니까?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⑤ 4번 이상 ⑥ 기타()
5. 귀하는 군검찰관에게 보통 얼마나 조사를 받았습니까?
 ① 30분 이상 ② 1시간 이상 ③ 2시간 이상 ④ 3시간 이상 ⑤ 4시간 이상 ⑥ 기타
6. 귀하는 군검찰관에게 조사(피의자신문)를 받았을 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았습니까?
 ① 군검찰관이 형식적으로 고지하였다.
 ② 군검찰관이 진술거부권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③ 군검찰관이 고지해주지 않았다.
 ④ 기타()
7. 군검찰관이 귀하를 신문할 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8. 군검찰관이 귀하를 신문할 때, 진술을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강요의 내용:).
 ② 그렇지 않다.
9. 군검찰관이 귀하를 신문할 때, 유도신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유도신문의 내용:)
 ② 그렇지 않다.
10. 군검찰관이 귀하를 신문할 때,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인 신문을 하였습니까?
 ① 그렇다.(모욕·위압의 내용:)
 ② 그렇지 않다.
11. 귀하는 군검찰관으로부터 조사에 응하는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폭행,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가혹행위의 유형:)
 ② 없다.
12. 귀하는 군검찰관의 가혹행위에 의하여 허위자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가혹행위의 유형:)
 (허위자백의 내용:)
 ② 없다.

13. 군검찰관이 귀하를 신문할 때, 동료 수사관이 함께 있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4. 군검찰관에게 조사를 받은 후 검찰관이 조서를 읽어보게 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5. 조서를 읽어 보았다면, 조사내용에 대하여 중감·변경을 청구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6. 중감·변경을 청구하였다면, 군검찰관이 이에 응하였습니까?

- ① 신경질적이었지만 응해 주었다.
② 순순히 응해 주었다.
③ 수정을 요구한다고 욕설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④ 중감·변경을 요구했지만 응해 주지 않았다.
⑤ 기타()

17. 응해 주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18. 귀하는 군검찰에 송치된 후, 헌병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진술을 번복하고 싶었지만 헌병대 영창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③ 없다.
④ 기타()

19. 귀하는 군검찰관에게 조사를 받는 동안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 ① 검찰관에게 말하고 갈 수 있었다.
② 급했지만 수사 분위기상 말을 할 수 없었다.
③ 검찰관에게 말하였지만 화장실 이용이 허락되지 않았다.
④ 조사과정 중 생리현상이 없었다.
⑤ 기타()

20. 귀하는 군사재판에 회부된 후에도 헌병수사관에게 불려간 적이 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21. 불려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Ⅷ. 미결구금자의 처우

A. 입창절차

1. 귀하는 영창에 입창시 헌병관계자로부터 미결수용자로서의 권리나, 앞으로 진행될 형사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 ① 듣지 못하였다.
② 형식적으로 들었다.
③ 자세히 들어 영창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④ 기타()

2. 귀하는 영창에 입창시 헌병관계자로부터 미결수용자로서 청원제도, 불복신청권, 소원수리 등의 권리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까?

- ① 듣지 못하였다.
- ② 형식적으로 들었다.
- ③ 자세히 들었다.
- ④ 기타()

3. 귀하는 영창에 입창시 헌병관계자로부터 수용시설 내 적응에 필요한 정보(일과, 규율, 처우, 시설물 이용 등)에 대하여 들었습니까?

- ① 듣지 못하였다.
- ② 형식적으로 들었다.
- ③ 자세히 들어 영창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 ④ 기타()

B. 난방시설

1. 현재 영창의 온도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추워 생활하기 불편하다.
- ② 추운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생활하기에 적당하다.
- ⑤ 기타()

2. 영창내에 난방장치가 있습니까?

- ① 있다.(난방기의 종류:)
- ② 없다.

C. 영창의 밝기/환기

1. 영창내의 밝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어둡다. ② 어둡다. ③ 보통이다. ④ 밝다. ⑤ 매우 밝다.

2. 영창내의 환기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환기가 매우 잘된다.
- ② 잘 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환기가 되지 않는 편이다.
- ⑤ 환기가 되지 않아 공기가 매우 탁하다.

3. 취침시 영창내의 밝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취침등만 켜고 취침하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다.
- ② 모든 조명을 다 켜고 취침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 ③ 기타()

4. 취침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5. 영창내의 습도는 어떠합니까?

- ① 습기가 많이 있다.
- ② 습기가 조금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습기가 차지 않는다.
- ⑤ 기타()

D. 화장실 이용

1. 영창에서 어느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① 영창 내 거실 화장실
- ② 영창 내 화장실
- ③ 영창 밖 화장실
- ④ 기타()

2. 화장실의 청결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청결하다.
- ② 청결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불결하다.
- ⑤ 매우 불결하다.

3. 화장실을 구조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 ① 높이가 낮아 수치스럽다.
- ② 밖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라 수치스럽지 않다.
- ③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이기는 하나, 이용시 큰 소리로 숫자 등을 외치게 해 수치스럽다.
- ④ 기타()

4. 영창에서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①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하여 불편하다.
- ②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하지만 불편하지 않다.
- ③ 언제든지 헌병에게 이야기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하지 않다.
- ④ 헌병의 허락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불편하다.
- ⑤ 기타()

5. 화장실 이용시 특별히 행하는 행동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6. 화장실 이용시 화장지 사용은 어떠합니까?

- ① 헌병이 제공해 주니까 부족하다.
- ② 헌병이 제공해 주긴 하지만, 충분하다.
- ③ 본인이 알아서 가져가기 때문에 충분하다.
- ④ 기타()

7. 영창에서 체벌의 수단으로 화장실 이용을 금지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8. 그 밖의 화장실 사용과 관련하여 권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9. 그 밖의 영창의 시설과 관련하여 권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E. 신제 위생

1. 영창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면도구에 모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면도기 ② 비누 ③ 치약 ④ 칫솔 ⑤ 화장품 ⑥ 수건 ⑦ 기타()

2. 영창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면도구의 지급은 어떠합니까?

- ① 입창자가 자대에서 가져온다.
② 현병대에서 자체 지급한다.
③ 입창자가 자대에서 가져오긴 하지만, 부족한 경우 현병대에서 지급한다.
④ 기타()

3. 세면이나 세족을 할 시간은 어떠합니까?

- ① 충분하다.
② 보통이다.
③ 충분하지 못하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⑥ 기타()

4. 영창에 독립된 목욕실(샤워실)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5. 목욕이나 샤워는 얼마나 자주 합니까?

- ① 매일 ② 주 1회 ③ 주 2회 ④ 2주 1회 ⑤ 전혀 하지 못했다. ⑥ 기타()

6. 목욕이나 샤워 시간은 충분합니까?

- ① 그렇다.(시간:)
② 그렇지 못하다.(시간:)

7. 수건의 사용은 어떠합니까?

- ① 개인적으로 하나씩 사용한다.
② 하나를 가지고 전체가 사용한다.
③ 기타()

8. 속옷이나 군복 등의 세탁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 ① 세면시에 세탁한다.
② 일주일에 1회
③ 일주일에 2회
④ 세탁을 하지 못했다.
⑤ 기타(속옷:)
(군복:)

9. 세탁은 어디에서 합니까?

- ① 세면장 ② 세탁장 ③ 기타()

10. 세탁할 시간은 충분합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11. 면도는 얼마나 자주 할 수 있습니까?

- ① 세면시 언제든지
② 2일에 1회
③ 3일에 1회
④ 1주일에 1회
⑤ 거의 하지 않고 영창에 특별한 사람이 볼 때만 한다.
⑥ 기타()

12. 그 밖의 신체 위생과 관련하여 전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F. 침구/ 의복/ 위생용품

1. 현재 영창에서 지급되는 침구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2. 영창에서 지급되는 침구의 청결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불결하다. ② 불결하다. ③ 보통이다. ④ 깨끗한 편이다. ⑤ 매우 깨끗하다.

3. 침구(이불, 모포, 침낭)는 얼마나 자주 햇볕에 말릴 수 있습니까?

- ① 언제든지 말릴 수 있다. ② 1주일에 1회 ③ 2주일에 1회 ④ 말릴 수 없다.
⑤ 기타()

4. 영창에서 입는 의복은 따로 지급됩니까?

- ① 자대에서 입던 군복
② 영창에서 지급되는 군복

5. 영창에서 지급되는 군복을 입는다면, 그 청결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지저분하다. ② 지저분하다. ③ 보통이다. ④ 깨끗한 편이다. ⑤ 매우 깨끗하다.

G. 감시

1. 영창에 감시카메라가(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① 설치되어 있고, 작동이 잘 되고 있다.
② 설치되어 있지만, 작동이 되지 않는다.
③ 설치되어 있지만, 저녁에만 작동된다.
④ 설치되어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어 가혹행위가 이루어진다.
⑤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영창내 감시 방식은 어떠합니까?

- ① 현병이 복도 내 상주 감시
② 감시카메라로만 감시
③ 1, 2의 병행
④ 기타()

H. 일과

1. 영창에 규정된 일과표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2. 영창의 일과는 규정대로 행해지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일과는 규정대로 이루어지지만 일과표와 그 내용은 다르다.

③ 헌병(구 치소장, 당직사관, 형무담당관) 마음대로 이루어진다.

④ 일과표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다.

⑤ 기타()

3. 영창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지루한 시간과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지루한 시간()

- 고통스러운 시간()

4. 식사시간과 취침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영창 내에서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5. 영창의 일과와 관련하여 특별히 전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I. 식사

1. 영창에서의 식사는 어느 장소에서 합니까?

① 영창내 거실 ② 영창내 독립된 식당 ③ 헌병대 식당 ④ 기타()

2. 영창에서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④ 기타()

3. 영창의 급식 수준은 자대와 비교할 때 어떠합니까?

① 자대 보다 좋다.

② 자대와 같은 수준이다.

③ 자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④ 자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⑤ 기타()

4. 영창의 식사량은 어떠합니까?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5. 영창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식사를 배식하고 있습니까?

① 식당에서 자율배식

② 식당에서 헌병이 일괄배식

③ 영창 내에서 자율배식

④ 영창 내에서 헌병이 일괄배식

⑤ 기타()

6. 헌병이 식사를 지나치게 많이 주면서 강압적으로 남기지 못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자주 있다. ② 간혹 있다. ③ 없다. ④ 기타()

7. 헌병이 식사를 너무 조금 주어 배고픈 적이 있었습니까?

① 자주 있다. ② 간혹 있다. ③ 없다. ④ 기타()

8. 헌병이 식사를 남긴다고 가혹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가혹행위 내용:)

② 없다.

9. 기타 헌병이 식사 배식과 관련하여 가혹행위를 한 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10. 영창에서 식사시 마실 물은 충분히 제공됩니까?

① 충분히 제공된다. ② 보통이다. ③ 부족한 편이다. ④ 매우 부족하다. ⑤ 기타()

11. 영창에서도 자대에서도 같이 식사 외에 간식(음료수, 과일 등)이 제공됩니까?

① 제공되지 않는다.

② 제공되나, 헌병이 경우에 따라서는 주지 않는다.

③ 규정에 따라 제공된다.

④ 기타()

12. 식사 후에 식기 세척과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① 개인 식기만 세척한다.

② 개인 식기뿐만 아니라 헌병들 식기까지 세척한다.

③ 정계입창자가 식기세척을 해 준다.

④ ②와 함께 식당청소까지 한다.

⑤ 기타()

13. 식사 중 헌병의 감시가 심하여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이유:)

② 없다.

14. 식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J. 면회/서신/전화

1. 영창에서 면회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① 매일 할 수 있다. ② 1주일에 한번 ③ 2주에 한번 ④ 3주에 한번 ⑤ 한달에 두번

⑥ 모르겠다. ⑦ 기타()

2. 면회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① 30분 이내 ② 1시간 이내 ③ 1시간 30분 이내 ④ 2시간 이내 ⑤ 2시간 이상

⑥ 부대 상황이나 피의자에 따라 일정치 않음 ⑦ 수용자가 원하는 시간동안 자유롭게

⑥ 모르겠다. ③ 기타()

3. 영창에서 면회는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집니까?

① 면회실 ② 헌병휴게실 ③ 간부식당 ④ 헌병회의실 ⑤ 기타()

4. 영창에서 면회는 자유로웠습니까?

① 매우 자유스러웠다.
② 자유로운 편이다.
③ 입회헌병이 있어 자유스럽지 못하였다.
④ 입회헌병이 있어 매우 자유스럽지 못하였다.
⑤ 기타()

5. 영창에서 편지는 어떻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해당 항목에 모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해진 시간대에만 작성하기 때문에 부자유스럽다.
②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상대가 가족 등에 한정되어 있어 부자유스럽다.
③ 편지에 대한 검열이 심하기 때문에 부자유스럽다.
④ 작성한 편지의 내용을 헌병이 삭제한 적이 있다.
⑤ 기타()

6. 영창에서 편지수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① 외부에서 온 편지를 헌병이 주지 않은 적이 있다.
② 외부에서 온 편지를 헌병이 부분적으로 삭제한 적이 있다.
③ 비교적 자유롭게 받아 볼 수 있다.
④ 기타()

7. 영창에서 편지 작성이나 수발에 대해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이유:)
② 없다.

K. 도서·신문 열독/ TV 시청

1. 영창 내에서 이루어지는 독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모두 V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읽을 만한 책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독서하는 책 한다.
② 영창일과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독서를 강요당한다.
③ 독서는 정좌를 강요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④ 읽고 싶은 책을 헌병에 요청하여 읽을 수 있다.
⑤ 책을 수시로 교체해 주면 좋겠다.
⑥ 독서가 허용되지 않는다.
⑦ 기타()

2. 영창에서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여 읽을 수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3. 영창에서 강제로 독서를 강요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독서와 관련하여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5. 입창 후 신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신문명:) ② 없다.

6. 영창에 입창자를 위한 별도의 신문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① 비치하고 있다.

② 비치하고 있지 않다.

③ 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고 싶다고 하면 헌병이 가져다 준다.

④ 기타()

7. 영창에 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8. 영창에서 TV시청이 가능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9. 영창에서의 TV 시청시간대와 시청프로그램, 시청장소에 대하여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청시간대:()

- 시청프로그램:()

- 시청장소:()

10. 입창자에게 TV 채널 선택권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1. 라디오를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프로그램:) ② 없다.

12. 그 밖의 독서·신문 열독, TV시청과 관련하여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L. 운동

1. 영창 생활 중 운동이 허용됩니까?

① 15분 이내 ② 30분 이내 ③ 1시간 이내 ④ 운동시간이 없다. ⑤ 기타()

2. 운동을 하는 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① 감방 내 ② 복도 ③ 연병장(운동장) ④ 기타()

3. 주로 하는 운동은 무엇인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4. 영창 내에 운동시설, 운동기구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① 있다.(운동시설 및 운동기구:)

② 없다.

5. 영창 하루 일과 중 운동에 관한 규정을 알고 있다면, 규정대로 운동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 ① 규정대로 운동을 한다.
- ② 부분적으로만 허용된다.
- ③ 헌병 마음대로 허용된다.
- ④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다.
- ⑥ 기타()

6. 근무헌병이 운동을 명분삼아 가혹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운동의 내용:)
- ② 없다.

7. 그 밖의 운동과 관련하여 특별히 전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M. 의료

1. 귀하는 입창시 건강상태가 어떠했습니까?

- ① 건강했다. ② 보통이었다. ③ 건강하지 않은 편이었다. ④ 검진을 받을 정도로 아팠다.
- ④ 기타()

2. 귀하는 입창시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까?

- ① 군의관에게 받았다.
- ② 헌병에게 받았다.
- ③ 자대에서 입창되기 전에 미리 형식적으로 받았다.
- ④ 받지 못하였다.
- ⑤ 기타()

3. 귀하는 영창 수용 중에 군의관으로부터 정기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4. 귀하는 영창에서 아팠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병명:)
- ② 없다.

5. 아팠던 적이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 ① 영창으로 군의관이 와서 진료를 하였다.
- ② 영창으로 위생병이 와서 진료를 하였다.
- ③ 헌병이 의무대에 가서 약을 조제하여 왔다.
- ④ 의무대로 가서 군의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 ⑤ 특별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
- ⑥ 기타()

6. 영창에서 의무대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경미하게 아픈 경우, 일과 시간 중 눕는 등의 휴식이 허용됩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7. 귀하는 헌병에게 사단 의무대 외진이나 군의관 진찰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신청하였지만, 진찰을 받지 못하였다.
- ② 신청하여 외진을 받았다.
- ③ 신청하여 군의관의 진찰을 받았다.
- ④ 신청하고 싶었지만, 영창 분위기상 할 수 없었다.
- ⑤ 신청한 적이 없다.
- ⑥ 기타()

8. 영창의 의료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N. 교육 및 작업

1. 입창 기간 중 작업(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자주 있었다. ② 간혹 있었다. ③ 없었다. ④ 기타()

2. 작업을 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작업이 이루어 졌습니까?

- ① 의무적으로 이루어졌다.
- ② 신청자에 한해 이루어졌다.
- ③ 기타()

3. 작업을 하였다면, 작업 시간과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시간: (약 시간(분))
- 작업내용: ()

4. 입창 기간 중에 군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정기적으로 받는다.
- ② 간혹 받는다.
- ③ 거의 받지 않았다.
- ④ 전혀 받지 않았다.
- ⑤ 기타()

5. 군사교육을 받았다면, 군사교육의 경우 자대와 비교해서 그 강도는 어떠했습니까?

- ① 더 높은 강도의 훈련이었다. ② 비슷했다. ③ 낮은 편이었다. ④ 기타()

6. 군사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시간과 내용에 대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사교육 시간: ()
- 군사교육 내용: ()

7. 귀하는 입창기간 중 정신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헌병 장교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
- ② 헌병 부사관으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
- ③ 군중장교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
- ④ 법무장교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
- ⑤ 기타()

8. 정신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의 시간과 내용에 대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교육 시간: ()
- 정신교육 내용: ()

O. 종교

1. 영창에서의 종교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종교행사 자체가 없다.
- ② 군종장교가 비정기적으로 영창을 방문하여 종교행사를 진행한다.
- ③ 군종장교가 정기적으로 영창을 방문하여 종교행사를 진행한다.
- ④ 기타()

2. 영창에서 종교행사가 이루어진다면, 특정종교의 군종장교가 종교행사를 주관하여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종교명:)
- ② 없다.

3. 입창기간 중 외부 종교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4. 참석한 적이 있다면, 종교행사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부대내 종교시설 ② 인근부대 종교시설 ③ 민간 종교시설 ④ 기타()

5. 귀하는 입창기간 중 종교행사를 신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다.
- ② 신청하였지만, 허용되지 않았다.
- ③ 신청하여 종교행사에 참석하였다.
- ④ 신청이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다.
- ⑤ 종교가 없어 모르겠다.
- ⑥ 기타()

P. 부당한 대우/ 가혹행위 등

1. 영창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 ① 정좌(이유:)
- ② 반성문 작성(이유:)
- ③ 수양록 작성(이유:)
- ④ 독서(이유:)
- ⑤ 군기교육(이유:)
- ⑥ 기타 ()

2. 귀하는 영창에서 어떠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까?

- ① 편안한 양반다리자세로 앉아 있다.
- ② 시선을 고정하고 양반다리 자세로 허리를 곧게 펴고, 주먹 쥔 손을 무릎 위에 팔이 구부러지지 않게 올려놓은 자세로 앉아 있다.
- ③ 시선을 고정하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허리를 곧게 펴고, 주먹 쥔 손을 무릎 위에 팔을 구부러지지 않게 올려놓은 자세로 앉아 있다.
- ④ ①② 자세를 병행하여 앉아 있으나 ② 자세를 주로 하여 앉아 있다.
- ⑤ ①②③ 자세를 병행하여 앉아 있다.
- ⑥ 기타 자세()

3. 귀하는 근무현병으로부터 영창 일과 시간 중 정좌(위 문항의 ② 자세)를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이유:)
(시간:)
② 없다.

4. 있다면, 그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5. 영창에서 정좌는 하루 어느 정도 합니까?

- ①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②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동안
③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동안
④ 규정된 시간대에
⑤ 현병근무자 마음대로
⑥ 기타 ()

6. 귀하는 영창에서 근무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7.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잠버릇 불량 ② 정좌자세 불량 ③ 영창내 규율위반 ④ 식사태도 불량
⑤ 기타()

8.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그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욕설 ② 폭행 ③ 원산폭격(머리박기) ④ 규정시간외 정좌강요 ⑤ 잠 안 재우기
⑥ 기타()

9.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0. 귀하는 영창에서 현병으로부터 징계입창자가 미결수나 기결수 보다 못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1. 징계입창자가 미결수나 기결수보다 못한 차별대우를 받았다면, 그 이유와 차별대우 내용에 대하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
- 내용()

12. 귀하는 반성문이나 수양록 작성을 현병이 읽어보는 것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3. 귀하는 반성문이나 수양록 작성을 잘못하였다고, 근무현병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부당한 대우의 내용:)
② 없다.

14. 귀하는 영창에 있으면서 부당한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부당한 작업의 내용:)
② 없다.

15. 귀하가 영창 내에 있을 때 훈련병이 영창을 참관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6. 훈련병이 영창을 참관한 적이 있었다면, 그 당시 어떠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까?

- ① 벽을 보고 뒤돌아 앉아 있었다.
② 훈련병을 마주 보고 앉아 있었다.
③ 기타()

17. 훈련병이 영창을 참관한 적이 있다면, 그때 느낀 감정은 어떠했습니까?

- ① 모멸감을 느꼈다. ② 별 감정이 없었다. ③ 기타 ()

18. 귀하는 입창기간 중 귀하보다 먼저 입창한 입창자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가혹행위 내용:)
② 없다.

19. 귀하는 영창내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불복신청, 소원수리 등을 헌병간부에게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0. 있었다면,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
- 내용()

Q. 구속장소 감찰/ 징벌

1. 귀하는 영창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군검찰관이나 군판사 등이 영창을 감찰하였습니까?

- ① 하지않았다.
②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둘러보았다.
③ 영창내 상황이나 권리침해여부를 상세히 감찰하였다.
④ 기타()

2. 귀하는 영창 내에서 징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3. 징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징벌의 사유와 징벌의 내용에 대하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
- 내용()

■ 정계입창자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사업인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군 영창 내에서의 인권상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앞으로 장병의 인권이 더 존중될 수 있는 영창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답해주신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구자만 알 수 있으며, 학술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완전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병이나 군 관계자들이 알 수 없으며 설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해주셔야 영창 내 인권상황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장병의 인권이 철저히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우시더라도 끝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관식 설문은 자세하게 꼭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중에 질문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구진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영창 인권실태와 관련하여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정제일반

A. 정제사유 등

1. 귀하의 생년월일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2. 귀하의 계급은 무엇입니까?

① 이병 ② 일병 ③ 상병 ④ 병장

3. 귀하가 소속된 부대 단위는?

① 군사령부 ② 군단 ③ 사단 ④ 여단 ⑤ 연대 ⑥ 대대 ⑦ 중대 ⑧ 소대

⑨ 기타 ()

4. 귀하의 정제지휘관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① 중대장 ② 대대장 ③ 연대장 ④ 여단장 ⑤ 기타()

5. 귀하는 어떠한 사유로 정제영창처분을 받았습니까?

① 하급자 폭행 ② 상급자 폭행 ③ 동료간 싸움 ④ 상급자 명령불복종 ⑤ 근무태만 ⑥ 음주

⑦ 지휘관 지시위반(위반의 내용:) ⑧ 기타()

6. 귀하의 입창기간은 몇 일입니까?

()

7. 귀하는 입창기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정제사유에 비하여 정제일수가 너무 길다.

② 정제사유에 맞게 정제일수가 적당한 것 같다.

③ 정제사유에 비하여 정제일수가 적은 것 같다.

④ 기타()

B. 정제절차

1. 귀하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2. 귀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3.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귀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였습니까?

- ①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계급사회라는 군의 특성상 할 수 없었다.
② 진술할 기회가 주어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③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지휘관이 일방적으로 신문만 하였다.
④ 참석은 하였지만, 이미 징계절차가 끝난 상태에서 징계일수에 대한 일방적 통보만 받았다.
⑤ 기타()

4. 귀하는 입창기간이 지휘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보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5. 귀하는 징계영창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이유:)
② 그렇지 않다.

6. 귀하는 징계시 영창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는 말을 지휘관(징계위원)으로부터 들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7. 귀하는 징계영창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항고를 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8. 귀하는 이른바 ‘뺨’있는 사병이 징계영창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창을 가지 않은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II. 입창절차

1. 귀하는 입창시에 헌병에서 조사를 받았습니까?

- ① 그렇다. (조사의 내용:)
② 그렇지 않다.

2. 조사를 받았다면,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 ① 그렇다. (부당한 대우의 내용:)
② 그렇지 않다.

3. 귀하는 입창시에 헌병관계자로부터 영창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 ① 교육을 받았지만, 형식적이어서 영창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② 자세한 교육을 받아 영창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③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④ 기타()

Ⅲ. 부당한 대우/ 가혹행위 등

1. 귀하는 영창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 ① 정좌(이유:)
- ② 반성문 작성(이유:)
- ③ 수양록 작성(이유:)
- ④ 독서(이유:)
- ⑤ 군기교육(이유:)
- ⑥ 기타 ()

2. 귀하는 영창에서 어떠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까?

- ① 편안한 양반다리자세로 앉아 있다.
- ② 시선을 고정하고 양반다리 자세로 허리를 곧게 펴고, 주먹 쥔 손을 무릎 위에 팔이 구부러지지 않게 올려놓은 자세로 앉아 있다.(정좌)
- ③ 시선을 고정하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허리를 곧게 펴고, 주먹 쥔 손을 무릎 위에 팔을 구부러지지 않게 올려놓은 자세로 앉아 있다.(평좌)
- ④ ①② 자세를 병행하여 앉아 있으나 ② 자세를 주로 하여 앉아 있다.
- ⑤ ①②③ 자세를 병행하여 앉아 있다.
- ⑥ 기타 자세()

3. 귀하는 근무현병으로부터 영창 일과 시간 중 정좌(위 문항의 ② 자세)를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이유:)
(정좌시간:)
- ② 없다.

4. 귀하는 수양정좌와 관련하여 위 문항 ② 자세 이외의 자세로 규정시간 이상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이유:)
(앉아 있던 자세:)
- ② 없다.

5. 귀하는 영창에서 근무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6.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감버릇 불량 ② 정좌자세 불량 ③ 영창내 규율위반 ④ 식사태도 불량 ⑤ 기타()

7.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그 행위는 무엇이었습니다?

- ① 욕설 ② 폭행 ③ 원산폭격(머리박기) ④ 규정시간외 정좌강요 ⑤ 잠 안 재우기
- ⑥ 기타()

8.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9. 귀하는 영창에서 징계입창자가 미결입창자보다 못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0. 미결수나 기결수보다 못한 차별대우를 받았다면, 그 이유와 차별대우 내용에 대하여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
- 내용{

11. 귀하가 영창에서 작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수양록 ② 반성문 ③ 수양록, 반성문 모두 ④ 기타()

12. 귀하는 반성문 작성을 헌병이 읽어보는 것에 수치심을 느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헌병이 읽어보는지 모르겠다. ④ 기타()

13. 귀하는 수양록 작성을 헌병이 읽어보는 것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헌병이 읽어보는지 모르겠다. ④ 기타()

14. 귀하는 반성문이나 수양록 작성을 잘못하였다고, 근무헌병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부당한 대우의 내용:)

② 없다.

15. 귀하는 영창에 있으면서 부당한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부당한 작업의 내용:)

② 없다.

16. 귀하가 영창 내에 있을 때 훈련병이 영창을 참관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7. 훈련병이 영창을 참관한 적이 있었다면, 그 당시 어떠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까?

① 벽을 보고 뒤돌아 앉아 있었다.

② 훈련병을 마주 보고 앉아 있었다.

③ 기타()

18. 훈련병이 영창을 참관한 적이 있다면, 그때 느낀 감정은 어떠했습니까?

- ① 모멸감을 느꼈다. ② 수치스러웠다. ③ 별 감정이 없었다. ④ 기타 ()

19. 귀하는 입창기간 중 귀하보다 먼저 입창한 입창자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가혹행위 내용:)

② 없다.

IV. 영창시설과 생활환경

A. 난방시설

1. 현재 영창내의 온도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추워 생활하기 불편하다.

- ② 추운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생활하기에 적당하다.
- ⑤ 기타()

2. 영창내에 난방장치가 있습니까?

- ① 있다.(난방기의 종류:) ② 없다.

B. 영창의 밝기/환기

1. 영창내의 밝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어둡다. ② 어둡다. ③ 보통이다. ④ 밝다. ⑤ 매우 밝다.

2. 영창내의 환기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환기가 매우 잘된다.
- ② 잘 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환기가 되지 않는 편이다.
- ⑤ 환기가 되지 않아 공기가 매우 탁하다.

3. 취침시 영창내의 밝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취침등만 켜고 취침하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다.
- ② 모든 조명을 다 켜고 취침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 ③ 기타()

4. 취침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5. 영창내의 습도는 어떠합니까?

- ① 습기가 많이 있다.
- ② 습기가 조금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습기가 차지 않는다.
- ⑤ 기타()

C. 화장실 이용

1. 영창에서 어느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① 영창 거실내 화장실
- ② 영창내 화장실
- ③ 영창 밖 화장실
- ④ 기타()

2. 화장실의 청결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청결하다.
- ② 청결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불결하다.

⑤ 매우 불편하다.

3. 화장실의 칸막이 높이는 어떠합니까?

- ① 높이가 낮아 수치스럽다.
② 밖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라 수치스럽지 않다.
③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이기는 하나, 이용시 큰 소리로 숫자 등을 외치게 해 수치스럽다.
④ 기타()

4. 영창에서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①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하여 불편하다.
②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하지만 불편하지 않다.
③ 언제든지 헌병에게 이야기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하지 않다.
④ 헌병의 허락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불편하다.
⑤ 기타()

5. 화장실 이용시 화장지 사용은 어떠합니까?

- ① 헌병이 제공해 주니까 부족하다.
② 헌병이 제공해 주긴 하지만, 충분하다.
③ 본인이 알아서 가져가기 때문에 충분하다.
④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어 충분하다.
⑤ 기타()

6. 영창에서 체벌의 수단으로 화장실 이용을 금지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이유:)
② 없다.

7. 그 밖의 화장실 사용과 관련하여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8. 그 밖의 영창의 시설과 관련하여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V. 입창자 위생관련

A. 신체 위생

1. 영창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면도구에 모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면도기 ② 비누 ③ 치약 ④ 칫솔 ⑤ 화장품 ⑥ 수건 ⑦ 기타()

2. 영창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면도구의 지급은 어떠합니까?

- ① 입창자가 자대에서 가져온다.
② 헌병대에서 자체 지급한다.
③ 입창자가 자대에서 가져오긴 하지만, 부족한 경우 헌병대에서 지급한다.
④ 기타()

3. 세면이나 세족을 할 시간은 어떠합니까?

- ① 충분하다. ② 보통이다. ③ 충분하지 못하다. ④ 매우 부족하다. ⑤ 기타()

4. 영창에 독립된 목욕실(샤워실)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 목욕이나 샤워는 얼마나 자주 합니까?

① 매일 ② 주 1회 ③ 주 2회 ④ 2주 1회 ⑤ 전혀 하지 못했다. ⑥ 기타()

6. 목욕이나 샤워 시간은 충분합니까?

① 그렇다.(시간:) ② 그렇지 못하다.(시간:)

7. 수건의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① 개인적으로 하나씩 사용한다.
② 하나를 가지고 전체가 사용한다.
③ 기타()

8. 속옷이나 군복 등의 세탁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 속옷()
- 군복()

9. 세탁은 어디에서 합니까?

① 세면장 ② 세탁장 ③ 기타()

10. 세탁할 시간은 충분합니까?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⑥ 기타()

11. 면도는 얼마나 자주 할 수 있습니까?

① 세면시 언제든지 ② 2일에 1회 ③ 3일에 1회 ④ 1주일에 1회
⑤ 거의 하지 않고 영창에 특별한 사람이 볼 때만 한다.
⑥ 기타()

12. 그 밖의 신체 위생과 관련하여 권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B. 침구/ 의복/ 위생용품

1. 현재 영창에서 지급되는 침구는 어떻게 합니까?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2. 영창에서 지급되는 침구의 청결상태는 어떻게 합니까?

① 매우 불결하다. ② 불결하다. ③ 보통이다. ④ 깨끗한 편이다. ⑤ 매우 깨끗하다.

3. 침구(이불, 모포, 침낭)는 얼마나 자주 햇볕에 말릴 수 있습니까?

① 언제든지 말릴 수 있다. ② 1주일에 1회 ③ 2주일에 1회 ④ 말릴 수 없다.
⑤ 기타()

4. 영창에서는 어떠한 의복을 입고 있습니까?

① 자대에서 입던 군복

② 영창에서 지급되는 군복

5. 영창에서 지급되는 군복을 입는다면, 그 청결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 지저분하다. ② 지저분하다. ③ 보통이다. ④ 깨끗한 편이다. ⑤ 매우 깨끗하다.

Ⅶ. 감시

1. 영창에 감시카메라가(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① 설치되어 있고, 작동이 잘 되고 있다.
- ② 설치되어 있지만, 작동이 되지 않는다.
- ③ 설치되어 있지만, 저녁에만 작동된다.
- ④ 설치되어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어 가혹행위가 이루어진다.
- ⑤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영창내 감시 방식은 어떠합니까?

- ① 현병이 복도 내 상주 감시
- ② 감시카메라로만 감시
- ③ 1, 2의 병행
- ④ 기타()

Ⅷ. 영창내 처우

A. 일과

1. 영창에 규정된 일과표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2. 영창의 일과는 규정대로 행해지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일과는 규정대로 이루어지지만 일과표와 그 내용은 다르다.
- ③ 현병(구 치소장, 당직사관, 형무담당관) 마음대로 이루어진다.
- ④ 일과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다.
- ⑤ 기타()

3. 영창에서 명상은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 ① 그냥 눈만 감고 앉아 있다.
- ②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앉아 있다.
- ③ 일과표에 명상 시간은 있으나 실시하고 있지 않다.
- ④ 기타()

4. 수양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5. 점호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6. 영창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지루한 시간과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지루한 시간()

- 공통스러운 시간()

7. 식사시간과 취침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영창 내에서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8. 영창의 일과와 관련하여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B. 식사

1. 영창에서의 식사는 어느 장소에서 합니까?

① 영창내 거실 ② 영창내 독립된 식당 ③ 현병대 식당 ④ 기타()

2. 영창에서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④ 기타()

3. 영창의 급식 수준은 자대와 비교할 때 어떠합니까?

① 자대 보다 좋다.
② 자대와 같은 수준이다.
③ 자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④ 자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⑤ 기타()

4. 영창의 식사량은 어떠합니까?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5. 영창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식사를 배식하고 있습니까?

① 식당에서 자술배식
② 식당에서 현병이 일괄배식
③ 영창 내에서 자술배식
④ 영창 내에서 현병이 일괄배식
⑤ 기타()

6. 영창에서도 자대에서와 같이 식사 외에 간식(음료수, 과일 등)이 제공됩니까?

① 제공되지 않는다.
② 제공되나, 현병이 경우에 따라서는 주지 않는다.
③ 규정에 따라 제공된다.
④ 기타()

7. 현병이 식사를 지나치게 많이 주면서 강압적으로 남기지 못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자주 있다. ② 간혹 있다. ③ 없다. ④ 기타()

8. 현병이 식사를 너무 조금 주어 배고픈 적이 있었습니까?

① 자주 있다. ② 간혹 있다. ③ 없다. ④ 기타()

9. 현병이 식사를 남긴다고 가혹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가혹행위 내용:)

② 없다.

10. 식사 중 현병의 감시가 심하여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이유:)
② 없다.

11. 기타 현병이 식사 배식과 관련하여 가족행위를 한 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12. 영창에서 식사시 마실 물은 충분히 제공됩니까?

① 충분히 제공된다. ② 보통이다. ③ 부족한 편이다. ④ 매우 부족하다. ⑤ 기타()

13. 식사 후에 식기 세척과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① 개인 식기만 세척한다.
② 징계입창자가 미결입창자들 식기까지 세척한다.
③ 징계입창자가 미결입창자뿐만 아니라 현병들 식기까지 세척한다.
④ ②와 함께 식당청소까지 한다.
⑤ 기타()

14. 식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C. 면회/서신/전화

1. 징계입창자에게도 면회가 허용되고 있습니까?

① 자대 관계자에게만 허용된다.
② 자대 관계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면회가 허용된다.
③ 제한 없이 허용되지만 면회를 신청한 적이 없다.
④ 징계입창자에 대해서는 면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⑤ 모르겠다.
⑥ 기타()

2. 징계입창자에 대한 면회가 허용된다면,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① 30분 이내 ② 1시간 이내 ③ 1시간 30분 이내 ④ 2시간 이내 ⑤ 2시간 이상
⑥ 부대 상황이나 피회자에 따라 일정치 않음
⑦ 수용자가 원하는 시간동안 자유롭게
⑧ 모르겠다.
⑨ 기타()

3. 징계입창자에 대한 면회가 허용된다면, 면회는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집니까?

① 면회실 ② 현병휴게실 ③ 간부사무실 ④ 현병회의실 ⑤ 기타()

4. 징계입창자도 편지작성과 발송이 가능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5. 편지작성과 발송이 가능하다면, 편지 내용에 대한 검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① 모든 편지에 대해 현병이 검열한다.

- ② 검열하지 않는다.
- ③ 검열이 필요한 편지에 대해서만 검열한다.
- ④ 기타()

6. 징계입창자가 외부와 전화통화를 원할 때 허용됩니까?

- ①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가족의 경우에는 필요한 때 허용된다.
- ③ 가족뿐만 다른 외부인에게도 허용된다.
- ④ 자대 간부와의 통화만 가능하다.
- ⑤ 가족과 통화를 하고 싶었지만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 하지 못했다.
- ⑥ 기타()

D. 도서·신문 열독/ TV 시청

1. 영창에서 책을 자유롭게 읽는 것이 가능합니까?

- ① 징계입창자에게는 독서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영창 내에 있는 책은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
- ③ 규정된 시간대에만 독서를 할 수 있다.
- ④ 기타()

2. 영창에 입창시에 자신이 읽을 수 있는 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3. 영창에서 강제로 독서를 강요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이유:)
- ② 없다.

4. 독서와 관련하여 특별히 진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5. 입창 후 신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신문명:) ② 없다.

6. 영창에서 입창자를 위하여 별도로 신문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 ① 비치하고 있다.
- ② 비치하고 있지 않다.
- ③ 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고 싶다고 하면 헌병이 가져다 준다.
- ④ 기타()

7. 영창에 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8. 영창에서 TV시청이 가능합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9. 영창에서의 TV 시청시간대와 시청프로그램, 시청장소에 대하여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청시간대:()
- 시청프로그램:()
- 시청장소:()

10. 입창자에게 TV 채널 선택권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1. 라디오를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프로그램:) ② 없다.

12. 그 밖의 독서·신문 열독, TV시청과 관련하여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E. 운동

1. 영창 생활 중 운동이 허용됩니까?

- ① 15분 이내 ② 30분 이내 ③ 1시간 이내 ④ 운동시간이 없다. ⑤ 기타()

2. 운동을 하는 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 ① 감방 내 ② 복도 ③ 연병장(운동장) ④ 기타()

3. 주로 하는 운동은 무엇인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4. 영창 내에 운동시설, 운동기구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 ① 있다.(운동시설 및 운동기구:)
② 없다.

5. 영창 하루 일과 중 운동에 관한 규정을 알고 있다면, 규정대로 운동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 ① 규정대로 운동을 한다.
② 부분적으로만 허용된다.
③ 현병 마음대로 허용된다.
④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다.
⑥ 기타()

6. 그 밖의 운동과 관련하여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F. 의료

1. 귀하는 입창시 건강상태가 어떠했습니까?

- ① 건강했다. ② 보통이었다. ③ 건강하지 않는 편이었다. ④ 검진을 받을 정도로 아팠다.
⑤ 기타()

2. 귀하는 입창시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까?

- ① 군의관에게 받았다.
② 현병에게 받았다.
③ 자대에서 입창되기 전에 미리 형식적으로 받았다.
④ 받지 못하였다.

⑤ 기타()

3. 귀하는 영창 수용 중에 군의관으로부터 정기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귀하는 영창에서 아팠던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병명:)

② 없다.

5. 아팠던 적이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 ① 영창으로 군의관이 와서 진료를 하였다
② 영창으로 위생병이 와서 진료를 하였다
③ 현병이 의무대에 가서 약을 조제하여 왔다.
④ 의무대로 가서 군의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⑤ 특별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
⑥ 기타()

6. 영창에서 의무대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경미하게 아픈 경우, 일과 시간 중 눕는 등의 휴식이 허용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7. 귀하는 현병에게 사단 의무대 외진이나 군의관 진찰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신청하였지만, 진찰을 받지 못하였다.
② 신청하여 외진을 받았다.
③ 신청하여 군의관의 진찰을 받았다.
④ 신청하고 싶었지만, 영창 분위기상 할 수 없었다.
⑤ 신청한 적이 없다.
⑥ 기타()

8. 영창의 의료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전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G. 교육 및 작업

1. 입창 기간 중 작업(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자주 있었다. ② 간혹 있었다. ③ 없었다. ④ 기타()

2. 작업을 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작업이 이루어 졌습니까?

- ① 의무적으로 이루어졌다.
② 신청자에 한해 이루어졌다.
③ 기타()

3. 작업을 하였다면, 작업 시간과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시간:(약 시간(분))
- 작업내용:()

4. 입창 기간 중에 군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정기적으로 받는다.

- ② 간혹 받는다.
- ③ 받지 않았다.
- ④ 기타()

5. 군사교육을 받았다면, 군사교육의 경우 자대와 비교해서 그 강도는 어떠했습니까?
 ① 더 높은 강도의 훈련이었다. ② 비슷했다. ③ 낮은 편이었다. ④ 기타()

6. 군사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시간과 내용에 대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사교육 시간: { }
 - 군사교육 내용: { }

7. 귀하는 입창기간 중 정신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현병 장교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
 ② 현병 부사관으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
 ③ 군종장교로부터 정신을 교육을 받았다.
 ④ 법무장교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
 ⑤ 없다.
 ⑥ 기타()

8. 정신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의 시간과 내용에 대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교육 시간: { }
 - 정신교육 내용: { }

H. 종교

1. 영창에서의 종교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종교행사 자체가 없다.
 ② 군종장교가 비정기적으로 영창을 방문하여 종교행사를 진행한다.
 ③ 기타()

2. 영창에서 종교행사가 이루어진다면, 특정종교의 군종장교가 종교행사를 주관하여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종교명:) ② 없다.

3. 입창기간 중 외부 종교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참석한 적이 있다면, 종교행사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부대내 종교시설 ② 인근부대 종교시설 ③ 민간 종교시설 ④ 기타()

5. 귀하는 입창기간 중 종교행사를 신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다.
 ② 신청하였지만, 허용되지 않았다.
 ③ 신청하여, 종교행사에 참석하였다.
 ④ 신청이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다.
 ⑤ 종교가 없어 모르겠다.
 ⑥ 기타()

Ⅷ. 영창제도의 필요성 여부

1. 귀하는 징계영창제도가 사병에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2. 징계영창제도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군기강 확립 ② 지휘관의 지휘권 강화 ③ 형사처벌보다는 징계영창처분이 가볍기 때문
④ 기타()

3. 징계영창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휘관 마음대로 징계가 이루어진다.
② 입창도 되고 군복무일수도 늘어나서 너무 과도하다.
③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이루어진다.
④ 영창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으며, 자대에 복귀해서는 군복무가 더 힘들어 진다.
⑤ 기타()

4. 귀하는 만약 징계영창제도가 폐지된다면, 그 대안으로 어떠한 제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강등 활용 ② 휴가제한 활용 ③ 면회·외출제한 활용 ④ 감봉활용 ⑤ 군복무일수 연장
⑥ 기타 ()

5. 기타 사병의 입장에서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영창관리자(책임장교, 형무담당관) 면접설문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사업인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군 영창 내에서의 인권상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앞으로 장병의 인권이 더 존중될 수 있는 영창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답해주신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구자만 알 수 있으며, 학술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완전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는 귀하께서 영창에 근무하면서 느낀 점을 성실하게 응답해주셔야 영창내 인권상황이 제대로 파악되며, 이를 통하여 앞으로 장병의 인권이 철저히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우시더라도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관식 설문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중에 설문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구진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실태와 관련하여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영창관리 일반

1. 귀하의 계급은 무엇입니까?

① 중사 ② 상사 ③ 원사 ④ 중위 ⑤ 대위 ⑥ 소령 ⑦ 기타()

2. 귀 부대 영창의 담당 인력에 대하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영창담당부서:

- 책임장교: (계급: 인원: 명)

- 형무담당관: (계급: 인원: 명)

- 근무병: (명)

3. 귀 부대의 영창 내에는 수용자들의 신원, 범행 동기, 범행관할, 입소와 출소 일시 등을 기재한 등록부를 비치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4. 귀 부대의 영창의 수용자들은 어떻게 분리수용이 되고 있는지 해당 항목에 모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분별 분리수용(장교, 부사관, 병, 민간인)

② 징계처분자와 형사처분자

③ 기결수와 미결수

④ 초범자와 재범자

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자

II. 영창관리자 인권교육관련

1. 귀하는 군행형업무(교정관련교육)와 관련하여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 있다면, 그 교육기관, 교육기간, 교육내용에 대하여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관:
- 교육기간:
- 교육내용:

3. 귀하는 영창근무 전이나 근무 후에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있다면, 그 교육기관, 교육기간, 교육내용에 대하여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관:
 - 교육기간:
 - 교육내용:

Ⅲ. 영창시설과 생활환경

1. 영창내에 난방장치가 있습니까?
 ① 있다.(난방기의 종류:) ② 없다.

2. 있다면, 난방기, 난방 시간대와 영창내 온도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난방기: 월 일~ 월 일
 - 난방시간대:
 - 영창내 온도:

3. 영창내의 밝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어둡다. ② 어둡다. ③ 보통이다. ④ 밝다. ⑤ 매우 밝다.

4. 영창내의 환기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환기가 매우 잘된다. ② 잘 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환기가 되지 않는 편이다.
 ⑤ 환기가 되지 않아 공기가 매우 탁하다.

5. 영창내의 습도는 어떠합니까?
 ① 습기가 많이 찬다. ② 습기가 조금 찬다. ③ 보통이다. ④ 습기가 차지 않는다.
 ⑤ 기타()

6. 영창에서는 어느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① 영창 내 거실 화장실 ② 영창 내 화장실 ③ 영창 밖 화장실 ④ 기타()

7. 화장실의 청결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 청결하다. ② 청결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결하다. ⑤ 매우 불결하다.

8. 화장실의 구조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① 입창자 감시를 위해, 높이가 낮아 밖에서 볼 수 있는 구조이다.
 ② 밖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이다.
 ③ 기타()

9. 화장실이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입창자가 화장실 이용시 자해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10. 영창에서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①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한다.
- ② 언제든지 근무현병에게 이야기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③ 기타()

11. 화장실 이용시 화장지 사용은 어떻게합니까?

- ① 현병이 제공해 준다.
- ② 본인이 알아서 가져가기 때문에 충분하다.
- ③ 기타()

Ⅳ. 미결입창자 부분

A. 입창시 교육

1. 귀 부대의 영창은 미결입창자에게 미결수용자로서의 권리나, 앞으로 진행될 형사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까?

- ①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 ② 형식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 ③ 설명해 주지 않는다.
- ④ 기타()

2. 귀 부대의 영창은 입창시에 미결입창자에게 청원제도, 불복신청권, 소원수리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 ①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 ② 형식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 ③ 설명해 주지 않는다.
- ④ 기타()

3. 귀 부대의 영창은 입창시에 미결입창자에게 수용시설 내 적용에 필요한 정보(일과, 규율, 처우, 시설물 이용 등)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 ①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 ② 형식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 ③ 설명해 주지 않는다.
- ④ 기타()

B. 신체 위생

1. 영창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면도구의 지급은 어떻게합니까?

- ① 입창자가 자대에서 가져온다.
- ② 현병대에서 자체 지급한다.
- ③ 입창자가 자대에서 가져오긴 하지만, 부족한 경우 현병대에서 지급한다.
- ④ 기타()

2. 영창내에 독립된 목욕실(샤워실)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3. 입창자가 목욕이나 샤워는 얼마나 자주 합니까?

- ① 매일 ② 주 1회 ③ 주 2회 ④ 2주 1회 ⑤ 전혀 하지 못했다. ⑥ 기타()

4. 입찰자가 속옷이나 의복의 세탁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 ① 세면시에 세탁한다. ② 일주일에 1회 ③ 일주일에 2회 ④ 세탁을 하지 못했다.
⑤ 기타()

5. 입찰자가 세탁은 어디에서 합니까?

- ① 세면장 ② 세탁장 ③ 기타()

6. 입찰자가 면도는 얼마나 자주 할 수 있습니까?

- ① 세면시 언제든지 ② 2일에 1회 ③ 3일에 1회 ④ 1주일에 1회
⑤ 거의 하지 않고 영창에 특별한 사람이 볼 때만 한다. ⑥ 기타()

C. 침구/ 의복/ 위생용품

1. 현재 미결입찰자에게 지급되는 침구에 대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모포: 개
- 침낭: 개
- 매트리스: 개
- 베개: 개
- 기타:

2. 영창에서 지급되는 침구의 세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3. 영창에서 침구(이불, 모포, 침낭)는 얼마나 자주 햇볕에 말릴 수 있습니까?

- ① 언제든지 말릴 수 있다. ② 1주일에 1회 ③ 2주일에 1회 ④ 말릴 수 없다.
⑤ 기타()

D. 감시

1. 영창에 감시카메라가(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①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가동된다.
② 설치되어 있지만, 작동이 되지 않는다.
③ 설치되어 있지만, 저녁에만 작동된다.
④ 설치되어 있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⑤ 설치되어 있지 않다.
⑥ 기타

2. 영창내 감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① 현병이 복도 내 상주 감시
② 감시카메라로만 감시
③ 1, 2의 병행
④ 기타()

E. 일과

1. 귀 부대의 영창은 미결수와 기결수가 구별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일과표)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미/기결수 모두 같은 일과표를 가지고 교육한다.
- ② 미/기결수가 구별된 헌병대 자체 일과표가 따로 있다.
- ③ 특별한 일과표가 없다.
- ④ 기타()

2. 미결입창자의 주요 일과내용은 무엇인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3. 귀 부대의 영창은 미결입창자에 대한 수양록 점검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① 형무담당관이 수양록을 읽어보고 미결입창자의 반성정도를 파악한다.
- ② 형무담당관, 책임장교 등이 수양록을 읽어보고 미결입창자의 반성정도를 파악한다.
- ③ 헌병대장만이 수양록을 읽어보고 미결입창자의 반성정도를 파악한다.
- ④ 수양록은 읽어보지 않으며 형식적으로 작성여부만 파악한다.
- ⑤ 기타()

4. 귀 부대의 경우 미결입창자가 수양록 이외에 다른 것을 작성하고 있는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F. 식사

1. 영창에서의 식사는 어느 장소에서 합니까?

- ① 영창내 거실 ② 영창내 독립된 식당 ③ 헌병대 식당 ④ 기타()

2. 영창에서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합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④ 기타()

3. 영창의 급식 수준은 자대와 비교할 때 어떠합니까?

- ① 자대 보다 좋다.
- ② 자대와 같은 수준이다.
- ③ 자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④ 자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 ⑤ 기타()

4. 영창의 식사량은 어떠합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5. 영창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식사를 배식하고 있습니까?

- ① 식당에서 자술배식
- ② 식당에서 헌병이 일괄배식
- ③ 영창 내에서 자술배식
- ④ 영창 내에서 헌병이 일괄배식
- ⑤ 기타()

6. 미결입창자에게 자대에서와 같은 정도의 부식(음료수, 빵, 과일 등)이 지급됩니까?

- ① 미결입창자에게는 규정상 부식이 지급되지 않는다.
- ② 미결입창자에게도 규정상 부식이 지급되며, 규정에 따라 입창자에게 지급한다.
- ③ 미결입창자에게도 규정상 부식이 지급되지만, 입창자가 규율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때도 있다.

④ 기타()

7. 미결입창자가 식사할 때 감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G. 면회/서신/전화

1. 입창자의 면회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기결수 매(월, 주, 일) 회

- 미결수 매(월, 주, 일) 회

2. 면회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① 30분 이내 ② 1시간 이내 ③ 1시간 30분 이내 ④ 2시간 이내 ⑤ 2시간 이상

⑥ 부대 상황이나 피의자에 따라 일정치 않음 ⑦ 수용자가 원하는 시간동안 자유롭게

⑧ 기타()

3. 면회는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집니까?

① 면회실 ② 헌병휴게실 ③ 간부사무실 ④ 헌병회의실 ⑤ 기타()

4. 서신수발이 가능하다면, 검열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① 모든 서신을 검열한다.

② 검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신만 한다.

③ 검열하지 않는다.

④ 기타()

5. 미결입창자가 외부와 전화통화를 원할 때 허용됩니까?

① 허용되지 않는다.

② 가족의 경우에는 필요한 때 허용된다.

③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인에게도 허용된다.

④ 자대 간부와만 통화만 가능하다.

⑤ 기타()

H. 도서·신문 열독/ TV 시청

1. 미결입창자가 영창에서 책을 자유롭게 읽는 것이 가능합니까?

① 영창 내에 비치하고 있는 책은 입창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읽을 수 있다.

② 헌병근무자가 독서 시간대에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③ 기타()

2. 미결입창자가 원하는 경우 자신이 읽을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입창할 수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3. 귀 부대의 영창은 어느 장소에 책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① 영창 거실 내에 비치하여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한다.

② 헌병이 근무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입창자가 보고 싶은 책을 원할 때 가져다 준다.

③ 형무담당관실에 비치하고 입창자가 보고 싶은 책을 원할 때 가져다 준다.

④ 책임장교실에 비치하고 입창자가 보고 싶은 책을 원할 때 가져다 준다.

⑤ 기타()

4. 미결입창자를 위하여 별도로 신문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 ① 비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입창자가 볼 수 있다.
② 비치하고 있지 않다.
③ 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창자가 보고 싶다면 헌병이 가져다가 준다.
④ 기타()

5. 영창에 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6. 미결입창자의 TV 시청이 가능합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7. 미결입창자의 TV 시청 시간대와 시청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청시간대:
- 시청프로그램:

8. 미결입창자의 TV 시청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청 시설:
- 시청 방법:

9. 미결입창자에게 TV 채널 선택권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0. 영창에서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까?

- 청취시간대:
- 청취프로그램:

I. 운동

1. 미결입창자에 대한 운동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 ① 1일 1시간 이내
② 1일 2시간 이내
③ 1일 3시간 이내
④ 특별한 운동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⑤ 기타()

2. 운동은 주로 어느 장소에서 합니까?

- ① 감방 내 ② 복도 ③ 연병장(운동장) ④ 기타()

3. 미결입창자에 대한 운동실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실내 운동(운동의 종류:)
② 실외 운동(운동의 종류:)
③ 기타()

4. 영창에서 주로 하는 운동은 무엇인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5. 영창 내에 운동시설, 운동기구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 ① 있다.(운동시설 및 운동기구:)
② 없다.

6. 영창 하루 일과 중 운동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규정대로 운동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기타()

J. 의료

1. 미결입창자에 대한 건강상태 판단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① 입창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군의관의 소견서로만 확인
② 입창서류를 참조하여 형무담당관이 직접 확인
③ 기타()

2. 미결입창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① 매주 1회 군의관이 실시
② 매주 1회 책임장교나 형무담당관이 실시
③ 매월 1회 군의관이 실시
④ 매월 1회 책임장교나 형무담당관이 실시
⑤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나 입창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실시
⑥ 기타()

3. 미결입창자에 대한 진단 서류를 보관 비치하고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K. 교육 및 작업

1. 미결입창자에 대한 작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작업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② 작업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해 이루어진다.
③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④ 기타()

2. 미결입창자에게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작업내용과 시간에 대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내용:
- 작업시간:

3. 미결입창자에게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4. 미결입창자에게 군사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군사교육의 내용과 시간에 대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사교육 내용:
- 군사교육 시간:

5. 미결입창자에 대한 정신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당 항목에 V표 해 주시고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헌병대장이 주로 실시한다.(회수: 내용:)
 ② 영창관리 책임장교가 주로 실시한다.(회수: 내용:)
 ③ 영창관리 형무담당관이 주로 실시한다.(회수: 내용:)
 ④ 법무장교가 주로 실시한다.(회수: 내용:)
 ⑤ 군종장교가 주로 실시한다.(회수: 내용:)
 ⑥ 정훈장교가 주로 실시한다.(회수: 내용:)
 ⑦ 실시하지 않는다.
 ⑧ 기타

L. 종교

1. 미결입창자에 대한 종교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종교행사 자체가 없다.
 ② 군종장교가 비정기적으로 영창을 방문하여 종교행사를 진행한다.
 ③ 기타()

2. 입창기간 중 미결입창자가 영창 외의 외부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3. 미결입창자가 종교행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① 불가능하다. ② 가능하다. ③ 기타()

N. 정좌 등

1. 귀 부대 영창의 경우 미결입창자가 어떠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까?

- ① 편안한 양반다리자세로 앉아 있다.
 ② 시선을 고정하고 양반다리 자세로 허리를 곧게 펴고, 주먹 쥔 손을 무릎 위에 팔이 구부러 지지 않게 올려놓은 자세로 앉아 있다.(정좌)
 ③ 시선을 고정하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허리를 곧게 펴고, 주먹 쥔 손을 무릎 위에 팔을 구부러지지 않게 올려놓은 자세로 앉아 있다.(평좌)
 ④ ①② 자세를 병행하여 앉아 있으나 ② 자세를 주로 하여 앉아 있다.
 ⑤ ①②③ 자세를 병행하여 앉아 있다.
 ⑥ 기타 자세()

2. 미결입창자의 경우 하루 어느 정도 앉아 있습니까?

- ①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②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동안
 ③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동안
 ④ 규정된 시간 내에
 ⑤ 헌병근무자가 임의대로
 ⑥ 정좌는 독서를 하면서 실시
 ⑦ 기타 ()

3. 최근 영창내에서 근무자와 입창자간 또는 입창자간 사고사례가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Q. 구속장소 감찰/징벌

1. 군검찰관이나 군판사 등이 영창을 감찰하고 있습니까?

- ① 군검찰관만이 감찰한다.
- ② 군검찰관은 정기적으로 하지만, 군판사는 비정기적으로 한다.
- ③ 감찰하지 않는다.
- ④ 기타()

2. 군검찰관의 영창 감찰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 ① 매주 1회 ② 2주 1회 ③ 3주 1회 ④ 매월 1회 ⑤ 수시 ⑥ 기타()

3. 귀 부대의 영창에서는 입창자에 대한 징벌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4. 징벌을 실시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와 징벌의 종류에 대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
- 징벌의 종류:

V. 징계입창자 부분

A. 징계절차/입창절차

1. 징계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 ① 징계서류를 통해 형식적으로 확인한다.
- ② 징계서류도 검토하고 의심스러울 때에는 입창자에게 직접 확인한다.
- ③ 징계서류도 검토하고 의심스러울 때에는 입창자나 자대에 직접 확인한다.
- ④ 기타()

2.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영창처분으로 입창의뢰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3. 있다면,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4. 귀 부대의 현병에서는 입창시에 징계입창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5. 징계입창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면 조사 내용은 무엇인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6. 징계입창자에게 징계입창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 ① 미결입창자에 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 ② 징계입창자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해 주고 있다.
- ③ 징계입창자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설명해 주고 있지 않다.
- ④ 기타()

7. 정계입창자에게 영창생활의 적응에 필요한 정보(일과, 기술, 처우, 시설물 이용 등)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 ①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 ② 형식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 ③ 설명해 주지 않는다.
- ④ 기타()

B. 신제 위생

1. 영창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면도구의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① 정계입창자가 자대에서 가져온다.
- ② 현병대에서 자체 지급한다.
- ③ 정계입창자가 자대에서 가져오긴 하지만, 부족한 경우 현병대에서 지급한다.
- ④ 기타()

2. 영창에 독립된 목욕실(샤워실)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3. 정계입창자의 경우 목욕이나 샤워는 얼마나 자주 합니까?

- ① 매일 ② 주 1회 ③ 주 2회 ④ 2주 1회 ⑤ 실시하지 않는다.
- ⑥ 기타()

4. 정계입창자의 경우 속옷이나 의복의 세탁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 ① 세면시에 세탁한다. ② 일주일에 1회 ③ 일주일에 2회 ④ 세탁을 실시하지 않는다.
- ⑤ 기타()

5. 정계입창자의 경우 세탁은 어디에서 합니까?

- ① 세면장 ② 세탁장 ③ 기타()

6. 정계입창자의 경우 면도는 얼마나 자주 할 수 있습니까?

- ① 세면시 언제든지 ② 2일에 1회 ③ 3일에 1회 ④ 1주일에 1회
- ⑤ 거의 하지 않고 영창에 특별한 사람이 볼 때만 한다. ⑥ 기타()

C. 침구/ 의복/ 위생용품

1. 현재 영창에서 정계입창자에게 지급되는 침구에 대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모포: 개
- 침낭: 개
- 매트리스: 개
- 베개: 개
- 기타:

2. 영창에서 지급되는 침구의 세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3. 영창에서 침구(이불, 모포, 침낭)는 얼마나 자주 햇볕에 말릴 수 있습니까?

- ① 언제든지 말릴 수 있다. ② 1주일에 1회 ③ 2주일에 1회 ④ 말릴 수 없다.
- ⑤ 기타()

D. 감시

1. 영창에 감시카메라가(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①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가동된다.
- ② 설치되어 있지만, 작동이 되지 않는다.
- ③ 설치되어 있지만, 저녁에만 작동된다.
- ④ 설치되어 있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⑤ 설치되어 있지 않다.
- ⑥ 기타

2. 영창내 감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① 현병이 복도 내 상주 감시
- ② 감시카메라로만 감시
- ③ 1, 2의 병행
- ④ 기타()

E. 일과

1. 귀 부대의 영창은 미/기결수와 구별된 징계입창자에 대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일과표)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징계입창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미/기결수와 같은 일과표를 가지고 교육한다.
- ② 각군 본부의 업무지침으로 징계입창자에 대한 일과표가 따로 되어 있다.
- ③ 군사령부의 업무지침으로 징계입창자에 대한 일과표가 따로 되어 있다.
- ④ 군단의 업무지침으로 징계입창자에 대한 일과표가 따로 되어 있다.
- ⑤ 현병대 자체 일과표가 따로 되어 있다.
- ⑥ 특별한 일과표가 없다.
- ⑦ 기타()

2. 징계입창자의 주요 일과 내용은 무엇인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3. 귀 부대의 영창은 징계입창자에 대한 수양록 점검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① 형무담당관이 수양록을 읽어보고 징계입창자의 반성정도를 파악한다.
- ② 형무담당관, 책임장교 등이 수양록을 읽어보고 징계입창자의 반성정도를 파악한다.
- ③ 현병대장만이 수양록을 읽어보고 징계입창자의 반성정도를 파악한다.
- ④ 수양록은 읽어보지 않으며, 형식적으로 작성여부만 파악한다.
- ⑤ 기타()

F. 식사

1. 징계입창자는 식사를 어느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 ① 영창내 거실 ② 영창내 독립된 식당 ③ 현병대 식당 ④ 기타()

2. 징계입창자는 영창에서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합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④ 기타()

3. 징계입창자의 급식 수준은 자대와 비교할 때 어떠합니까?

- ① 자대 보다 좋다.
- ② 자대와 같은 수준이다.
- ③ 자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④ 자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 ⑤ 기타()

4. 징계입창자의 식사량은 어떠합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5. 징계입창자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 식사를 배식하고 있습니까?

- ① 식당에서 자술배식
- ② 식당에서 헌병이 일괄배식
- ③ 영창 내에서 자술배식
- ④ 영창 내에서 헌병이 일괄배식
- ⑤ 기타()

6. 징계입창자에게도 자대에서와 같은 정도의 부식(음료수, 빵, 과일 등)이 지급됩니까?

- ① 징계입창자에게는 규정상 부식이 지급되지 않는다.
- ② 징계입창자에게도 규정상 부식이 지급되며, 규정에 따라 징계입창자에게 지급한다.
- ③ 징계입창자에게도 규정상 부식이 지급되지만, 입창자가 규율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때도 있다.
- ④ 기타()

7. 징계입창자가 식사할 때 감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8. 영창에서 식사후 식사도구의 세척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① 징계입창자가 미결입창자의 식사도구까지 모두 세척한다.
- ② 자기의 식사도구는 자기가 세척한다.
- ③ 근무헌병이 일괄 세척한다.
- ④ 기타()

9. 징계입창자가 미결입창자의 식사도구까지 세척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G. 면회/서신/전화

1. 징계입창자에게도 면회가 허용되고 있습니까?

- ① 자대 관계자에게만 허용된다.
- ② 자대 관계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면회가 허용된다.
- ③ 제한 없이 허용되지만 면회를 신청한 자가 없다.
- ④ 징계입창자에 대한 면회규정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 ⑤ 기타()

2. 징계입창자에 대한 면회가 허용된다면,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 ① 30분 이내 ② 1시간 이내 ③ 1시간 30분 이내 ④ 2시간 이내 ⑤ 2시간 이상

- ⑥ 부대 상황이나 피의자에 따라 일정치 않음 ⑦ 수용자가 원하는 시간동안 자유롭게
⑧ 기타()

3. 징계입창자에 대한 면회가 허용된다면, 면회는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집니까?

- ① 면회실 ② 헌병휴게실 ③ 간부사무실 ④ 헌병회의실 ⑤ 기타()

4. 징계입창자에 대한 서신 수발은 가능합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5. 서신수발이 가능하다면, 검열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① 모든 서신을 검열한다.
② 검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신만 한다.
③ 검열하지 않는다.
④ 기타()

6. 징계입창자가 외부와 전화통화를 원할 때 허용됩니까?

- ① 허용되지 않는다.
② 가족의 경우에는 필요한 때 허용된다.
③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인에게도 허용된다.
④ 자대 간부와만 통화만 가능하다.
⑤ 기타()

H. 도서·신문 열독/ TV 시청

1. 징계입창자가 책을 자유롭게 읽는 것이 가능합니까?

- ① 영창 내에 비치하고 있는 책은 입창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읽을 수 있다.
② 헌병근무자가 독서 시간대에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③ 기타()

2. 징계입창자의 경우 입창시에 자신이 읽을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3. 귀 부대의 영창에는 주로 어떤 종류의 책이 있습니까?

- ① 종교서적 ② 교양도서 ③ 소설 ④ 시, 수필 ⑤ 기타()

4. 귀 부대의 영창은 징계입창자를 위하여 어느 장소에 책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 ① 영창 거실 내에 비치하여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한다.
② 헌병이 근무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입창자가 보고 싶은 책을 원할 때 근무병이 가져다 준다.
③ 형무담당관실에 비치하고 입창자가 보고 싶은 책을 원할 때 가져다 준다.
④ 책임장교실에 비치하고 입창자가 보고 싶은 책을 원할 때 가져다 준다.
⑤ 기타()

5. 입창자에게 도서 선택을 위하여 비치하고 있는 도서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6. 귀 부대의 영창은 필요한 도서를 어떻게 공급받고 있는지 해당 항목에 모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

2 운동은 주로 어느 장소에서 합니까?

① 감방 내 ② 복도 ③ 연병장(운동장) ④ 기타()

3 징계입창자에 대한 운동실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실내 운동(운동의 종류:)

② 실외 운동(운동의 종류:)

③ 기타()

4 영창에서 주로 하는 운동은 무엇인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5 영창 내에 운동시설, 운동기구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① 있다.(운동시설 및 운동기구:)

② 없다.

6 영창 하루 일과 중 운동에 관한 규정을 알고 있다면, 규정대로 운동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기타()

J. 의료

1 징계입창시 입창자에 대한 건강상태 판단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① 징계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군의관의 소견서로만 확인

② 징계서류를 참조하여 형무담당관이 직접 확인

③ 기타()

2 징계입창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① 매주 1회 군의관이 실시

② 매주 1회 책임장교나 형무담당관이 실시

③ 매월 1회 군의관이 실시

④ 매월 1회 책임장교나 형무담당관이 실시

⑤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나 입창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실시

⑥ 기타()

3 징계입창자에 대한 진단 서류를 보관 및 비치하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K. 교육 및 작업

1 징계입창자에 대한 작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작업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② 작업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해 이루어진다.

③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④ 기타()

- ② 정계위원회 개최시 군관사 입회
- ③ 정계절차를 즉결심판절차로 대체
- ④ 입창시 검찰관에 의한 확인심사

■ 헌병수사관 면접설문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사업인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내에서의 인권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장병의 인권이 더 존중될 수 있는 수사과정 및 영창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답해주신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구자만 알 수 있으며, 학술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비밀이 완전하게 보장됩니다.
 귀하께서 본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해주셔야 군 인권상황이 제대로 파악되며, 앞으로 장병의 인권이 철저히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우시더라도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관식 설문은 자세하게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중에 질문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연구진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실태와 관련하여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제포·구속절차

1. 귀하는 검찰관이 제포·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① 타당하다(이유: _____)
 ② 타당하지 않다(이유: _____) }
2. 귀하는 구속여부와 관련하여 부대장이나 관할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명령 기타 이와 유사한 압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구속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② 불구속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③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④ 기타(_____)
3. 부당한 지시나 명령, 압력을 받았다면, 그 방법과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 _____
 - 내용: _____
4. 귀하가 군검찰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사건의 경중 ② 계급 ③ 헌병의 입장 ④ 소속부대에 미치는 영향
 ⑤ 기타(_____)
5. 귀하가 군검찰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구속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거 부정 ② 증거인멸의 염려 ③ 도망의 염려
④ 기타()

6. 군 수사절차에서 체포제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체포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② 긴급체포나 구속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체포제도는 군 수사에 있어서 별 실효성이 없다.
③ 체포의 경우에는 군관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나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④ 기타()

7. 귀하는 체포요건의 하나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의 요건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② 반대(이유:)

8. 군 수사과정에서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사상 편의 ② 어차피 구속영장이 발부되므로 ③ 수사상 관행 ④ 사건이 중하기 때문
⑤ 기타()

9. 귀하는 군사법원법상 구속의 요건 중에 하나인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10. 귀 부대의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 군검찰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사전승인의 방법:)
② 그렇지 않다.

11. 귀하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 검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② 반대(이유:)

12.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긴급체포를 할 때 보통 몇 시간 이내에 군검찰관에게 영장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 ① 24시간 이내 ② 36시간 이내 ③ 40시간 이내 ④ 기타()

13. 군 수사과정에서 과도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사상 편의 때문 ② 죄질이 무거워서 ③ 사병의 경우에는 훈계의 차원에서
④ 범죄를 범한 사병은 또 다른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병관리 차원에서
⑤ 기타()

II. 체포, 구속시 고지절차

1. 귀하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 ① 제시하지 않는다.
② 항상 제시한다.
③ 제시할 때도 있고 제시하지 않을 때도 있다.
④ 기타()

2. 귀하는 체포·구속할 때에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았을 때도 있다.

3. 귀하는 미란다원칙의 고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① 형식적으로 한다. ② 자세하고 상세하게 고지한다.

4. 귀하는 피의자가 체포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동시에 많은 인원을 체포한 경우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Ⅲ. 변호인선임 의뢰

1. 귀하는 피의자로부터 피의자가 알고 있는 특정변호인의 선임을 의뢰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 의뢰받은 적이 있었다면, 의뢰받은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즉시 통지하였습니까?

① 즉시 하였다. ② 하였지만 즉시 하지 않았다.

Ⅳ. 구속통지

1. 귀하는 구속통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① 서면 ② 전화 ③ 모사전송 ④ 기타()

2. 귀하는 구속통지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서면 ② 전화 ③ 모사전송 ④ 기타()

Ⅴ. 구속기간 연장

1. 귀하는 수사과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 있었다면,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3. 군사법경찰관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군사법원법의 규정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4. 타당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군 사건이 복잡하여 수사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

② 군 사건이 대부분 중 범죄이기 때문

③ 헌병 수사관의 인력부족으로 1차 구속기간 안에는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

④ 불기소처분이 가능한 사건이지만 훈계처원에서 연장하여야 하기 때문

⑤ 기타()

Ⅵ. 구속영장실결심사

1. 귀하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피의자신문)를 신청할 수 있음을 어떻게 고지하고 있습니까?

- ① 형식적으로 고지한다.
- ②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준다.
- ③ 신청해 보아야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는다.
- ④ 기타()

2. 귀하는 조사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기간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점을 부각시켜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신청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3. 귀하는 군 인신구속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피의자가 무슨 제도인지 몰라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
- ② 영장실질심사기간이 구속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
- ③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보아야 이미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영장이 청구되므로 기각될 확률이 없기 때문
- ④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
- ⑤ 기타()

4. 귀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이유:)

Ⅶ. 피의자신문

1. 귀하는 조사실 이외의 밀실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 있다면, 그 장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3. 귀하는 야간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4. 야간조사를 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와 시간대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

- 시간대: 시부터 시까지

5. 귀 부대의 경우 체포기간 내에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때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 심야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 ① 피의자에게 동의서를 받는다.
- ② 헌병대 상관(수사과장, 헌병대장 등)에게 허가를 얻는다.
- ③ 군검찰관에게 보고를 한다.
- ④ 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관의 임의대로 판단하여 실시한다.
- ⑤ 기타()

6. 귀하는 밤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7. 귀하는 신문할 때 진술을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8. 귀하는 신문할 때 유도신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9. 귀하는 신문할 때 모욕적이거나 위압적인 신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0. 귀하는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습니까?

- ① 조서에 부동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고지한다.
② 조서에 부동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그냥 읽어보게 한다.
③ 구두로 충분히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④ 기타()

11. 귀하는 피의자신문을 할 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2. 귀하는 신문할 때 동료 헌병수사관이 함께 있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3. 귀하는 신문을 한 후 피의자에게 조서를 읽어보게 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4. 귀하는 피의자가 조서를 읽어보고 중감·변경을 청구한 경우 성실히 응해 주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5. 귀하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보통 몇 번 정도 하고 있는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미한 사건: 번
- 중대한 사건: 번

VII. 인권교육

1. 귀하는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 있다면, 그 교육기관, 교육기간, 교육내용에 대하여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관:
- 교육기간:
- 교육내용:

VIII. 군 수사절차 개선

1. 귀하는 군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이유:)

2. 귀하는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이유:)

3. 귀하는 사병인 피의자의 인권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병의 변호를 전담하는 사병전담변호인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이유:)

4. 사병전담변호인제도의 도입에 찬성한다면, 변호인의 자격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① 군법무장교
② 민간변호사
③ 기타()

5. 기타 군수사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IX. 영창제도

1. 귀하는 사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의 영창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폐지되어야 한다. ② 존치해야 한다.

2. 영창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군기강 확립 ② 지휘권 보장 ③ 형사처벌에 의한 전과자 양산 방지 ④ 기타()

3. 귀하는 만약 징계영창제도가 폐지된다면, 그 대안으로 어떠한 제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강동 활용 ② 휴가제한 활용 ③ 면회·외출제한 활용 ④ 감봉활용 ⑤ 군복무일수 연장
⑥ 군기교육대 활용 ⑦ 기타()

4. 귀하는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어떠한 방안이 좋다고 보십니까?

① 입창시 검찰관에 의한 확인심사
② 입창시 군판사에 의한 확인심사
③ 징계위원회 개최시 검찰관 입회
④ 징계위원회 개최시 군판사 입회
⑤ 징계절차를 즉결심판절차로 대체
⑥ 현행 제도 유지
⑦ 기타()

5. 기타 영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⑤ 입창시 군판사에 의한 확인심사

⑥ 현행 제도 유지

⑦ 기타()

5. 기타 영창제도와 관련하여 발전방안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헌병수사관 면접설문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사업인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상황 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내에서의 인권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장병의 인권이 더 존중될 수 있는 수사과정 및 영창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답해주신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구자만 알 수 있으며, 학술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비밀이 완전하게 보장됩니다.

귀하께서 본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해주셔야 군 인권상황이 제대로 파악되며, 앞으로 장병의 인권이 철저히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우시더라도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관식 설문은 자세하게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중에 질문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연구진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실태와 관련하여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제포·구속절차

1. 귀하는 검찰관이 제포·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① 타당하다.(이유:)
 ② 타당하지 않다.(이유:)

2. 귀하는 구속여부와 관련하여 부대장이나 관할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명령 기타 이와 유사한 압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구속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② 불구속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③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④ 기타()

3. 부당한 지시나 명령, 압력을 받았다면, 그 방법과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

- 내용:

4. 귀하가 군검찰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사건의 경중 ② 계급 ③ 헌병의 입장 ④ 소속부대에 미치는 영향
 ⑤ 기타()

5. 귀하가 군검찰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구속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거 부정 ② 증거인멸의 염려 ③ 도망의 염려
 ④ 기타()

6. 군 수사절차에서 체포제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체포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② 긴급체포나 구속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체포제도는 군 수사에 있어서 별 실효성이 없다.
 ③ 체포의 경우에는 군관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나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④ 기타()

7. 귀하는 체포요건의 하나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의 요건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② 반대(이유:)

8. 군 수사과정에서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사상 편의 ② 어차피 구속영장이 발부되므로 ③ 수사상 관행 ④ 사건이 중하기 때문
 ⑤ 기타()

9. 귀하는 군사법원법상 구속의 요건 중에 하나인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10. 귀 부대의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 군검찰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사전승인의 방법:)
 ② 그렇지 않다.

11. 귀하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 검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② 반대(이유:)

12.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긴급체포를 할 때 보통 몇 시간 이내에 군검찰관에게 영장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 ① 24시간 이내 ② 36시간 이내 ③ 40시간 이내 ④ 기타()

13. 군 수사과정에서 과도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사상 편의 때문 ② 죄질이 무거워서 ③ 사병의 경우에는 훈계의 차원에서
 ④ 범죄를 범한 사병은 또 다른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병관리 차원에서
 ⑤ 기타()

II. 체포, 구속시 고지절차

1. 귀하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 ① 제시하지 않는다.
 ② 항상 제시한다.
 ③ 제시할 때도 있고 제시하지 않을 때도 있다.
 ④ 기타()

2. 귀하는 체포·구속할 때에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았을 때도 있다.

3. 귀하는 미란다원칙의 고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① 형식적으로 한다. ② 자세하고 상세하게 고지한다.

4. 귀하는 피의자가 체포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동시에 많은 인원을 체포한 경우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Ⅲ. 변호인선임 의뢰

1. 귀하는 피의자로부터 피의자가 알고 있는 특정변호인의 선임을 의뢰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 의뢰받은 적이 있었다면, 의뢰받은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즉시 통지하였습니까?

① 즉시 하였다. ② 하였지만 즉시 하지 않았다.

Ⅳ. 구속통지

1. 귀하는 구속통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① 서면 ② 전화 ③ 모사전송 ④ 기타()

2. 귀하는 구속통지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서면 ② 전화 ③ 모사전송 ④ 기타()

Ⅴ. 구속기간 연장

1. 귀하는 수사과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 있었다면,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3. 군사법경찰관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군사법원법의 규정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4. 타당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군 사건이 복잡하여 수사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

② 군 사건이 대부분 중 범죄이기 때문

③ 현병 수사관의 인력부족으로 1차 구속기간 안에는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

④ 불기소처분이 가능한 사건이지만 훈계차원에서 연장하여야 하기 때문

⑤ 기타()

Ⅵ. 구속영장실질심사

1. 귀하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를 신청할 수 있음을 어떻게 고지하고 있습니까?

① 형식적으로 고지한다.

- ②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준다.
 ③ 신청해 보아야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는다.
 ④ 기타()

2. 귀하는 조사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기간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점을 부각시켜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신청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3. 귀하는 군 인신구속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피의자가 무슨 제도인지 몰라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
 ② 영장실질심사기간이 구속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
 ③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보아야 이미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영장이 청구되므로 기각될 확률이 없기 때문
 ④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⑤ 기타()

4. 귀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이유:)

Ⅶ. 피의자신문

1. 귀하는 조사실 이외의 밀실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 있다면, 그 장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3. 귀하는 야간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4. 야간조사를 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와 시간대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

- 시간대: 시부터 시까지

5. 귀 부대의 경우 체포기간 내에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때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 심야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 ① 피의자에게 동의서를 받는다.
 ② 헌병대 상관(수사과장, 헌병대장 등)에게 허가를 얻는다.
 ③ 군검찰관에게 보고를 한다.
 ④ 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관의 임의대로 판단하여 실시한다.
 ⑤ 기타()

6. 귀하는 밤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7. 귀하는 신문할 때 진술을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8. 귀하는 신문할 때 유도신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9. 귀하는 신문할 때 모욕적이거나 위압적인 신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0. 귀하는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습니까?

- ① 조서에 부동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고지한다.
② 조서에 부동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그냥 읽어보게 한다.
③ 구두로 충분히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④ 기타()

11. 귀하는 피의자신문을 할 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2. 귀하는 신문할 때 동료 헌병수사관이 함께 있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3. 귀하는 신문할 때 후 피의자에게 조서를 읽어보게 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4. 귀하는 피의자가 조서를 읽어보고 중감·변경을 청구한 경우 성실히 응해 주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5. 귀하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보통 몇 번 정도하고 있는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미한 사건: 번
- 중대한 사건: 번

Ⅶ. 인권교육

1. 귀하는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 있다면, 그 교육기관, 교육기간, 교육내용에 대하여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관:
- 교육기간:
- 교육내용:

Ⅷ. 군 수사절차 개선

1. 귀하는 군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이유:)

2. 귀하는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이유:)

3. 귀하는 사병인 피의자의 인권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병의 변호를 전담

하는 사병전담변호인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이유:)

4. 사병전담변호인제도의 도입에 찬성한다면, 변호인의 자격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① 군법무장교
② 민간변호사
③ 기타()

5. 기타 군수사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Ⅸ. 영창제도

1. 귀하는 사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의 영창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폐지되어야 한다. ② 존치해야 한다.

2. 영창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군기강 확립 ② 지휘권 보장 ③ 형사처벌에 의한 전과자 양산 방지 ④ 기타()

3. 귀하는 만약 징계영창제도가 폐지된다면, 그 대안으로 어떠한 제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강등 활용 ② 휴가제한 활용 ③ 면회·외출제한 활용 ④ 감봉활용 ⑤ 군복무일수 연장
⑥ 군기교육대 활용 ⑦ 기타()

4. 귀하는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어떠한 방안이 좋다고 보십니까?

- ① 입창시 검찰관에 의한 확인심사
② 입창시 군판사에 의한 확인심사
③ 징계위원회 개최시 검찰관 입회
④ 징계위원회 개최시 군판사 입회
⑤ 징계절차를 즉결심판절차로 대체
⑥ 현행 제도 유지
⑦ 기타()

5. 기타 영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군검찰관 면접설문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사업인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내에서의 인권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장병의 인권이 더 존중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답해주신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구자만 알 수 있으며, 학술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비밀이 완전하게 보장됩니다.

귀하께서 본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해주셔야 군 인권상황이 제대로 파악되며, 앞으로 장병의 인권이 철저히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우시더라도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관식 설문은 자세하게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중에 질문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연구진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실태와 관련하여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군사법경찰관 견제

1. 귀하는 현재 군사법경찰과 군검찰의 관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호보완관계 ② 대등관계 ③ 헌병의 우위 ④ 검찰의 우위
⑤ 기타()

2. 귀하는 현행 군사법원법이 군사법경찰관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 특성상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에 대해서는 군검찰관이 견제할 필요가 있다.
② 군 수사의 특성상 현행과 같은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기타()

3.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① 현행 형사소송법과 같이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행 군사법원법의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③ 기타()

4. 기타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군검찰의 견제방안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II. 체포·구속제도

1. 귀하는 군사법경찰관이 구속(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우 기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하였다.
② 사건이 경미하여 기각하였다.
③ 현행범인체포나 긴급체포가 위법하여 기각하였다.
④ 체포일시부터 48시간이 경과하여 기각하였다.
⑤ 기각한 적이 없다.
⑥ 기타()

2. 군검찰관이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① 그렇다.(이유:)
② 그렇지 않다.(이유:)

3. 귀 부대의 경우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실질적으로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까?

- ① 사병, 부사관, 장교를 불문하고,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부사관, 장교만 실질적으로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사병의 경우에는 법무참모의 전결로 한다.
③ 장교만 실질적으로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고, 부사관이나 사병의 경우에는 법무참모의 전결로 한다.
④ 기타()

4. 귀하는 구속여부와 관련하여 부대장이나 관할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명령 기타 이와 유사한 압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구속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② 불구속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③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④ 기타()

5. 부당한 지시나 명령, 압력을 받았다면 그 방법과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

- 내용:

6. 귀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사건의 경중 ② 계급 ③ 현병의 입장 ④ 소속부대에 미치는 영향
⑤ 기타()

7. 귀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구속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거 부정 ② 중거인텔의 염려 ③ 도망의 염려
④ 기타()

8. 군 수사절차에서 체포제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체포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② 긴급체포나 구속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체포제도는 군 수사에 있어서 별 실효성이 없다.
③ 체포의 경우에는 군관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나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잡스럽다.
④ 기타()

9. 귀하는 체포요건의 하나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의 요건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② 반대(이유:)

10. 군 수사과정에서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수사상 편의 ② 어차피 구속영장이 발부되므로 ③ 수사상 관행 ④ 사건이 중하기 때문
 ⑤ 기타()
11. 귀하는 군사법원법상 구속의 요건 중에 하나인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를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12. 귀 부대의 경우에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 군검찰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사전승인의 방법:)
 ② 그렇지 않다.
13. 귀하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 검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이유:)
14. 귀 부대의 경우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경우 보통 몇 시간 이내에 군검찰관에게 구속영장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① 24시간 이내 ② 36시간 이내 ③ 40시간 이내 ④ 기타()
15. 귀하는 구속영장청구를 보통 몇 시간 이내에 하고 있습니까?
 ① 36시간 이내 ② 40시간 이내 ③ 48 시간 이내 ④ 기타()
16. 군 수사과정에서 과도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수사상 편의 때문 ② 죄질이 무거워서 ③ 사병의 경우에는 훈계의 차원에서
 ④ 범죄를 범한 사병은 또 다른 사고를 범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병관리 차원에서
 ⑤ 기타()

Ⅲ. 체포·구속시 고지절차

1. 귀하는 피의자를 체포·구속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제시하였습니까?
 ① 제시하지 않았다. ② 항상 제시한다. ③ 제시할 때도 있고 제시하지 않을 때도 있다.
2. 귀하는 구금당시에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습니까?
 ① 고지하였다. ② 고지하지 않았다. ③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
3. 귀하는 미란다 원칙의 고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① 형식적으로 고지한다. ② 자세하게 고지한다.
4. 귀하는 피의자가 체포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동시에 많은 인원을 체포한 경우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Ⅳ. 변호인선임 의뢰

1. 귀하는 피의자로부터 변호인의 선임 을 의뢰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2. 있었다면, 의뢰받은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즉시 통지하였습니까?

① 즉시 하였다. ② 하였지만 즉시 하지 않았다.

V. 구속통지

1. 귀하는 구속통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① 서면 ② 전화 ③ 모사전송 ④ 기타()

2. 귀하는 구속통지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서면 ② 전화 ③ 모사전송 ④ 기타()

Ⅶ. 구속영장실질심사/제포·구속적부심사

A. 구속영장실질심사

1. 귀하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피의자신문)를 신청할 수 있음을 어떻게 고지하고 있습니까?

① 형식적으로 한다.

②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준다.

③ 신청해 보아야 어차피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는다.

④ 기타()

2. 귀하는 조사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기간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신청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3. 귀하는 군 인신구속에 있어 영장실질심사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피의자가 무슨 제도인지 몰라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

② 영장실질심사기간이 구속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

③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보아야 이미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영장이 청구되므로 기각될 확률이 없기 때문

④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⑤ 기타()

4. 귀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이유:)

5. 귀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시에 군판사가 현병대 영창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심문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이유:)

B. 제포·구속적부심사

1. 귀하는 제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제도가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까?

- ① 재판부 구성의 어려움
- ② 피의자들이 어떤 제도인지 모름
- ③ 청구해 보아야 석방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
- ④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
- ⑤ 기타()

2. 귀하는 체포·구속적부심사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3. 귀하는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보석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이유:)

VII. 구속기간의 연장

1. 군사법경찰관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군사법원법의 규정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① 그렇다.(이유:)
② 그렇지 않다.(이유:)

2. 귀하는 수사과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3.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사건이 복잡하여 수사의 시간이 더 필요하였기 때문
- ② 구속된 피의자에게 훈계하는 차원에서
- ③ 범죄가 중했기 때문
- ④ 훈련이나 업무 등으로 인하여 수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
- ⑤ 기타()

4.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면, 그 기간은 몇 일이었습니까?

- ① 3일 ② 5일 ③ 7일 ④ 10일 ⑤ 기타()

VIII. 피의자신문

1. 귀하는 조사실 이외의 밀실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 있었다면, 그 장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3. 귀하는 야간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시간대: 시~ 시까지) ② 없다.

4. 귀하는 밤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 귀하는 신문할 때 진술을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6. 귀하는 신문할 때 유도신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7. 귀하는 신문할 때 모욕적이거나 위압적인 신문을 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8. 귀하는 피의자신문을 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습니까?

① 조서에 부동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고지한다.

② 조서에 부동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그냥 읽어보게 한다.

③ 구두로 충분히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④ 기타()

9. 귀하는 피의자신문을 할 때 이익되는 사실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주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0. 귀하는 신문할 때 군검찰서기를 참여하게 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1. 귀하는 신문을 한 후 피의자에게 조서를 읽어보게 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2. 귀하는 피의자가 조서를 읽어보고 증감·변경을 청구한 경우 성실히 응해 주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3. 귀하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보통 몇 번 정도 하고 있는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미한 사건: 번

- 중대한 사건: 번

Ⅸ. 구속장소감찰

1. 귀 부대의 검찰에서는 영창에 대한 감찰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① 정기적으로 매월 1회 한다.

② 정기적으로 매월 1회도 하고, 수시로 하기도 한다.

③ 정기적으로 매주 1회 한다.

④ 기타()

2. 귀하는 영창에 대한 감찰을 어떠한 형식으로 합니까?

① 헌병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 감찰을 한다.

② 모든 영창의 시설이나 처우가 똑 같기 때문에 형식적 감찰을 한다.

③ 감찰을 해 보아야 별 개선방안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 감찰을 한다.

④ 규정에 따라 실질적 감찰을 한다.

⑤ 기타()

3. 귀하가 영창을 감찰할 때 중점적으로 감찰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영창의 환경 ② 구금자의 건강상태 ③ 불법체포·구속여부 ④ 가혹행위 여부
⑤ 기타()

4. 귀하는 영창을 감찰 한 후 헌병에게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개선 요구 내용:)
② 없다.

5. 기타 영창 감찰의 주요내용에 대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X. 인권교육

1. 귀하는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 있다면, 그 교육기관, 교육기간, 교육내용에 대하여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관:

- 교육기간:

- 교육내용:

XI. 군검찰의 공정성 / 군사법 개혁

A. 군검찰의 공정성 확보

1. 귀하는 현재 군사법제도 하에서 검찰권이 지휘권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합니까?

- ① 그렇다.(이유:)
② 그렇지 않다.(이유:)

2. 귀하는 군검찰권이 부대의 장의 지휘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① 그렇다.(이유:)
② 그렇지 않다.(이유:)

3. 귀하는 군검찰관의 신분을 군인이 아닌 군무원으로 임명하여 각 부대 보통검찰부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이유:)
② 반대(이유:)

4. 귀하는 군검찰이 부대의 장의 지휘권으로부터 독립되는 경우 어느 단위 소속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 ① 국방부 ② 각군 본부 ③ 군사령부급 ④ 군단급 ⑤ 기타

5. 귀하는 검찰관의 통제수단이 되고 있는 인사 및 보직권 행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검찰관인사위원회와 군검찰 업무를 감시할 독립적인 외부감찰위원회 등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② 반대(이유:)

6 기타 군 수사과정과 관련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B. 군 사법개혁

1. 귀하는 군검찰권은 군에 존치되더라도, 군사법원을 민간법원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이유:)

2. 귀하는 군법무관시험을 폐지하고 사법시험 합격자만을 법무장교로 임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이유:)

3. 귀하는 군검찰과 군판사가 이원화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이유:)

4. 귀하는 군검찰과 군판사가 이원화되더라도 참모나 정책부서의 직위는 공통보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이유:)

5. 귀하는 군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이유:)

6. 귀하는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이유:)

7. 귀하는 국선변호인의 자격을 현재와 같이 군법무장교가 아닌 민간변호사로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이유:)

8. 귀하는 사병인 피의자의 인권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병의 변호를 전담하는 사병전담변호인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이유:)

9. 사병전담변호인제도의 도입에 찬성한다면, 변호인의 자격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① 군법무장교
② 민간변호사
③ 기타()

10. 귀하는 현행과 같이 사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보통군사법원의 존치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존치(이유:)
② 폐지(이유:)

11. 귀하는 관찰관 확인조치권 존치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존치(이유:)
② 폐지(이유:)

12. 귀하는 순회 군관사단 운영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13. 기타 군사법제도의 발전방안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XI. 영창제도

1. 귀하는 사병에 대한 징계입창제도가 지휘관의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이유:)

2. 귀하는 사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의 영창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폐지해야 한다. ② 존치해야 한다.

3. 징계영창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군기강 확립 ② 지휘권 보장 ③ 형사처벌에 의한 전과자 양산 방지 ④ 기타()

4. 귀하는 만약 징계영창제도가 폐지된다면, 그 대안으로 어떠한 제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강동 활용 ② 휴가제한 활용 ③ 면회·외출제한 활용 ④ 감봉활용 ⑤ 군복무일수 연장

⑥ 군기교육대 활용 ⑦ 기타()

5. 귀하는 징계영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어떠한 방안이 좋다고 보십니까?

① 입창시 검찰관에 의한 확인심사

② 입창시 군관사에 의한 확인심사

③ 징계위원회 개최시 검찰관 입회

④ 징계위원회 개최시 군관사 입회

⑤ 징계절차를 즉결심판절차로 대체

⑥ 현행 제도 유지

⑦ 기타()

6. 기타 영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군관사 면접설문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사업인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내에서의 인권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장병의 인권이 더 존중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답해주신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구자만 알 수 있으며, 학술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비밀이 완전하게 보장됩니다.

귀하께서 본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해주셔야 군 인권상황이 제대로 파악되며, 앞으로 장병의 인권이 철저히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우시더라도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관식 설문은 자세하게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중에 설문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연구진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실태와 관련하여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군사법경찰관 견제

1. 귀하는 현행 군사법원법이 군사법경찰관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 특성상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에 대해서는 군검찰관이 견제할 필요가 있다.
- ② 군 수사의 특성상 현행과 같은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기타()

2.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형사소송법과 같이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현행 군사법원법의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 ③ 기타()

3. 기타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군검찰관의 견제방안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II. 체포·구속

1. 군검찰관이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① 그렇다.(이유:)
- ② 그렇지 않다.(이유:)

2. 귀하는 구속여부와 관련하여 부대장이나 관할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명령 기타 이와 유사한 압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부당한 구속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 ② 부당한 불구속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 ③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 ④ 기타()

3. 부당한 지시나 명령·압력을 받았다면, 그 방법과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

- 내용:

4. 귀하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사건의 경중 ② 계급 ③ 헌병의 입장 ④ 소속부대에 미치는 영향
⑤ 기타()

5. 귀하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구속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거 부정 ② 중거인멸의 염려 ③ 도망의 염려
④ 기타()

6. 군 수사절차에서 체포제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체포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② 긴급체포나 구속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체포제도는 군 수사에 있어서 별 실효성이 없다.
③ 체포의 경우에는 군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나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④ 기타()

7. 귀하는 체포요건의 하나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의 요건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② 반대(이유:)

8. 귀하는 군사법원법상 구속의 요건 중에 하나인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9. 귀하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 검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② 반대(이유:)

10. 군 수사과정에서 과도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사상 편의 때문 ② 죄질이 무거워서 ③ 사병의 경우에는 훈계의 차원에서
④ 범죄를 범한 사병은 또 다른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병관리 차원에서
⑤ 기타()

11. 군 수사과정에서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사상 편의 ② 어차피 구속영장이 발부되므로 ③ 수사상 관행 ④ 사건이 중하기 때문
⑤ 기타()

Ⅲ. 구속기간의 연장

1. 군사법경찰관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군사법원법의 규정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이유:)

2. 귀하는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셨다면, 그 연장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사안이 복잡하여 수사의 시간이 더 필요하였기 때문
② 구속된 피의자에게 훈계하는 차원에서
③ 범죄가 중했기 때문
④ 군사법경찰관이나 군검찰관이 훈련이나 업무 등으로 인하여 수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
⑤ 기타()

4.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허가하셨다면, 그 기간은 몇 일이었습니까?

① 3일 ② 5일 ③ 7일 ④ 10일 ⑤ 기타()

II. 구속영장실질심사

1. 귀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적이 있다면, 귀하는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피의자가 진술거부권과 이익되는 사실에 대해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3. 영장실질심사를 한 적이 있다면,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이 참여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기타()

4. 귀하는 변호인 선임여부가 구속영장발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5. 귀하는 군 인신구속에 있어 구속영장실질심사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피의자가 무슨 제도인지 몰라 신청하지 않기 때문
② 군사법경찰관이 영장실질심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
③ 영장실질심사기간이 구속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④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보아야 이미 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것이므로 기각될 확률이 없기 때문
⑤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⑥ 기타()

6. 귀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의해 구속영장을 기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7. 영장을 기각하신 적이 있었다면, 기각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추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②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③ 도망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④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⑤ 기타()

8. 귀하는 구속영장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이유:)
② 없다.

9. 귀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② 반대(이유:)

10. 귀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시에 군판사가 현병대 영창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심문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② 반대(이유:)

Ⅲ. 체포·구속적부심사

1. 귀하는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제도가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보십니까?

- ① 재판부 구성의 어려움
② 피의자들이 어떤 제도인지 모름
③ 청구해 보아야 석방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
④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
⑤ 기타()

2. 귀하는 체포·구속적부심사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① 그렇다.(이유:)
② 그렇지 않다.

3. 귀하는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보석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② 반대(이유:)

Ⅳ. 구속장소감찰

1. 귀하는 군판사로서 구속장소에 대한 감찰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정기적으로 매월 1회 한다.
② 정기적으로 매월 1회도 하고, 수시로 하기도 한다.
③ 정기적으로 매주 1회 한다.
④ 부정기적으로 한다.
⑤ 감찰을 한 적이 없다.
⑥ 기타()

2. 감찰을 한 적이 있다면, 귀하가 영창을 감찰할 때 중점적으로 감찰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영창의 환경 ② 구금자의 건강상태 ③ 불법체포·구속여부 ④ 가혹행위 여부
⑤ 기타()

3. 감찰을 한 적 있다면, 헌병에게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개선 요구 내용:)
 ② 없다.

V. 인권교육

1. 귀하는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 있다면, 그 교육기관, 교육기간, 교육내용에 대하여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관:
 - 교육기간:
 - 교육내용:

VI. 군사법의 공정성/ 군사법 개혁

A. 군사법의 공정성

1. 귀하는 현재 군사법제도 아래에서 군판사가 관할관(지휘관)으로부터 자유롭게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이유:)
2. 귀하는 군판사가 관할관(지휘관)으로부터 독립된다면, 군판사의 소속을 어느 단위로 하면 좋겠습니까?
 ① 현행과 같이 국방부나 각군 본부로
 ② 모두 국방부로
 ③ 고등군사법원으로
 ④ 기타()
3. 귀하는 군판사의 통제수단이 되고 있는 인사 및 보직권 행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군판사인사위원회와 군사법 업무를 감시할 독립적인 외부감찰위원회 등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이유:)

B. 군사법개혁

1. 귀하는 군검찰권은 군에 존치되더라도, 군사법원을 민간법원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이유:)
2. 귀하는 군법무관시험을 폐지하고 사법시험 합격자만을 법무장교로 임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이유:)
3. 귀하는 군검찰과 군판사가 이원화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폐지해야 한다. ② 존치해야 한다.

3. 징계영창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군기강 확립 ② 지휘권 보강 ③ 형사처벌에 의한 전과자 양산 방지
④ 기타()

4. 귀하는 만약 징계영창제도가 폐지된다면, 그 대안으로 어떠한 제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강등 활용 ② 휴가제한 활용 ③ 면회·외출제한 활용 ④ 감봉활용 ⑤ 군복무일수 연장
⑥ 군기교육대 활용 ⑦ 기타 ()

5. 귀하는 영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어떠한 방안이 좋다고 보십니까?

① 입창시 검찰관에 의한 확인심사
② 입창시 군판사에 의한 확인심사
③ 징계위원회 개최시 검찰관 입회
④ 징계위원회 개최시 군판사 입회
⑤ 징계절차를 즉결심판절차로 대체
⑥ 현행 제도 유지
⑦ 기타()

6. 기타 영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